

報告書

01

# WTO 酒稅紛爭과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向

1999.12

成明宰 · 張槿鎬

## 序 言

주세를 부과함으로써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대체로 高價·高級酒에 高稅率, 低價·低級酒에 低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은 주세법 제정 당시 또는 종가세 체계로 개편된 1960년대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어,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크게 증대되고 소비패턴도 고도화되면서 주류소비 구조에도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 1970년대 이후 맥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단일 주종으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주종이 되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주류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외래 고급주종의 소비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주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所得階層別 酒稅負擔 分布도 크게 變化하였으며, 1980년대말부터는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飲酒運轉 문제가 매우 심각한 社會問題化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는 등 음주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세제도는 이러한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化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는 고알콜주가 대부분인 蒸溜酒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류주에 대한 실효세 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도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외 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消費抑制的 租稅(sumptuary tax)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문제점

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서 위스키, 브랜디 등에 대한 酒稅率 및 關稅率을 引下하라는 서구 선진국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1997년에는 EC와 미국이 함께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수입주류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즉, EC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內國民待遇 및 非差別的 市場接近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거이다.

1998년 9월 WTO 패널은 수차례의 구두심의 끝에 제소국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GATT 제3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및 교육세율을 일치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WTO 패널판정의 오류를 들어 상소하였으나, 1999년 2월 17일 WTO 상소심 역시 최종적으로 WTO 패널판정 결과를 수용하였다. 이후 중재심에서 2000년 1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할 것을 중재하면서 2000년 1월말까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및 교육세율을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對內外的인 必要性 또는 當爲의 必要에 의해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는 對內外的인 與件의 變化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向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成明宰·張槿鎬 博士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특히 두 박사는 1997년부터 본격화된 韓·EC 및 미국간 주세분쟁에서부터 WTO 패널 및 상소심 심의, 그리고 후속절차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著者들은 자료수집 및 정리에 수고한 李恩鏡, 金龍大 研究員, 尹惠順, 安相淑 研究組員, 校訂을 맡아준 出版課 여러분 및 많은 도움

을 주신 여타 關係者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著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 一 鎬

# 目 次

머리말	23
第 I 編 우리나라와 EC·美國間 WTO 酒稅紛爭	27
I. 序論	29
II. GATT 第3條 2項과 酒稅紛爭 經過	31
1. 提訴背景과 經過	31
2. GATT 第3條와 提訴事由	35
가. GATT 第3條 第1項과 第2項	35
나. 提訴事由	37
III. GATT 第3條 2項의 前例：日本 酒稅紛爭	39
1. 日本 酒稅率 體系와 紛爭經過	39
2. 日本 酒稅패널 決定의 法的 拘束力	41
3. 日本 酒稅패널의 GATT 第3條 第2項 解釋	
: 첫 번째 文章	43
가. 意圖와 效果 檢證(aim and effect test)	43
나. 適用基準과 第3條 第1項	47
다. 考慮要因과 判定	48
4. 日本 酒稅패널의 GATT 第3條 第2項 解釋：둘째 文章	52
가. 保護效果와 類似하지 않은 課稅와의 關係	52
나. 類似하지 않은 課稅	55

다. 價格 對比 稅金比重：類似하지 않은 課稅와 保護效果	56
라. 競爭·代替關係의 基準	59
마. 競爭·代替關係의 考慮要因	61
IV. 우리나라와 EC·美國間 WTO 酒稅紛爭	66
1. 우리나라 酒稅法과 論爭의 概要	66
가. 酒種分類와 稅率體系	66
나. 酒種分類와 輸入實態	68
다. 製品의 範圍에 대한 判定	74
2. GATT 第3條 第2項의 法理的 解釋	81
가. GATT 第3條 第2項과 酒稅紛爭	81
나. 우리나라 酒稅패널의 法理的 解釋	88
3. 競爭關係에 대한 考慮要因	99
가. 物理的 特性	99
나. 使用用途	105
다. 販賣處와 流通經路	112
라. 價格	115
마. 交叉彈力性	119
4. 테킬라와 메스칼(Tequila and Mescal)	127
가. 멕시코	127
나. 우리나라	129
5. 패널判定	130
가. 競爭·代替關係에 관한 決定	130
나. 類似하지 않은 課稅와 保護效果	131
다. 同種製品	132
6. 패널의 結論	133

V. 우리나라 WTO 酒稅紛爭：上訴審 判定과 履行	134
1. 上訴根據와 經過	134
2. 上訴 및 判定內容	135
가. 直接競爭 또는 代替商品	135
나. 製品分類	143
다. 保護效果	144
라. 立證責任：事例別 檢討	146
마. 客觀的 評價(DSU 제11조)	152
바. 判定根據의 說明(DSU 제12조 7항)	156
3. 上訴審의 結論	158
4. 酒稅紛爭 判定結果의 履行	158
가. 履行措置에 관한 DSU 規定	158
나. 履行期間에 대한 WTO 仲裁 判例	162
다. 日本 酒稅의 兩者協商	170
라. 우리나라 酒稅에 대한 履行期間 判定	174
VI. 우리나라 WTO 酒稅判定의 評價와 履行	182
1. WTO 酒稅紛爭 判定의 評價	182
2. 履行措置：兩者協商과 酒稅率 改編	187
가. 알콜度數에 따른 差等課稅와 最小許容水準	188
나. 關稅引下 등 考慮事項	196
3. 칠레 酒稅분쟁의 示唆點	200
가. 칠레 酒稅法과 競爭關係	200
나. 類似하지 않은 課稅	203
다. 國產製品의 保護效果와 判定	207
VII. 結論	211
參考文獻	214

## 第 II 編 社會的 費用 減縮을 위한 酒稅率 體系

整備方案 .....	217
I. 序論 .....	219
II. 酒稅의 現況 .....	223
1. 概要 .....	223
2. 酒類의 種類 .....	224
3. 酒稅率 體系 .....	224
가. 酒稅率의 變遷過程 .....	224
나. 現行 酒稅率 體系 .....	229
다. 酒稅의 課稅標準 .....	231
라. 現行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 .....	232
4. 酒類消費와 酒稅收入 推移 .....	234
가. 酒類消費 推移 .....	234
나. 酒稅收入 推移 .....	237
5. 酒類의 輸出入 推移 .....	240
III. 酒稅率 體系整備의 必要性 .....	245
1. 飲酒 關聯 外部不經濟 .....	245
가. 酒類 消費의 增加趨勢 .....	245
나. 酒類 消費의 國際比較 .....	248
다. 飲酒運轉 交通事故 .....	253
라. 飲酒 關聯 疾病 .....	257
마. 飲酒에 따른 經濟·社會的 費用 .....	259
2. 靑少年 飲酒 .....	262
3. 酒稅負擔의 衡平性 .....	266
가. 酒稅負擔 分布 .....	266
나. 主要 酒種別 酒稅負擔 .....	268

다. 衡平性 綜合 .....	274
4. 從量稅와 從價稅 .....	275
가. 從量稅 課稅體系의 背景 .....	275
나. 從價稅와 從量稅 體系의 長短點 .....	275
다. 從價稅 體系 維持의 必要性 .....	278
5. 地方財政과 酒稅 .....	280
가. 現況 .....	280
나. 歲入增大의 必要性 .....	281
6. 改編의 必要性 綜合 .....	281
IV. 改善方案과 期待效果 .....	286
1. 改編의 基本方向 .....	286
가. 改編의 必要性和 主要 爭點 .....	286
나. 酒稅率 調整의 範圍 .....	287
다. 酒稅率 水準 .....	288
2. 改編方案 .....	291
가. 蒸溜酒의 酒稅率 改編方向 .....	291
나. 麥酒의 酒稅率 改編方向 .....	292
다. 其他 主要 酒類의 酒稅率 改編方案 .....	293
3. 期待效果 .....	294
가. 價格效果 .....	294
나. 需要 및 稅收效果 分析을 위한 假定 .....	296
다. 需要效果 .....	297
라. 稅收效果 .....	299
4. 租稅體系 簡素化를 위한 暫定的 教育稅率 單一化 方案 .....	301
5. 留意事項 .....	302
V. 結論 .....	303
參考文獻 .....	307

附錄 I. 主要酒種에 대한 酒稅와 關稅 .....	310
附錄 II. 1997~1998年の 稅負擔 分析 .....	312
1. 分析의 概要 .....	312
2. 經濟危機 1年間の 與件變化 .....	313
3. 所得稅 및 消費稅 負擔 .....	320
4. 酒稅負擔의 衡平性 .....	323
가. 概要 .....	323
나. 淸酒 .....	324
다. 濁酒 .....	328
라. 燒酎 .....	332
마. 麥酒 .....	336
바. 위스키 .....	341
사. 其他 酒類 .....	345
아. 衡平性 綜合 .....	348
附錄 III.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과 期待效果：代案 .....	350
1. 酒稅率 折衷方案 I：90% .....	350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90% 方案 .....	350
나. 期待效果 I：90% 方案 .....	351
2. 酒稅率 折衷方案 II：80% .....	360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I：80% 方案 .....	360
나. 期待效果 II：80% 方案 .....	360
3. 酒稅率 折衷方案 III：70% .....	368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II：70% 方案 .....	368
나. 期待效果 III：70% 方案 .....	369
4. 酒稅率 改編方案 IV：政府案 .....	375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V：政府案 .....	375

나. 期待效果 IV : 政府案 .....	375
5. 酒稅負擔率의 國際比較 및 評價 .....	377
가. 國際比較.....	377
나. 評價.....	378

# 表目次

## 第 I 編

〈表 II - 1〉 우리나라와 EC·美國 酒稅紛爭 日程 및 經過	33
〈表 III - 1〉 日本의 酒稅率과 關稅率 體系(1995年 現在)	40
〈表 III - 2〉 燒酎와 輸入酒類의 稅負擔 比較	57
〈表 III - 3〉 ‘稅金差別指數’의 比較	57
〈表 IV - 1〉 主要國의 酒種別 酒稅率	66
〈表 IV - 2〉 現行 酒稅率 體系 및 稅收(1998年)	67
〈表 IV - 3〉 年度別 위스키 酒稅率과 教育稅率	75
〈表 IV - 4〉 酒種分類와 輸入樣相에 關하여 제시된 爭點	75
〈表 IV - 5〉 製品의 範圍에 對한 各國의 主張과 判定	78
〈表 IV - 6〉 GATT 第3條 2項에 對한 解釋의 差異	82
〈表 IV - 7〉 燒酎와 위스키 稅前價格 比較	115
〈表 IV - 8〉 위스키·燒酎 消費와 需要變化(前年 對比)	122
〈表 IV - 9〉 Dodwell 設問調查 結果	125
〈表 IV - 10〉 競爭關係 判定에 있어서 考慮要因과 爭點	100
〈表 V - 1〉 年度別 日本 酒稅의 變化(酒稅法 1次 改正)	173
〈表 VI - 1〉 알콜度數에 對한 酒稅率 差等化의 例	188
〈表 VI - 2〉 日本 燒酎와 輸入酒類의 稅負擔 比較	192
〈表 VI - 3〉 燒酎와 위스키間 稅負擔 差異 I (既存 教育稅率 包含)	193
〈表 VI - 4〉 燒酎와 위스키間 稅負擔 差異 II (既存 教育稅率 包含)	193
〈表 VI - 5〉 從量稅 轉換時 燒酎價格과 稅負擔의 變化	195
〈表 VI - 6〉 칠레의 酒稅率 體系(2000. 12)	201

〈表 VI - 7〉 칠레 酒稅率(2000. 12.)과 各種 方案에 따른 알콜 1度當 稅率 .....	204
--	-----

## 第 II 編

〈表 II - 1〉 酒稅率 變化推移 .....	228
〈表 II - 2〉 現行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 .....	230
〈表 II - 3〉 年度別 酒類別 出庫量 推移 .....	236
〈表 II - 4〉 主要 酒種別 消費量 推移 .....	237
〈表 II - 5〉 年度別 酒稅收入의 推移 .....	238
〈表 II - 6〉 現行 酒類別 稅收 現況 .....	239
〈表 II - 7〉 年度別 酒類 輸入量 및 輸入額 推移 .....	243
〈表 II - 8〉 年度別 酒類 輸出量 및 輸出額 推移 .....	244
〈表 III - 1〉 主要 酒類의 消費推移 .....	246
〈表 III - 2〉 1人當 酒類消費量의 國際比較(1995年 現在) ...	249
〈表 III - 3〉 15세 以上 人口 1人當 酒類消費量 推定值 (1995年 現在) .....	250
〈表 III - 4〉 飲酒運轉 交通事故 趨勢 .....	254
〈表 III - 5〉 飲酒運轉 交通事故 死亡者 및 負傷者 推移 .....	255
〈表 III - 6〉 우리나라의 自動車 種類別 年末 登錄推移 .....	256
〈表 III - 7〉 疾病別 飲酒 關聯 死亡者 數(1995年) .....	258
〈表 III - 8〉 飲酒의 經濟·社會的 費用(1995年) .....	260
〈表 III - 9〉 飲酒 關聯 年間 經濟·社會的 費用的 國際比較 ...	261
〈表 III - 10〉 年度別 青少年 飲酒經驗 比率 .....	264
〈表 III - 11〉 青少年의 最初 飲酒年齡(1996年) .....	264
〈表 III - 12〉 少年 犯罪의 原因別 構成比 .....	265
〈表 III - 13〉 主要 酒類에 대한 所得階層別 總所得 對比 酒稅負擔率 .....	269
〈表 III - 14〉 地方自治團體收入 .....	280
〈表 IV - 1〉 蒸溜酒의 消費者價格 對比 平均稅金比重의 國際比較 .....	289

〈表 IV - 2〉 主要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 ...	293
〈表 IV - 3〉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 .....	295
〈表 IV - 4〉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 .....	298
〈表 IV - 5〉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	299

## 附 錄

〈附表 I - 1〉 輸入위스키의 關稅와 內國稅 및 總稅負擔 .....	310
〈附表 I - 2〉 關稅와 酒稅率 .....	311
〈附表 II - 1〉 都市家計의 所得 및 稅負擔 平均 .....	314
〈附表 II - 2〉 所得階層別 所得稅 및 消費稅 總計의 負擔 分布 .....	321
〈附表 II - 3〉 年齡別 所得稅 및 消費稅 總計의 負擔 分布 ...	321
〈附表 II - 4〉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 (淸酒, 教育稅 包含) .....	326
〈附表 II - 5〉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淸酒, 教育稅 包含) ...	326
〈附表 II - 6〉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濁酒).....	329
〈附表 II - 7〉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濁酒) .....	330
〈附表 II - 8〉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 (燒酎, 教育稅 包含) .....	334
〈附表 II - 9〉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燒酎, 教育稅 包含) ...	334
〈附表 II - 10〉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 (麥酒, 教育稅 包含) .....	338
〈附表 II - 11〉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麥酒, 教育稅 包含) ...	339
〈附表 II - 12〉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 (위스키, 教育稅 包含) .....	343
〈附表 II - 13〉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 (위스키, 教育稅 包含) .....	343
〈附表 II - 14〉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 (其他 酒類, 教育稅 包含) .....	346
〈附表 II - 15〉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 (其他 酒類, 教育稅 包含) .....	346

〈附表 III-1〉 主要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 (折衷案 I) .....	351
〈附表 III-2〉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折衷案 I) .....	352
〈附表 III-3〉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 (折衷案 I) .....	353
〈附表 III-4〉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折衷案 I) .....	357
〈附表 III-5〉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方案 (折衷案 I) .....	359
〈附表 III-6〉 主要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 (折衷案 II) .....	360
〈附表 III-7〉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折衷案 II) .....	361
〈附表 III-8〉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 (折衷案 II) .....	362
〈附表 III-9〉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折衷案 II) .....	366
〈附表 III-10〉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方案 (折衷案 II) .....	368
〈附表 III-11〉 主要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 (折衷案 III) .....	369
〈附表 III-12〉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折衷案 III) .....	370
〈附表 III-13〉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 (折衷案 III) .....	371
〈附表 III-14〉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折衷案 III) .....	373
〈附表 III-15〉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方案 (折衷案 III) .....	374
〈附表 III-16〉 主要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 (政府案) .....	375

# 圖目次

## 第 I 編

[圖 V - 1] 年度別 日本 酒稅의 變化(酒稅法 2次 改正) …	174
[圖 VI - 1] 日本 위스키 關稅率 양허 및 보상안 ……………	198
[圖 VI - 2] 現行 및 關稅撤廢時 輸入洋酒에 대한 實質 總稅率 ……………	199
[圖 VI - 3] 酒稅率 20% 引下時 國產 및 輸入洋酒 實質 總稅率 ……………	200

## 第 II 編

[圖 II - 1] 酒稅 課稅標準 및 價格決定構造 ……………	231
[圖 III - 1] 所得階層別 總消費稅 負擔 ……………	270
[圖 III - 2]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額 ……………	270
[圖 III - 3] 所得階層別 酒稅의 實效稅負擔率 ……………	270
[圖 III - 4] 酒稅의 實效稅負擔率(淸酒) ……………	271
[圖 III - 5] 酒稅의 實效稅負擔率(濁酒) ……………	271
[圖 III - 6] 酒稅의 實效稅負擔率(燒酎) ……………	272
[圖 III - 7] 酒稅의 實效稅負擔率(麥酒) ……………	272
[圖 III - 8]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위스키) ……………	273
[圖 III - 9] 酒稅의 實效稅負擔率(果實酒) ……………	274
[圖 III - 10] 酒稅의 實效稅負擔率(其他 酒類) ……………	274

## 附 圖

[附圖 II-1]	所得階層別 總所得 分布 .....	315
[附圖 II-2]	所得階層別 總所得 構成比 .....	315
[附圖 II-3]	所得階層別 總所得(勤勞者 家口) .....	315
[附圖 II-4]	所得階層別 總所得 構成比(勤勞者) .....	315
[附圖 II-5]	所得階層別 總所得(自營業者) .....	315
[附圖 II-6]	階層別 總所得 構成比(自營業者) .....	315
[附圖 II-7]	年齡別 總所得 分布 .....	316
[附圖 II-8]	年齡別 總所得 分布(勤勞者) .....	316
[附圖 II-9]	年齡別 總所得 分布(自營業者) .....	316
[附圖 II-10]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	318
[附圖 II-11]	所得階層別 消費性向 .....	318
[附圖 II-12]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勤勞者) .....	318
[附圖 II-13]	所得階層別 消費性向(勤勞者) .....	318
[附圖 II-14]	階層別 消費支出 分布(自營業者) .....	318
[附圖 II-15]	所得階層別 消費性向(自營業者) .....	318
[附圖 II-16]	年齡別 總消費支出 分布 .....	319
[附圖 II-17]	年齡別 消費性向 .....	319
[附圖 II-18]	年齡別 總消費支出 分布(勤勞者) .....	319
[附圖 II-19]	年齡別 消費性向(勤勞者) .....	319
[附圖 II-20]	年齡別 總消費支出 分布(自營業者) .....	319
[附圖 II-21]	年齡別 消費性向(自營業者) .....	319
[附圖 II-22]	所得・消費稅 負擔額 .....	322
[附圖 II-23]	總所得 對比 所得・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322
[附圖 II-24]	所得・消費稅 構成比 .....	322
[附圖 II-25]	年齡別 所得・消費稅 負擔額 .....	322
[附圖 II-26]	年齡別 總所得 對比 所得・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322

[附圖 II-2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清酒)	327
[附圖 II-2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327
[附圖 II-2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327
[附圖 II-30]	稅負擔 構成比(清酒)	327
[附圖 II-31]	年齡別 稅負擔額(清酒)	327
[附圖 II-3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327
[附圖 II-3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328
[附圖 II-34]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濁酒)	330
[附圖 II-3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330
[附圖 II-36]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331
[附圖 II-37]	稅負擔 構成比(濁酒)	331
[附圖 II-38]	年齡別 稅負擔額(濁酒)	331
[附圖 II-39]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331
[附圖 II-40]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331
[附圖 II-4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燒酎)	335
[附圖 II-4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335
[附圖 II-4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335
[附圖 II-44]	稅負擔 構成比(燒酎)	335
[附圖 II-45]	年齡別 稅負擔額(燒酎)	335
[附圖 II-4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335
[附圖 II-4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336
[附圖 II-4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麥酒)	339
[附圖 II-4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339
[附圖 II-5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340
[附圖 II-51]	稅負擔 構成比(麥酒)	340
[附圖 II-52]	年齡別 稅負擔額(麥酒)	340
[附圖 II-5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340
[附圖 II-5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340
[附圖 II-5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위스키)	344

[附圖 II-5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	344
[附圖 II-5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	344
[附圖 II-58]	稅負擔 構成比(위스키) .....	344
[附圖 II-59]	年齡別 稅負擔額(위스키) .....	344
[附圖 II-6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	344
[附圖 II-6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	345
[附圖 II-62]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其他 酒類) .....	347
[附圖 II-63]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其他 酒類) .....	347
[附圖 II-64]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其他 酒類) .....	347
[附圖 II-65]	稅負擔 構成比(其他 酒類) .....	347
[附圖 II-66]	年齡別 稅負擔額(其他 酒類) .....	347
[附圖 II-67]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其他 酒類) .....	347
[附圖 II-68]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其他 酒類) .....	348

## 머 리 말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되어 종량세 체계로 과세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에 종가세 체계로 개편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세 체계의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

현행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대체로 高價·高級酒에 高稅率, 低價·低級酒에 低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稅收確保의 機能 이외에 주세를 부과함으로써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그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주세법 제정 당시 또는 종가세 체계로 개편된 1960년대와는 경제구조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었다. 소득수준이 크게 증대되면서 소비패턴도 고도화되면서 주류소비구조에도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 일례로 종전에는 맥주가 고급주로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이 소비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단일 주종으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주종으로 바뀌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주류의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위스키 등을 비롯한 외래 고급주종에 대한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주종별 주소비자층도 크게 변화하면서 酒稅負擔의 階層別 分布도 크게 變化하였다.

또한 1980년대말부터는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던 飲酒運轉 문제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커다란 社會問題化되고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음주문제도 더욱 심화되는 등 음주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세제도는 이러한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化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즉, 주세율 체계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맥주와 같이 대중화된 주류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外部不經濟에 대해서는 모든 주류가 다 책임이 있지만 특히 그 가운데 고알콜주가 저알콜주에 비해 外部不經濟에 대한 蓋然性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나 소주 등과 같은 고알콜주에 비해 맥주와 같은 저알콜주의 주세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는 고알콜주 가운데에서도 소주 등 일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飲酒 關聯 外部不經濟 縮小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알콜주가 대부분인 蒸溜酒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효세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외부 불경제 축소를 위한 消費抑制的 租稅(sumptuary tax)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서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위스키, 브랜디 등에 대한 酒稅率 및 關稅率을 引下하라는 압력이 점증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994년과 1996년에 위스키와 브랜디 등에 대한 주세율이 인하되었고, 1995년에는 燒酎에 대해 教育稅가 새로이 과세되기 시작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EC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內國民待遇 및 非差別的 市場接近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하여 수입주류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 4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하였다.

수차례의 구두심의 끝에 1998년 9월 WTO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GATT 제3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및 교역세율을 일치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패널이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패널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하였으나 1999년 2월 17일 WTO는 최종적으로 패널판정 결과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중재심의에서는 2000년 1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할 것을 중재하였다. 만약 2000년 1월말까지 WTO의 권고대로 주세제도를 개편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EC 및 미국이 즉각적으로 貿易報復措置를 취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對內外的인 必要性 또는 當爲的 必要에 의해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는 對內外的인 與件의 變化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向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모두 두 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 I 編에서는 韓·EC 및 美國間 WTO 酒稅紛爭의 始終에 대해 살펴본다. 韓·EC 및 美國間 WTO 酒稅紛爭의 경우에는 日·EC 및 美國間 WTO 酒稅紛爭이라는 선례가 있으며 1999년 12월 이후 진행중에 있는 칠레 WTO 酒稅紛爭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第 II 編에서는 대내적인 酒稅率 體系의 必要性을 짚어보면서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向을 논의하면서 예상되는 效果를 분석해본다.

第 I 編

우리나라와 EC·美國間  
WTO 酒稅紛爭

## I. 序 論

지난 1997년 4월 2일 EC와 미국은 우리나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WTO에 공식 제소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WTO 체제 내에서 처음으로 피제소국의 입장에서 국내법을 변호하게 되었다. 주세분쟁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유제품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제소를 받은 바 있고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대로 제소국 입장에서 미국 등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서 각 회원국들은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었고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는 보복조치를 각오하지 않는 한 WTO가 권고하는 이행방안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회원국의 교역과 국내조치에 관하여 WTO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정장치는 물론 회원국의 과세권 등 전통적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통상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통상정책을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특히, 교역중대를 통하여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오히려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WTO 체제가 정착되고 동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주세분쟁은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의 입장에 처한 첫 번째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상전략 차원에서 볼 때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취한 대처방안과 판정 이후의 협상내용 그리고 이행조치가 앞으로 다른 분쟁에서 잠재적 경쟁국에 의하여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정을 전후하여 우리나라가 취한 분쟁 및 협상전략 등을 우리 스스로가 재검토하고 협정문으로서 WTO협약이 아닌 실제로 동 협약이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특히 법 해석과 그 적용이 강대국의 이익에 편중되게 활용되고 있다면 이를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WTO 신협상(New Round)에서 새로운 이슈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EC·미국간에 진행된 주세분쟁을 소개하고 그 경과 및 이행조치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세분쟁의 근거가 되는 GATT 제3조 2항은 내국세에 대한 규정으로서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잠재적 영향력이 막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세분쟁의 경과와 함께 일본 주세분쟁 등을 통하여 당해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자세히 논하고 WTO 판정 이후 피제소국이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 II 장에서는 제소 배경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칠레 주세분쟁의 선례로서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일본과 EC·미국간의 주세분쟁을 법리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연후 제 IV 장과 제 V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각국이 취한 입장과 패널과 상소심의 고려 요인 및 판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제 VI 장에서 판정의 평가와 바람직한 이행조치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WTO 분쟁의 경과를 패널-상소심-이행조건을 둘러싼 협상과 중재자 판정의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그 경과와 결과를 논의한다.

## II. GATT 第3條 2項과 酒稅紛爭 經過

### 1. 提訴背景과 經過

지난 1987년과 1996년, EC와 미국(이하 제소국)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소주와 위스키 등 HS코드 제2208에 속하는 양주에 대하여 일본 주세법이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내국민 대우)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GATT 및 WTO에 제소한 결과 두 차례나 승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제소국은 우리나라와 칠레<sup>1)</sup>에 대하여 각각 1997년 4월과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EC는 우리나라 주세법에 대해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의 한·EC 협의를 통하여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150%에서 120%, 100%로 인하하였고 증류주의 세율도 각각 40%에서 30%, 20%로 변경하였다<sup>2)</sup>.

그러나 EC는 1997년 일본소주 WTO 분쟁에 대한 승소를 계기로 1997년 1월 17일 협상을 요구하였고 비공식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같은 해 4월 2일 GATT 제22조와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이해(이하 DSU)' 제4조에 근거하여 WTO에 공

---

1)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WT/DS75/1, 1997)와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WT/DS110/1, 1998).

2) 한편 위스키, 럼, 진, 리큐르 등 증류주에 대한 관세율은 지난 1994년 20%에서 30%로 인상되었으나 1996년 20%로 인하되었으며 소주의 관세율은 지난 1994년 이후 30%이다.

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하였고<sup>3)</sup> 이후 개최된 일련의 양자협약에서도 이점이 좁혀지지 않자 미국과 EC는 9월 10일에는 패널설정을 요구하였다<sup>4)</sup>.

이에 따라 1997년 10월 16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DSU 제6조에 의거하여 패널<sup>5)</sup>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국내규정으로 인하여 WTO 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sup>6)</sup>. 동 패널은 WTO 대상협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소국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해결기구가 관련 협정에 대한 결정이나 권고를 작성하는 데 도

- 
- 3)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4:2: Each Member shall undertake to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regarding any representations made by another Member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operation of any covered agreement take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 4)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settle a dispute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a panel during the 60 day period if consulting parties jointly consider that consultations have failed to settle the dispute(DSU Article 4:7).
- 5) 패널의 기능은 DSU 제11조에 따라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관련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만약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패널은 서면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조사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하고(DSU 제12조 7항) 당사국이 상소를 하지 않거나 분쟁해결기구가 만장일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지 않으면 동 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보고서가 채택(adopt)된다(DSU 제16조 4항).
- 6)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shall be made in writing. It shall indicate whether consultations were held,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In case the applicant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with other than standard terms of reference, the written request shall include the proposed text of special terms of reference(DSU 제6조 2항).

움이 되는 사실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표준 위임사항 (standard terms of reference)을 부여하였다<sup>7)</sup>.

연후 우리나라 주세법이 GATT 제3조 2항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면보고서가 1997년 12월 5일에 제출되었고 지난 1998년 3월 5~6일과 4월 21~22일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된 1, 2차 WTO 패널 구두심의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EC 그리고 제3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여 당사국의 입장을 패널에 제시하였다. 패널은 1998년 9월 17일 우리나라 소주(회석식, 증류식)와 위스키, 브랜디, 코냑, 럼, 진, 보드카, 테킬라, 리큐르 그리고

〈表 II - 1〉 우리나라와 EC·美國 酒稅紛爭 日程 및 經過

일 정	분 쟁 경 과
1997년 4월 2일	EC·미국, WTO에 양자 협의 요청
9월 10일	EC·미국, 패널 설치 요구
10월 16일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구성
1998년 1월 22일	EC·미국 서면보고서 제출
2월 19일	우리나라 서면보고서 제출
3월 5일~6일	1차 패널 구두심의회
4월 21일~22일	2차 패널 구두심의회
9월 17일	패널 최종보고서 제시
10월 20일	우리나라 WTO 상소
11월 24일	상소심 구두심의회
1999년 1월 18일	WTO 상소심 판정
2월 17일	WTO 상소심 보고서 채택
3월 9일~10일	EC·미국과 비공식 양자협상(1차)
3월 29일~30일	EC·미국과 비공식 양자협상(2차)
3월 19일	우리나라 WTO에 이행의사 통보
4월 9일	EC·미국, WTO에 이행기간 중재요청
5월 12일	WTO 중재인 이행기간 구두심의회
6월 7일	중재인 판정

7) EC와 미국이 제기한 사항은 각각 WT/DS75/6과 WT/DS/84/4의 내용으로 위임사항이 명시되었다. 패널은 Mr. Ake Linden을 위원장으로 Frederic Jenny 교수와 Mr. Carlos da Rocha Paranhos로 구성되었다.

혼합주의 11개 주류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의결과 상기 제품들은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이며, 한국의 주세법이 최소 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수입품을 차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국내생산을 보호하였으므로, 패널은 분쟁해결기구(DSB)에게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1994년 GATT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기를 권고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20일 당사국이 제시한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DSU 11조를 패널이 따르지 않았으며 부당한 입증책임의 배분과 GATT 제3조 2항 법리적 해석의 오류 등을 이유로 1998년 10월 20일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패널의 법리적 해석과 심의기준이 적절하였다고 결정하고 우리나라가 GATT 규범에 일치되게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1999년 2월 17일 공식 채택하였다<sup>8)</sup>.

DSU 제17조 14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서 상소심 보고서가 채택되면 분쟁당사자는 이를 무조건 수락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3월 19일 WTO 판정결과를 수용한다는 이행의사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였고 DSU 제21조에 따라 EU 및 미국과 이행안에 대한 양자협상이 최근 개최된 바 있다. 한편 DSU 제21조 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만약 권고안이 채택된 이후 45일 이내에 당사국이 이행기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면 이를 이행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기간에 대한 합의가 상기 양자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WTO 중재가 지난 5월 12일 개최되었고, 1999년 6월 7일 중재인은 2000년 1월 31일까지 우리나라

8) 항소심은 Masushita를 위원장으로 Ehlermann와 Feliciano로 구성되었다(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Appellate Body (WT/DS75/AB/R, WT/DS84/AB/R), 1998.

라가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sup>9)</sup>.

## 2. GATT 第3條와 提訴事由

현재 우리나라는 소주에 대하여 35%(희석식)와 50%(증류식)의 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위스키와 브랜디는 100%, 일반증류주는 80% 그리고 리큐르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시에 주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의 교육세, 그 이하는 10%의 교육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일본 WTO 주세패널의 판정에 기초하여 EC와 미국(이하 제소국)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소주와 보드카에 대해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의 첫째 문장을 위반하였으며, 소주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HS코드 2208에 속하는 다른 수입증류주에 고율의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동 조항의 둘째 문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가. GATT 第3條 第1項과 第2項

제소국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1994년 GATT 제3조 2항은 다음과 같은데 그 첫째 문장은 국산품과 ‘동종 제품’인 수입품에 대하여 국산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 2항의 둘째 문장은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품과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산품에 대하여 수입품과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sup>10)</sup>.

9) 만약 WTO 중재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DSU 제22조에 따라 상호협약하에 자발적 보상을 하거나 또는 분쟁해결 기구의 승인하에 관련 회원국이 보복조치로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10) 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 규정인 GATT 제3조의 1항과 2항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2항 마지막 \*는 제2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제3조 주해 부속서 2항(Ad Article III, paragraph 2)을 의미한다.

제3조 2항: “일방 계약국의 물품이 상대 계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되는 경우, 상대 계약국은 동종의 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과징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내국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계약국도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여타 방법으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1항은 내국세와 과징금을 포함한 국내법과 규제 등이 수입품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제3조 1항: “계약국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과 물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규,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물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국내의 수량규제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GATT 제3조 2항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동종

- 
1.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internal taxes and other internal charges, and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 internal sales,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the use of products, and internal quantitative restriction requiring the mixture, processing or use of products in specified amounts or proportions, sh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to domestic product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2.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c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상품'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특히 둘째 문장은 첫째 문장과 달리 제3조의 1항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과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둘째 문장에서 언급된 수입품에 적용된 내국세나 과징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로 표시하여 GATT 제3조 부속서의 주해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주분쟁과 관련해서 특히 제3조 2항의 주해와 그 해석이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sup>11)</sup>.

제3조 부속서의 주해: “제2항의 첫 번째 문장에 합치되는 조세가 직접적으로 경쟁 내지는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들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조세체계가 두 번째 문장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나. 提訴事由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제소국은 DSU 제6조 1항에 근거, 패널의 설치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게 요구하였고 당해 요청문에서 EC는 우리나라가 HS코드 2208에 속하는 특정 수입증류주에 비하여 소주를 주세 및 교육세법으로 우대함으로써 1994년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EC의 이익이 무효 내지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가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진, 혼합주(ad-mixture)에 고율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부담의 차이는 교육세의 적용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소국은 보드카에 대하여 첫째, 소주세율을 초과하는

11) A tax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2 would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only in cases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 between, on the one hand, taxed product and, on the other hand, a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 which was not similarly taxed(Interpretative Note Ad Article III paragraph 2).

(in excess of)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에 위배되고 둘째, 국산 소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그리고 (증류주나 리큐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주종’에 속하는 수입주를 소주보다 중과함으로써 (higher internal taxes)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은 우리나라 주세법이 주종의 특성에 대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분류함으로써 소주와 다른 수입주류를 상당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회석식과 증류식 소주가 수입주류와 동종 내지는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이 아니므로 우리 주세법 등이 GATT 제3조 2항과 합치되며 이는 제조국이 ‘한국 시장’에서 이들 제품이 경쟁상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제3조 2항이 WTO 회원국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정도로 폭넓게 해석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 III. GATT 第3條 2項의 前例：日本 酒稅紛爭

#### 1. 日本 酒稅率 體系의 紛爭經過

지난 1987년과 1996년 일본은 GATT/WTO에서 자국 주세법에 대한 GATT 제3조 2항 위반 여부를 심의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소주와 일본 소주가 유사하고 법체계도 서로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일본 주세패널이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전례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1996년 일본 주세분쟁의 경과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GATT 제3조 2항에 관한 법리적 해석은 우리나라 분쟁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으며 이 밖에도 일본시장의 소비추세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관한 ‘잠재적’ 경쟁의 증거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래의 <表 III-1>은 WTO 패널에서 GATT 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된 일부 대표적인 주류에 관한 1995년 당시 일본 주세율과 관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주세법은 주류를 10개의 주종으로 분류하고 각 주종에 대하여 다시 세분류하여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1리터당 從量稅를 과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세율 체계에 대하여 지난 1995년 6월 23일 EC는 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 2항에 명시된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WTO협의를 신청하였고 7월 7일에는 미국과 캐나다도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양자협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1995년 11월 6일 제소국 요청에 의하여 분쟁종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최종보고서가 상소심을 거쳐 1996년 11월 1일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된 바 있다.

1996년 일본 주세패널 상소심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다. 소주

와 보드카가 동종상품이며 일본이 수입품에 대한 주세를 국산품을 초과하여 부과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 첫 번째 문장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HS코드 2208에 속하는 보드카를 제외한 증류주와 리큐르가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주종으로 일본이 주세법을 적용할 때 이들 제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고 국내생산에 보호효과를 유발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을 위반하였다는 패널의 결정을 확인한다.

〈表 III-1〉 日本의 酒稅率과 關稅率 體系(1995年 現在)

HS 1996 품목분류	품 목	양허관세율 (96.1.4~97.3.31)	실행관세율 <sup>1)</sup>	주 세
2208.20	브랜드(50°, 또는 이상) 브랜드(기타)	308.00¥/ℓ 364.00¥/ℓ	193.20¥/ℓ 227.90¥/ℓ	(40°)¥982.30/ℓ
2208.30	위스키류: 바본 라이 기타(50°, 또는 이상) 기타(기타)	19.6% <sup>3)</sup> 22.4% 330.40¥/ℓ 274.40¥/ℓ	13.7% 15.7% 207.20¥/ℓ 172.50¥/ℓ	(40°)¥982.30/ℓ
2208.40	럼 및 태피아	36%	무세/20.2% <sup>2)</sup>	(38°)¥377.23/ℓ
2208.50	진 및 제네바	29.2% <sup>5)</sup> , 128.33¥/ℓ <sup>6)</sup>	19.6%, 86.20¥/ℓ <sup>6)</sup>	(38°)¥377.23/ℓ
2208.60	보드카	26.7% <sup>4)</sup>	17.9%	(38°)¥377.23/ℓ
2208.70	리큐르 및 코디얼	210¥/ℓ	141.10¥/ℓ	(40°)¥328.76/ℓ
ex 2208.90	소 주	26.7% <sup>4)</sup>	17.9%	감류(25°)¥155.70/ℓ 율류(25°)¥102.10/ℓ

註: 1) 1995.4.1~1996.3.31까지 적용되는 위스키, 럼 및 태피아, 진 및 제네바, 보드카, 리큐르, 소주에 대한 실행관세율

2) 연속식 증류를 통하여 알콜 음료를 만들기 위한 알콜증류에 사용되는 경우: 할당량 내(무세); 기타(17.9%)

3) 연간 감소율: 약 2.4%

4) 연간 감소율: 약 2.7%

5) 연간 감소율: 약 2.9%

6) 해당 從價稅나 從量稅 중 부담이 적은 관세를 부과.

資料: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the Panel Report(WT/DS8/R) Annex I, 1996.

## 2. 日本 酒稅패널 決定의 法的 拘束力

전술한 대로 일본 주세패널의 결정은 우리나라 주세패널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 소주와 우리나라 소주가 동명(shochu와 soju)에 가깝고 그 특성에 있어서 (이 두 소주를 음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주세 패널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의하여 채택(adopt)된 사실이 후속 패널에게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전례(precedent)로 작용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주세분쟁의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일본 주세패널에서 캐나다는 1987년 일본 주세패널 보고서<sup>1)</sup>가 GATT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채택되었으므로 1994년 GATT 제1조 (b)(iv)항<sup>2)</sup>에 근거하여 WTO협정의 일부 분이며 따라서 1987년 일본 주세패널 보고서가 주세 관련 후속 패널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미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이나 권고가 GATT 협정에 명시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감할 수 없다는 DSU 제3조 2항을 들어 패널이 규정을 제정할 권한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캐나다의 의견을 수용하여 'GATT 회원국과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보고서는 채택된 사실로서 특정 사안에 있어서 후속적인 관행(subsequent practices)이 되며 따라서 후속 패널이 반드시 그 논리나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채택된 보고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

1) Japan—Custom duties, Taxes and Labeling Practices on Imported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the Panel Report 5.13, 1987.

2) 1994년 GATT협약 제1조는 "1994년 GATT 협약이 (a) 1947년 GATT협약의 조항... (b)(iv) 1947년 GATT 회원국의 다른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력하였다<sup>3)</sup>.

그러나 상소심에 따르면 이러한 패널 판정은 잘못된 법적 해석이다. 즉, 회원국이 패널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그러한 결정이 구속력 있는 1947년 GATT규정의 해석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소심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소심은 WTO 각료회의와 이사회가 WTO 협정과 다자간 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며 이는 회원국의 4분의 3이 동의할 때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WTO 협정 제9조 2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소심은 1947년 GATT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가 해당 사례에 있어서 구속력을 행사하지만 후속 패널들이 선행 패널보고서의 논리와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았던 관행을 지적한다.

채택된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상소심의 판정이지만 상소심이 기존 판례의 유용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채택된 보고서는 GATT의 중요한 부분이며 후속 패널에 의하여 종종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보고서는 회원국이 지켜야 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채택되지 않은 보고서에서 사용된 논리도 적절한 경우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의 결정이 1996년 일본 주세패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법적 논리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실제로 최종판정에서 패널은 1987년 일본 패널의 결정을 판정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sup>4)</sup>. 같은 맥락

3) 이와 달리 채택되지 않은 보고서는 GATT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이서(endorse)되지 않았으므로 WTO 체제 내에서 법적 지위가 없으며 따라서 후속판행이 아니더라도 것이 패널의 견해이다(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the Panel Report(WT/DS8/R) para. 6.10, 1996, 이하 Japan Panel Report).

4) Japan Panel Report para. 6.32. 한편 1996년 일본 주세패널은 패널보고서 2.7절에서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의 법적 논리를 5.5절부터 5.13절까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에서 일본 주세분쟁의 판정은 우리나라 주세분쟁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전례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은 분쟁에 있어서 일본 주세패널의 논리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주세패널에서 사용된 GATT 제3조 2항의 해석과 적용의 틀을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할 때 일본 사례와 다른 결론이 유도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sup>5)</sup>, EC 등 제소국은 일본시장에서의 사실관계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패널도 이를 제한적으로나마 수용하였다.

### 3. 日本 酒稅패널의 GATT 第3條 第2項 解釋：첫 번째 文章

일본 주세패널에 의하면 GATT 제3조 1항은 내국세, 국내 과징금, 법, 규제 및 요건 등 국산품과 수입품의 취급에 대한 각종 규제의 일반적 원칙을 논하고 있는 반면 2항은 내국세와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 2항은 ‘동종물품’에 대한 의무와 ‘직접적인 경쟁 또는 대체상품’에 관한 의무로 나뉘어져 있는바, 제3조 2항에 관한 해석의 출발점은 제3조 1항이 아닌 2항이며 제3조 2항 문장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동조 1항은 관련 사항과 필요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패널의 해석이다.

#### 가. 意圖와 效果 檢證(aim and effect test)

GATT 제3조 2항의 위반 여부는 제3조 1항 특히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구에 비추어 판정이 내려지며 이는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요한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일본은 “제3조의 목적이 국내생산을 보호할 목적과 무관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회원국이 제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5) 우리측 1차 서면보고서 para. 32.

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1992년 미국 주류분쟁 보고서<sup>6)</sup>와 GATT 제3조 2항과 4항은 1항에 제시된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패널은 ‘위하여(so as to)’라는 용어가 의도(intent)와 효과(effect)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조치의 의도와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1994년 미국 자동차세 분쟁의 패널보고서를 인용한다<sup>7)</sup>.

일본에 의하면 논쟁대상인 조치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동 조치는 제3조 2항과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은 有鉛揮發油와 無鉛揮發油의 구분과 같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정책목표를 위한 차별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 패널의 논리적 약점을 1992년 미국 주류분쟁 패널과 같은 후속 패널이 시정하였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도 동의한다. 특히 미국에 의하면 원산지에 대하여 중립적인 회원국의 내국세 규정이 차별과세하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하여 동종 제품인지를 판단하려면 제품의 외양, 사용처, 소비자 취향, 관세분류 이외에 이러한 세법상의 차별대우가 보호를 위한 의도와 목적(aim and effect)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패널이 외양과 용도 등에 대한 패널의 주관적인 인상에만 의존한다면 제품간의 특성에 따른 분쟁대상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투명성과 불명확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The purpose of Article III is thus not to prevent contracting parties from using their fiscal and regulatory powers for purposes other than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Specifically, the purpose of Article III is not to prevent contracting parties from differentiating between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for policy purposes unrelated to the protection of domestic production(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 BISD 39S/208 5.25, 1992).

7) The Panel noted that the term ‘so as to’ suggested both aim and effect. Thus, the phrase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tection’ called for an analysis of element including the aim of the measure and the resulting effects(United States—Taxes on Automobiles, DS31/R 5.7, 5.10, 1994(not adopted)).

미국은 정당한 정책목표를 열거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WTO 협정(TBT)’<sup>8)</sup>을 예로 들어 WTO협정은 회원국이 국산품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당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제품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1992년 미국 주류분쟁 보고서를 예로 든다<sup>9)</sup>. 물론 미국은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적용하면 일본 주세법상의 제품분류가 국산품의 보호를 의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EC는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3조 2항의 일반적 용어의 의미나 특정 목적 그리고 제3조의 전체적인 목표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종제품이라고 판정되면 이 경우 경쟁·대체상품과는 달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국산품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제3조 1항이 논하는 보호효과가 있으므로 첫째 문장이 제3조 1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제3조 2항 첫째 문장에 위배되는 조치가 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사항<sup>10)</sup>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때만이 의도에 대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EC의 주장이다.

EC에 의하면 보호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제시한 검증을 수용한다면 피제소국이 단순히 보호할 목적이 없다는 핑계로 명백히 정의된 심사기준 없이 판정이 내려져야 하며 그 결과 GATT 제3조 2항이 무력해질 수 있다. 더욱이

8)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greement).

9) 이 밖에도 EC협약 제9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소규모 맥주업자나 전통 와인업체에 대한 조세상 특혜 또는 사치세 등의 정당하고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조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미국이 지적하자 EC는 EC협약 제95조가 GATT 제20조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10) GATT 제20조는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GATT 규정이 회원국으로 하여금 공중도덕과 건강, 미술이나 고고학적 가치 또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GATT 20조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WTO협정에서 ‘합법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의도에 대한 검증이 수용된다면 회원국은 굳이 제약조건이 많은 GATT 20조에 호소하지 않고 단지 국내조치가 국산품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국내 조치를 GATT제3조 2항에서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GATT 20조가 무의미하게 된다<sup>11)</sup>.

일본 주세패널은 국내조치가 보호를 유발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제3조 2항에 명기된 동종제품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데 반대한다. 즉, 패널은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 주세법의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aim and effect test)은 제3조 1항에서 제시된 ‘보호하기 위하여(so as to afford protection)’라는 문맥에 기반하고 있으나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미국과 일본의 주장은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1992년 미국 주류분쟁과 1994년 미국 자동차세에 대하여 패널은 후자는 채택된 보고서가 아니며 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패널이 보호효과와 기타 다른 고려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였는지 모르나 일본 주세패널은 제3조 2항 첫째 문장의 문맥상 보호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1992년 미국 주류분쟁 패널의 기준

---

11) EC에 따르면 1992년 미국 주류분쟁의 경우 GATT 제3조 4항이 2항과는 달리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양이나 용도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고 보호효과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 제3조 1항의 보호조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종제품의 일반적 정의를 달리하였고 이로서 제3조 1항을 은연중 적용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4항은 2항 첫째 문장과 달리 ‘동일한 취급’이 아닌 ‘더 불리하지 않은 취급(treatment no less favorable)’이라는 다소 애매한 의무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정은 제3조 1항의 보호조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취급이 무엇인지 판정될 수밖에 없다. EC는 따라서 제3조 4항에서의 동종제품은 2항보다 협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Japan Panel Report, para. 4.38, 1996).

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패널에 의하면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도 분쟁대상인 국내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기는 쉽지만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소국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에 중요한(즉,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패널은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3조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20조에 명시된 예외조항들이 무력화될(redundant)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20조는 국가간의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수단이나 위장된 국제교역의 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아래 국민보건 등 GATT상의 의무에서 일련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만약 의도 등에 대한 검증이 채택된다면 이는 제20조에서 확립된 입증책임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WTO 회원국은 어떤 조치가 가령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GATT 20조에서 요구되는 입증책임이 전가되어 피제소자가 아닌 제소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패널의 견해이다.

#### 나. 適用基準과 第3條 第1項

패널은 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의 의무규정을 위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제3조 2항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위반 여부는 EC가 주장한 대로 1) 논의중인 제품들이 동종인지 2) 분쟁대상인 조치가 내국세인지 3) 수입품에 적용된 세금이 국내 동종제품에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지의 세 가지 요건들을 검토하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에게 있다고 판정하였다<sup>12)</sup>.

한편 제3조 2항 첫 번째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제3조 1항을 참

12) Japan Panel Report, para. 6.16~20, 1996.

고할 필요성은 제한되어 있다고 패널이 주장한 데 대하여 상소심은 동종제품에 대해서는 보호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제3조 1항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이 2항의 첫 번째 문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심에 따르면 오히려 문맥과 WTO 협정의 전체적 목적과 목표를 고려할 때 제3조 1항은 제3조의 여타 조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이들 조항의 일부를 구성하며 2항의 첫 번째 문장은 제3조 1항의 적용사례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제3조는 “국내조치가 국산품에 대한 보호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3조는 수입품과 국산품에 동등한 경쟁조건을 부여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더욱이 제3조는 수입품과 국산제품간의 ‘동등한 경쟁관계의 기회를 보호하므로(protect expectation of equal competitive relationship)’ 교역량에 기준한 차별적 세제의 무역효과(trade effect)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제3조의 해석은 1항을 무의미하게 함으로써 협약해석의 효율성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상소심은 결정하였다<sup>13)</sup>.

#### 다. 考慮要因과 判定

전술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일본 소주와 수입양주가 동종제품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패널이나 1970년 ‘국경세 작업반 보고서(Border Tax Adjustments)’가 동종제품을 사안별로(case-by-case basis) 해석해 왔음을 패널은 상기하고 GATT 제3조 4항이나 반덤핑협정 등 다수의 GATT 조항에 나타나는 ‘동종물품’

13)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the Appellate Body Report (WT/DS8/AB/R), p. 16, 1996(이하 Japan Appellate Body Report.).

을 획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논하였다. 특히 상소심은 상품이 유사한지(similar)를 판정하려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유사상품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요소에 대한 각각의 공평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국경세 조정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를 인용하고 1970년 이후 채택된 모든 패널보고서들이 국경세에 대한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4)</sup>.

구체적으로 패널은 동종제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제품일 필요는 없지만 GATT 제3조 2항에서의 동종제품은 협의(narrowly)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는 2항의 경우, 두 번째 문장이 동종제품이 아닌 좀 더 넓은 범주에 속하는 대체·경쟁상품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여 협정의 전체 구절이나 조항을 반복 내지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동종제품을 대체·경쟁상품의 일부 부분(subset)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국산제품에 대한 세부담을 초과하여 부과된 동종 수입품의 과세가 2항의 첫 번째 문장이 명시한 의무를 (자동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조치임을 상기하면 이러한 협의의 해석이 정당화된다<sup>15)</sup>.

얼마나 협의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소심의 견해는 각 조치별로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패널이 논의한 대로 동종과

14)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should be examined on a case-by-case basis. This would allow a fair assessment in each case of the different elements that constitute a "similar" product. Some criteria were suggested for determining,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a product is "similar": the product's end-uses in a given market; consumer's tastes and habits, which change from country to country; the product's properties, nature and quality(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s*, BISD 18S/97, para. 18.)

15) 동종제품에게는 최소허용수준에 따른 변호가 있을 수 없다(United States-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5.1.9, The Panel Report).

경쟁제품간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닌 신중한 결정(discretionary decision)이어야 한다. 동종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국제세 조정에 관한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명확하고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WTO협정이 적용되는 각 사례별로 상황과 각 조항의 문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패널에 의하면 대체상품의 경우 여러 요인 중 특히(inter alia) 대체탄력성과 같은 공통된 사용용도(commonality of end-uses)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하지만 동종제품의 경우 그 용어가 제시하는 바 공통된 사용용도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용도와는 별개로 동일한 물리적 특성(the same physical characteristics)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GATT 제3조가 제2조의 관세양허를 침해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무차별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기존의 보고서<sup>16)</sup>를 상기하고 HS코드의 분류와 양허세율을 판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동종제품의 판정기준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상기한 기준과 1987년 일본 주세 패널보고서<sup>17)</sup>에 입각하여 소주와 보드카를 제외한 여타의 관련 주류들은 물리적 특성에서 소주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제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보드카의 경우, 여과를 위한 중간매체의 차이를 제외하면 물리적 특성과 사용용도나 HS코드상의 분류(2208.90) 그리고 양허세율이 소주와 동일하므로 동종제품으로 결정되었다<sup>18)</sup>.

16)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BISD75/60, 15, 1958.

17) 1987년 패널은 소주와 보드카가 공히 백색의 투명한 증류주이고 유사한 원료를 사용하며 최종용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두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판정하였다.

18) 그러나 상소심은 관세양허가 여러 품목에 동일한 세율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허세율을 동종제품 판정기준으로 하는 패널의 결정은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다(Japan Appellate Body Report 각주 50).

한편 일본은 자국의 주세체계가 모든 주종간의 세금부담을 대략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품간의 중립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물량이나 알콜 대비 세율보다 가격대비 세율(tax/price ratios)이 소비자의 선택에 관한 영향을 측정하는데 보다 나은 기준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세 부담을 비교하는 데 가격에 대비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논리는 비록 그 내용은 다르지만 1987년 주세 패널에서 일본이 제시한 수직적 형평성의 논리와 유사하다.

특히 주종별 소비자의 담세능력(tax bearing ability)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87년 일본 주세 패널은 '장래의 제품별 소비자 담세능력에 근거한 과세는 미래의 경쟁(future competition)과 이에 따른 불확실한 소비자 반응에 대한 주관적 가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고 또한 그러한 조세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가 아닌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다<sup>19)</sup>'는 결론을 맺은 바 있다고 패널은 논하였다<sup>20)</sup>.

19) The concept of "taxation according to tax-bearing ability of prospective consumers" of a product did not offer an objective criterion because it relied on necessarily subjective assumptions about future competition and inevitably uncertain consumer responses. The Panel was of the view that a national policy of 'taxation according to tax-bearing ability' did not necessitate discriminatory or protective taxation of imported products and could be pursued by each contracting party in many ways in compliance with Article III:2(Japan Panel Report para. 2.7, 1996, Japan-Custom duties, Taxes and Labeling Practices on Imported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the Panel Report 5.13, 1987, 참조).

20)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최대 세원은 소비세로서 고가주에 대한 높은 주세율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일정 부분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제시되었으나 소득재분배 정책에 입각하여 주세율을 결정할 수 없다는 1987년 일본 패널의 판정은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이러한 원칙을 제시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다.

그 밖에도 패널은 일본이 제시한 수평적 형평성에 관하여 1996년 패널은 제3조 2항 첫 번째 문장에 관한 한 의도와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가격에 비교할 때 대략 동일한 세금부담도 첫 번째 문장이 수입품을 초과한 세금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상소심은 이에 덧붙여 가장 미소한 수준의 초과분도 과다하다는 판정을 내렸다<sup>21)</sup>.

#### 4. 日本 酒稅패널의 GATT 第3條 第2項 解釋: 둘째 文章

##### 가. 保護效果와 類似하지 않은 課稅와의 關係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는 달리 제3조 1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논쟁대상인 국내조치가 두 번째 문장에 합치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separately) 판정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 긍정적일 때 두 번째 문장의 위반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1996년 일본 주세 상소심의 견해이다.

〈표 1〉 소비세(소득세) 부담의 국제비교

(단위: %)

	1980	1985	1990	1994
한 국	52.9(22.4)	49.2(22.4)	43.4(25.2)	42.0(31.4)
프 랑 스	30.4(18.1)	29.7(17.3)	28.4(17.2)	27.1(17.7)
독 일	27.1(35.1)	25.7(34.8)	26.7(32.4)	28.7(29.4)
일 본	16.3(46.1)	14.0(45.8)	13.2(48.5)	15.5(37.7)
영 국	29.2(38.2)	30.7(39.6)	30.9(39.3)	35.3(35.7)
미 국	16.6(47.0)	17.8(42.8)	16.5(43.2)	17.9(44.6)

註: 제시된 수치는 전체세수에 대한 비율임.

資料: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95.

21) Even the smallest amount of "excess" is too much(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3, 1996.).

- 1) 수입품과 국산품이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으로 경쟁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 2)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 3) 유사하지 않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는지’의 여부<sup>22)</sup>

비록 결론은 동일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상소심의 법리적 해석은 패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패널에 따르면 고려요인은 첫째, 수입품과 국산품이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상품인지 둘째, 그렇다면 제3조 1항에 명기된 원칙과 다르게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로 패널판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소국은 해당 제품들이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상품이며 수입품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so as to afford protection) 형태로 과세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만약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며 그러한 과세로 인하여 국산제품을 선호하게 되면 보호효과<sup>23)</sup>가 있다는 견해를 갖는다. 따라서 패널에 의하면 과세체계가 보호효과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유사

22) (1) the imported products and the domestic products ar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which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2) th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re “not similarly taxed”; and

(3) the dissimilar taxation of th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imported domestic products is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4, 1996.)

23) 제3조는 무역량이 아닌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효과적이고도 균등한 경쟁 기회의 부여에 목적이 있으므로 여기서 보호효과라는 용어는 수입량 등의 무역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United States—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Panel Report 5.1.9,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Panel Report 12).

하지 않은 과세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이 아니라는 사실로써 충분하다<sup>24)</sup>. 특히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패널은 제3조 2항 둘째 문장의 기준은 ‘내국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부속서 주해에서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제품들의 유사하지 않은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심은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입증 요건을 별개의 그리고 고유의 요건인 보호조치의 입증 요건과 동일시한 패널의 입장은 잘못된 판정이라고 패널의 결정을 번복한다<sup>25)</sup>. 즉, 비록 경쟁·대체관계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의 요건이 만족되더라도 이로서 2항 두 번째 문장의 위반여부에 대한 입증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과세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보호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 예로 차별과세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차이로 볼 때 유사하지 않은 과세 자체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아무튼 상소심은 각 사례에 있어서 분쟁대상 조치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적용된다’는 사실이 다른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각 요건별로 모든 사실과 상황에 관한 주의 깊고 객관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정한다.

상소심에 따르면 보호효과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그 의도(intent)가 아니라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조치가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sup>26)</sup>. 특히 상소심은

24) 패널은 그러나 당해 사안에 있어서 세금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허용수준(de minimis)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Japan Panel Report 각주 118, 1996).

25) 상소심은 두 번째 문장과 부속서 주해가 모두 협정문이며 동시에 협의 및 동의되었다는 뜻에서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26) It is irrelevant that protectionism was not an intended objective if the particular tax measure in question is nevertheless, to echo Article III:1, “applied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8, 1996.)

사례별로 특정 상황에 비추어 해당 과세체계가 보호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약간의 차별과세도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호효과가 없는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세율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의 결론을 인용하였다<sup>27)</sup>. 요컨대 상소심에 따르면 1987년의 예와 마찬가지로 유사하지 않은 과세체계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분쟁 대상 조치의 구조와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 나. 類似하지 않은 課稅

상소심에 의하면 ‘초과하여(in excess of)’라는 용어와 ‘유사하지 않은 과세(not similarly taxed)’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제 3조 2항의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의 차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의 기준이 별개로 필요하다<sup>28)</sup>.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품보다 수입품에 대한 세부담이 크지만 특정 사례에 있어서 그러한 과세상의 차별이 제3조 2항 둘째 문장에 따라 두 제품이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다고 결론을 맺기 어려울

27) ...wherea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III: 2 the tax on the imported product and the tax on the like domestic product had to be equal in effect, Article III: 1 and 2, second sentence, prohibited only the application of internal tax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The Panel was of the view that also small tax differences could influence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directly competing distilled liquors, but the existence of protective taxation could be established only in the light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case and there could be a de minimis level below which a tax difference ceased to have the protective effect prohibited by Article III:2, second sentence (Japan—Customs Duties, Taxes and Labeling Practices on Imported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BISD 34S/83, para. 5. 11.

28)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7, 1996.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소심은 특정 사안에서 유사하지 않은 과세로 간주되려면 과세상의 차이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보다 커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에 동의하며 개별 조치에 있어서 그 차이가 최소허용수준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C는 주류의 용량이나 從量稅로 과세할 경우 주종간 세부담의 비교 기준은 알콜 용량에 따른 세금부담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 주세의 경우 주류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리터의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sup>29)</sup>. 이에 대하여 일본은 비교의 목적이 주세가 경쟁조건의 왜곡을 야기하는지에 있으므로 소비자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격 대비 세율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나 EC는 가격은 가변적이므로 從價稅나 용량 대비 세금에 비하여 가격 대비 세율은 불투명하다고 반박한다.

패널에 따르면 분쟁대상인 제품이 유사하게 과세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inter alia*) 제품 리터당, 알콜 도당 세부담, 從價稅 여부, 가격 대비 세율(*tax/price ratio*)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상기 기준에 따라 일본에서의 수입양주와 소주의 세부담을 고려한 결과, 특히 일본 주세가 알콜도수에 따라 과세된다는 측면에서 1도당 세부담 차이가 큰 사실을 지적하고 따라서 일본의 경우 세부담이 주종간 유사하지 않으며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고 판정하였다(〈表 III-2〉 참조)<sup>30)</sup>.

#### 다. 價格對比 稅金比重 : 類似하지 않은 課稅와 保護效果

가격 대비 세율은 상대적인 세부담, 주세법 체계 그리고 무역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 자국의 주세법을 변호한 부문이다. 우선 일본에 의하면 1989년 이후 주세정책은 수직적 형

29) Japan Panel Report, para. 4.158, 1996.

30) 한 예로 수입양주 가운데 세부담이 가장 낮은 리큐르가 소주 갑류(증류식)에 비하여 상대적 세부담이 1 kl당 2.1배, 1도당 1.3배 정도 높다.

〈表 III-2〉 燒酎와 輸入酒類의 稅負擔 比較

(單位：엔)

주 종	알콜도수	1kl당	알콜 1도·kl당
소주갑류	25°	155,700	6,228
소주올류	25°	102,100	4,084
위스키	40°	982,300	24,558
브랜디	40°	982,300	24,558
스피릿류	38°	377,230	9,927
리큐르	40°	328,760	8,219

註：소주 갑류는 우리나라 회석식 소주, 올류는 증류식 소주에 해당함.

資料：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R, para. 6.33, 1996.

평성보다는 소비자 선택에 중립적이며 주종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주종간 가격 대비 세율이 대략 일정하도록(roughly constant) 유지하는 데 있다. 즉, 판매기준 상위 20개 품목에 달하는 주류 브랜드의 가중평균자료에 따르면 비록 稅前價格은 주종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에서는 모든 주종의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주류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주세체제와 附加價値稅의 비교를 통하여 조세상의 차별에 있어서 일본 주세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만약 1 리터당 또는 알콜 1도당 세부담을 기준으로 비교가 이루어지면 〈表 III-3〉에서 보듯이 부가세가 주세보다 더 왜곡

〈表 III-3〉 '稅金差別指數'의 比較

	주종 리터당		알콜 리터당		가격 대비 세율	
	주 세	부가세	주 세	부가세	주 세	부가세
소주갑류	1.0	1.0	1.0	1.0	1.0	1.0
수입보드카	2.7	3.4	1.6	2.0	0.8	1.0
수입위스키	7.0	8.0	4.0	4.7	0.9	1.0

資料：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the Panel Report(WT/DS8/R) para. 4.137, 1996.

세금의 영향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일본은 주장하였다<sup>31)</sup>

이 밖에도 일본 주세법상의 제품분류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제조국이 증류주와 맥주 그리고 포도주에 대하여 달리 과세하며 EC 8개국과 미국이 일반 포도주(still wine)와 스파클링 포도주(sparkling wine)에 대하여 다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또한 일본은 EC Bossard 보고서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맥주,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하여 차별과세하는 것을 제조국이 당연시하는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소주와 증류주간의 차별과세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EC 회원국 중 7개국이 증류주에 차별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들 모두가 GATT 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GATT 제3조는 내국세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32)</sup>.

이에 대해 캐나다는 위스키의 기준세율이 소주갑류와 올류에 비하여 각각 6.3배, 9.6배나 높으며 가장 낮은 위스키 세율도 소주 최고 세율보다 2.5배나 높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일본의 주장처럼 가격 대비 세율이 대략 주류가격의 20%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 주종간 비율은 큰 차이가 있는데 한 예로 소주올류의 세율은 13%로서 수입위스키(19%)의 2/3에 불과한 등 일본 주세법은 소주와 위스키간의 상대가격을 왜곡함으로써 두 제품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C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從價稅(ad valorem tax) 체계하에서는 세금이 가격에 1:1로 비례하므로 동일 세율의 從價稅는 중립적이나

31) Japan Panel Report, para. 4.138, 1996.

32) ...Article III is not an instrument for harmonization of internal taxes (Japan Panel report, para 4.130, 1996). 제조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패널의 위임사항(TOR)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패널은 자신들의 위임사항이 일본 주세법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주세법은 고려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Japan Panel Report, para. 6.26, 1996).

일본 주세는 이와 같은 從價稅와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주세법에서는 세금이 실제가격과 관련이 없으며 대신 특정 부류의 제품이 다른 주종보다 더 비싸다는 ‘가정’하에 가격과 상관없이 從量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주가격에 비하여 세전 가격이 낮은 몇몇 위스키 브랜드의 상대적 세부담은 소주에 비하여 상당하다.

패널은 일본이 제시한 세부담의 계산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일본 자료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우선 경쟁제품간의 세부담뿐만 아니라 개별 주종 내에서도 세금/가격 비율이 큰 차이가 나며 상대적으로 값싼 국산증류주의 가격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사용된 가격은 제안된 도매가격이지만 실제로는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가격대비 세율이 대략 일정하므로 무역과 관련하여 일본 주세법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패널은 진술한 바와 같이 주종간 그리고 주종내 가격 대비 세율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 등의 이유로 세율이 ‘대략’ 일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주장은 사후적인 정당화로서 일본 주세법에 그러한 의도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 밖에도 從量稅가 값싼 수입제품을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고 일본이 소위 수평적 형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가격 대비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세부담이 유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 주세법은 보호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패널의 판정이다<sup>33)</sup>.

#### 라. 競爭·代替關係의 基準

동종제품과 마찬가지로 분쟁대상 제품들이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33) 반면, 상소심은 이미 지적한대로 패널이 유사하지 않은 과세와 보호효과를 동일시 한 것은 법적 오류라고 판정하였다.

대체관계에 있는지 또는 그러한 관계의 범주가 얼마나 포괄적인지는 해당 사례에 있어서 모든 적절한 증거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상소심에 의하면 특히 ‘1994년 GATT 협약은 상업적 협정이며 WTO가 궁극적으로 시장(market)과 관련이 있다’는 뜻에서 경쟁·대체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본 주세패널이 물리적 특성과 공통된 용도, 관세분류뿐만 아니라 시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sup>34)</sup>. 이러한 의미에서 두 제품이 어떤 시장 A에서 경쟁·대체관계에 있다는 사실로서 똑같은 제품이 다른 시장 B에서 반드시 경쟁·대체관계에 있다고 유추할 수 없다<sup>35)</sup>.

논쟁중인 제품들이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쟁점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본 주세패널이 적용한 법리적 해석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패널에 따르면 GATT 제3조 2항의 주해가 “경쟁관계에 연루된(when competition was involved between)” 제품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특성의 유사성과 관세분류 등과는 별개로 그 중에서도 특히(*inter alia*)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반응이 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적절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패널은, 1987년 일본 주세분쟁의 경우, 대상제품의 개별가격(respective prices)과 시장에서의 유용성 그리고 기타 이들 제품간의 경쟁관계에 기초하여 일본소주와 수입양주

34) the Panel emphasized the need to look not only at such matters as physical characteristics, common end-uses, and tariff classifications, but also at the “market place”. This seems appropriate. The GATT 1994 is a commercial agreement, and the WTO is concerned, after all, with markets(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5, 1996).

35) Consequently, two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to b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in market A, but the same two products would not be necessarily be considered to b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in market B(Japan Panel Report, para. 6.22, 1996).

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정하였던 사실을 지적한다.

소비자의 행태는 물론 시간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그 패턴이 내국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하여 패널은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조세체제는 국산품에 대한 선호를 창출하거나 동결(freeze)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의 결론<sup>36)</sup>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행한 설문조사는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간의 '잠재적인 경쟁정도(degree of potential competitiveness)'를 과소 평가하기 쉽다고 단정한다<sup>37)</sup>.

#### 마. 競爭·代替關係의 考慮要因<sup>38)</sup>

패널은 주종간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ASI study), 일본의 설문조사(Institute for Social Studies) 그리고 1989년 세계개혁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에 기반하여 대체관계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sup>39)</sup>. 특히 상기한 바, 차별적인 과세체제가 수입품에 대비한 국산품의 선호를

36) "since consumer habits are variable in time and space and the aim of Article III:2 of ensuring neutrality of internal taxation as regards competi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like products could not be achieved if differential taxes could be used to crystallize consumer preferences for traditional domestic products, the Panel found that the traditional Japanese consumer habits with regard to shochu provided no reason for not considering vodka to be a like product"(emphasis added, Japan Panel Report, para. 5.17, 1987).

37) Such responsiveness, the Panel recalled ma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but should not be influenced or determined by internal taxation. The Panel noted the conclusions in the 1987 Panel Report that a tax system that discriminates against imports has the consequence of creating and even freezing preferences for domestic goods. In the Panel's view, this meant that consumer surveys in a country with such a tax system would likely understate the degree of potential competitiveness between substitutable products(Japan Panel Report, para 6.28, 1996).

38) Japan Panel Report, para. 4.167~4.174, para. 4.82~4.93, 1996.

39) Japan Panel Report, para. 6.29~32, 1996.

유발할 수 있다는 패널의 견해는 결국 분쟁제품간에 상당한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제소국의 설문조사(ASI study)를<sup>40)</sup> 중요한 증거로 채택한 반면 일본측이 제시한 설문조사는 내국세로 인한 가격왜곡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취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ASI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종과 소비자가 실제 상황에서 직면하는 주종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소주,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으로 선택이 한정된다면 이들 제품간에 대체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ASI 조사에서 일본소주와 대체관계에 있는 정종과 맥주가 배제되고 수입양주만이 대체 주종으로 제시됨으로써 소비자가 수입양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공적 경쟁(artificial rivalry)이 유발되었다고 일본은 비판한다. ASI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로 일본이 제출한 설문조사<sup>41)</sup>에 의하면 소주가 없을 경우 35%와 30%의 답변자가 맥주와 정종을 선택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 입각하여 일본은 소주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맥주와 정종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위스키에 대한 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비록 소비자가 한정된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제시된 제품간의 탄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논의한대로 정말 소주,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으로 선택이 제한된다면 이는 당해 제품간의 교차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소주와 수입양주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대체관계의 부인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또한 소주는 위스키가 아닌 맥주 내지는 정종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일본 설문조사에 대하여 일본이 주세로 인

40) ASI 설문조사는 소주와 위스키와 브랜드(5개 품목) 또는 소주와 보드카, 럼, 진 3개 품목 수입양주의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자가 어떤 주종을 선택할 것인지를 400명의 음주자에게 질문한 조사이다.

41) 만약 위스키가 없으면 32%, 32%, 10%의 답변자가 각각 맥주, 브랜드, 소주를 택하고 소주가 없으면 35%, 30%, 6%, 4%의 답변자가 각각 맥주, 사케, 백색 증류주(보드카 등), 스카치 위스키를 택하였다.

한 가격의 왜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소주가 없을 경우 10%에 달하는 담변자들이 수입양주를 선택하겠다는 사실은 소주와 수입품간의 상당한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판정하였다<sup>42)</sup>.

1989년 세계개혁에 따른 주종간 소비패턴의 변화는 패널의 판정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1989년 일본은 위스키의 품질에 따른 주종구분을 폐지하고 동일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등급이 대부분인 국산위스키의 세금과 가격은 상대적으로 각각 약 3배와 2배나 인상되었고 그 결과 국산 위스키의 소비 점유율은 1988년 26.7%에서 1990년 19.6%로 감소한 반면 소주와 수입위스키의 점유율은 증가하였다. 1994년에 이르면 국산위스키의 소비점유율은 더욱 감소하여 13.2%에 불과한데 소주생산자들은 이러한 공백을 이용하여 전체 증류주 시장의 74.2%를 점유하게 된다. 한편 1989년 세계개편으로 수입위스키의 가격이 하락하자 이들 제품의 수요가 잠시 증가하였으나 1992년의 경기침체로 그 수요가 감소한 반면 세부담이 낮은 소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주가 세부담이 많은 수입주류를 대체하여(at the expense of) 그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EC에 따르면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sup>43)</sup>. 일본은 이에 대하여 소주 소비량의 증가와

42) 한편 일본은 EC가 1994년 발주한 주종간 수요분석 보고서(Bossard Study)의 추정방식에 기초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소주수요가 위스키나 소주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패널은 autocorrelation, serial correlation 그리고 multicollinearity의 문제 등 추정식에서 제외된 요인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제소국의 비판을 일본이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소주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기 가격에 대하여 양의 값 그리고 위스키가격에는 음의 값을 갖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감소한다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위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43) In contrast, sales of considerably less taxes shochu have continued to grow during the same period at the expense of the sales of the more heavily taxed categories(Japan Panel Report para. 4.82, 1996).

위스키 가격의 하락은 오히려 이 두 주종이 경쟁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소주와 수입위스키가 국산위스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소주와 수입위스키가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사실은 이 두 주종이 경쟁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EC는 음주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제품간의 공통된 특성은 소비자에게 종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비록 모든 용도에서는 아니더라도 주종간에 경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의 결정을<sup>44)</sup> 인용하면서 분쟁대상 제품들이 물리적 특성, 사용용도 그리고 유통경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일본소주와 수입주류간의 세전가격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EC에 따르면 일본소주와 수입주류간의 차이는 색상(백색 대 갈색)과 숙성여부에 있었으나 1987년 주세분쟁으로 세율이 인상된 저급위스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숙성되었고 갈색의 색료가 첨가되어 위스키와 같은 외양과 맛을 지닌 타카라 준 레전드(Takara Jun Legend)와 같은 일본소주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도 없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층이 주된 고객인 합성주 시장이 확대되고 주점 등 판매처에도 소주와 수입주류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 따르면 위스키(2208.60)와 소주(2208.90)의 관세분류가 다르고 대부분의 소주(99%)가 숙성이 되지 않으며 제조방법이나

---

44) Even if imported alcoholic beverages... were not considered to be 'like' to Japanese alcoholic beverages..., the flexibility in the use of alcoholic drinks and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often offered an alternative choice for consumers leading to a competitive relationship... there existed - even if not necessarily in respect of all the economic uses... - direct competition or substitutability... The increasing imports of 'Western-style' alcoholic beverages into Japan bore witness to this lasting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to the potential products substitution... (Japan Panel Report para. 5.7, 1987, para. 4.73, 1996).

색상 그리고 포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용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주는 주로(60%) 반주로 이용되는 반면 위스키는 주로(72%) 식후 소비되고 음용습관도 차이가 있다고 논하고 용도에 대한 제소국의 주장은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논리로서 이에 관한 협의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소주와 보드카 사이에는 공통된 사용용도 외에 물리적 특성이 가장 비슷하므로 동종제품으로 판정되나 다른 제품은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제외하면 모든 제품이 증류주라는 점, 그리고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이 경쟁·대체관계를 발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하였다<sup>45)</sup>.

한편 외국에서도 소주가 생산되기는 하지만 17.9%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통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소주의 유입을 막고 수입증류주에 대한 차별적인 주세를 통하여 국산 소주업체를 보호하였다는 것이 패널의 결론이다<sup>46)</sup>.

45) Japan Panel Report, para. 6.32, 1996.

46) 이 밖에도 일본은 과거 영세 소주업자를 위한 정책지원으로 주세경감과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주세협상 이후에도 이를 영세 소주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치부하여 지원을 존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89년도에 처음 시행된 세율경감은 3회 연장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년도 주류 출고량이 1,300kl 이하인 업체로서 당해 연도에 출고하는 물품 중 200kl까지 해당 주세율을 30% 경감하며 보조금은 전·폐업급부금, 합병급부금, 그리고 술찌꺼기 폐기시설 지원금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당해 조치가 GATT 제3조 2항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상기 보조금이 1996년 패널의 표준위임사항이 아니며 일시적인 보조금이라는 뜻에서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Japan Panel Report para. 4.3, 1996). WTO 상계관세협정에 따르면 특정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과 세율경감은 상계관세의 대상이지만, 비반복적이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 조치는 예외로 하고 증가기준 보조금 지급이 상품가치의 5% 이하인 경우도 상계대상에서 제외한다(제6조 1항).

## IV. 우리나라와 EC·美國間 WTO 酒稅紛爭

### 1. 우리나라 酒稅法과 論爭의 概要

#### 가. 酒種分類와 稅率體系

일반적으로 주세율 체계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자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부과형식에 있어서 <表 IV-1>에서 보듯이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從量稅(specific tax)를 채택하고

<表 IV-1> 主要國의 酒種別 酒稅率

(單位: 各國 貨幣單位/100리터, %)

구 분	위스키(40도)		포도주(12도)		맥 주(4도)	
	세 액	1도당	세 액	1도당	세 액	1도당
從量稅 체계:						
미 국	2,853	71	283	24	612	153
영 국	12,875	322	2,194	183	676	169
독 일	1,646	41	0	0	4	1
프 랑 스	6,779	170	41	3	92	23
일 본	40,900	1,023	5,650	471	2,200	550
從價稅 체계:						
멕시코	44.5		21.5		19	
터 키	100		15		15	
한국	100		30		130	

註: 日本은 엔화, 나머지는 미국달러 기준임. 멕시코, 터키, 한국은 종가세율임 (1998년 기준).

資料: 財政經濟部 內部資料.

있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와 터키 등이 從價稅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류를 11개 주종으로 분류하고 이들 주종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소주에 대하여 35%(회석식)와 50%(중류식)의 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위스키와 브랜디는 100%,

〈表 IV-2〉 現行 酒稅率 體系 및 稅收(1998年)

(單位: %, 億원)

주 종	알콜도수	세 율	세 수		
			주 세	교육세	계
중 류 주 소			5,537	1,035	6,572
중 류 식 회 석 식	40도	50(55)	17	2	19
위 스 키	25도	35(38.5)	2,847	285	3,132
브 랜 디	40도	100(130)	2,338	701	3,039
일 반 중 류 주 리	40도	100(130)	31	10	41
발 효 주 탁 약 청 과 맥	40도	80(104)	30	9	39
	35도	50(55)	274	28	302
	6도	5(-)	70	-	70
	12도	30(-)	48	-	48
	16도	70(77)	531	53	584
	11도	30(33)	53	7	60
	4도	130(169)	11,967	3,590	15,557
계			18,206	4,685	22,891

註: 1. 세수는 1998년 부과기준

2. ( )안은 교육세 합산세율 탁주·약주는 교육세 비과세

資料: 財政經濟部 內部資料.

일반증류주는 80% 그리고 리큐르에 대해서는 50%의 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주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의 교육세, 그 이외는 10%의 교육세를 부가세(surtax)로 적용한다<sup>1)</sup>. 한편 <表 IV - 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류를 증류주와 맥주 및 포도주의 발효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증류주간에 주종을 구분하여 차별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세법이 같은 증류주를 달리 과세하는 것이 이들 국가에게 보호주의적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다.

#### 나. 酒種分類와 輸入實態

##### 1) 提訴國의 主張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종분류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주세법 제3조). 우선 주세법 제3조 6항 가목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맥과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으로 증류식 소주를 폭 넓게 정의하고, 수입주인 리큐르, 위스키, 보드카, 고량주를 전문 및 (1)~(3)에서 제외하였다. 회석식 소주의 경우 나목 이하에서 상기 증류식 소주의 “발효, 증류, 제조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과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등 수입주를 포함할 만큼 광의로 소주를 정의한 뒤, 위스키 등 각종 수입주종을 제7항부터 11항에 걸쳐 각각 정의함으로써 소주에는 저율의 그리고 기타 수입주종에는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sup>2)</sup>.

미국은 소주를 정의함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

1) 따라서 소주와 리큐르에는 10%의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소주의 경우 EC와의 양자협상으로 1995년부터 교육세가 새로 적용되었다. 1982년부터 부과된 교육세는 원래 10%이었으나 방위세의 폐지(1991년)로 1993년부터 주세율이 80% 이상인 주종은 교육세가 30%로 상향조정되었다. 주정, 탁주와 약주는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US First Submission. para. 18~30, 98~99.

다. 또한 제3조 9항의 마목의 일반 증류주에 대한 정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은 제3조 1항에 제시된 주정의 정의와 중복된다. 또한 회석식 소주가 주정을 물에 탄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증류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회석식 소주와 수입주인 진의 차이는 노간주나무 열매와 향미료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미소한 차이가 수입주 CIF가격의 90% 이상에 달하는 세율 격차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종분류는 명백히 불합리하며, 그 목적이 국산 소주의 보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3)</sup>.

EC와 미국(이하 제소국)은 우리나라가 1990년 위스키 완제품 등의 수입을 자유화하기까지 전통적으로 수입할당이나 높은 관세율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EC에 의하면 1991년 당시 방위세의 폐지와 함께 수입관세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왔던 소위 ‘1.1배 규정’<sup>4)</sup>이 폐지되면서 위스키와 증류주의 주세율도 각각 200%, 100%에서 150%와 80%로 인하되었으나 이러한 세율인하는 10%에서 30%에 이르는 교육세의 인상으로 ‘부분적으로 무효화’ 되었다(partially nullified). 또한 1989년까지 물량제한과 5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로 증류주의 수입을 제한하였으나 이후 일련의 양자협상으로 위스키 관세인하(20%) 및 주세인하(150% → 100%), 그리고 수입예치금 폐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자 GATT 규정에 위배되는 차등과세를 통하여 국산 소주에 대한 보호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3)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para. 5.158~5.159, WT/DS75/R and WT/DS84/R, 1998(이하 전제서).

4) 국산 주류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와 판매비 등을 포함한 가격에 주세가 과세되지만 수입주류는 판매비가 포함되지 않는 CIF가격이 과세가격이므로 당해 물이 과거 적용되었다.

5)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para. 3.1~3.30, 5.166, WT/DS75/R and WT/DS84/R, 1998(이하 상소심).

제소국에 의하면 수입자유화에 따른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증류주시장에서 수입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불과한데, 이는 OECD국가(30~40%)와 수입주에 대하여 차별과세하던 일본 시장(8%)과도 비교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총생산량의 5%(4,300백만 리터)에 해당하는 한국 소주(soju)는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관세 및 주세차원에서 일본 소주(shochu)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한편 수입증류주와 같은 양주의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국내 소주산업은 향료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숙성되고 세련된 순한 맛의 프리미엄 소주를 개발하여 일반 소주보다 2~3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1996년 당시 프리미엄 소주의 증류주시장 점유율은 6%였으나 1997년에는 10%로 높아지는 등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제소국은 주장한다.

제소국은 또한 위스키 소비는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140%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스키 주세율이 200%(1990년)에서 100%(1996년)로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코냑과 같은 브랜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50%에 이르는 세율인하로 그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일반증류주의 경우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부 주종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스키와 달리 1991년에 단행된 일반증류주의 주세율 인하(100%→80%)가 교육세 인상(10%→30%)으로 거의 전부(almost totally)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젊은 층을 겨냥한 레몬소주 등 소주카테일(합성주, pre-mixes)은 합성주의 한 예로 1995년 당시 소비증가율이 1,250%에 이르는 등 그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합성주가 리큐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컨대 제소국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소주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증류주시장의 94%에 달하는 소주시장을 육성해 왔다. 비록 수입양주가 아직도 고급주로 인식되고 있지

만 수입장벽이 철폐된 이후 가격이 인하되고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소주와 유사한 소비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존재하는 차등과세가 이러한 소비경향을 억제하고 소주와 수입양주간의 경쟁에 장애가 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던 보호주의적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주세법과 교육세법이야말로 소주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제소국 주장이다<sup>7)</sup>.

## 2) 우리나라의 主張

우리나라에 의하면 어떠한 다른 GATT 규정보다 GATT 제3조 2항이 한 국가의 자주권을 더 많이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비록 보호주의의 철폐를 위한 제3조의 목적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국가의 과세체계는 오랜 시간을 두고 국내 정치상황과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세법이 제정된 1949년 당시에는 소주가 유일한 증류주로서 소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이후 다른 종류의 주종이 판매됨에 따라서 새로운 분류가 생겨났다. 즉, 이는 제소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세법의 주종분류는 차별적 의도와 무관하다. 한편 주세는 정부세입에 있어서 주요한 세목으로 1996년 당시 국세의 3.52%와 간접세의 9.08%를 차지하며 교육세 또한 주류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0개 세목에 부가세로 부과되며 세입은 교육부문의 개선을 위

6)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1984년 당시 150%에서 100%로 인하되었고 이후 50%(1989년), 25%(1991년), 30%(1994년) 그리고 1996년에 20%로 인하한 반면 소주에 대한 관세율은 30%에 달한다. 이 밖에도 미국은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가 같은 HS코드 2208에 속하고 KAL의 'Sky Duty Free Shop'에서도 수입주류와 동등하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모든 증류주가 대체재라는 주장을 한다.

7) The complainants assert that in light of Korea's past record of protectionism in this sector, it becomes evident that the measures at issue are but a last ditch attempt by Korea to continue to afford protection to its domestic soju industry against imports of western-style liquors(전계서 5.166).

하여 사용된다<sup>8)</sup>.

또한 제소국이 일본과 우리나라 소주시장의 차이나 증류식과 희석식 소주의 차이를 일버무리고 소주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제소국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외적 사례를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주와 다른 증류주가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가 차별적이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은 “모든 주류가 갈증해소나 사교 등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같은 여러 가지의 원료로” 제조된다는 등 모순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쟁대상 주류가 잠재적(potential) 경쟁관계에 있다는 논리로서 경쟁관계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비판하였다<sup>9)</sup>.

증류주는 다양한 원료로 제조되고, 이는 지리적·문화적 환경과 그리고 소비자 취향에 따라 변화해 온 역사적 산물이며 증류주간에도 갈색과 백색 증류주와 같이 색깔과 제조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료와 숙성 등 제조방법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국가별로 포도주, 맥주, 정종과 같이 애용주(national drink)가 다르며 이는 기후, 음식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특히 매운 음식과 포도주를 같이 음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소주의 거친 맛(harsh)이 소주가 맵고 자극적인(spicy) 우리나라 음식에 잘 어울린다. 이와 같이 음식과 함께 음용되는 소주의 특성은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아 미국

8) 전계서 para. 5.174~5.184. 한편 주세가 소득 재분배적 정책목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의 결정에 따라 고려요인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지 않는다(제2절 다항 3) 참조.

9) 우리나라 1차 서면보고서 para. 15:… all are drunk with the same purposes: thirst—quenching, socialization, relaxation, etc.… All distilled spirits are concentrated forms of alcohol produced by the process of distillation from the same large variety of raw materials(미국 1차 서면보고서 para. 67 and 71).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Santa Clara)시에서는 저도주만 취급할 수 있는 한국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소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sup>10)</sup>. 소주는 또한 양주와 달리 다른 첨가물과 혼합되거나(mixed) 첨가되어(straight) 음용되지 않는다<sup>11)</sup>.

우리나라는 최근 순한 맛을 지닌 고품격의 회석식 소주가 프리미엄 소주로 개발되어 일반소주의 2배 가까운 가격(생산원가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업체들이 고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장된 선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참나무통 소주를 숙성된 것으로 광고하는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조국의 주장과 달리 프리미엄 소주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6%와 10%가 아니라 4.46%와 5.39%에 불과하다<sup>12)</sup>. 제조국은 이처럼 예외적 사실로부터 일반 소주시장에 대한 결론을 추론하는데 실제 프리미엄 소주는 개량된(upgraded) 제품으로 주세법상 회석식 소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마치 우리나라 주세법 등이 문제가 있으며 제조국의 압력에 의하여 이를 인식하고 1990년에 와서야 어느 정도 이러한 세율 체계를 개선하였다는 제조국의 논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조국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10) 이 밖에도 수출되는 소주 중 일본식 소주(Jinro export)는 일본 주세법상 소주(shochu)로 구분되는 반면 우리나라 고유의 소주는 스피릿류로 분류된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하여 제조국은 국내 관세 및 주세분류로는 이들 소주가 모두 소주(HS 2208.90)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EC 2차 구두진술서 para. 4).

11) 증류식 소주는 전통주로서 회석식 소주와는 원료와 제조방법 그리고 용도 및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의 주세율은 50%로 증류식 소주는 전통주로서 회석식 소주와는 원료와 제조방법 그리고 용도 및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의 주세율은 50%로 회석식 소주(35%)보다 세율이 높으며 이러한 주종구분은 1991년 처음 도입되었다는 EC의 주장과는 달리 1962년부터 존재하였다.

12) 우리측 1차 서면보고서 para. 48, EC 1차 서면보고서 para. 54, 미국 1차 서면보고서 para. 41.

이러한 합의가 GATT 위법여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소주산업을 보호해왔다는 제조국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수입정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분쟁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소도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1991년 당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세율 인상으로 주세율 인하가 거의 전부 상쇄되었다'는 EC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시 30% 세율의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表 IV-3>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하였던 사실을 EC는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우리나라 주세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각국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 <表 IV-4>와 같다.

#### 다. 製品의 範圍에 대한 判定

##### 1) 豫備判定

패널의 구두심리에서 우리나라는 최종판정에 앞서서 분쟁 대상제품의 범위, 분쟁 해결과정에서 DSU규정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한 예비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소주와 수입증류주가 첫째,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고 둘째, 차별과세가 최소허용수준 이상이며 셋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세가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논하고, 단지 모든 증류주가 HS코드 2208에 속한다거나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시장 또는 일본 주세분쟁에 대한 유추 해석과 증거가 없는 단정으로 제조국이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널심의에서 분쟁대상품목의 범위를 미국이 패널설치 신청에서 지목한 위스키, 브랜드, 럼, 진, 보드카 5개 품목

13) "almost totally offset by a simultaneous increase of the applicable education tax rate", (EC 1차 서면보고서 para. 57). EC 주장은 일반 증류주에 대한 논의였으나 우리측은 위스키에 대한 세율인하를 언급하고 있다(우리나라 1차 서면보고서 para. 74).

〈表 IV-3〉 年度別 위스키 酒稅率과 教育稅率

(單位: %)

	주세율	교육세율	방위세율	실질 교육 (방위)세율	합산세율
~1991	200	10	30	80	280
~1994	150	30	—	45	195
~1996	120	30	—	36	156
1996~	100	30	—	30	130

資料: WTO,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WT/DS75/R, p. 18.

〈表 IV-4〉 酒種分類와 輸入樣相에 關하여 제시된 爭點

쟁점	EC·미국	우리나라
주종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종분류가 자의적이며 구체성이 결여</li> <li>· 일반증류주와 주정의 정의가 중복</li> <li>· 회석식 소주와 일반증류주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달리 분류하여 차별과세</li> <li>- 불합리한 주종분류의 목적은 소주의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법의 제정 당시 소주가 유일한 증류주로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이후 새로운 주종이 생겨남</li> <li>· 주세법상의 주종분류는 차별적인 의도와는 무관</li> <li>- 소주와 증류주간의 대체관계가 없으므로 주세체계는 차별적이지 않음</li> </ul>
세율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위스키와 증류주의 세율이 인하되었으나 교육세의 부과로 인상부분이 부분적으로 무효화</li> <li>- GATT규정에 위배되는차등과세를 통하여 소주를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교육세 인상 당시 방위세의 폐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li> <li>- 1990년의 주세율 체계 개편은 무역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일부 제조국 의견을 수용</li> <li>· 동 사실이 GATT에 대한 위법여부를 인정한 것은 아님</li> </ul>
수입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주의 수입이 증가하자 프리미엄 소주를 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증대</li> <li>- 위스키 수입이 주세율 인하로 대폭 증가</li> <li>· 수입장벽의 철폐로 판매가 광범위해지고 소주와의 소비행태가 유사</li> <li>- 주세법 및 교육세법은 소주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정책 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소주의 시장점유율은 제조국의 주장보다낮은 수준으로 소득 증대에 따른 소주의 고급화이며 양주와 관련 없음</li> <li>· 제조국은 예외적인 사실에서 일반 소주시장의 양상을 추론하고 있음</li> <li>- 1990년 이후 양주의 수입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소주 소비량은 일정하게 증가</li> <li>· 이는 소주와 양주가 대체상품이 아님을 입증</li> </ul>

으로 한정하는 잠정판정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패널신청시 EC가 분쟁대상 제품을 ‘HS코드 2208에 속하는 특정(certain) 주류’로 명기하고 미국은 ‘위스키, 브랜디, 럼, 진, 보드카와 (소주 이외) 기타 다른 증류주’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패널에 제출된 1차 서면보고서에서는 양 제소국이 소주를 제외한 HS코드 2208에 속하는 모든 주류를 분쟁대상 제품으로 지목한 것은, HS코드 2208이 매우 포괄적인 관세분류임을 고려할 때, 논쟁대상의 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욱이, 이러한 구체성의 결여는 우리나라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유발하며 ‘논쟁대상인 제도를 명시하고(identify) 문제사항을 명백히 제시하라(present the problem clearly)’는 DSU 제6조 2항<sup>14)</sup>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sup>15)</sup>.

제소국은 패널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주세법과 교육세법으로 명기하였고 HS 코드 2208에 속한 주류를 지목하였으므로 DSU 제6조 2항이 정한 최소요건을 충족할 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또한, 다른 상소기구 보고서에서도 패널보고서에 명기될 모든 논쟁들을 패널설정을 위한 요청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16)</sup>. 미국은 또한 동 요청문이 모든 증류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지 예로서 “위스키 ... 등과 같은”이라는 문장

14)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shall be made in writing. It shall indicate whether consultations were held,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a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DSU Article 6. 2.).

15) 바나나 III 상소심에 따르면 패널설치의 요청문이 충분히 명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DSU 7조에 따라 동 요청문이 위임사항(TOR)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며 피제소국과 제3국에게 제소의 법적 근거를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s and distribution of Bananas(Bananas III), WT/DS27/AB/R, 1997.

16) 바나나 III의 상소심.

을 사용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증거가 생략된 주종은 위스키 등 명시된 주종의 변형제품으로서 모든 증류주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sup>17)</sup>이며 우리나라 주세법에도 위스키 등을 제외한 수입양주는 일반 증류주(*general distilled spirits*)로 분류되어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제조국은 일본 주세 상소심도 HS 코드 2208에 속한 증류주가 소주와 경쟁·대체상품이라고 판정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바나나 III의 상소심이 분쟁해결기구가 패널 요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패널이 DSU 제6조 2항의 준수사항을 심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쟁점은 우리나라가 변호해야 할 사안의 범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쟁점의 초점을 두었다. 패널은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는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될 사항으로 잠정판정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일본 주세 상소심이 모든 증류주가 차별과세의 대상이라는 결정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제조국이 제시한 HS분류와 일본 주세 상소심의 결정을 고려할 때 당해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패널은 제조국의 요청이 DSU 제6조 2항을 충족한다고 결정하였다<sup>19)</sup>.

17) 이와 같은 EC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마치 피의자들이 너무 많으므로 이들이 범죄자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우나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과 같다고 지적한다(2차 구두진술서 para. 41).

18) 일본 주세 항소심은 패널이 위스키, 브랜디, 럼, 진, 제니버, 리큐르에 한하여 일본소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종으로 결정한 것은 미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제시한 패널의 위임사항(TOR)에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HS코드 2208에 속하는(소주 및 보드카) 이외 모든 제품이 소주와 대체·경쟁관계에 있다고 판정하였다(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32, 1996).

19) 이 밖에도 패널은 포괄적인 부류의 제품에 기초한 패널설치의 요청이 DSU 제6조 2항에 적절할 만큼 구체적이라는 판정을 인용하였다(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Communities—Customs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Equipment*, WT/DS62/AB/R, 1998).

〈表 IV-5〉 製品の範圍에 대한 各國의 主張과 判定

	EC·미국	우리나라	패널 판정
수입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주세 상소심에서도 HS 2208에 속한 모든 증류주가 소주와 경쟁 및 대체재라고 판정</li> <li>- HS 2208에 속한 주류를 모두 지목하여 구체성의 최소요건을 갖추</li> <li>- 논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주세법과 교육세법으로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국은 소주와 수입증류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경쟁·대체 관계</li> <li>· 최소허용수준이상의 차별과세</li> <li>·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주세의 적용</li> </ul> </li> <li>- 제조국이 분쟁대상 품목의 범위를 HS 2208 제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음</li> <li>- 논쟁대상인 제도를 명시하고 문제사항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대상은 HS2208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아닌 제조국이 입증책임을 완수한 9개 수입증류주에 대하여 판정의 범위를 한정함</li> </ul>
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류식 소주를 희석식 소주와 구분함으로써 증류식 소주를 희생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지적</li> <li>- 1991년에 와서야 EC와의 협상에 따라 두 소주가 주세법에서 구분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이름이라도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는 별개의 제품임(beer와 root beer의 예)</li> <li>- 주종의 구분도 1991년보다 이전인 1962년에 이루어졌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양허관세율 표에도 두 소주가 구분되지 않는 등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제품의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음</li> </ul>

## 2) 最終判定

분쟁 대상 주종들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과 판정은 <表 IV - 5>에 요약되어 있다. 제소국은 회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는 하나의 제품이며 소주와 수입주의 물리적 특성과 사용용도 그리고 판매처 등이 유사하므로 모든 증류주는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제소국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 주류와 유사한 증류식 소주를 회석식 소주와 구분함으로써 회석식 소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증류식 소주를 회생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 소주의 이름이 동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제품은 동일한 상품의 변종이며 관세분류상 모두 '소주'로 분류되고 1991년에 와서야 EC와의 협상에 따라 두 소주가 주세법에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sup>21)</sup>.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의 근본적인 차이는 증류방식에 있다고 판정한 사실과 두 소주가 혼합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종종 혼합되며 회석식 소주와 달리 증류식 소주는 숙성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소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우선 맥주(beer)와 root beer의 예를 들어 회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동종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소국의 주장과 달리 증류식 소주가 주세를 면제받지 않으며 소주의 주종구분도 1991년보다 훨씬 이전인 1962년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sup>22)</sup>. 또한 우리나라는 제소국이 증거 없이 두 소주가

20) 전계서 para. 5.130.

21) EC는 양자간 협상에서 고급소주도 리큐르와 같은 수입주종보다 고율의 주세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1991년 당시 주종분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전계서 para. 6.16, 각주 199).

22) 전계서 6.15, 6.227(우리나라 2차 패널 구술서 7쪽, 미국 2차 서면보고서 para. 19, EC 2차 서면보고서 para. 33 참조). 이 밖에도 회석식 소주는 제조방식에서 증류식 소주와 달리 연속식으로 증류된 후 물이 첨가되고 쌀이 아닌 타피오카 등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에서 회석식 소주가 증류식 소주를 단순히 회석한 주종이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주장한다(전계서 para. 7.14).

혼합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종종 혼합된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만약 두 제품의 특성이 큰 차이가 없다면 제품가격의 상당한 차이와 서로 다른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증류식 소주를 희생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소국은 소주 시장의 0.2%에 불과한 증류식 소주에 대한 예외적인 사실들로서 99.8%를 차지하는 희석식 소주를 묘사하고 실제 주류시장을 왜곡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는 별도의 독특한 제품으로서 주종분류에 대한 제소국의 주장은 시장에서의 검증이 필요로 하며, 수입주류와 희석식·증류식 소주가 직접적인 경쟁·대체 관계에 있음은 개별 품목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쟁대상 제품의 범위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패널은 일본 주세의 사례는 당해 분쟁에 있어서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증거가 제시된 제품들에 대해서만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패널의 입장이다. 특히 일본 주세 상소심이 HS 코드 2208에 속한 모든 증류주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제품의 범위에 관한 표준위임사항을 패널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소심의 입장은 품목별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증거자료가 거의 제시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판정이 내려질 수는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입증자료가 없는 제품에 관하여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소국의 주장은 한국 주류시장을 예단하고 또한 입증책임이 제소국이 아닌 피제소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패널은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다만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독립된 제품으로 취급되어야 할 만큼 제품의 특성이 차이가 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한 양허관세율표에도 두 소주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패널은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증류주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정하고 그 근거로서 GATT 제3조 제2항의 입법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사과와 오렌지, 버스과 전차 등을 경쟁

제품으로 예시한 연혁을 제시한다<sup>23)</sup>. 물론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시장에서도 모든 증류주가 소주와 경쟁·대체상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은 제조국이 입증책임을 완수한 제품 즉, 보드카, 위스키, 진, 브랜디, 코냑, 리큐르, 테킬라 그리고 혼합주에 대해서만 심의하기로 한다. 이 중 제3자인 멕시코가 제기한 테킬라와 메스칼(mescal)에 관하여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언급되었고 그 반면 테킬라는 설문조사(Dodwell study)에 포함되었으며 (한국음식과 유사한) 매운 음식과 같이 섭취되며 백색 증류주라는 이유로 분쟁대상 제품에 포함한다.

## 2. GATT 第3條 第2項의 法理的 解釋

### 가. GATT 第3條 第2項과 酒稅紛爭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4년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은 국산품과 동종상품인 수입품을 국산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품과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산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은 세율(dissimilar tax)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기 조항과 DSU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제조국은 우리나라 주세법 및 교육세법이 보드카에 소주세율을 초과하는(in excess of)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의 첫째 문장을 위반하였으며, 소주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HS코드 2208에 속하는 다른 수입 증류주에 대하여 주세 및 교육세를 중과함(higher internal taxes)으로써 동 조항의 둘째 문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23) 또한 패널에 의하면 증류식 소주에 비하여 회석식 소주가 수입제품과 더 유사하며 수입주류간에는 가격과 제품 특성에서 서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회석식 소주와 수입주류를 한데 묶어 비교하는 분석방법을 취한다(전개서 para. 10.51~10.60).

〈表 IV-6〉 GATT 第3條 2項에 대한 解釋의 差異

EC·미국	우리나라	패널(Panel) 판정
<p>- 첫번째 문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제품에 대한 판단은 제품의 외양과 사용용도, 관세분류에 따른 사례별로 결정되나 반드시 모든 면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음</li> <li>· 차별과세에 관해서는 일본의 주세상소심의 '가장 미소한 수준의 초과분도 과다하다'는 판정을 내림</li> </ul> <p>- 두번째 문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탄력성을 비롯한 당해 및 외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검토해야 함</li> <li>· 경쟁은 실제적 경쟁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까지도 포함함</li> <li>· 수입품의 신규시장 진출시 제품의 낮은 인지도와 차별과세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미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교차탄력성을 해석하고 외국 시장의 예를 고려</li> </ul>	<p>- GATT 제3조 2항은 한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내국세 체계에 대한 규정이며 회원국은 과세자주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소국은 ①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 ② 차별과세의 최소 허용수준 이상 ③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주세의 적용을 입증하여야 함</li> </ul> <p>- 첫번째 문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제품에 대한 정의는 협의로 해석해야 함</li> <li>· 제품간의 차별이 문체시되는 경우는 두 제품이 경쟁에 연루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분쟁상품의 실제적 경쟁을 증명하여야 함</li> </ul> <p>- 두번째 문장: 경쟁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외양, 가격, 용도, 유통경로 등을 감안하여야 함</p>	<p>- 동종제품의 경우 차별과세가 허용되지 않음</p> <p>- 경쟁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상품은 GATT 제3조의 문맥상 비차별적인 조치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저해할 정도로 협의로 해석되어서는 안됨</li> <li>· GATT 준비위원회도 사과와 오렌지를 대체상품으로 예시</li> </ul> <p>- 잠재적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탄력성은 결정적 요인은 아니나 적절한 고려요인임</li> <li>· 국내 경쟁상태는 차별과세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외국시장인 일본 주세패널 결과를 참고함</li> <li>· 왜곡된 조세체계는 소비자의 기호를 동결시키고 잠재적인 경쟁관계를 위축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고려해야 함</li> </ul>

미국은 이미 지적인 대로 우리나라 주세법이 주종을 자의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소주와 다른 수입주류를 상당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3조 2항에 관한 각국의 주장과 판정은 <表 IV-6>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GATT 第3條 第2項 解釋: 提訴國의 立場

제소국에 따르면 일본 주세 상소심의 결정에 따라 GATT 제3조 2항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위반 여부는 첫째, 논의중인 제품들이 동종인지 둘째, 수입품에 적용된 세금이 국내 동종제품에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지의 두 가지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sup>24)</sup>. 또한 GATT 제3조 1항에 제시된 원칙이 2항에도 해당되지만 기존 패널판정에 의하면 제3조 2항 첫 번째 문장의 저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조치가 적용되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sup>25)</sup>.

제소국에 의하면 기존 판례에 따라 동종제품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품의 외양과 사용용도 그리고 관세분류에 의하여 사례별로 결정되고 동종제품을 협의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면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sup>26)</sup>. 제소국은 또한 우리나라 소주의 물리적 특성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연구<sup>27)</sup>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알콜도수나 첨가제 등은 미미한 차이로서 일본 소주와 우리나라 소주가 근본적으로

24) (i) whether the taxed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re "like" and (ii) whether the taxes applied to the imported products are "in excess of" those applied to the like domestic products.

전계서 5.96(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18, Panel Report, para. 6.16~20, 1996,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Appellate Body Report 참조).

25)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18~19, 1996, *European Communities—Banana III* para. 216(제2절 다항 2) 참조).

26) 전계서 5.100(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0, 1996, Japan Panel Report para. 6.21, 1996,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p. 21, Appellate Body Report 참조).

27) Scotch Whisky Research Institute(전계서 para. 5.105).

동일한 제품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기반하여 이들 제품이 동종제품이라고 한 1996년 일본 주세패널의 판정을 인용한다<sup>28)</sup>. 이 밖에도 차별과세에 있어서는 일본 주세 상소심이 ‘가장 미소한 수준의 초과분도 과다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을 상기한다<sup>29)</sup>.

한편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위반 여부는 1996년 일본 주세 상소심의 결정에 따라 第三章 第4節 가項에서 언급하였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소국에 의하면 패널은 특정 사례에 있어서 모든 적정한 사실들을 고려하고 특히 교차탄력성을 비롯한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쟁은 현존하는 경쟁(actual competition)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potential competition)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 취향과 습관이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쟁대상 조치가 소비자 기호를 국산품에 편향되는 방향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경쟁의 부재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분쟁 대상조치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면 해당 시장에서 특정 순간에 두 제품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변호의 요건이 될 수 없다”<sup>30)</sup>. 특히 수입품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경우에는 제품의 인지도가 낮고

28) Essentially, shochu and soju are identical products. ...The Panel accepted the evidence submitted by Japan according to which a shochu-like product is produced in various countries outside Japan,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 (Japan Panel Report para. 4.178, 6.35, 1996). 이에 대하여 일본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우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으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나 패널의 판정이 오류라는 입장이다.

29) Even the smallest amount of “excess” is too much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3, 1996).

30) ..., the complainants argue, evidence that two products are not competing actually in a market at a given point in time is not a defense if the absence of actual competition is due, at least in part, to tax measures in dispute (전개서 para 5.123). Such (consumers) responsiveness ... ma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but should not be influenced or determined by internal taxation (Japan Panel Report para 6.28, 1996). 이 밖에도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p. 28, Appellate Body Report 참조.

차별과세로 신규시장을 침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표면적인 경쟁관계가 미약해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교차탄력성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은 경쟁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GATT 제3조의 원칙과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제소국의 입장이다<sup>31)</sup>.

이러한 법적 해석에 기반하여 제소국은 소주와 수입주류의 물리적 특성과 사용용도 그리고 유통경로 및 판매전략이 유사하며 소주 수요가 위스키가격 등에 탄력적이기 때문에 두 제품이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위스키나 브랜디에 대한 주세와 교육세가 희석식 소주에 비하여 약 3.38배에 달하는 등 차별과세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훨씬 초과하고 주종분류가 불합리하며 소주수입이 미미한 반면 상당한 양주가 수입된다는 점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하지 않은 과세와 보호효과도 우리나라 주세법에 해당된다고 제소국은 주장한다.

## 2) GATT 第3條 第2項 解釋: 우리나라의 立場

우리나라는 GATT 제3조 2항이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내국세체계에 대한 규정으로서 1992년 미국 주류분쟁의 패널에서 “GATT 제3조의 목적이 국가마다 상이한 회원국의 내국세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판정을 인용한다<sup>32)</sup>.

31) 전제서 para. 7.1(a)~(g). 이 밖에도 EC는 ‘경쟁하는(competing)’과 ‘대체하는(substitute)’이 아닌 ‘경쟁적인(competitive)’과 ‘대체할 수 있는(substitutable)’이라는 용어가 주해 부속서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잠재적 경쟁이 이미 고려대상이라는 주장이며 미국은 소주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소주 대신 위스키 수요가 약간만이라도(any shift) 증가하면 이를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EC 2차 서면보고서 para. 77, 미국 2차 서면보고서 para. 81).

32) The purpose of Article III is not to harmonise the internal taxes and regul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which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 DS23/R, BISD 39S/206, 276, Panel Report para. 5.71, 1992).

특히 GATT 제3조 2항은 각 회원국이 WTO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과세 자주권을 일정 수준 양보한 규정으로서 당해 조항에 관한 포괄적 해석은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깰 수 있다. 또한 GATT 제3조 2항이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종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제3조 4항에 비하여 차별과세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소국 주장<sup>33)</sup>과 달리 일본 주세패널이 제3조 2항의 적용범위가 4항과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였다<sup>34)</sup>.

우리나라에 따르면 일본 주세 상소심의 판정에서 보듯이 GATT 제3조는 회원국의 합법적인 조세정책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제3조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호주의의 철폐와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sup>35)</sup>. 일본 주세 상소심에 의하면 제3조 1항의 첫째 문장이 의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aim and effect test)을 요하지 않지만 동종제품에 대한 정의를 협의로 해석해야 하고 동종제품은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의 일부이다. 따라서 분쟁제품이 충분히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각 회원국은 과세자주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일본 주세 상소심이 논의한대로 WTO 협정이 상업협정이므로 WTO 체제가 시장과 관련되므로 경쟁관계에 대한 판정은 시장(market place)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36)</sup>.

우리나라는 제소국이 소주와 수입증류주가 첫째,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고 둘째, 차별과세가 최소허용수준 이상이며 셋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세가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33) EC 제2차 서면보고서 para. 83~84.

34) Japan Panel Report para. 6.20, 1996.

35)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16, 1996.

36) GATT 1994 is a commercial agreement, and the WTO is concerned, after all, with markets(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5, 1996,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p. 28, Appellate Body Report 참조).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특히 경쟁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원료, 제조 과정과 같은 물리적 외양, 가격 그리고 사용용도를 고려하고 이밖에도 유통경로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쟁관계의 강약은 동종 제품의 경우 기존 판례<sup>38)</sup>에 따라 완전대체재를 의미하며 GATT 제 3조 2항에 저촉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부속서 주해가 ‘직접적인(directly)’ 경쟁관계를 논하고 있으므로 경쟁의 정도가 상당한 제품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국이 ‘증류주의 성격상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동일하다’거나 ‘모든 주류가 같증 또는 교제 등의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뿐 소주와 수입주류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9)</sup>. 우리나라에 따르면 그 결과 제조국은 이러한 경쟁의 부재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주세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주세법이 GATT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논리에 의존한다<sup>40)</sup>. 그러나 부속서 주해는 “경쟁에 연루된 경우에만(only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 제품 간의 차별과세가 문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차별과세를 논하기 전에 분쟁제품 사이에 실제적 경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경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차별적 과세가 아니라면 이들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

37) According to Korea, regarding Article III:2 second sentence, the complaints must prove three things: first, that the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re directly competitive and substitutable products, second, that foreign products are subject to tax differentials that are more than ‘*de minimis*’, and third that tax was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전계서 para. 5.76).

38)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p. 31, Appellate Body Report.

39) it is the fundamental nature of distilled spirits that creates commonality of usage throughout the world(미국 2차 구두진술서 para. 14)., ...all are drunk with the same purposes: thirst—quenching, socialization(미국 1차 서면보고서 para. 71).

40) 전계서 para. 5.206.

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호효과와 관련하여 제소국은 우리나라 주세법이 보호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한국 주류시장은 국내업체들만이 경쟁을 벌이도록 정부가 보호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Sofres 보고서<sup>41)</sup>를 인용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 소주에 사용되는 주정의 70%가 수입되며 국산 주정도 수입 식용전분(tapioca)으로 제조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수입주종과 소주 사이의 상당한 가격격차로 볼 때 차별과세가 보호효과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주장이다<sup>42)</sup>.

#### 나. 우리나라 酒稅패널의 法理的 解釋

##### 1) GATT 第3條 第2項 解釋의 一般的 原則

우리나라 주세에 대한 WTO 패널보고서는 사실심리에 앞서서 기존 패널판정에 기초한 GATT 제3조 2항의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를 논하고 있다<sup>43)</sup>. 패널에 따르면 제3조 2항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특히 둘째 문장이 경쟁제품에 대한 유사한 과세를 논하고 있으므로 분쟁대상 제품들이 동종으로 판정되면 첫째 문장에서는 차등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둘째 문장에서는 차등과세의 규모와 이러한 차등과세가 국내업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지가 문제이다<sup>44)</sup>.

일본 소주 사례에서 보듯이 동종상품은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

41) Korean alcohol market is no longer a market protected by the government with market shares contested by local producers... (전계서 para. 175).

42) 전계서 para. 173~180.

43) 전계서 para. 10.34~10.43.

44) 제2절에서 논의한대로 동기와 효과에 대한 검증(aim and effect test)은 일본 주세 상소심에서 이미 수용되지 않아 우리나라 주세패널에서는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본문에서 제시된 3개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입증책임은 물론 제소국에게 있다.

의 부분집합(subset)에 해당하므로 수입주류가 직접 경쟁·대체상품이 아니면 동종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일본 주세 상소심에 따르면 “동종상품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직접 경쟁·대체상품의 제품 분류가 얼마나 포괄적인지는 패널이 해당 사례에 있어서 모든 적절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sup>45)</sup>. 또한 협약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교섭 당시의 연혁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엔나 협약 제32조에 근거하여 볼 때 직접 경쟁·대체상품은 GATT 제3조 문맥상 비차별적인 조치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저해할 정도로 협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패널은 특히 제네바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사과와 오렌지, 아마유와 동유 또는 인공 고무와 자연산 고무가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이 될 수 있다고(could be) 예시하였음을 지적한다. GATT 협약을 체결할 당시 회원국 사이에서 오간 이러한 논의로 볼 때 분쟁대상 제품이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특히 경쟁의 중복 정도뿐만 아니라 평가의 방법론적 기초(methodological basis)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상 제품들을 대체재로 간주하는지 또는 간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consider or could consider). 이와 관련하여 일본 주세패널은 국산위스키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에서 소주와 수입 위스키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두 제품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증거라고 판정하였다<sup>46)</sup>. 물론 소주와 수입위스키는 일본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국산 위스키와 경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세 패널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이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하는 증거가 필요하다<sup>47)</sup>.

45)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25, 1996

46) Japan Panel Report, para. 6.30, 1996.

47) 한 예로 증류주가 포도주와 경쟁하고 있고 포도주는 맥주와 경쟁한다는 사실이 증류주가 맥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전계서 para. 10.41, 1998).

연후 패널은 경쟁관계에 대한 입증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판정을 내린다. 패널에 의하면 (경쟁관계를 검증함에 있어서) 수리적 분석이 도움은 되지만 필요불가결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1987년과 1996년 일본 주세패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이 경쟁관계의 정도(extent)를 과소평가 내지는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8)</sup>. 실제로 경쟁관계의 성격(nature)이 아닌 그 규모에 집중하는 방식은 조세체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GATT 제3조가 무역효과(trade effect)의 검증을 요하는 조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일본 주세 상소심이 판정한 바와 같이 GATT 제3조는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무역규모가 아닌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다<sup>49)</sup>.

입증요건에 대한 상기 논의는 우리나라 주세법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는 데 근본적 원칙으로 작용한다. 한편, GATT 제3조 2항 둘째 문장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방식은 일본 주세 상소심 결정에 따라 패널은 둘째 문장을 3단계로 나누어 당해 제품들이 첫째, 서로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는지 둘째, 세율 차이가 큰지, 마지막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이

48) 제2절 다. 일본 주세패널의 GATT 제3조 2항 해석: 두 번째 문장 참조.

49) ...it is also the case that quantitative analyses, while helpful, should not be considered necessary. In examining the Korean market, a determination of the precise extent of the competitive overlap i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as the 1987 and 1996 panels noted in the Japan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I and II,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policies can cause distortions, including understatement, of the quantitative extent of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Indeed, there must be some concern that a focus on the quantitative extent of competition instead of the nature of it, could result in a type of trade effects test being written into Article III cases. That is, if a certain degree of competition must be shown, it is similar to showing that a certain amount of damage was done to that competitive relationship by the tax policies in question(전게서, para. 10.42).

있는지를 판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주세 패널에서는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쟁제품간의 교차탄력성, 일본 주류시장의 소비패턴 그리고 잠재적 경쟁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적 검토사항이다.

## 2) 交叉彈力性

일본 주세 상소심에 따르면 제품의 물리적 특성, 공통된 사용용도, 관세분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상태가 판정에 있어서 주요 고려요인이다<sup>50)</sup>. 그 중 경쟁제품간의 교차탄력성은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요인이 된다. 만약 수량적인 측면에서 경쟁관계가 상당하다면 이는 경쟁의 성격이 직접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의 부재는 일본 주세패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sup>51)</sup> 정부정책이 소비자의 취향을 왜곡하였기 때문일 수 있고 특히 제품의 성격이 소비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제품을 사는 경험재(experience good)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문제는 경쟁의 중복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격이며 이러한 뜻에서 교차탄력성의 통계학적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적절한 증거일 뿐이다<sup>52)</sup>.

## 3) 日本市場의 適正性

제소국은 일본 소주(shochu)와 한국 소주(soju)는 동일한(identical) 제품으로, 1996년 일본 주세패널에서 일본 소주와 위스키는

50) Japan Panel Report para. 6.21, 1996.

51) 각주 34 참고.

52) As noted, both panels in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I and II made the observation that government policies can influence consumer preferences to the benefit of the domestic industry …This is particularly a problem if the products involved are consumer items that are so-called experience goods …It is for this reason, among others, that quantitative studies of cross-price elasticity are relevant, but not exclusive or even decisive in nature(전세서 para. 10. 41, 1998).

경쟁·대체상품으로 판정되었는바, 한국과 일본의 주세법이 유사하며 또한 우리나라 주류시장과 일본시장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일본 주류시장에서 판명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적절한 고려요인이라고 주장한다<sup>53)</sup>. 제조국에 따르면 일본 주세법도 소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수입주류에 대하여 고율의 주세를 적용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동태적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즉, 양 시장에서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수입주류의 소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성소주나 프리미엄소주와 같은 국제화된 주종이 개발되는 등 소주와 수입주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소주와 위스키 등의 판매경로가 점차 중복되고 있다는 뜻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류시장은 1980년대 일본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따르면 일본 주세 항고심이 명확히 하였듯이 GATT 협약은 상업협정이므로 경쟁관계에 대한 검증은 국산품과 수입품이 “한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일본 주세패널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이 국가에 따라 변한다”<sup>54)</sup>고 판정하였으므로 일본시장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55)</sup>. 또한 일본 소주와 우리나라 소주는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는 우리나라 소주가 일본 소주와 맛과 첨가제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제품으로서 일본 주세법에서도 “소주(shochu)”가 아닌 “스피릿류(화주)”로 분류되고 일본 국민을 상대로 수출되는 일본식 진로 소주(Jinro Export)는 일본 과세당국에 의하여 일본식 소주로 과세된다<sup>56)</sup>.

53) 전계서 para. 5.38, 5.41-2. 5.48-9.

54) Japan Panel Report para. 6.21, 1996.

55) 이는 1996년 일본패널(일본 주세보고서 6.22)이 확인하였듯이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에 대한 사례 이후 공인된 검증기준이다(전계서 para. 5.52~3).

56)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5.58, 5.67.

물론 일본소주 패널에서 채택된 법리적 해석과 응용은 전례로서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를 우리나라 시장과 제시된 사실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본 소주분쟁과 다른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강조한다<sup>57)</sup>. 구체적으로 일본 소주와 달리 우리나라 소주는 국민주로서 스트레이트로 음용되고 숙성 내지는 갈색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으며 특히 제조국이 일본 주세패널에서 논의한 대로 일본 소주와 수입양주의 세전가격은 '대략 비슷한 범위'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 소주와 수입양주간의 가격차이는 상당하다<sup>58)</sup>.

제조국의 주장은 일본 시장을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며 다만 제품의 유사성과 경쟁 정도에 대한 일본 패널의 결정을 현행 패널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국에 따르면 일본 소주와 우리나라 소주가 HS코드상 같은 2208.90.40으로 분류되고<sup>59)</sup> 두 제품의 근본적 차이가 상이한 원료가 아닌 첨가제로서 우리나라 소주에 감미료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주세법으로는 소주에 반드시 이러한 첨가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sup>60)</sup>. 일본 소주의 99%가 백색의, 숙성되지 않은 제품이며 우리나라 관세나 주세법상 일본 소주가 일반 소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두 제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sup>61)</sup>.

57) Korea's First Submission 32.

58) the Community argued that the retail prices of shochu and of the distilled spirits and liqueurs are within a relative short range once the liquor taxes and ad valorem consumption taxes are deducted (Japan Panel Report para. 4.82, 1996).

59) 이에 대하여 HS코드 2208.90('others')은 증류주 중에서 다른 6단위 HS코드에 속하지 않은 증류주를 모아 분류한 '기타 주종'에 불과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패널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가 제기하지 않는다.

60)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식 진로소주(Jinro Export)에 첨가되는 구연산과 설탕 이외 우리나라 진로소주(Jinro gold)에는 과당, 아미노산, 정제염, 스테비오사이드와 울리고사카라이드가 포함되며 일본 소주에 비하여 우리나라 소주가 약 150~300배 정도 단맛이 더 난다고 주장한다(전계서 para. 7.15).

61)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약 20개에 달하는 일본소주가 갈색인 반면 우리 소주는 모두 백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우리나라 2차 구두 진술서 para. 10).

한편 일본 소주와 우리나라 소주가 같은 HS코드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가 동종제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주와 보드카가 서로 다른 HS코드 즉, HS 2208.90과 HS 2208.60에 속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제소국은 과거 소주와 보드카는 같은 HS코드 2208.90(others)에 속하였으나 제품용도나 특성의 변화가 아닌 보드카의 국제화로 1996년 HS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보드카가 새롭게 분류되었으므로 이러한 관세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논한다<sup>62)</sup>. 이 밖에도 소주가격이 수입주류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일본패널에서 EC가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제소국은 실제로 일본시장에서 소주가격이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일본에 의하면 위스키와 브랜드의 가중평균 세전가격은 소주 갑류보다 각각 13배와 5배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sup>63)</sup>.

패널에 의하면 해당 시장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일본 상소심의 결정을 인지하고(mindful) 있고 따라서 분쟁에 대한 판정이 한국 시장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국 주류시장에서 수입주류가 제한되어 있었고 상당한 세율격차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일본시장의 경쟁상태는 '경쟁의 성격' 즉, 변화하는 한국시장의 추세와 그 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논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소주를 선전할 때 이용되는 전략은 한국 시장내의 실제 및 잠재적(potential) 경쟁조건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요인이다<sup>64)</sup>.

패널에 따르면 특히 수입제한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쟁의 증거로서 외국시장이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62) (우리나라 1차 서면보고서 para. 158, EC 2차 서면보고서 para. 60, 전계서 para. 6.41, 6.156).

63) EC 2차 서면보고서 Annex 3.

64) 패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Communities—Customs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Equipment*(WT/DS62/AB /R, 1998) para. 93을 인용한다.

일본 주세패널이 논의한 대로 왜곡된 조세체제는 경쟁관계를 왜곡 내지 국산품에 대한 선호를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의 경쟁상태는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소주의 경우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이 패널결정에서 결정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다.

#### 4) 潛在的 競爭(potential competition)

우리나라와 제소국은 제3조 2항의 주해가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 경쟁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관계까지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제소국은 수입차별적인 조세로 인하여 교차탄력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잠재적 경쟁관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는 일본 패널 보고서<sup>65)</sup>를 인용하면서 시장에서 현재 분쟁상품 사이에 경쟁이 없는 사실이 부분적이라도 왜곡된 조세체제로 야기되었다면 그러한 조세체제는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sup>66)</sup>.

제소국은 또한 상당한 차별과세로 인하여 외국주류가 수입되지 못할 경우도 제3조 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잠재적 경쟁관계는 ‘폭넓게(broadly)’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 주장에 따라 경쟁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면 수입제한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GATT 제3조에 합치되는 국내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제소국의 주장이다. 반

65) consumer surveys in a country with such a (discriminatory) tax system would likely understate the degree of *potential competition* between substitutable products(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the Panel Report(WT/DS8/R) 6.28, 1996).

66) For that reason, evidence that two products are not actually competing in a market at a given point in time is irrelevant if the absence of actual competition is due, at least in part, to the tax measures in dispute(EC 1 차 서면보고서 para. 94). 이 밖에도 제소국은 캐나다 잠지분쟁에서 캐나다의 관세 및 소비세법이 지난 30년간 국내잡지의 생산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경쟁관계의 결핍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하였으리라는 항소심 판결을 인용한다(전게서 para. 6.169,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Appellate Body Report, p. 28).

면 기존 판례에 따르면 GATT 제3조는 무역량이 아닌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조항<sup>67)</sup>으로서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현존하지 않아도 경쟁기회는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적 경쟁은 GATT 제3조 2항에 유용하다<sup>68)</sup>.

제소국에 의하면 주류는 특히 경험에 기반한 소비재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자 취향이 변화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1990년 주류시장 개방 이후 소주를 대체하는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급격한 소비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리미엄 소주와 합성소주의 등장과 판매확산으로 주류시장이 계속 성장·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추세로 볼 때 제소국은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주와 수입증류주간 경쟁관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제3조 2항 주석이 직접 경쟁·대체상품 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잠재적 경쟁의 개념이 미래의 경쟁(future competition)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패널은 조세체계가 아니라면 분쟁대상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ut for argument). 환언하면, 일본주세 패널이 지적한대로 왜곡된 조세정책으로 인하여 현재의 경쟁이 없을 수 있는바, 조세가 배제된 세전단계에서 분쟁상품간의

---

67) the Article III:4 obligation has long been understood to apply to regulations that “might adversely modify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regardless of current trade(전계서 para. 6.167,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BISD75/60, 15, 1958).

68)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relevance of potential competition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III:2, second sentence, flows from the well established principle that Article III does not protect export volumes but expectations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Those expectations may exist even if there is no “actual” competition yet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due to protective tax measures(전계서 para. 6.63).

“잠재적 경쟁관계”를 고려하되,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주류간의 상당한 세전 가격차이는 이들 두 제품 사이에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sup>69)</sup>.

특히 우리나라에 의하면 소주와 수입주류의 시장이 현재 개발되고 있으므로 장래에 이들 제품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제조국의 주장은 억측(speculate)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만약 미래에 소주와 수입주류의 소비성향이 바뀌어 이들 제품이 경쟁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쟁관계가 성립할 때 제조국이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제조국이 경쟁이 현존하거나 경쟁의 부재가 주세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논한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주세의 상소심이 WTO협정은 결국 ‘상품에 관한 협정’이며 따라서 패널의 심의에서 시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정에 기반한다. 또한 EU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Sofres 보고서에서도 “한국 소주는 수입주류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 (주류)시장은 더 이상 정부가 보호를 하며 국내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논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70)</sup>. 요컨대 GATT 제3조가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지만 미래의 경쟁과 잠재적 경쟁은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 환언하면 경쟁의 기회란 수출품이 현재 경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GATT 제3조 2항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두 제품이 미래에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리라는 추측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sup>71)</sup>.

69) 이 밖에도 우리측은 GATT 제3조 제2항과 주석이 ‘직접적인(directly)’ 경쟁관계를 언급함을 지적하였다(전계서 para. 5.202, 1998).

70) EC Commission, *Your Guide to the Exporting Food products to Korea, Alcoholic Beverages*, p.22, 1997(전계서 para. 6.225, 1998).

71) Where Korea has drawn the line is future competition. Korea accepts the standing case law that Art. III GATT protects competitive opportunities. Korea submits, however, that these are opportunities for exports that can or do compete now. Where there is no competitive

패널은 미래에 대하여 추측할(speculate) 수는 없지만 시간상의 잠재적 경쟁을 평가하는 것이 억측은 아니며 특정 사례에 있어서 소비행태의 변화나 경향 등 제시된 증거에 입각하여 분쟁 대상제품들이 현재 경쟁제품인지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략 경쟁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72)</sup>. 패널에 따르면 우리 측 주장대로 미래에 대한 추측은 분쟁대상이 아니지만 잠재적 경쟁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율의 차이가 없다면 경쟁이 있을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

패널은 특히 GATT 제3조의 목적이 실제 무역규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일본패널 판례에서 보듯이 왜곡된 조세체계는 소비자의 기호를 동결(freeze)시키고 잠재적 경쟁관계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sup>73)</sup>,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대한 판단은 경쟁의 강약뿐만 아니라 경쟁의 성격에 기초한 잠재적인 경쟁을 고려한다고 판정한다.

이러한 패널의 해석은 수출은 하지 않지만 잠재적 수출자로서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례나 GATT 제3조 2항이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기회를 보장한다는 판례와 합치된다<sup>74)</sup>. 결론적으로 패

---

relationship between products at the moment, and sufficient competitive potential cannot be shown at the time when when taxes would be removed, the application of Art. III.2 does not protect speculations that competition between currently uncompetitive products may develop in the future(우리나라 2차 구두진술서 para. 108).

72) Panels should look at evidence of trend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make an assessment as to whether such trends and pattern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ducts in question are either directly competitive now or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come directly competitive in the near future(전계서 para. 10.48, 1998).

73) Japanese Panel Report, para. 6.28, 1996.

74) Brazilian Internal Taxes, BISD II/181 p. 185, para. 16 and United States – 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BISD 34S/136, p. 158.

널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분쟁제품이 경험 재라면 소비추세가 중요하며 각종 증거들을 분리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되는 시장구조의 변화에 유의한 증거물을 무시하는 관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석에 있어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3. 競爭關係에 대한 考慮要因

패널은 수입주류와 소주간에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서 이들 제품의 특성들을 평가하고 분쟁제품간의 관계가 직접적인지를 고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소주의 예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 소비용도, 판매경로와 가격 그리고 대체탄력성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表 IV-10) 참조).

#### 가. 物理的 特性

제소국은 수입 증류주와 소주의 결정적인 특징은 증류주라는 사실이며 이 밖에 다른 첨가제 등은 경쟁관계의 분석과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증류주가 증류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농축된 알콜로서 수입증류주와 소주는 같은 '증류주'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이 근본적으로(essentially) 동일하며, 증류과정 이후의 재료, 첨가제, 색깔이나 맛의 차이는 이러한 기본적 특성과 무관하고 따라서 경쟁관계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즉 제소국은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물리적 외양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고 일본 주세패널이 동일한 외양을 공유하지 않는 제품간에도 경쟁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판정을 인용한다<sup>75)</sup>.

75) competition can and does exist among the product that do not necessarily share the same physical characteristics(전게서 para. 6.68, Japan Panel Report para. 6.22, 1996).

〈表 IV-10〉 競爭關係 判定에 있어서 考慮要因과 爭點

	EC·미국	우리나라	패널(Panel) 판정
물 리 적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증류주와 소주는 증류주로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이 동일함</li> <li>· 증류과정 이후의 첨가제, 색깔, 맛, 재료는 기본적인 특징과 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간의 물리적인 특성이 상당하며 원료에 따라 제품의 질이 크게 다를 수 있음</li> <li>· 소주는 위스키와 달리 숙성되지 않고 색상, 첨가제, 맛, 여과방법이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와 수입주류는 증류주라는 공통점 외에 외양과 포장 이 유사함</li> <li>· 숙성 여부, 첨가제, 색깔, 여과방법의 차이는 결정적이지 않음</li> </ul>
사 용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류주가 사교, 갈증 해소 등의 같은 목적으로 스트레이트 또는 혼합되어 응용되고 공공장소나 집에서 반주 내지는 식사를 전후하여 소비되므로 사용용도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와 수입주류의 주요용도는 다르며 소주는 대개 반주로 사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만이 매우 한국 음식에 맞는 것은 아님</li> <li>· 양주에 비하여 도수가 낮은 소주를 마실 때 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기 위하여 왜 음식 섭취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음</li> </ul>
판 매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를 위스키잔에 넣고 얼음과 레몬을 첨가하여 '카테일'로 선전한 사실과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로 선전한 국내업체의 판매전략을 예시</li> <li>- 프리미엄 소주의 광고가 수입주류를 모방하고 있고 특히 참나무통 소주는 '숙성된' 소주라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같은 광고들은 외국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므로 GATT규정에 따라 분쟁대상인 국내시장과 무관</li> <li>- 소주의 특성을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보드카를 인용하였을 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소국이 제시한 시장변화에 따른 소주업자의 판매전략은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임</li> <li>- 증가하는 수입양주의 위협을 상쇄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소주를 개발하였고 동제품은 외양과 광고가 일반 소주와 달리 양주와 유사한 형태로 판매됨</li> </ul>

〈表 N-10〉의 계속

	EC·미국	우리나라	패널(Panel) 판정
혼합 소주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가 스트레이트로 음용되지만 위스키나 브랜디도 스트레이트로 음용됨</li> <li>- 레몬·체리소주 등 소주카테일의 소비가 증대하여 수입주류와 마찬가지로 혼합 음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믹스’ 등 혼합주는 색료 등의 첨가제와 향료가 첨가된 엑기스가 2% 이상인 주정으로서 일반소주가 아니며 혼합주의 이름에도 ‘소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li> <li>- 주세법에서도 소주가 아닌 리큐르로 분류되고 있고 판매도 갑소주세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 카테일 시장의 성장은 잠재적인 대체성을 입증하며 알콜도수에 따른 차별은 중요하지 않음</li> <li>- 위스키, 보드카 등 수입주도 스트레이트로 음용될 수 있음</li> </ul>
판매처와 유통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식 음식점과 서양식 음식점 카페 등에서 소주와 수입주류가 중복 판매되고 있어 유통경로와 판매처가 상당히 중복됨</li> <li>- 위스키의 경우에도 소주와 같이 반주로 음용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는 한식, 일식, 중식 음식점에서 반주로 판매되며 수입주류는 주로 고급음식점에서 판매됨</li> <li>- Nielsen 보고서는 이를 입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는 판매전략이나 제품의 속지도에 따라 변화하며 반주 등 사용용도 및 대중음식점 등의 구분에따른 제품분류는 GATT 제3조 2항을 협의로 해석하는 것임</li> <li>- 업소용과 비업소용의 구분에서는 수입주류와 소주간에 차이가 없음</li> </ul>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주세패널에서도 주류간의 가격차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상대가격의 변동이 절대가격보다 중요함</li> <li>- 알콜도수를 고려하면 프리미엄 소주의 경우는 세전가격이 2~3배에 불과하며 중류식 소주는 위스키보다 고가임</li> <li>- 소주의 시장점유율이 95%이므로 가중평균가격비교는 무의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가격의 차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주세의 근본적인 차이로서 비록 세율수준을 동일하게 한다하더라도 소주에 비하여 수입주류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li> <li>-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세전가격의 격차는 11배에 이르러 주세가 소비자의 기호를 왜곡할 수 없음</li> <li>- 일본 주세분쟁에서는 소주와 수입주류의 세전 가격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범위에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와 수입주류 사이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지만 두 제품간의 잠재적 경쟁가능성과 대체성에 관한 다른 증거들을 무시할 정도로 결정적이지 않음</li> <li>- 일률적인 가중평균가격비교는 프리미엄 소주의 소비증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li> <li>- 절대가격보다 상대가격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가 더 중요할 수 있음</li> </ul>

〈表 IV-10〉의 계속

		EC·미국	우리나라	패널(Panel) 판정
교 차 탄 력 성 문 조 사	소 비 변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주류시장이 개방되면서 96%를 차지하던 소주 시장을 수입 주류가 잠식함</li> <li>- Sofres 보고서에서도 소주와 수입 주류가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 주류의 소비증가에 따라 시장판도도 변화할 것임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스키 소비의 증가는 소주 수요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아 두 제품이 경쟁제품이 아님을 입증</li> <li>- EC의 중립적인 Sofres 보고서에 따르면 소주는 수입주류에 영향을 받고있지 않다고 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언급 없음</li> </ul>
	설 문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dwell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주와 수입종류주 사이에는 교차탄력성이 상당함</li> <li>- 차별과세가 소비자 기호를 창출 내지는 동결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동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교차탄력성을 입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보고서는 질문이 모호하고 가격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제품간의 경쟁관계를 주장한 결론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li> <li>- 동 설문조사는 사실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 관한 답변임</li> <li>- 소주가격이 인상할 때 소주소비가 증가하고 교차탄력성도 양과 음의 부호를 동시에 나타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가 지적한 Dodwell 보고서의 약점과 모순을 인정하나 전체적으로는 동 보고서가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li> <li>- Dodwell 보고서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증거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경쟁관계의 성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수량적인 분석은 불필요하나 도움은 됨</li> </ul>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제조국이 패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시장이나 주종간의 차이를 얼버무리고(gloss over) 예외적 사례를 과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제품간에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상당하며 원료에 따라 제품의 질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소주는 위스키와 달리 숙성되지 않고 색상, (단맛을 내기 위한) 첨가제, 맛, 여과방법 등에서 수입주류와 차이가 있다.

특히, EC 경쟁법의 예<sup>76)</sup>에서 보듯이 물리적으로는 거의(nearly) 동일한 제품이라도 특성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를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면 이는 결정적인 차이이며 ‘거의’라는 용어는 전문가인 화학자의 분석이 아닌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sup>77)</sup>. 모든 증류주가 농축된 알콜로서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는 제조국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후 추가된 첨가제나 원료에 따라 제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류단계에서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논하고 증류주가 ‘근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돗물(tap water)과 유가 식수(bottled water)가 이에 해당하지만 시장에 따라 대체재가 아닐 수 있으며 EC도 이들 제품에 대하여 차별과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78)</sup>.

패널은 물리적 특성의 유사성이 두 제품간의 실제 또는 잠재적(potential) 경쟁관계를 기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논한다. 일본 주세판정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이 고려

76) EC는 최근 코카콜라와 혼합음료의 합병분쟁에서 적절한 시장의 범위는 다른 청량음료를 제외한 콜라류의 시장이라고 판정하였다(Case no IV/M 794 Coca-Cola/Amalgamated Beverages, 1997 OJL 218, p. 15).

77) 이는 한 연구보고서(Scotch Whisky Research Institute)에 근거하여 소주와 위스키의 제작과정과 물리적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EC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EC 1차 서면보고서 Annex 8).

78) 벨기에의 경우 수돗물과 유가 식수에 대하여 각각 6%, 21%의 부가세가 적용된다(우리나라 2차 구두진술서 para. 84, 각주 82).

요인이기는 하지만 물리적 특성과 잠재적인 용도가 유사한 제품을 소비자 인식차원에서 차별화하려는 판매전략은 세율 차이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개입될 수 있다. 오히려 물리적 특성이 비슷한 두 제품은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심대상이 현존하는 경쟁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쟁의 성격(nature)인 경우에는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적절한 고려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sup>79)</sup>. 이는 제품내용이 동일한 유명브랜드 아스피린(name brand aspirin)과 상표 없는 아스피린(generic aspirin)이 판매차원에서 약간 다르게 인식된다고 하여 경쟁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sup>80)</sup>.

패널에 따르면 물리적 유사성은 특히 잠재적 경쟁과 관련하여 적절한 고려요인이다. 소주와 수입주류는 증류주라는 공통점 외에 외양과 포장도 유사하고, 숙성여부, 첨가제, 색깔, 여과방법 등의 차이는 두 제품들이 경쟁재가 아니라고 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 한 예로 럼주도 백색 럼과 갈색 럼이 있으며 진에는 노간주나무 열매가 첨가된다. 이 밖에도 한국 소주병 모양이 위스키와 유사한 일본 소주병 모양과 다르다는 사실은 미소한 차이에 불과하며 알콜 강도의 차이는 위스키

79) Such consumer perception distinctions are relevant but not deterministic when the question is the *nature* of an actual or potential competitive relationship rather than merely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xtent of competition. ...However, as discussed above, physical similarities are relevant to the inquiry,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potential competition(전계서 10.66~67).

80)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반 식수와 유료 식수와 같이 물리적 특성과 잠재적 용도는 유사하지만 시장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르고 EU와 같이 차별과세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유사한 물리적 특성이 경쟁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결정요인이 아니며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대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아스피린의 예는 수용한 반면 우리나라가 제기한 식수의 예는 비교가 불완전하고 다른 국가의 별개 상품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한국 2차 구두진술서, para. 83, 전계서 6.280, 9.23, 상소심, 각주 96, 1998).

가 물과 섞어서 소비되는 점을 상기할 때 중요하지 않다.

#### 나. 使用用途

##### 1) 飯酒 等の 消費方式

제소국은 모든 증류주가 사교, 갈증해소 등의 같은 목적으로 스트레이트 또는 혼합되어 음용되고 음식점 등의 공공장소나 집에서 반주 내지는 식사를 전후하여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사용용도가 같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폭넓은 범주의 사용용도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제소국은 고알콜주 음용에 따른 기분전환(relaxation)이 증류주의 결정적인 특성이라고 답변한다.

제소국은 우리나라의 주장과 같이 두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사용용도(all possible economic uses)에서 중복될 필요가 없고 소주도 항상(always) 반주로 음용되지 않는다고 논한다<sup>81)</sup>. 즉, 사과 파이를 만드는 데 오렌지가 사용되지 않는지만 과일에 대한 구매에서 이들이 경쟁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사용용도는 경쟁 내지는 대체재간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제소국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분쟁제품이 모든 사용용도에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캐나다 잡지분쟁<sup>82)</sup>에서 미국 잡지에 대하여 광고매체라는 의미에서는 미국 잡지가 캐나다 잡지와 경쟁관계에 있지만 오락 또는 보도용으로는 두 제품이 불완전한 대체재라고 캐나다가 주장한 데 대하여 상소심은 완전 경쟁재의 경우 GATT 제3조 1항 첫째 문장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잡지가 직접적인 경쟁재라고 판정한 사실을 인용한다.

우리나라는 우선 오렌지와 사과의 비교에서 제소국이 과일과 파이의 소비를 암묵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과일의 주요한 용

81) EC 2차 서면보고서 para. 102, 110.

82)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Appellate Body Report*, p. 28.

도가 파이에 있는 국가에서는 사과가격의 인상이 오렌지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는 특정 시장에서 오렌지와 사과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sup>83)</sup> 한편 우리나라는 제소국의 주장과 달리 경쟁제품의 모든 용도가 같아야 한다거나 소주가 항상 반주로 사용된다고 논한 적이 없으며 다만 소주와 수입주류의 주요한 용도가 다르며 소주는 대개(typically) 반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이러한 예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희석식 소주는 양주와 달리 값이 싸고 거친 맛을 지녀 매우 한국 음식에 맞기 때문에 수입양주와는 달리 식사와 함께 반주로 마시는 주류로서 대부분 소비된다. 우리나라는 제소국의 Dodwell 보고서와 달리 추측이 아닌 사실관계만을 설문조사한 AC Nielsen 보고서를 2차 구두심의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주를 반주로 하는 사람이 한식집은 73%, 일식집은 18.7%에 달하고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 고급주점에서 소주를 식사와 함께 마신 사람은 없으며 소주는 거의 대부분이(98.6%) 스트레이트로 음용되는 반면 위스키는 얼음과 같이 주로(63.8%) 소비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에 따르면 또한 극히 예외적인 소주방이나 위스키를 집에서 반주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소주와 수입주류의 용도 등이 중복된다고 하는 제소국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실을 과장하여 일반화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주류시장’에 대한 적절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sup>84)</sup>.

83) 전계서 para. 6.282~6.284, 미국 2차 구두진술서 para. 8.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사과와 오렌지가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례별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최소한 EC에서는 바나나가 다른 과일과 달리 별개의 시장을 구성한다는 EC 판정을 예로 든다(우리나라 질문 답변서 9 22쪽, United Brands Company and United Brand Continental BV v.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78 ECR 207).

84) 제소국은 소주방이 일반적인(typical) 소주의 음용장소로서 음식점이 아닌 술집이라는 제소국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소주방은 현재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식사도 제공된다고 반박한다(2차 서면보고서 EC, para. 112, 우리나라 para. 38).

Nielsen 설문자료에 대하여 제조국은 모든 일본음식점이 소주를 판매하지만 또한 이 중 40%가 양주를 팔고 약 22%의 카페 등 서양식 업소가 소주를 취급한다는 사실과 집에서 반주를 하는 사람의 경우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이 5.8%에 달하는 사실을 예로 들어 소주와 수입주의 소비용도가 중첩되는 부문이 있으므로 설문조사는 비록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제조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대사관 주변의 고급음식점과 음식점이 아닌 소주방을 예로 소주가 반드시 반주로만 음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세율이 높지 않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도 위스키 등을 반주로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고 논한다. 이 밖에도 1993년 이전에는 높은 관세율로 수입주류가 별로 없었으나 이들이 음식품과 같이 경험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Dodwell 설문조사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증거로 볼 때 소주와 수입주류 사이의 대체성은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제조국은 주장한다<sup>85)</sup>.

패널은 소주만이 매운 한국음식에 맞는 것은 아니며, 양주에 비해 알콜도수가 낮은 소주를 마실 때 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왜 음식섭취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하고 우리나라 소주가 일본 소주에 비하여 단맛을 지니고 있고 순한 맛을 강조한 선전물을 우리나라 주장과 모순된 증거로서 지적한다. 한편 제조국이 2차 패널에서 제시한 Trendscape 설문보고서의 내용이 우리측 보고서의 결과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소주가 음식 내지는 스낵에 반해 식사와 함께 음용되는가에 있지 않다. 이는 소주가 스낵과 함께 소비된다면 설문조사와 소비추세로 볼 때 소주 이외 다른 주류도 장래에 반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보드카와 위스키 등 양주도 어떤 나

85) 한편 패널이 성립하기 이전 우리나라 소주업체를 대신하여 작성되고 양자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Bain 보고서를 제시하라는 제조국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동 보고서가 민간차원에서 작성된 설문조사로서 정부소유가 아니며 만약 제조국 주장대로 소주와 수입주류가 경쟁제품이라면 이는 제조국이 입증하여야 할 문제라고 대응한다(우리나라 2차 구두진술서 para. 18).

라에서는 음식과 함께 소비되는 예가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양주와 소주와 경쟁제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추세가 중요하며 잠재적 경쟁과 미래의 경쟁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은 경직적일 수 있다고 패널은 주장한다. 패널에 의하면 이러한 판정은 일본 패널<sup>86)</sup>에도 나타나는바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소비용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의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2) 販賣戰略과 日本市場

패널은 사용용도가 특히 잠재적 경쟁·대체관계를 판정하는 데 적절한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즉 소비용도가 중복(overlap)되면 이들 제품은 지금 또는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시장이 패널의 심의대상이기는 하지만 증거의 수집이, 비록 그러한 증거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시장에 국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시장에서 분쟁대상 제품들이 경쟁관계에 있다면 이는 다른 시장에서 나타나는 추세를 확인하거나 또는 당사국들이 제시한 주장의 모순을 밝혀주는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에 의하면 일본시장에서 수입주류와 일본 소주간에 대체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일본 소주와 한국 소주가 전통주라는 측면에서 일본시장의 경쟁상태는 한국시장의 추세와 특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sup>87)</sup>.

86) the Panel based its conclusion that ... here existed direct competition ... among liquors concerned, "even if not necessarily in respect of all the economic uses to which the product may be put"(전개서 para. 6.76, Japan Panel Report, para. 5.7, 1987).

87) we find it relevant, albeit of less relative evidentiary weight, to consider the nature of competitive relationship in other markets. ... If two products compete in a market that i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government tax policies, it might shed light on whether those same two products are potentially competitive in the market in question. ... In this regard, we note in Japan there was increasing end-use substitutability ... The trends that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observed in Japan appear to be beginning in Korea(전개서 10.78).

제소국은 진로가 『Drinks International』(14쪽, 1998년 3월)에 게재한 광고에서 소주를 위스키잔에 넣고 얼음과 레몬을 첨부하여 ‘부드럽고’ 또는 ‘카테일’로 선전한 사실과 소주를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vodka like spirits)”로 선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시하여 소주와 수입주류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sup>88)</sup>.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광고들이 국내시장이 아닌 외국 수출시장을 목표로 한 판매전략 차원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의 심의에서 이러한 광고가 적절한 고려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 따르면 소주의 특성을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상기 매체에서 보드카가 인용되었으며 특기할만한 점은 제소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드카와 소주의 유사성을 선전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sup>89)</sup>.

제소국은 또한 프리미엄 소주의 광고가 수입주류와 연관된 특성, 깨끗하고 순한 맛, 숙성 및 숙취 여부를 강조하고 포장에 있어서도 수입주류를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참나무통> 소주가 숙성된(aged) 소주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인용한다. 제소국에 따르면 수입주류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등장한 프리미엄 소주는 그 시장점유율은 1997년 당시 10%에 달하는 등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소주도 수입 양주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진로의 과장 광고를 시정하도록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증거로 제시하고 프리미엄 소주의 시장점유율도 10%가 아닌 5.4%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주장한다.

패널은 그러나 한국 시장이 당해 패널의 판정대상이기기는 하지만 자료수집이 한국 시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sup>90)</sup>. 구체적으로 패널은 제소국이 제시한 시장변화에 따

88) 전계서 para. 6.200.

89) 우리나라 2차 구두진술서 para. 101.

90) However, we continue to disagree that the only relevant market for

른 한국 소주업자의 판매전략이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경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정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차 증가하는 수입양주의 위협을 상쇄하기 위하여 〈참나무통〉 등의 프리미엄 소주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프리미엄 소주는 외양과 광고가 일반소주에 비해 양주와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논하고 이와 함께 대한항공 기내 선전잡지에서 증류식 소주와 수입주가 매우 유사한 판매전략을 보임을 패널은 지적한다<sup>91)</sup>.

한편 Ferrari와 Renault Clio(프랑스 경차)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외양과 사용용도를 보유하고 있어도 상당한 가격차로 인하여 이들 자동차가 경쟁제품이 아니며 Clio가 프리미엄 소주처럼 가족의 차로 포장,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Ferrari와 경쟁할 수는 없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으로 간헐적으로 구입되는 반면 알콜주류는 일상품으로 Clio 구매자도 종종 고급의 주류를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그 비교가 부적당하다고 논한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당사국들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할 때 분쟁대상 제품들이 고알콜주가 필요한 사교적인 상황에서 소비되는 반면 반주에 따른 구분은 일시적인 그리고 협의의 해석으로 GATT 제3조와

---

collecting data is the Korean domestic market. Rather the Korean market is the one that is the subject of our decision ... It is not clear that all the advertisements were aimed completely outside the Korean market as Korea claims. The advertisements in U.S. Exhibit D appear to be in Korean as well as English(전계서, para. 10.80, 각주 392).

91) 이 밖에도 경쟁법과 GATT 제3조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내국민대우 규정은 수입차별적인 정책을 규제하고 경쟁의 가능성을 보호하는 규정인 반면 경쟁법은 기업의 구체적인 독점적 관행이나 구조에 대한 규정이므로 GATT 제3조에 나타난 시장의 정의가 좀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유럽재판소가 로마협약 제9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증류주가 유사 내지는 경쟁제품이며 바나나도 다른 과일들과 하나의 시장을 구성한다고 판정한 반면 EC 위원회는 유럽 합병(경쟁)법에 따라 위스키나 바나나 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판정한 사실을 들었다(전계서 para. 7.4, 10.81).

부속서가 만들어질 당시 회원국들이 경쟁제품의 한 예로서 오렌지와 사과가 인용된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사용용도의 중복이 있다고 판정한다.

### 3) 混合酒(ad-mixtures)의 普及

제소국에 따르면 소주가 주로 스트레이트로 음용되지만 위스키나 브랜디도 물이나 얼음과 혼용된다는 측면에서 스트레이트로 음용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주 카테일의 주류를 차지하는 레몬 또는 체리소주의 수요가 여성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 예로 1995년의 경우 소주카테일의 소비가 1,250%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주장과는 달리 소주도 수입주류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혼합되어 소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소주와 수입주류가 경쟁관계에 있음을 입증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리믹스 등 혼합주는 색료 등의 첨가제와 향료가 첨가된 엑기스(extract)가 2% 이상인 주정으로서 일반 소주가 아니며 혼합주의 이름에도 '소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주 카테일은 맛이 달고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반주로 적당하지도 않고 따라서 주세법상 소주가 아닌 리큐르로서 분류되는데 최근 판매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혼합주를 소주의 변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마치 크림과 위스키가 섞인 베일리스(Baily's)를 위스키로 취급하는 것과 같으며 베일리스도 혼합주와 마찬가지로 주세법상 리큐르에 속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92)</sup>.

패널은 리믹스와 같은 혼합주는 물, 음료 또는 과일 등과 섞어서 소비되는데 이러한 소주 카테일시장의 성장은 기본 주종간에 잠재적인 대체성이 있고 알콜도수에 따른 차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92) 전계서 para. 7.11.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정한다. 또한 패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협의의 제품분류에 따라 소주는 스트레이트로 음용되는 반면 보드카는 혼합주라는 우리나라 주장에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바 그러한 주장이 수용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음용된다는 뜻에서 소주와 위스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며 반대로 위스키가 물이나 얼음과 혼용된다면 알콜도수 기준으로 볼 때 위스키와 소주가 유사하다는 결론이 성립된다<sup>93)</sup>.

#### 다. 販賣處와 流通經路

패널에 따르면 용도는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소비의 중복성을 보여주는 반면 유통경로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업무용 소주와 수입주류는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어 유통경로와 판매처에서는 상당한 중복이 존재하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업무용 주류의 판매라고 패널은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주류는 고급업무소에서 주로 판매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미 대사관 직원이 9군데 한식집을 순방하며 조사한 결과 이들 업소들이 위스키를 취급한다고 대응하였으나 미국이 인용한 음식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당해 음식점은 외국인이 애용하는 용수산 등 고급 한식집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반박하고 서울만 하여도 몇 만개의 음식점이 있음을 지적한다<sup>94)</sup>.

좀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는 AC Nielsen 보고서에 근거하여 소주는 주로 한식, 일식, 중식 음식점과 포장마차에서 식사와 함께 판매되는 반면 서구식 주류는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고급주점 등에서

93) 전계서 각주 387.

94) 또한 EC측 Sofres 보고서(14쪽)가 '일부 수입업체들이 편의점 체인을 통하여 수입양주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고가품으로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는 양주를 보기 어렵다'고 논한 사실을 고려하였으나 우리측 보고서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판매된다고 주장한다. 즉, 소주는 값싼 반주로서 한식이나 중국식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며 수입주류가 주로 판매되는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림살롱과 단란주점 등 고급주점의 97%가 위스키를 취급하는 반면 소주를 판매하는 업소는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위스키의 유통경로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소주와 수입주류의 판매처는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제조국은 모든 일식 음식점에서 소주가 판매되는 반면 위스키와 브랜디도 각각 40%와 6.7%에 달하는 일식집에서 취급되는 등 일부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소주와 수입주류가 중복되어 판매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95)</sup>.

이 밖에도 약 22%에 달하는 서양식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소주를 취급하며 특히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소주가 위스키보다 더 많이 판매된다는 점을 제조국은 강조한다. 또한 제조국은 Nielsen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2차 구두심리에서 Trendscape 설문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주장과 달리 카페(2%)나 단란주점(8%) 등 기존 위스키 판매업소에서도 소주가 판매되며 소주가 식사와 함께 반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반면 7%에 상당한 응답자들이 위스키를 반주로 애용한다는 결과를 패널에 제시하였다<sup>96)</sup>. 이 밖에도 34%에 달하는 응답자가 집에서 위스키를 음용한다고 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사용용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 제조국의 논리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Trendscape 보고서가 패널 진행과정에서 너무 늦게 제시되어 증거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변론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패널은 동 보고서를 무시해

95) 우리나라는 Nielsen 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스키를 반주로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없으므로 일식집에서의 위스키는 식전이나 식후 음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전계서 para. 6.292).

96) 전계서 para. 6.126~6.133, 6.314~6.324, 10.24~10.25.

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rendscope 설문결과가 소주와 위스키 등의 판매경로가 상당히 다르다는 우리나라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97)</sup>. 더욱이 66%에 달하는 응답자가 소주를 반주 외 다른 용도로 음용한 반면 3%에 불과한 응답자가 음식(food) 없이 소주를 음용하였다는 결과는 Nielsen 보고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으며 이는 음식이 한글로 음·식료품(food and drink)을 뜻하는 용어로 안주까지 포함한 식사로 응답자가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음식과 함께(with food and drink)’라는 질문이 반주를 전후한 음용습관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질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용도는 판매전략이나 제품의 숙지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음식과 식사 등의 사용용도 또는 고급 내지는 대중음식점 등의 구분에 따라 GATT 제3조 2항의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소주가 현재 전통적인 한국음식과 함께 애용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테킬라와 같이) 소주만이 매운 음식과 맞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증거로 볼 때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협의의 사용용도에 서도 장래에 다른 주종이 부분적으로나마 소주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sup>98)</sup>. 패널은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유통경로나 판매처에서 유의한 구분은 업소와 비업소용이며 이러한 기준에 입각할 때 수입주류와 소주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97) Trendscope 보고서를 반박할 수 있는 시한(1주일)이 매우 짧고 한국어로 된 질문서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Nielsen 보고서가 2차 서면보고서에 포함되어 제소국이 그 다음 기회인 2차 구두심리에 당해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고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1주일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이라는 점에서 DSU 규정에 우리나라의 변론기회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린다(전계서 para. 10.24~10.25).

98) Korean food may be spicy, but it is not uniquely so in such a manner that soju and only soju is suitable for consumptions with meals (전계서 para. 10.76).

라. 價格

제품간의 가격차이는 미국이나 EC 경쟁법상 경쟁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이는 일본 주세패널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EC가 ‘소비행태가 가격에 의하여 영향받는다’<sup>99)</sup>고 주장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EC측 설문조사인 Dodwell 보고서상의 제품별 가격을 이용하여 위스키와 희석식 소주 가격의 차이가 6.3~12배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지난 3년간 소주와 위스키의 가중평균가격이 세전단계에서 11배 이상 격차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表 IV-7〉 참조)<sup>100)</sup>. 소주와 수입 주류 사이의 가격격차는 우리나라 주세와 일본 주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從價稅 체계하에서 비록 세율수준을 일치시키더라도 소주에 비하여 수입주류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이들 제품간에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表 IV-7〉 燒酎와 위스키 稅前價格 比較

(單位: 360ml, 원, 배)

	1995	1996	1997
일반소주	289.94	305.11	322.46
위스키	3401.27	3582.09	4111.50
배수	11.73	11.74	12.75

資料: First Sub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Panel on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 30.

99) ...consumption patterns are affect by prices, (which in turn are affected by tax differentials)(우리나라 2차 구두 진술서 para. 57, EC 2차 서면보고서 para. 108).

100)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Dodwell자료에 기초할 때 브랜드, 보드카, 진, 럼의 가격은 각각 일반 희석식 소주가격의 19.2배, 5.7배, 5배 6.2배라는 자료를 제시한다(전계서 para. 6.248).

제소국은 일본 소주와 수입주류 사이의 상당한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세패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Dodwell 보고서와 같은) 상대가격의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대응이라고 주장한다<sup>101)</sup>.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EC 경쟁법상<sup>102)</sup> 상대가격뿐만 아니라 절대가격도 고려됨을 지적하고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세전가격 격차로 볼 때 주세가 소비자의 기호를 왜곡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 주세분쟁에서 ‘주세와 부가세를 제외하면 일본소주와 수입주류의 가격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범위내에 있으며 따라서 모든 주류가 가격면에서 최소한 잠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제소국의 주장을 인용하고 차별적 과세가 아니라면 상당수의 수입주류가 소주보다 값이 저렴하다고 논한 패널보고서를 상기한다<sup>103)</sup>. 이와 관련하여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은 ‘상대가격’과 무역에서의 유용성 그리고 기타 경쟁관계에 기초하여 상품간의 대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1996년 일본 패널이 언급한 사실을 우리나라는 지적한다<sup>104)</sup>. 제소국은 우선 10달러의 식당용 포도주나 100달러에 달하는 보르도 포도주가 가격이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여 동종제품으로 간주되

101) 전제서 para. 6.102.

102) Commission Decision of 22 July 1992, Case No. IV/M 190 Nestle Perrier OJL 356, p. 1

103) The Community argued that the retail prices of shochu and of the other distilled spirits and liqueurs are within a relatively short range once the liquor taxes and the ad valorem taxes are deducted. This, in the Community's view, confirms that all of them are, at least potentially, competitive in terms of price(Japan Panel Report para. 4.82, 1996).

104) Japan Panel Report para. 6.29, 1996: The panel noted in this respect, that the 1987 Panel report has reached its conclusion based essentially on the substitutability among the products as a result of “their respective prices, the availability through trade and their other competitive relationships”. 우리나라 2차 구두진술서 para. 78 참고. 그러나 1987 일본 주세보고서의 본문에 의하면 ‘소비자 기호’가 상대가격 등에 따라 변하므로 분쟁제품들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결정하였다(Japan Panel Report para. 5.7, 1987).

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05)</sup>. 제조국에 따르면 같은 위스키 사이에도 가격격차가 10배 이상 날 수 있고 알콜도수를 고려하면 일반 위스키의 세전가격은 프리미엄 소주가격의 2~3배에 불과하며 증류식 소주가격은 위스키가격보다 고가라는 점 그리고 가중평균가격이 소주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일반 희석식 소주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비교는 무의미하다. 제조국은 또한 주류는 자동차와 달리 소비자가 상황과 가격에 따라 고가인 증류주를 종종 소비하기도 하며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류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고가라는 자료<sup>106)</sup>를 제시하고 이는 일본 주세패널이 논의한 대로 차별적인 조세체계 내에서는 판매비용과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주로 고급주가 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07)</sup>.

이러한 제조국의 주장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현행 주세체계는 從價稅로서 고가의 수입제품에 비하여 저가제품에 더 많은 세부담을 부과하는 從量稅가 아니며 따라서 수입구조를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는 제조국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從價稅 체계하

105) 전계서 para. 6.149. 우리나라는 수돗물과 유가 식수의 예를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나라가 가격차만을 가지고 경쟁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특성, 맛, 용도 등에서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차이가 있으며 만약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고가를 지불하려 한다면 이는 (제조국이 주장하는) '미미한 차이'가 소비자에게 (건강 등의 이유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이와 같은 제조국의 주장은 사해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일반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논한다(전계서 para. 6.277~6.281). 마찬가지로 값싼 포도주와 고가의 보르도 포도주도 비록 물리적 특성이 유사하더라도 반주 등 용도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전계서 para. 7.16).

106) 제조국에 의하면 1997년의 경우 스카치 위스키의 평균수출가격(70 cubic litre bottles)은 2.79파운드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 수입 스카치의 평균가격은 4.42파운드이다(전계서 para. 7.3).

107) the Panel noted that one of the consequence of the Japanese tax system was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cheaper imported brands of spirits and whisky/brand to enter the market(Japan Panel Report para. 6.33 d).

에서는 가격배수가 세율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특히 제조국은 한국시장에서 예외적인 사실을 사용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컨대 제조국이 프리미엄 소주의 대표로 제시한 <김삿갓>은 그 가운데 가장 고가이지만 수요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소주시장 소비량의 5%를 차지하는 프리미엄 소주가 전체 소주시장을 대변할 수 없다.

또한 가격격차 축소의 방법으로 알콜도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리적 특성에서 알콜도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국이 제시한 수치와 달리 알콜도수를 감안한 위스키의 세전가격이 일반 소주보다 약 8배 비싸며 프리미엄 소주 가격보다는 약 4.7배나 높다. 이와 같이 만약 주세가 동일하다면 수입주류의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들이 반주로서(소주 대신) 수입주류를 음용하리라는 주장은 가격차이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이다.

패널은 소주와 수입주류 사이에 상당한 가격차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격차가 두 제품간의 잠재적 경쟁 가능성과 대체성에 관한 다른 증거들을 무시할 정도로 결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sup>108)</sup>. 패널에 따르면 일률적인 가중평균가격 비교는 수입주류와 경쟁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리미엄 소주의 소비증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데 프리미엄 소주는 일반 소주보다 약 2배의 고가로서 일반 위스키와 보드카는 프리미엄 소주가격보다 각각 4배, 4.5배 비싸다. 한편 패널은 위스키 주종간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당사국이 이

108) ...we found that, while there currently are significant pric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overall the differences were not decisive. ...When examined, as a whole, the price differences are not so large as to refute the other evidence of potential competitiveness and substitutability, and there was evidence that the relative price movement are likely result in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전계서 10.94).

들 제품은 동종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과 증류식 소주가 일반 위스키보다 가격이 약 2배 높은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일본 패널은 알콜도수를 고려한 가격비교를 하였는데<sup>109)</sup> 이러한 알콜도수 조정이 감안되지 않을 경우 보기 보다 일본시장에서의 주류가격의 차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류가격의 차이와 유사하다고 패널은 주장한다<sup>110)</sup>.

이 밖에도 주류는 자동차에 비하여 저가의 비내구재로서 일반 소비자도 큰 부담없이 고가의 수입주류를 구매할 수 있고 특히 상대적 가격변동에 의한 소비변화가 절대가격보다 더 중요하며 환율과 정부정책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입구조와 관리 및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절대적 가격차이의 비교는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sup>111)</sup>.

패널의 최종적인 판정은 종합적으로 볼 때 가격차이가 잠재적 경쟁에 관한 여타 증거를 반박할 정도로 크지 않고 소주와 수입주류가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고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대가격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가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 마. 交叉彈力性

일본 소주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주분쟁에서도 수입양주와 소주 사이의 교차탄력성을 입증하는 문제는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주세패널 보고서의 심리내용과 함께 1989년 세계개혁으로 세율이 인상된 일본 국산양주 시장을 수입주류와 소주가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차탄력성을 설문조사한 ASI

109) Japan Panel Report, Annex VI, Figure 10, 1996

110) When such adjustments (for alcoholic content) are removed, it seems that the absolute price ratio differentials in the present case are more similar to those in Japan than otherwise appears(전계서 각주 408).

111) 그러나 패널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주장에 반해 從價稅가 어떤 방식으로 從量稅와 달리 일반관리비용과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설명하지 않는다(전계서 para. 6.252, 각주 410).

보고서가 판정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제시한 설문조사와 수리분석은 내국세로 인한 왜곡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널이 수용하지 않았으며 패널은 오히려 일본자료에서 상당한 교차탄력성을 발견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도 일본과 유사하게 Dodwell 보고서가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었는데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시장점유율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유감스럽게도 패널판정에서 누락되었다<sup>112)</sup>.

### 1) 1990年代 酒種間 消費의 變化

제조국은 1990년 이후 서울인하와 함께 우리나라 주류시장이 개방되면서 소주가 약 96%를 차지하던 증류주 시장을 위스키 등 수입주류가 잠식하기 시작하여 소주의 소비가 둔화 내지는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소주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당시 94%까지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조국에 따르면 1990년~1996년 사이에 위스키 주세율과 관세율은 각각 200%에서 100% 그리고 70%에서 20%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위스키가격의 하락과 3%에 이르는 위스키 소비의 시장 점유율 증대는 소주의 희생(at the expense of soju)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113)</sup>. 이 밖에도 프리미엄 소주가 개발되기 전까지의 소주의 판매부진 그리고 1997년 이후 IMF 사태로 인한 위스키 등의 판매감소를 동반한 소주의 소비증대는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경쟁관계를 증명하는 시장추세라는 것이 제조국의

112) 전게서 para. 3.10, 6.206, 6.260(우리측 1차 서면보고서 para. 145-147, 2차 서면보고서 para. 32-36; US 1차 서면보고서 para. 40, 2차 서면보고서 para. 75-77, EC 1차 서면보고서 para. 40, 2차 패널 구두진술서 6쪽 참고).

113) EC 패널 1차 구두진술서 6쪽: These tax and tariff changes were followed by a substantial reduction of prices and a considerable increase in sales of whisky. This increase took place at the expense of soju. ... Soju's declining market share in an expanding market evidences that soju and whisky are in direct competition(전게서 para. 5.139~5.142 참조).

입장이었다.

이러한 제조국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가격이 인하되면 위스키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위스키 수요가 자기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란 뜻으로 당연하지만 이러한 위스키 수요의 증가가 소주수요의 감소를 대가로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 따르면 위스키 소비가 소주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가상적인 위스키-소주 시장에서 위스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겠지만 이는 소주판매가 위스키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가상적인 위스키-칫술 시장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서 위스키와 칫술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제조국의 주장은 위스키 소비가 소주보다 더 많이 증가한 사실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sup>114)</sup>.

위스키의 소비가 소주를 대가로 증대되었다는 제조국의 주장이 뒷받침되려면 제조국은 소주의 수요가 위스키가격에 탄력적임을 보여야 한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주류소비에 대한 통계는 제조국의 주장과 반대로 소주와 수입증류주 사이에 경쟁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우리나라는 <表 IV-8>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위스키 수입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지만 제조국의 주장과 달리 소주의 소비점유율은 1992~1997년 사이에 대략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당시 위스키 소비의 감소가 소주의 수요를 증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115)</sup>.

한편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날 우리나라에 수입주류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제조국 주장에 대하여 분쟁대상은 과거 개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아닌 현재 주류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류

114) 전계서 para. 6.259~6.264, 우리나라 2차 서면보고서 para. 32~36.

115) 2차 구두진술서, 2쪽(Brian Hindley 교수).

〈表 IV-8〉 위스키·燒酎 消費와 需要變化(前年 對比)

(單位: kl, %)

	1993	1994	1995	1996	1997
소 주	743,964 (2.9)	765,180 (2.9)	761,839 (-0.4)	787,195 (3.3)	813,583 (3.3)
위스키	12,537 (3.0)	16,670 (33.0)	22,555 (35.3)	28,479 (26.3)	24,530 (-13.9)

資料: 1차 패널 구두진술 미국 질문 9번에 대한 우리나라측 답변과 2차 패널 구두진술서.

시장에 대하여 EC가 발주한 Sofres 보고서는 주세분쟁과 관계없이 제작된 (중립적인) 보고서로서 Sofres 보고서에 따르면 “소주는 수입주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논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 수익성이 높고 발전중인 한국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국제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sup>116)</sup>.

이에 대하여 제소국은 Sofres 보고서는 Dodwell 보고서와 달리 소주와 수입주류간만의 경쟁관계를 연구한 보고서가 아니며, 만약 모든 주류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Sofres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시장점유율을 각 주종별로 추산하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소주는 수입주류에 의하여

116) EC Commission, Your Guide to the Exporting Food products to Korea, Alcoholic Beverages, p.12, 22, 1997: Soju in particular remains (virtually) unaffected by imported alcoholic drinks. ... The Korea market is no longer a market protect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market shares contested by local producers. In fact, it is becoming a truly global market, where multinational companies convene to compete with each another for the lucrative and promising Korean market(괄호안은 EC Guide에는 있으나 우리나라 서면보고서에는 빠진 어휘임. 우리나라 1차 서면보고서 para. 110. 2차 구두진술서 para. 20, 전계서 para. 6.225 참조).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remains virtually unaffected)”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virtually’는 소주가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제한적이지만 소주와 수입주류가 경쟁하고 있으며 ‘remains’는 향후 수입주류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판도도 변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소국은 논한다<sup>117)</sup>.

## 2) Dodwell 報告書<sup>118)</sup>

제소국은 소주와 수입증류주간의 대체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본소주 분쟁에서 제시된 ASI보고서와 같은 형태의 설문조사인 Dodwell 보고서를 제시하고 주류가격이 변화할 때 주류선택이 변화한다는 사실로서 분쟁대상 주류간 경쟁·대체관계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회색식 소주의 가격이 현재보다 20% 상승하고, 수입증류주가 설문조사에 제시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하는 경우, 갈색 증류주를 선택하는 응답자는 15.2%에서 28.4%로 증가하고 백색증류주를 선택하는 응답자는 13.8%에서 23.8%로 증가한다<sup>119)</sup>.

우리나라는 Dodwell 보고서에 관하여 표본의 왜곡과 질문의 모호함 등을 예로 들어 소주와 수입주류의 상당한 가격차와 소비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주가격이 약간 인상될 때 상당수 소비자가 수입주류를 선호하리라는 Dodwell 보고서의 결론은 지나치다고(fanciful) 주장한다. 특히 판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행된 시장조사는 상당히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EC 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조사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이와 달리 소주분쟁과 관련없이 제작된 Sofres 보고

117) 전계서 para. 6.121~6.125.

118) 전계서 para. 5.143~5.149, 5.211~5.229, 6.110~6.133, 6.207~6.214, 6.314~6.325, 10.87~10.92.

119) 미국 1차 서면보고서 para. 78~85.

서는 우리나라 시장현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sup>120)</sup>.

이 밖에도 동 설문조사는 사실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 관한 답변으로 사실을 추론하는 연구로서 Dodwell 조사결과의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우선 다른 모든 주류가격이 일정하고 소주가격만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소주를 선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상향하는 수요곡선을 의미하며 이는 '미시경제의 기본 이론과 정면 대치되는'<sup>121)</sup>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일본주세 패널에서 미국이 자기가격이 인상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일본측 수요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소주가격이 인상될 때 수입주류의 선택비율이 어떤 경우 증가하고 다른 경우 감소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사결과가 Dodwell보고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위스키가 소주와 혼용된다면 보완재가 될 수 있지만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경우에는 대체재로 나타나는 일관되지 못한 Dodwell 보고서의 결과이며 또한 위스키의 가격이 소주가격보다 몇 배나 비싼데 소주가격이 100원(0.06 달러, 1998년 3월 기준) 인상될 때 프리미엄 위스키와 일반 스카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각각 41명에서 36명 그리고 56명에서 49명으로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表 IV-9> 참조)<sup>122)</sup>.

한편 설문 응답자가 20~49세 사이의 3대 도시민으로 소주와 양

120) 우리나라 1차 서면보고서 para. 102~111.

121) Yet a finding that consumers react to an increase in the price of a product by increasing consumption is contrary to one of the fundamental tenets of microeconomic theory... No credence could be given to a model that states, with a high degree of statistical robustness, that demand for a good increases because its price increase(Japan Panel Report para. 4.86, 1996).

〈表 IV-9〉 Dodwell 設問調查 結果

(單位: 원, 名)

	현재가격	소주가격의 변화		
		1,000	1,100	1,200
프리미엄스카치	17,700	41	41	36
일반스카치	10,150	50	56	49
코냑	28,300	9	9	13
프리미엄소주	2,200	87	101	106
일반소주		313	293	296

資料: 우리나라 서면 답안보고서 4, p.6.

주를 각각 최근 1개월 및 3개월 내에 소비한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표본이 전체 주류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소주소비자를 대표하지 않고 수입주류에 편향된 사람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응답자 중 72%만이 현재가격에서 소주를 선택한다고 답변한 데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왜곡뿐만 아니라 소주 대비 백색증류주 또는 소주 대비 갈색증류주로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심화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의하면 질문이 특정 가격에서 수입주류를 선택하겠느냐로 되어 있어 소비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할인판매 시 일회적으로 양주를 선택할지 여부로 응답자가 질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에서 Dodwell 보고서는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일관성 및 객관성이 의심된다<sup>123)</sup>.

이러한 우리나라 주장에 대하여 제소국은 동 보고서가 실제 제품간의 교차탄력성을 특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지 교차탄력성의 증거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로서 예외적인 사례에도 불

122) 전게서 para. 7.13(v).

123) Note on the Report of Dodwell marketing Consultants Ltd on the Korean Spirit Market(우리나라 1차 서면보고서 Attachment 2).

구하고 전체적으로 Dodwell 보고서는 가격에 따라 소주 대신 수입 증류주가 선택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124)</sup>. 한편 우리나라 시장과 같이 수입주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지 않았던 시장에서 현재 소비행태에 대한 실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우며 Dodwell 보고서와 같은 가상적 질문을 통하여 전체적인 소비경향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제조국은 주장한다. 특히 제조국에 의하면 주류는 경험재로서 소비습관은 시간을 두고 변화하는 반면 일본주세 패널이 논의한 대로 정부 정책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동결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수입규제가 풀린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입주류를 음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류 음용에 수반되는 비용이 소득에 비하여 낮고 이따금씩 소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소비행태의 변화가 아닌, 가격이 인하될 때 수입주류를 매입해 보겠느냐는 질문도 문제가 될 수 없고 Dodwell 보고서는 일본 주세패널이 수용한 ASI 보고서와 같은 방식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제조국 주장이다<sup>125)</sup>.

패널은 Dodwell 보고서의 약점과 모순을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 보고서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검토대상 제품이 특히 식음료일 때 이를 소비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Dodwell 보고서의 설문대상이 한국시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패널은 동의하지 않고 가격변화에 따른 응답을 질문함에 있어서 현재

124) 이 밖에도 제조국에 따르면 소주는 위스키에 비하여 대량으로 소비되므로 소주 시장점유율에 비하여 소주를 선호하는 응답자 수가 작을 수 있다(전계서 para. 6.112).

125) ASI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만약 ASI 보고서가 Dodwell 보고서와 같은 문제점이 없다면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Dodwell 보고서와 같이 결합이 많은 설문조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논한다(전계서 para. 7.24).

소비현황에 대한 질문이 유용한 답변을 유도할 수 없다.

패널에 따르면 특히 GATT 제3조의 목적이 경쟁기회의 보장이 라는 측면에서 현재 실제 행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주장은 잠재적 경쟁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일본 주세 상소심은 그러한 설문조사가 GATT 제3조 2항 두번째 문장에 따른 판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한 점을 상기하고 Dodwell 보고서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증거와 일관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경쟁관계의 성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수량적 분석은 필요하지 않지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sup>126)</sup>.

#### 4. 테킬라와 메스칼(Tequila and Mescal)

##### 가. 멕시코

우리나라 주세분쟁에는 제소국인 미국과 EC 이외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3자로 참여하였다. 캐나다는 보호효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멕시코는 테킬라와 메스칼이 소주와 동종 내지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에 따르면 소주와 수입주종 사이의 차별과세가 일견하면(*prima facie*)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멕시코가 GATT협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 내지는 무효화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멕시코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한다.

126) Indeed, it must be recalled that the Appellate Body confirmed that such surveys are not the decisive factor in decision making under Article III:2, second sentence. We do not find the Dodwell study decisive, but it is consistent with other information and is therefore helpful evidence. When dealing with an inquiry in the nature of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s, quantitative analysis is helpful, but not necessary(전계서, para. 10.92).

구체적으로 소주는 다른 증류주와 마찬가지로 HS코드 2208에 속하는데 기존 판례의 판정에 따르면 동종제품 여부는 사례별로 특정 시장에서의 용도나 소비자 취향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테킬라와 메스칼은 칵테일로 이용되지 않고 거친 맛 때문에 매운 음식과 함께 음용된다는 점에서 소주와 용도가 동일하다. 이들 제품은 물리적 외양도 같고 소주와 마찬가지로 테킬라와 메스칼은 숙성된 고급의 제품과 숙성되지 않은 백색의 테킬라와 메스칼이 있는데 전자는 주로 잘 포장되어 선물로 사용된다. 반면 후자는 회석식 소주와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소비된다.

멕시코는 비록 관세분류가 동종제품을 판정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소주와 테킬라 및 메스칼은 같은 HS코드 2208.90에 속하며 이러한 HS 6단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가장 구체적 분류로서 일본 주세 상소심에서도 ‘충분히 구체적인 관세분류는 제품의 유사성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한 판정을 인용한다<sup>127)</sup>. 한편 테킬라와 메스칼에 대한 주세와 교육세율은 104%로 소주보다 훨씬 고율이며 만약 이들 제품이 소주와 동종제품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고 멕시코는 주장한다. 이는 일본 주세패널이 일본 소주와 같은 제품이 한국에도 생산되고 일본 소주는 보드카를 제외한 HS코드 2208에 속하는 모든 증류주와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고 판정하였기 때문이다<sup>128)</sup>. 결론적으로 멕시코는 소주에 대하여 다른 증류주의 관세율(15% 또는 20%)보다 높은 관세율(30%)을 부과함으로써 일본 소주와 같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자국 소주산업을 보호하고 주세를 통하여 수입증류주의 유입을 통제하는 2단계 보호구조를 우리나라가 유지해 왔다고 주장한다<sup>129)</sup>.

127) If sufficiently detailed, tariff classification can be a helpful sign of product similarity (Japan Appellate Body Report Section H, para. 1 (a), 1996).

128) Japan Panel Report para. 6.35.

##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우선 멕시코가 우리나라 주세법 등이 GATT협정에 따른 멕시코의 이익을 침해 내지는 무효화하였다고 주장하려면 DSU 제 10조 4항<sup>130)</sup>에 따라 정상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논하고 제소국이 테킬라를 한두번 형식적으로 논의한 반면 메스칼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3자인 멕시코가 분쟁의 범위를 확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멕시코가 언급한 2단계 보호구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소주의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경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교역상대국도 소주의 관세인하를 요청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 의하면 멕시코는 GATT 제3조 2항의 법리적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바, 멕시코에서 테킬라 등이 매운 멕시코 음식과 함께 음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멕시코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킬라와 메스칼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경우 음용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멕시코는 우리 시장에서 테킬라 등이 소주와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멕시코 주장과는 달리 관세의 세분류는 소주(HS 2208.90.40)와 테킬라(HS 2208.90.70)가 다르며 제소국도 멕시코처럼 HS 2208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소주와 동종제품이라고 확대 주장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

한편 동종제품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일부로서 관세분류의 유용성에 관한 일본 상소심의 결정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제품이

129) 전계서 para. 8.7~8.23.

130) If a third party considers that a measure already the subject of a panel proceeding nullifies or impairs benefits to it under any covered agreement, that member may have recourse to n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is Understanding. Such a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e original panel where possible(DSU 제10조 4항).

너무나 유사하여 동종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킬라와 메스칼이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물며 동종제품 여부는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소비자 취향과 습관은 국가마다 다르다는 일본 주세판정을 인용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일본과 다르며 멕시코시장과도 동일시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sup>131)</sup>.

## 5. 패널判定

### 가. 競爭·代替關係에 관한 決定

패널은 제시된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어느 정도의 경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잠재적 경쟁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맺는다<sup>132)</sup>. 프리미엄 소주의 개발과 성공에서 보듯이 한국 소주업체의 생산 및 광고전략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장이 차별화된 두 제품이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되기 시작된 사실은 잠재적 경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 패널의 주장이다. 반면 반주와 같은 소비용도에 초점을 둔 판매전략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일시적 요인이므로 잠재적 경쟁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으며 GATT 제3조의 목적은 시장점유율이 아닌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바 경쟁기회란 판매전략의 변화를 초월하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패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용용도의 정의는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지 않는 협의의 해석으로서 GATT 기안자들이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의 예로 사과와 오렌지를 인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통구조에 있어서 유의한 구분은 업소 대 비업소용 소비인

131) 전계서 para. 8.24~8.34.

132) There is evidence both of some level of current actual competition and significant potential competition(전계서 para. 10.97).

데 소주와 수입주류는 업소와 가정에서 공히 소비된다.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가격격차는 경쟁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제소국 입장에 가장 반대되는 증거이지만 패널은 이러한 가격차가 분쟁대상제품 사이에 잠재적 경쟁관계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크지 않고 또한 가격은 환율 등 외부조건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sup>133)</sup>.

패널은 Dodwell 보고서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격변화에 따른 잠재적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로서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판이 보고서의 결론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고 Nielsen 보고서와 Trendscape 보고서에도 이러한 잠재적 경쟁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존하는 시장이 정부의 주세 및 규제에 의하여 국산품에게 편향된 소비자 기호를 창출할 수 있음을 지적한 기존 패널판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물리적 외양, 사용용도, 유통경로 그리고 가격 등의 증거로 볼 때 소주와 수입주류는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이 패널의 결론이다.

#### 나. 類似하지 않은 課稅와 保護效果

패널은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해당하려면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산품보다 수입제품에 대한 세부담이 높고 세부담의 차이가 특정

133) The current price levels are probably the most telling evidence contrary to complainants assertions. In our view, the Dodwell study is a useful piece of evidence showing the potential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under various pricing scenarios. It is not perfect evidence, but we do not find the Korean critique conclusive in rebutting its basic premises. Indeed, we find confirmation of some of the basic points about potential competitiveness in both the Korean end-use survey conducted by the AC Nielsen study and the Trendscape survey. Furthermore, we do not accept that the price differences in the present case establish that the products in question are not even potential competitors.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by extraneous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s(전세서, para. 10.98).

사례에 있어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해야 한다는 일본 주세결정을 인용하면서 교육세를 포함한 회석식 소주의 세부담은 38.5%인 반면 수입주류에 대한 세부담은 리큐르 55%, 보드카, 테킬라와 혼합주 104% 그리고 위스키와 브랜드의 경우 130%로서 세부담의 차이가 명백히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고 결정하였다.

패널에 의하면 일본 주세패널과 상소심은 유사하지 않은 과세의 규모 자체가 보호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주세가 적용된 사실의 증거가 된다고 판정한다. 또한 보호효과에 관한 검토는 디자인과 설계 및 구조 등 주세법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객관적 요인을 심의해야 한다는 일본 주세 상소심에 근거할 때 상당한 과세부담의 차이 외에도 우리나라 주세와 교육세법은 차별적이라는 것이 패널의 판정이다<sup>134)</sup>. 주세법에 의하면 소주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 수입 증류주는 각기 주종의 한 두 가지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되는 외국 소주가 거의 없으므로 차별적 정의에 따른 혜택은 국산 소주업체에게 부여된다.

#### 다. 同種製品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는 동종제품의 경우 패널은 소주와 보드카가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례에 있어서 제소국의 주장처럼 두 제품이 동종제품이라는 결론을 맺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일본 상소심이 일본 소주판정에서 논한 것처럼 당해 제품들이 동종제품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경쟁제품인가에 따라 판정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134) 전계서 para. 10.102.

## 6. 패널의 結論

패널은 제시된 증거에 기반할 때 희석식과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코냑,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리큐르 그리고 혼합주는 직접적인 경쟁·대체상품으로서 우리나라는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수입품을 과세하였으며, 이러한 차등과세는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적용되었다고 판정하고 따라서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우리나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GATT 규정에 명기된 의무와 합치되도록 요구하기를 권고하였다<sup>135)</sup>.

---

135) In light of the findings above,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oju (diluted and distilled), whiskies, brandies, cognac, rum, gin, vodka, tequila, liqueurs and ad-mixtures ar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Korea has taxed the imported products in a dissimilar manner and the tax differential is more than de minimis. Finally, the dissimilar taxation is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tection. 11. 2. We recommends that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quest Korea to bring the Liquor Tax Law and the Education Tax Law into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전계서 para. 11.1).

## V. 우리나라 WTO 酒稅紛爭：上訴審 判定과 履行

### 1. 上訴根據와 經過

우리나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GATT 제3조 2항에 명기된 의무를 저촉하였다는 패널의 판정과 법적 해석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10월 20일 DSU 제16조 4항에 근거하여 WTO 분쟁 해결기구에 상소하였고 그 해 11월 24일 ‘상소심의 과정에 대한 규정’<sup>1)</sup> 제27조에 따라 구두심리가 개최되었다. 상소심의 법적 권한은 원래 DSU 제17조 6항<sup>2)</sup>에 의하여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되는데 우리나라는 상소심 심리를 통하여 패널이 범한 법적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불가피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상소심에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요청에 근거하여 상소심은 다음의 5가지 사항에 대하여 패널이 오류를 범하였는지를 심리하기로 하였다<sup>3)</sup>. 1) 1994년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의 부속서 주해에 있는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상품’의 해석과 적용 2) 1994년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보호하기 위하여’의 해석과 적용 3) 입증 책임의 배분에 대한 규정의 적용 4) DSU 제11조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의 수행 5) DSU 제12조 7항에 따른 판정과 권고에 대한

---

1)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2) 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3)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75/AB/R and WT/DS84/AB/R, 1999(이하 상소심).

근본적 이유의 열거 등이다. 상기 5가지 조항에 대한 심리 결과 상소심은 지난 1999년 1월 18일 패널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수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분쟁해결기구가 2월 17일 상소심의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9일 WTO에 이행의사를 통보하였으며 DSU 제21조<sup>4)</sup>에 근거하여 이행기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미·EU 양자협상이 두 차례에 걸쳐 지난 3월 9~10일과 29~30일 개최되었다. 이러한 비공식협약에서 세율수준과 이행기간 그리고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이행기간의 설정을 위하여 지난 1999년 5월 12일 제네바에서 중재를 위한 WTO 구두심리가 열려 6월 7일 이행기간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2. 上訴 및 判定內容<sup>5)</sup>

### 가. 直接競爭 또는 代替商品

경쟁관계에 대하여 상소심이 인식하고 있는 패널 판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패널에 따르면 ‘분쟁 대상제품간에 현존하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관한 충분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며 제소

4) DSU 제21조에 따르면 권고 및 판정의 즉각적 준수가 바람직하지만 즉각적 이행이 실현 불가능하면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전제로 회원국이 제안하는 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기간이 이행기간이 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가 지정하는 중재인(arbitrator)이 구두심리를 통하여 결정한 기속적인(binding) 이행기간내에 회원국은 WTO규정과 합치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중재인이 정하는 합리적 이행기간은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보다 단축 내지는 연장될 수 있다.

5) 상소심에서 제시된 제소국의 주장은 기존 패널에서의 논의나 패널 등의 의견과 유사하므로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국이 잠재적 경쟁관계에 대한 상당한 입증증거를 제시하였다<sup>6)</sup>. 그리고 ‘재화들이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는 소비자들이 특정 욕구 내지는 취향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이들 제품을 대체재로 간주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sup>7)</sup>’에 있으며 당해 분쟁에 있어서는 제품의 특성과 사용용도 그리고 유통경로와 가격의 비교가 필요하다. 패널은 또한 “수량적인 경쟁의 중복정도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패널이 경쟁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방법론적인 기초에도 핵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탄력성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는 적절하지만 유일하거나 결정적이지 않다”<sup>8)</sup>고 주장한다.

패널에 의하면 수량적 측면에서 경쟁이 중복되는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부의 보호정책에 따라 경쟁관계가 왜곡되고 과소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의 본질이 아닌 경쟁의 수량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GATT 제3조에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무역효과의 검증 을 요하는 것과 같다고 패널은 경고한다<sup>9)</sup>. 한편 패널은 경쟁에 대한 평가가 시간적인 측면(temporal dimension)이 있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패널이 먼 장래에 대한 추측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소비경향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러한 경향과 패턴에 기초하여 분쟁제품들이 현재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볼 때

6) 전계서 para. 10.98, 상소심 para. 109.

7) an assessment of whether there is a direct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requires evidence that consumers *consider or could consider* the two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as alternative ways of satisfying a particular need or taste (전계서 para. 10.40).

8) focus should not be exclusively on the quantitative extent of the competitive overlap, but on the methodological basis on which a panel should assess the competitive relationship(전계서 para. 10.39).

9) a focus on the quantitative extent of competition instead of the nature of it, could result in a type of trade effects test being written into Article III cases(전계서 para. 10.42)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sup>10)</sup>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관한 증거의 중요성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재의 경우 특히 추세가 중요하며 증거의 각 부분을 따로 분석하고(이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함축성 있는 증거를 무시하는 분석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sup>11)</sup>.

그러나 우리나라는 패널이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잠재적 경쟁에 근거하고 한국시장과 일본시장 그리고 잘못된 제품을 서로 비교함으로써”고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1) 潛在的 競爭과 競爭機會(Potential Competition and Expectation)

우리나라는 패널이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의 용어, 문맥,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잠재적 경쟁’의 역할을 폭넓게 정의하였고 그 결과 잠재적 경쟁이야말로 패널결정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분쟁대상 조치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재화를 고려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GATT 제3조 2항

10) evidence of trend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make an assessment as to whether such trends and pattern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ducts in question are either directly competitive now or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come directly competitive in the near future(전계서 para. 10.48).

11) ...We will not attempt to speculate on what could happen in the distant future, but we will consider evidence pertaining to w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occur in the near term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How much weight to be accorded such evidence must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 If one is dealing with products that are experience based consumer items, then trend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nd it would be unrealistic and, indeed, analytically unhelpful to attempt to separate every piece of evidence and disregard that which discusses implications for market structure in the near future(전계서 para. 10.50, 상소심 para. 110).

12) 우리나라 상소심 보고서 para. 22.

이 현재 경쟁중인 제품과 함께 합리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포함한다<sup>13)</sup>는 패널의 해석은 수용되기 어려울 만큼 포괄적이고 억측(speculation)을 허용하는 해석기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주류시장은 지난 8년간 개방된 시장으로서 현재 경쟁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바 경쟁관계에 관한 이러한 패널의 판정은 경쟁의 부재가 대상조치로 인하여 야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제소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정부조치로 인하여 소비자 기호가 동결되었다는 주장으로 현존하는 경쟁에 관한 제소국의 입증책임을 패널은 계속 변호하고 있으며 이로서 대상조치와 상관없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상태에 대한 억측을 허용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한다.

상소심은 이러한 우리 주장에 관하여 수입주류와 국산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패널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패널이 현존하는 경쟁관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에 그러한 관계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잠재적 경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상소심에 따르면 ‘경쟁적인(competitive)’이라는 용어는 ‘경쟁으로 특징지워진(characterized by competition)’을, ‘대체되는(substitutable)’은 ‘대체할 수 있는(able to be substituted)’을 의미하며 경쟁관계는 시장(market)의 정황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a dynamic, evolving process) 개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가능성’은 현존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용어 ‘대체가능

---

13) read Article III:2 as covering both products that “are either directly competitive now or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come directly competitive in the near future(상소심 para. 6, 전게서 para. 10.40, 10.48, 10.73).

성(substitutable)'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소비자에 의하여 대체재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관계가 전제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14)</sup>.

또한 규제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부속서 주해에서의 '직접적인'이란 용어는 국산품과 수입품 사이의 경쟁의 강약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잠재적(latent) 그리고 현존하는(extant) 수요를 공히 포함한다<sup>15)</sup>. 주해에 명시된 "경쟁관계가 존재하였을 때만(only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의 용어(was)로 볼 때 잠재적 경쟁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대해서 상소심은 특정 조세가 두 번째 문장에 위배되는 상황(would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을 가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조건부로서 제시된 용어(would)에 (문법상) 일치하는 단어(was)로 선택되었을 뿐 경쟁에 어떠한 시간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소심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GATT 제3조의 목적에도 합치되는 해석이다. 즉, GATT 제3조 2항의 둘째 문장은 제3조 1항에 제시된 "내국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이나 국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직접적으로 경쟁 내지 대체되는'의 문구를 해석해야 한다. 한편 "GATT 제3조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등한 경쟁조건과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6)</sup>는 일본 주세패널의 판정을 인

14) the word "substitutable" indicates that the requisite relationship *may* exist between products that are not, at a given moment, considered by consumers to be substitutes but which are, nonetheless, *capable* of being substituted for one another(상소심 para. 114).

15) the word "directly" suggests a degree of proximity i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imported products. The word "directly" does not, however, prevent the panel from considering both latent and extant demand(상소심 para. 116).

16) Japan Panel Report p. 16, 1996.

용하면서 상소심은 ‘직접 경쟁 또는 대체관계’의 정태적 해석을 부인하고 “조세체계가 국산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동결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호주의적 조세체계로 인하여 소비자 설문조사가 잠재적인 경쟁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주세패널의 결정을 재인용한다<sup>17)</sup>.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동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에 한하여 경쟁기회의 보장이 문제가 되며 현재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고 미래의 경쟁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경쟁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패널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심은 제3조의 목적이 동등한 경쟁조건의 유지에 있으므로 경쟁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을 고려함이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대응한다.

이 밖에도 상소심은 시장을 분석하는 한 수단으로 사용된 대체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잠재적 수요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러한 분석이 가격변화, 그 중에서도 국산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세부담으로 인한 수요변화를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쟁대상조치로 인하여 현재 경쟁제품이 아닌 재화의 경우에는 이를 경쟁제품의 범주내에 포함하여 GATT 제3조 위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but for test)을 지적하면서 구두신문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석이 차별과세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유통비용의 격차 등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상소심은 주장한다<sup>18)</sup>. 마지막으로 상소

17) Japan Panel Report para. 6.28 and Appellate Body Report p.25, 1996.

18) At the oral hearing before us, Korea accepted that this “but for” test would permit account to be taken “not only [of] the direct price increasing effect of a tax differential but also [of] other elements that could show an impairment of competitive opportunities because of the tax differential, that distribution costs had been higher, etc”(상소심 para. 122).

심은 대상 제품이 특히 식음료와 같은 경험재로서 소비자가 마지못하여 시험하는 제품인 경우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가 내국세 이외에도 과거의 보호주의적 과세나 수입제한적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성'이라는 문맥은 잠재적(latent) 수요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고 결정한다<sup>19)</sup>.

## 2) 貿易效果의 檢證(Trade Effects Test)

우리나라에 따르면 경쟁의 성격(nature)이 아닌 경쟁의 수치적 강약(quantitative extent)을 강조하는 판정방식이 GATT 제3조 사례에 있어서 무역효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논의한 패널의 결정<sup>20)</sup>은 무역효과의 검증에 대한 오해로서 기존 판례는 경쟁제품으로 밝혀진 재화에 한하여 무역효과의 부재가 제3조 2항에 대한 변호요건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소심은 패널이 무역효과의 검증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경쟁관계에 대한 수량적 분석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만약 특정한 수준의 경쟁이 입증되어야 한다면 이는 대상 조세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논한 패널의 다음 문장<sup>21)</sup>을 지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상소심은 패널의 논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19) We note, however, that actual consumer demand may be influenced by measures other than internal taxation. Thus, demand may be influenced by, *inter alia*, earlier protectionist taxation, previous import prohibitions... Latent demand can be a particular problem in the case of "experience goods"(상소심 para. 123).

20) a focus on the competitive extent of competition instead of the nature of it, could result in a type of trade effects test being written into Article III cases(전게서 para. 10.42).

21) That is, if a certain degree of competition must be shown, it is similar to showing that a certain *amount* of damage was done to that competitive relationship by the tax policy in question(전게서 para. 10.42).

### 3) 競爭의 性格(Nature of Competition)

패널은 논의의 핵심이 경쟁의 중복도(competitive overlap)가 아니라 경쟁의 성격(nature of competition)이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경쟁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경쟁의 성격은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발견될 수 없는 용어로서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요인을 '직접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삽입하고<sup>23)</sup> 그 결과 경쟁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직접적인(direct) 경쟁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제소국의 의무가 무시되고 실제 시장(actual market)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부인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한다.

상소심에 따르면 경쟁의 성격은 경쟁의 본질(quality of competition)과 동의어로서 경쟁의 정도(quantity of competition)와 상대적인 개념이며 패널의 결정은 경쟁관계를 수량화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소심은 수량적 접근법에만 의존하여 경쟁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은 대체탄력성을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유발하며 논의의 초점은 '경쟁의 중복도가 아니라 경쟁의 성격으로서 경쟁관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관계가 직접적이냐'는 패널의 판정을 인용한다<sup>24)</sup>.

### 4) 日本 市場(Evidence from the Japanese Market)

“다른 국가의 시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소비행태가 발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패널의 결정은 추측에 불과하며 패널이 지적한대로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상당한 증

22) 전계서 para. 10.42, 10.45, 10.66, 10.76, 10.78, 10.92.

23) 우리나라 상소심 보고서 para. 37, 38.

24) ...the question is not of degree of the competitive overlap, but its nature. Is there a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is it direct? ... (상소심 para. 133, 전계서 para. 10.44).

거가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하는”<sup>25)</sup>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접근방식이며 DSU 제19조 2항<sup>26)</sup>에 명기된 패널의 의무 즉, 패널이나 상소심이 해당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리나라는 주장한다.

상소심에 의하면 물론 해당시장에서 제품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소비자 기호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히 무역장벽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해 왔던 시장의 경우 패널이 논의한대로 ‘분쟁대상조치 그 자체로 인하여 시장상태에 관한 정보가 경쟁관계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sup>27)</sup>이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시장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장한대로 모든 다른 국가의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시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시장이 존재하면 그러한 시장에서의 소비자 성향이 유효할 수도 있으며 다만 사례별로 모든 적절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 나. 製品分類

우리나라는 회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등 물리적 외양과 용도 및 가격이 서로 다른 제품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비교함으로써

25) (the Panel could) ... look at other markets and make a judgement as to whether the same patterns could prevail in the case at hand... (there was) considerable evidence available to us as to what is taking place within the Korean market(전게서 para. 10.46).

26)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 in thei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27) To completely ignore such evidence from other markets would require complete reliance on current market information which may be unreliable, due to its tendency to understate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cause of the very actions being challenged(전게서 para. 10.45 ~46, 상소심 para. 135).

법적 오류를 범하였으며 또한 수입주류를 또 다른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현황과 관계없이 경쟁관계를 예단하였고(pre-judge) 제품간의 차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중요한 소비자 기호가 무시되고(trivialized) 또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주가 보드카와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소주와 위스키는 별개의 주종임을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분석방법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소심은 일단 제품수가 상당할 때 반복없이 이들 제품간의 경쟁관계를 검토하는 등 분석의 편의상 제품분류가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다만 이러한 분석수단이 제품간의 차이를 과소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판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패널의 의무를 경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사례에 있어서 패널은 용도와 가격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분석에서 이러한 제품분류가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별 품목간의 차별성을 고려했으므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며 개별 품목간의 비교가 수행되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리라는 상소심의 견해이다.

#### 다. 保護效果

패널은 소주와 수입제품간의 상당한 차별과세 이외에도 소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반면 수입주류는 한 두 가지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분한 주세법은 국내 소주산업 이외 이러한 제품분류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입소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세법 구조와 체계가 보호효과를 유발한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sup>28)</sup>.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특정 사례에 있어서 차별과세의 규모가 보호효과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 차별과세가 보호

28) 전계서 para. 10.101~102.

효과를 위하여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여타 고려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일본 상소심의 판정<sup>29)</sup>을 인용하면서 낮은 소주가격 등 외국소주의 수입이 없는 근본적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로서 우리나라 주세법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수입주류와 소주간의 본질적인 가격격차를 감안할 때 세금차이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가격차이가 보호효과를 유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30)</sup>.

상소심에 따르면 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일본 주세 상소심이 지적한대로 분쟁조치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는지(applied)에 있으며 차별과세의 규모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 국내산업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고율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수입소주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분쟁조치의 이러한 적용상태를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sup>31)</sup>.

이 밖에도 세전가격의 격차로 주세와 교육세가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우리나라 주장은 이미 이들 제품이 직접적인 경쟁제품으로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무효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소심은 보호효과에 관한 패널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9) even though the tax differential may prove that a tax is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in other cases, there may be other factors that will be just as relevant or more relevant to demonstrating that the dissimilar taxation at issue was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상소심 para. 147, 참조 Japan Appellate Body Report, p. 30, 1996).

30) When the intrinsic price difference between two products is so important, the additional difference created by variation in tax can have no such (protective) effect(우리나라 상소심의 보고서 para. 75).

31) the reason why there is very little imported soju in Korea does not change the pattern of application of the contested measures(상소심 para. 150).

## 라. 立證責任：事例別 檢討

1997년 미국 수입 모직의류 분쟁<sup>32)</sup>에서 상소심이 제시한대로 패널은 분쟁해결 절차에 내재된 공평하고도 적절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분쟁에 있어서 패널은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잘못 적용하였고 제시된 증거에 관하여 이중의 잣대를 활용하여 제소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을 예단함으로써 번복되어야 할 법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류시장이 지난 8년간 개방되어 왔고 Sofres 보고서도 국내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한다고 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치로 인하여 소비자 기호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동결되었다는 이유로 패널은 입증책임을 제소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가하였다<sup>33)</sup>. 또한 패널은 가상의 심지어는 부적절한 제소국의 주장은 관대하게 수용하고 우리나라 주장은 엄격하게 검토함으로써 증거 수용에 있어서 이중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한 예로 패널은 상당한 결점을 갖고 있는 Dodwell 보고서는 수용한 반면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가격에 대하여 “가격의 차이가 아마도 제소국 주장에 반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sup>34)</sup>라고 논하면서도 곧바로 그러한

32) ...the burden of proof rests upon the party, whether complaining or defending, who asserts the affirmative of a particular claim or defence. If that party adduces evidence sufficient to raise a presumption that what is claimed is true, the burden then shifts to the other party, who will fail unless it adduces sufficient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US—Measure Affecting Imports of Woven Wool Shirts and Blouses from India*,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on 23 May 1997, WT/DS33/AB/R. & WT/DS33/R, at p. 14.)

33) 즉, 제소국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소비자 취향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쟁의 부재가 차별적 조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나라가 입증해야 한다(항소심 para. 20, 우리나라 항소심 서면보고서 para. 90).

34) the current price levels are probably the most telling evidence contrary to complainants assertions ... overall the differences were not decisive(전계서 para. 10. 94, 10.97).

가격차이가 결정적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 1) 物理的 特性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외양과 사용용도 그리고 가격 및 테킬라에 있어서 어떻게 패널이 이중적으로 증거를 활용하고 잘못된 입증책임을 부과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우선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패널은 “모든 제품이 근본적으로 증류주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향료나 색깔은 미소한 차이”<sup>35)</sup>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증류단계에서 모든 주종은 거의 동일하다”<sup>36)</sup>는 제소국 주장을 수용하는데 이러한 패널의 논리는 페인트 회색제나 의약품 알콜도 주류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유발한다. 또한 패널은 주류가 경험재임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주류의 경우 맛과 증류단계 이후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주장은 ‘미소한 차이’로 간주한다. 또한 물리적 외양이 경쟁관계를 판단하는 데 얼마나 취약한 고려요인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예로 든 유가 식용수와 수돗물은 ‘다른 국가의 다른 제품’이라고 단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예로 든 유명 상표와 이름 없는 아스피린의 비교는 ‘유용하다’고 판정한다<sup>37)</sup>.

### 2) 使用用途와 流通經路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대상 주종이 사교와 유흥 등의

35) 전계서 para. 10.67.

36) 전계서 para. 10.62.

37) We did not find the Korea analogy about tap water and bottled water probative or useful. The analogy is incomplete and refers to different produc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thus no useful inference could be drawn for the inquiry at hand(전계서 para. 9.23).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there can be two products of identical physical properties such as name brand and generic aspirin which are marketed somewhat differently and perceived somewhat differently by consumers. ... We find this analogy useful(전계서 para. 10.64).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제소국 주장을 수용한 패널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sup>38)</sup>. 우선 패널은 ‘소비행태의 변화나 추세’ 등 제시된 증거에 입각하여 분쟁 대상제품들이 경쟁제품인지 또는 가까운 미래에 경쟁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39)</sup>. 하지만 패널이 예로 든 Nielsen 보고서나 Dodwell 보고서는 특정 순간에 관한 증거(‘snapshot’)이며 추세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sup>40)</sup>. 따라서 패널은 제시된 증거를 오용하였으며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sup>41)</sup>고 단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패널이 Nielsen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에 따르면 위스키를 반주로 하는 응답자가 5.8%에 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94.2%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Nielsen 보고서에 나타난 전체적인 소비행태는 미국 수입모직 상소심이 지적한대로 미소한 용도의 중복으로 인한 억측을 ‘충분히’ 반증하며 우리나라 주장대로 소주가 반주로 사용됨을 입증한다. 그러나 패널은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사용용도의 중복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한다. 판매전략에 있어서도 패널은

38) all the beverages described are utilized for socialization purposes in situations where the effects of drinks containing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alcohol is desired(전계서 para. 10.82).

39) Panels should look at evidence of trend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make an assessment as to whether such trends and pattern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ducts in question are either directly competitive now or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come directly competitive in the near future(Korea—Taxes, para. 10.48).

40) The trends shown in the Nielsen survey — as well as the substitutability shown in the EC’s market survey, the Dodwell study — constitute, according to the complainants, unmistakable evidence of the beginnings of substitutability and common end — uses by imports. Trends a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such products(전계서 para. 10.73).

41) 전계서 para. 10.76.

분쟁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때는 ‘중복된 사용용도에 대한 추세가 판매전략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의 판매전략도 유용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전략이 종종 (물리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표면적으로 차별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sup>42)</sup>.

이 밖에도 혼합주를 예로 들어 소주도 카테일로 음용된다는 패널의 판정은 마치 베일리스(Bailey's)로 인하여 위스키가 혼합되어 음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교한 우리나라 주장을 패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통경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제시한 320개 음식점에 관한 Nielsen 설문조사는 수용하지 않고 서울에서만 50,000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사관 주변의 9개 고급음식점을 예로 들어 소주와 수입주류가 함께 취급되고 있다고 한 주장을 패널이 수용한 것은 이중적 기준이 아닐 수 없다는 우리나라 입장이다.

### 3) 價格과 消費行態의 變化

우리나라에 의하면 가격이야말로 Dodwell 설문조사와 달리 당사국간에 이의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hard evidence)로서 패널도 “수입주류와 소주간에 현재 상당한 가격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한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상당한 Dodwell 보고서는 수용하면서 반면 객관적인 가격자료는 “다른 증거를 무시할 만큼 크지 않다”고 결론을 맺은 패널의 판정은 결국 제소국에게는 관대하며 우리나라에게는 엄격한 입증책임을 물은 결과를 유발하였다<sup>44)</sup>. 예컨대 패

42) 전계서 para. 10.66, 10.80, 10.79.

43) 가격차이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주장한 패널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소주와 위스키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제소국이 제출한 Dodwell 보고서의 가격에 대해서는 당사국간에 이견이 없음을 지적한다(전계서 para. 10.93, 우리나라 상소심 보고서 para. 134, 각주 119).

44) 전계서 para. 10.94 상소심 para. 33.

널에 의하면 코냑은 소주와 경쟁관계에 있다. 코냑의 세전가격이 소주의 20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종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가격차이가 여타 증거를 반증할 만큼 상당하지 않다고 한 패널의 판정은 상식에 어긋나며 GATT 제3조 2항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Dodwell 보고서의 문제점을 패널에 진술된 내용과 같이 상소심에서도 자세히 지적하였으나 우리나라 주장이 상소심 보고서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패널은 절대가격의 차이에 대비하여 상대가격의 변화를 강조하였으나 상대가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한 예로 일련의 세율인하로 수입주류의 판매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당한 격분을 거친 후에도 제소국은 수입의 증대가 소주매출의 희생으로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소국이 실제 소비변화에 기반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Dodwell 설문조사와 같은 가상적인 질문에 기초하여 동 보고서가 “최소한 잠재적 경쟁관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45)</sup>는 주장은 엄청난 오류(egregious error)이다.

#### 4) 테킬라

우리나라에 따르면 패널의 주관적이고도 불공평한 증거 채택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가 테킬라이다. 멕시코를 포함한 제소국은 테킬라가 소주와 마찬가지로 HS코드 2208.90에 속하며 미국에서 멕시코 음식과 함께 마거리타(margaritas : 테킬라 칵테일)로 음용되고 최근 일본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6)</sup>. 패널은 “테킬라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었고 … Dodwell 보고서에 의하면 상대가격에 따라 소주와 테킬라의 소비가 변하고 매운 음식

45) …the Dodwell study provided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at least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of the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전계서 10.91).

46) 전계서 para. 6.182, 5.72.

과 같이 섭취되며 소주와 같이 백색 증류주<sup>47)</sup>라는 이유로 소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으로 판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소국이 제시한 테킬라에 관한 증거가 경쟁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제소국의 주장은 대부분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의 소비행태를 논한 것으로 판정이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테킬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제품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Dodwell 보고서가 패널판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패널은 테킬라와 관련한 Dodwell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격변화에 따라 테킬라의 소비는 일관되게 움직이지 않고 특히 테킬라 가격이 12,500원에서 10,850원으로 감소할 때 테킬라를 음용하는 응답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고서 결과와 상관없이 단지 설문조사에 테킬라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관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정한 것은 패널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한다<sup>48)</sup>.

#### 5) 立證責任에 대한 上訴審 判定

패널이 입증책임을 잘못 적용하였고 이중의 잣대를 사용하였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관하여 상소심은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각 부문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sup>49)</sup>. 상소심은 일단 패널이 분쟁제품

47) The complainants provided specific evidence for tequila but not mes-cal. ... Tequila was included in the Dodwell study where there was evidence of the response of consumers to the relative changes in the prices of soju and tequila. Tequila is a white alcoholic beverage which is also used, among other things, to accompany spicy foods. (전계서 para. 10.58).

48) 상소심 para. 102.

49) 우리나라가 상소심 보고서에서 패널의 부당한 입증책임울 증명하기 위하여 15쪽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상소심은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1쪽에 걸쳐 이 부문을 판정한다(상소심 서면보고서 para. 24~38, 상소심 para. 46).

의 범위를 결정할 때 1997년 미국 모직의류 상소심을 인용하였음을 지적한다<sup>50)</sup>. 이후 패널이 “증거가 거의 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입증책임을 피제소국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내지는 “제소국이 판정을 내리는 데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지적한 예를 들고 테킬라 이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메스칼은 판정에서 제외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패널이 입증책임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였다고 판정한다<sup>51)</sup>. 또한 상소심은 우리나라 주장과 달리 패널이 제출된 반대 증거를 고려하였으며 GATT 제3조 2항 위반에 관한 “반박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sup>52)</sup>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을 지적한다<sup>53)</sup>.

#### 마. 客觀的 評價(DSU 제11조)

상소심에 따르면 입증책임에 관련하여 앞에서 제기된 논의가 실제로는 패널이 주관적 평가를 자행하였다는 주장으로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과 관련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합치성을 포함,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DSU 제11조상의 의무를 패널이 위반하였다는 것이다<sup>54)</sup>.

50) 전계서 각주 374.

51) 전계서 para. 10.57~58, 10.82.

52) 전계서 para. 10.98.

53) In making our assessment with respect to degree and nature of overlapping end – uses, we wish to make clear that we are not putting a burden of proving the negative on Korea. Rather, we think that the complainants submitted adequate evidence, inter alia, in the form of the Dodwell study, anecdotal evidence, and evidence of trends and results in other markets to establish this portion of their case(전계서 para. 10.82).

54) The function of panel is to assist the DSB in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Understanding and the covered agreements. Accordingly, a panel should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 and make such other finding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즉, 우리나라는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패널이 보유하지 못하였고 제시된 증거의 평가에 있어서는 “막대한 오류(egregious error)”<sup>55)</sup>를 범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구체적으로 제소국은 억측이나 가정 이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패널은 증류단계 또는 사교나 휴식 등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주류를 구분하였고 ‘잠재적 경쟁’ 또는 ‘경쟁의 성격’에 근거한 가상적 사실을 증거로 수용하였다. 상반된 주장에 직면하는 경우 패널의 임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추측에 몰두하지 않고 제시된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데 있다. 이는 불충분하고 상반된 증거가 있을 때 다자간 국제협정은 다양한 법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므로 특정 국가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정이 해석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sup>56)</sup>. 그러나 당해 분쟁에 있어서 패널은 주종간의 현저한 가격차이와 양주의 수입증가로 소주판매가 감소하였음<sup>57)</sup>이 입증되지 못한 사실은 무시하고 오히려 Dodwell 보고서와 같은 가상적 증거를 수용하였으며 일본시장의 소비행태나 프리미엄 소주<sup>58)</sup> 또는 미국 대사관 주변의 음

---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e covered agreements. Panels should consult regularly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give them adequate opportunity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DSU 제11조).

55) 우리나라 항소심 보고서 para. 149.

56) Jackson and Croley, 'WTO Dispute Panel Deference to National Government Decisions. The Misplaced Analogy to the U.S. Chevron Standard-of-Review Doctrine'.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Petersmann(ed). Kluwer(1997), at 209~210.

57) 수입주종이 소주를 대체하였다는 주장은 일본 주세분쟁에서 일본이 패소하게 된 결정적 요인의 일부였다(Japan Panel Report para. 4.82, 1996).

58) 우리나라는 판매부진으로 프리미엄 소주 중 <김삿갓>과 <청산리>는 생산을 중단하였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참나무통>만이 현재 생산 중이라고 주장한다(우리나라 상소심 보고서 각주 135).

식점 등의 예외적인 사례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패널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패널의 성실성(good faith)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존 상소심의 판례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패널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태만성과는 별도로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패널 결정에 대한 재고를 상소심에게 요구한다<sup>59)</sup>.

1998년 EC 출문 상소심에 의하면 DSU 제17조 6항에 따라 상소심의 심리는 법의 적용과 해석에 한정되며 제시된 증거의 적정성과 중요성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의 일부로서 패널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외 대상 협정과 사실관계의 합치성 그리고 객관적 평가는 법적 문제로서 재심의 대상이다<sup>60)</sup>. 상소심은 이와 같은 기존 판례에 따라 증거의 상대적 중요성과 검증은 원칙적으로 패널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소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

---

59) ...the Appellate Body has underlined that complaints about a panel's lack of 'objective assessment' are a very serious matter, and may even call into question the good faith of a panel. ... Korea does not assert that the Panel has acted in bad faith. However, ... Korea submits that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the Appellate Body ... look beyond instances of bad faith of panels(우리나라 상소심 보고서 para. 168).

60) Under Article 17.6 of the DSU, appellate review is limited to appeals on question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 Determination of the credibility and weight properly to be ascribed to (that is the appreciation of) a given piece of evidence is part and parcel of the fact finding process and, is in principle, left to the discretion of a panel ... The consistency or inconsistency of a given fact or set of facts with the requirements of a given treaty provisions is however a legal characterization issue. ... Whether or not a panel has mad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as required by Article 11 of the DSU, is also a legal question(Appellate Body Report on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WT/DS26/AB/R, WT/DS48/AB/R, adopted 13 February 1998, at para. 132.).

서 패널이 Dodwell, Sofres, Nielsen 보고서를 어떻게 검토하였으며 소비성향이나 주종의 물리적 외양 등에 관한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패널의 재량은 객관적 평가라는 원칙에 의하여 구속되며 구체적으로는 1998년 EC 홀몬 상소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시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 왜곡 또는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패널의 행위가 판단의 오류가 아닌 패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만드는 막대한 오류(egregious error)에 해당한다<sup>61)</sup>.

상소심은 패널이 DSU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우리나라 주장, 특히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였다. 우리나라가 ‘패널의 성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기준은 객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패널이 주관적 평가를 하였다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로 WTO 분쟁해결 절차 자체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는 의혹의 제기”라는 EC 돈육제품 상소심 판정을 인용한다<sup>62)</sup>. 마지막으로 상소심은 패널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할 만큼 상당한 오류를 범하였다는 우리나라 주장이 상소심에서 입증되지 못하였고 동패널이 제시된 증거를 무시 또는 왜곡하였거나 이중적 기준을

61) “...not every error in the appreciation of the evidence... may be characterized as a failure to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The deliberate disregard of, or refusal to consider, the evidence submitted to a panel is incompatible with a panel’s duty... The wilful distortion or misrepresentation of the evidence put before a panel is similarly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Disregard’ and ‘distortion’ and ‘misrepresentation’ of the evidence, in their ordinary signification in judicial and quasi-judicial processes, imply not simply an error of judgement... but rather an egregious error that calls into question the good faith of a panel(Appellate Body Report on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1998, at para. 133).

62) Appellate Body Report on EC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Poultry Products, WT/DS69/AB/R, adopted 23 July 1998, at para. 133.

적용하였다는 증거를 패널보고서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바. 判定根據의 說明(DSU 제12조 7항)

DSU 제12조 7항에 따르면 패널은 “사실관계의 판명과 GATT 대상규정의 적용 그리고 사실확인과 권고에 관한 근본적인 논거를 패널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sup>63)</sup>. 우리나라에 의하면 이러한 패널의 의무는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당사국의 권리이다. 그러나 패널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서로 모순되며 모호하여 패널이 어떤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렸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제시된 증거의 경중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특히 패널이 결정의 논거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될 만큼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위스키 시장을 일본 소주와 수입 위스키가 잠식한 사실이 소주와 위스키간의 간접적인 경쟁을 의미한다고 판정한 일본 패널의 예를 들어 패널은 간접적 경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한 후 이어서 그러한 증거가 ‘그 자체로서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sup>64)</sup>. 그러나 패널은 IMF 사태 이후 프리미엄 소주와 양주의 판매가 감소한 반면 일반 소주의 소비가 증가한 사실을 들어 이는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추가적’ 증거

63)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failed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he panel shall submit its finding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to the DSB. In such cases, *the report of a panel shall set out the finding of fact, the applicability of relevant provisions and the basis rationale behind an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at it makes.* Where a settlement of the matter amo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s found, the report of the panel shall be confined to a description of the case and to reporting that a solution has been reached(DSU 제12조 7항).

64) We would agree with the (Japan liquor tax) panel that showing such indirect competition may provide evidentiary support for a finding of direct competitiveness. However, such a showing is insufficient on its own. ... More would need to be shown in such a case ... (전개서 para. 10.41).

라고 판정한다<sup>65)</sup>. 또한 수량적 분석에 대하여 패널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된다’고 논하면서 Dodwell 보고서가 ‘약간의 취약점과 변칙적인 문제점(some weaknesses and anomalies)’이 있고 ‘어떤 경우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용하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66)</sup>.

또한 패널은 ‘우리나라 시장의 현황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곧바로 ‘그러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sup>67)</sup>고 하며 ‘상당한 가격차이가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하고 이는 제소국 주장에 반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패널은 다른 국가의 시장이 결정에 도움이 될 경우 이를 고려하지만 ‘일본시장에서의 증거와 상소심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논하고 난 뒤 일본시장에서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대체관계가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차이도 일본시장의 가격차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sup>68)</sup>.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쟁에 관하여 패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증거가 미래의 상황보다 명백히 더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그렇게 쉽게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69)</sup>

이와 같은 우리나라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은 단지 당해 사례에서 DSU 제12조 7항에 제시된 의무와 적용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패널이 사실관계의 확인

65) 전계서 각주 369. 그러나 패널은 IMF 사태이전 1990년대에 수입주류의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판매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무시한다(전계서 para. 6.259~6.264).

66) 전계서 para. 10.91, 10.92, 10.97.

67)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available as to what is taking place within the Korean market. ... To completely ignore such evidence from other markets would require complete reliance on current market information which may be unreliable(전계서 para. 10.46).

68) 전계서 para. 10.57, 10.78, footnote 409.

69) Obviously, evidence as to what would happen now is more probative in nature than what happen in the future, but most evidence cannot be so conveniently parsed(전계서 para. 10.50).

과 권고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전체적인 근거를 보고서에 진술하였고 상반된 주장을 고려하여 판정에 이르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등 판정의 근거를 DSU 제12조 7항에 합치되게 충분히 제시하였다는 의견이다.

### 3. 上訴審의 結論

상소심은 상기의 이유로 1) 1994년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의 '직접적인 경쟁 내지는 대체상품'에 관한 패널의 해석과 법 적용을 확인하고 2)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에 나타난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용어를 제3조 1항에 나열된 원칙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며 3) 입증책임의 배분에 대한 패널의 결정을 확인하며 패널이 4) DSU 제 11조가 요구하는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5) DSU 제12조 7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과 권고에 대한 근본적인 논거를 설명하였다고 판정한다. 따라서 상소심은 분쟁해결기구에 우리나라가 1994년 GATT에 명시된 의무와 합치되게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수정할 것으로 권고한다<sup>70)</sup>.

### 4. 酒稅紛爭 判定結果의 履行

#### 가. 履行措置에 관한 DSU 規定

지난 1999년 2월 17일 분쟁해결기구는 우리나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GATT 제3조 2항에 위반되므로 이를 동 조항에 합치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상소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DSU 제21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9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행의사를 통보하였고 EU 및 미국과 비공식적인 양자협상을 최근

70) 상소심 para. 169.

개최하여 이행기간을 포함한 주세율 개편 등 이행안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WTO 중재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11개월 2주일이 경과한 2000년 1월 31일까지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게 酒稅法과 教育稅法을 改正하여야 한다<sup>71)</sup>.

DSU 제21조 1항에 의하면 피제소국은 원칙적으로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을 '신속하게(promptly)'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라 권고안이 채택된 이후 45일 이내에 당사국이 이행기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면 이를 이행기간으로 결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지속적인(binding) WTO 중재를 통하여 결정된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이내에 피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기간은 패널(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particular circumstances)이 있으면 이러한 기간이 단축 내지는 연장될 수 있다<sup>72)</sup>.

우리나라 주세분쟁의 경우 이행기간에 대한 합의가 상기 양자협상

71) WT/DS75/16, WT/DS84/14.

72) 1. Prompt compliance with recommendations or rulings of the DSB is essential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o the benefit of all Members...

3. (b) a period of tim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45 days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c) a period of time determined through binding arbitration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If the parties cannot agree on an arbitrator within ten days after referring the matter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by the Director - General within ten days,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In such arbitration, a guideline for the arbitrator should be that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implement panel or Appellate Body recommendations should not exceed 15 months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a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However, that time may be shorter or longer, depending up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DSU Article 21).

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WTO 중재가 지난 5월 10일 개최되었고 그 결과 중재인은 2000년 1월 31일까지 우리나라가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였다. 동 기간내에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DSU 제22조 2항에 따라 상기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여 피제소국은 자발적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하에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정지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73)</sup>.

이행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원패널의 소집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해결기구는 또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합리적 이행기간이 설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동 사안이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되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 사안이 분쟁해결기구의 의제로 남는다<sup>74)</sup>. 한편 DSU 제 22조 2항에 따라 양허정지가 요청되고 분쟁해결기구가 만장일치로

---

73) If the Member concerned fails to bring the measu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a covered agreement into compliance therewith or otherwise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determin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1, such Member shall, if so requested, and no later than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ny party having invok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ith a view to developing mutually acceptable compensation. If no satisfactory compensation has been agreed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y party having invok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may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Member concerned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DSU Article 22).

74) DSU 제21조 5, 6항.

이를 거부하지 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는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당사국이 제안된 보복조치의 수준이나 양허정지 등의 요청내용이 DSU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해결기구는 원패널을 포함한 중재인을 임명하여 이들이 합리적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수행하도록 하되 중재기간 동안에는 양허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야 한다<sup>75)</sup>.

그런데 지난 1999년 1월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해소 및 양허정지와 관련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과 EC의 바나나 분쟁<sup>76)</sup>에서 이들 규정의 우선 적용순위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EC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sup>77)</sup>가 DSU 제22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고안의 '완전한 이행(full implementation)'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월 14일 스웨터와 같은 의류와 전지, 햄, 커피제조기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약 5억 2천만달러에 달하는 관세양허를 취소하기로 결정,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승인하도록 요청하였고 EC는 이러한 미국의 요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모든 분쟁을 결정한다는 DSU 제21조

75) DSU 제22조 6항. 양허 등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분쟁대상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면 동일협정상의 다른 분야 그리고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면 다른 협정상의 양허정지를 추구하고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의 정지는 제소국이 경험한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와 상응한 수준이어야 한다(DSU 제21조 3, 4항). 이 밖에도 양허정지는 한시적 조치로 위반조치의 철폐, 피제소국이 제기하는 해결책 또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적용되며 분쟁해결기구는 양허정지와 권고안의 불이행을 계속해서 감독한다(DSU 제21조 7항).

76)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s and Distribution of Bananas, Appellate Body Report(9. 25. 1997, WT/DS27/AB/R).

77) EC Regulation 404/93, Council Regulation 1637/98, EC Commission Regulation 2362/98 of 28 October 1998.

5항에 위배된다고 WTO에 항의하였다<sup>78)</sup>.

이에 WTO 사무총장은 1월 29일 양자가 즉각 협상을 개시하고 원패널이 중재자로서 보복조치의 합당한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며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2, 6항에 대한 우선 적용문제는 WTO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같은 해 4월 6일 중재자들은 드디어 EC의 조치가 WTO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입은 피해는 5억 2천만달러가 아닌 약 1억 9천만달러로 판정하였고 그 결과 분쟁해결기구는 4월 19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허용하였다.

미국과 EC 바나나 논쟁은 1999년 3월 13일에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EC 육류와 육류제품 분쟁에<sup>79)</sup> 앞서서 EC가 육류제품 관련 규제를 WTO규정에 충분히 합치되게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통상정책적 의도에서 시작된 논쟁이다. 또한 향후에 피해 소국이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굳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결과에 연연하여 이행조치가 연기되는 상황을 방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이기도 하며 WTO판정 이후 이러한 일방적인 통상압력은 향후 분쟁에서 답습될 가능성이 있다.

#### 나. 履行期間에 대한 WTO 仲裁 判例

GATT협약에 합치되는 구체적 이행방안의 결정은 각국의 고유권한이지만 유예기간은 신속한 이행(prompt compliance)을 원칙으

78) 물론 보복조치의 수준에 대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양허의 정지가 연기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EC가 분쟁해결절차를 악용하여 GATT협약에 '완전히' 합치되는 조치의 이행을 계속 연기하고 있으므로 DSU 제21조 6항에 따라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양허의 정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WT/DS27/41, 43, 47).

79)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Arbitration(5. 25. 1998, WT/DS26/15).

로 하고 있다. 다만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이 중재에 따른 합리적 기간을 우선하므로 피제소국의 국내상황에 따라 이행방안의 내용과 이행기간은 당사국간에 서로 타협이 가능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주세분쟁에 있어서도 주세율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내용에 따라 이행기간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기간의 연장은 결국 이행방안을 통한 보상을 의미하므로 EC 등이 상당한 세율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WTO 규정상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또한 일본 주세분쟁의 예에서 보듯이 WTO 중재를 통하여 이행기간이 결정되어도 상호 합의와 양보를 통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행기간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1999년 2월 당시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 채택 이후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19개 사례가 있는데 이행기간이 결정되는 형식을 살펴보면 피제소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거나 당사국이 합의되는 경우 또는 WTO 중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 그 내용이 다양하며 이행기간도 15개월부터 짧으면 8개월까지 차이가 크다<sup>80)</sup>. 특히 WTO를 통한 지속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거 일반적으로 15개월이 통용되었으나 최근 EC 육류와 육류제품 분쟁(EC-홀몬)<sup>81)</sup> 이후에는 이행기간이 15개월보다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80) 자발적 이행은 미국의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1997), Restrictions on Imports of Cotton and Man-made Fibre Underwear(1997), Measure Affecting Imports of Woven Wool Shirts and Blouses(1996) 등의 사례가 있으며 15개월이 협상으로 합의된 경우는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1998)와 India-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1999)가 있고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에서는 13개월이 이행기간으로 합의되었다.

81)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Arbitration(5. 25. 1998, WT/DS26/15).

## 1) EC 肉類와 肉類製品 紛爭(EC-홀몬)

EC-홀몬 중재에서 사용된 이행기간의 결정기준은 후속 중재에서 중요한 전례로서 인용되고 있다. 중재인<sup>82)</sup>에 따르면 DSU 제21조 3항(c)의 규정 즉, ‘합리적 기간은 권고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나타난 15개월은 일반적 사례에서 최대한으로 허용된 기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상황, 한 예로 행정조치로 이행될 수 있는 사례에 있어서 합리적 이행기간은 15개월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제21조 3항(c)은 분쟁해결규칙을 관한 양해(DSU)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바, DSU 제21조 1항과 제3조 3항은 각각 이행조치의 즉각적인(prompt) 준수나 분쟁의 즉각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DSU 제21조 1항의 ‘합리적 기간’은 ‘회원국의 법적 체계내에서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한 한의 가장 빠른 기간’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기간보다 짧거나 또는 긴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주장하는 회원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sup>83)</sup>.

한편 DSU 제3조 7항에 의하면 분쟁해결 절차의 우선적인 목적은 일반적으로 WTO협약에 위반되는 조치의 철폐에 있지만 조치의 철폐만이 유일한 이행방안은 아니며 이행방안이 해당 협약과 권고안

82) Julio Lacarte-Muro.

83) ...Read in context, it is clear that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s determined under Article 21.3(c), *should be the shortest period possible within the legal system of the Member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In the usual case, this should not be greater than 15 months, but could also be less. In my view, the party seeking to prove that there are “particular circumstances” justifying a shorter or a longer time has the burden of proof under Article 21.3(c)(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Arbitration, para. 26, 27).

에 합치되는 한 피제소국은 이행방안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sup>84)</sup>. 중재자는 이미 관련 협약에 위배되는 조치로 판정된 조치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위생조사를 합리적 이행기간에 포함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즉각적 이행의 원칙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EC가 요청한 39개월이 아닌 15개월을 이행기간으로 결정한다<sup>85)</sup>.

## 2) EC-출문 以後의 判例

### 가) 인도네시아 自動車産業의 規制措置<sup>86)</sup>

인도네시아는 지난 1998년 국산부품 관련 조항이 WTO 투자조치 관련 무역협정<sup>87)</sup>의 제2조와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5조 (c)항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상당수 기업이 도산 과정에 있으며 실업률이 전례없이 높은 등 자국의 국내경제가 붕괴될 정도로 심각하여 정부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고 이행안을 동시에 준수하려면 15개월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이는 1

---

84) Although withdrawal of an inconsistent measure is the *preferred* means of complying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in a violation case, it is not necessarily the only means of implementation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s. An implementing Member, therefore, has a measure of discretion in choos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s long as the means chosen are consistent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and with the covered agreements(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Arbitration, para. 38).

85) 미국은 위반조치로 판명된 Directive 96/22가 EC협약 제 43조에 따라 EC 회원국간의 협의(consultation)로 철폐될 수 있으므로 이행기간이 10개월로 충분하다는 반면 중재자는 암스테르담 협약에 따라 공중도덕을 위한 조치는 EC협약 제189b조에 명기된 회원국간의 공동결정(co-decision)에 의하여 수정되어야 하므로 15개월이 필요하다는 판정이다.

86)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Arbitration(12. 7. 1998, WT/DS54/15, WT/DS55/14, WT/DS59/13, WT/DS64/12).

87)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Agreement).

개 자동차 회사가 연루된 1996년 규정과는 달리 1993년 규정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190개의 노동집약적 기업이 영향을 받으므로 보조금적 요인이 있는 조치를 폐지하려면 단순한 폐지조치 이외에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나 EC는 EC-홀몬의 판정기준을 예로 들어 15개월의 이행기간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중재자를 위한 기준으로서 그보다 짧은 기간에 이행이 가능하다면 합리적 기간은 15개월 이내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EC는 필요한 이행조치의 내용 즉, 단순한 세율변경이 아닌 검역규제와 같은 기술적이고도 복잡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행법안의 법적 성격 그리고 구체적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회원국 국내법상의 필요한 과정에 근거하여 이행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며 기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가장 보호주의적인 국내조치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고려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WTO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국회법의 개정이 아닌 행정명령 즉, 공포령(Decree 36/1997)과 정부규제 50/1994를 개정 또는 폐지하면 충분하며 1998년 1월 당시에 수 주일 이내에 공포령 36/1997과 정부규제 50/1994를 개정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EC는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1998년 7월 23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9년 1월이 이행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은 즉각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999년 1월부터 1개월이 지난 달, 7개월이 이행기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따르면 합리적 기간은 첫째, 법, 규제, 공포령과 같은 이행방안의 법적 형식 둘째, 성실히 임한다는 전제하에 제안된 조치의 법적 이행에 필요한 시간 셋째, 단순한 세율변경인지 여부 등 입법이나 규제내용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WTO규정에 위반되는 인도네시아의 규제조치는 장관령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입법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러한 왜곡조치의 폐지가 경제상황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sup>88)</sup>.

중재자는 현존하는 1993년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WTO 협정과 일치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입장을 인용하고 1998년 8월 이후 이미 각 정부부처 및 산업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등 인도네시아가 국내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수행 중임을 지적하고 따라서 권고안이 채택된지 6개월 이후인 1999년 1월에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EC- 홀몬에서 지적한 대로 1999년 1월이 이행을 위한 '가장 짧은 기간'이라고 논의하고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적 기간, 9개월은 DSU 21조 3항(c)에 제시된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다.

중재자에 의하면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된 대부분의 사례가 어느 정도 국내산업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으로서 분쟁에 회부된 조치에 있어서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DSU 21조 2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경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붕괴 직전의 개도국으로서 이행기간 6개월에 추가적인 6개월을 부여하여 총 12개월을 이행기간으로 판정한다.

#### 나) EC 바나나 輸入과 販賣 및 流通體制<sup>89)</sup>

EC는 현행 바나나 수입제도를 개정하려면 WTO협약과 ACP 국

88) (i) the legal form of implementation(e.g., legislation, regulation, decree, etc.);

(ii) the period of time in which the implementing Member can achieve the proposed legal form of implementation, assuming that the Member applies itself in good faith; and

(iii) the nature of the legislative or regulatory change to be made (e.g., making a simple change in a tariff rate, as compared to making more complex change like the development of a new scientific standard)(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Arbitration, para. 17).

89)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s and distribution of Bananas, Arbitration(1. 7. 1998, WT/DS27/15).

가에 관한 로움협약(Lome Convention)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사안이 복잡하여 합리적 기간이 15개월 1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행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려면 개정안을 제출하는 EC와 의견을 제출하는 유러의회, 최종결정을 하는 EU 이사회가 연루된 복잡한 입법절차가 필요하고 이사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EC가 다시 새로운 수입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 Lome Convention 제12조에 의하여 ACP 국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적으로도 통관과 관련된 입법은 관습상 1월이나 7월에 시행되는데 이는 질서 있고 예기할 수 있는 과정에 따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제소국은 우선 DSB 권고안의 완전한 이행을 천명하지 않은 EC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WTO협약에 위배되는 조치로 판정된 사안이 간단하고도 빠른 절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집행위원회 규제에 의하여 이행되었는데 한 예로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한 이후 6개월만에 Regulation 404/93도 채택된 전례가 있고 EC의 이행입법안도 기초법안이 이사회에 계류중인 동안 준비되어 왔으므로 기초법안이 통과되면 이행법안도 빨리 채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EC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따라서 9개월 이내에 EC가 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제소국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중재자는 EC가 제시한 이행과정상의 복잡성이 15개월을 부여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 다) 캐나다 연어<sup>90)</sup>

호주는 (공중위생을 위한) 위생조사가 이행조치를 취하기 위한

90) Australia—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Arbitration(2-23-99, WT/DS18/9).

결정의 기초가 되고 위생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허가는 1997년 행정 명령법에 따라 사법적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간이 위생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주는 합리적 기간이 관련 회원국의 법률체계내에서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한이라는 EC 홀몬 판정에 동의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위반조치를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한 최소기한이 아니며 선정된 이행방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한이라는 의견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호주의 주장이 위생평가를 이행기간에 포함하는 관례를 부정한 EC 홀몬의 중재판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AQIS 수입위험 평가지침<sup>91)</sup>에 정해진 조사과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은 단지 정책적 규범이기 때문에 검역국장에 의한 행정 조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캐나다는 SPS 협정<sup>92)</sup>에 의거한 호주 정부의 의무는 입법절차가 필요한 조치가 아닌 행정조치이므로 EC 홀몬 판정과 같이 행정조치로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 기간이 15개월보다 상당히 짧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재자에 의하면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미 위반조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합치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시한을 합리적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신속한 이행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EC-홀몬 판정을 지적하고 호주가 주장하는 15개월의 이행기한은 상당부분 일련의 검역을 위한 시한이며 또한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8개월로 충분하다고 판정한다.

91)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Import Risk Analysis Process Handbook.

92)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다. 日本 酒稅의 兩者協商<sup>93)</sup>

### 1) 日本 酒稅協商的 經過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주세분쟁은 우리나라 주세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세법체제도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세를 개편과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양자협상과 중재에서도 일본의 예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증류식 소주인 소주 올류가 주로 중소기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행기간의 연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의 대폭적인 인상(소주 갑류 59%, 올류 143%)과 인하(위스키 등 58%)를 통하여 미국과 EC에게 이행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양자협상과 무관하게 일본 정부는 1996년 12월 18일 세계개정의 대가를 결정하고 1997년 1월 31일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3월 31일 주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EC는 1997년 1월 24일 일본의 협상안을 수용한 반면 미국은 소주 올류에 대한 주세인상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1996년 12월 24일 WTO에 이행기간에 대한 중재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1997년 2월 14일 중재인은 15개월을 이행기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는 이행기간의 만료일을 약 50일 남겨둔 12월 12일 미국에게 관세의 조기 인하와 소주세율의 조기 인상이라는 추가적 양보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998년 5월 1일 주세법을 재개정하였다.

### 2) 履行期間에 관한 仲裁

제소국인 미국에 따르면 DSU 제21조 3항(c)에 제기된 '특수한

93) Japanese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Arbitration(2. 14. 97, WT/DS8/15, WT/DS 10, WT/DS11/13).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선 회원국이 이행조치를 기안 및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또는 행정조치의 내용과 단순한 세율변경 또는 새로운 객관적 기준의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의 기술적 복잡성 그리고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이행에 필요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국내상황이 아닌 입법과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기한을 의미하며 따라서 합리적 이행기간은 1997년 4월이라고 미국은 주장한다. 한편 미국에 따르면 과거 일본은 간접세 개편을 위하여 1~6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 예로 1987년 수입 포도주와 주류에 대한 관세와 조세 및 레이블링에 대한 GATT 판정의 경우<sup>94)</sup> 내용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이후 이행까지 단지 3개월이 소요된 전력이 있다. 또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주세법의 단순한 세율변경으로서 일본에서는 예산연도에 세율이 개편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므로 6개월이 합리적 이행기간이 되어야 한다.

일본은 신속한 이행을 기준으로 합리적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나 DSU는 이행기간의 탄력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가 특별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23개월이 합리적 이행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주세의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요구된다는 점과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 개정안을 준비하고 채택되는 과정에 따른 어려움과 복잡성을 예로 들고 현행 행정부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소주 갑류와 울류에 대하여 각각 1.6배, 2.4배의 세율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율조정이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감안하고 또한 선진국 조세의 역사를 보아

94) Japan—Custom Duties, Taxes and Labeling Practices on Imported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BISD 34S/83, 1987.

도 이러한 규모의 인상이 극히 드문 사례임을 감안할 때 단계적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에 덧붙여 소비세 인상이 1997년 4월 단행되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주세율 인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논한다.

특히 일본은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기 4개월 이전인 1997년 10월 일단계 세율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따라서 조정기간 동안 수입자가 받는 피해를 일부 보상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밖에도 현실적으로 180,000개에 달하는 도소매업체에게 사전 통지 및 설명하고 선전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행정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심의과정의 엄격성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1월말 조세 및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가 조세입법을 기안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이전에 이미 주세율 개편과 이행기간에 대하여 양해를 한 EC는 제안된 23개월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5개월이 합리적 시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95)</sup>. 캐나다는 반면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단계적 조정안에 대하여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결국 WTO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정도가 큰 국내조치일 수록 이행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중재자는 결론적으로 신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주장이 15개월의 기준을 연장 내지는 단축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 3) 日本 酒稅協商의 結果

일본은 이행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7년 3월 이미 주세율을

95) Without taking a position on the question whether or not 23 months is, in the present cas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EC state that in general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should be 15 months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ra. 25, WT/DS8/13).

대폭 조정함으로써 협상에 있어서 자국의 성실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WTO 중재판정으로 1998년 2월까지로 명시된 이행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첫째, 1998년 2월이 아닌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위스키에 적용되는 주세를 알콜 1도/kl당 24,558엔에서 14,833엔을 인하한, 10,225엔으로 하고(58% 인하율) 동시에 소주 감류와 올류의 주세를 각각 3,696엔, 1,944엔 인상한다(59%, 48% 인상률). 둘째, 2001년 10월까지 소주 올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알콜 1도/kl당 단계적으로 3,896엔(95% 인상률) 인상하여 소주에 적용되는 주세를 9,924엔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행기간을 추가로 44개월 확보한다. 일본은 이러한 주세율 개편안에 대하여 1997년 1월 24일 EC의 동의를 받아 소주 올류에 대하여 5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였다(〈表 V-1〉 참조).

그러나 일본이 소주 올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기간의 연장을 강조한 결과, 미국은 일본 주세율의 대폭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24일 WTO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중재인은 1997년 2월 14일 일본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1998년 2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인 1997년 12월 미국에게 추가적으로 양보, 위스키 등 수입양주 세율인상과 소주세율 인하를 1998년 5월

〈表 V-1〉 年度別 日本 酒稅의 變化(酒稅法 1次 改正)

(單位: 엔/度·kl, %)

	1997. 10. 1.	1998. 10. 1.	2001. 10. 1.
소주감류	1,848(29.7)	1,848(29.7)	-
소주올류	1,944(47.6)	1,948(47.7)	1,948(47.7)
위스키	-10,783(43.9)	-3,550(14.5)	-

註: 1. 1997년 3월 31일 1차 주세법 개정에 따른 주세 부담액 변화로서 괄호안의 수치는 변화율을 의미함.

2. 일반중류주와 리큐르는 1997년 10월에 9,924엔으로 인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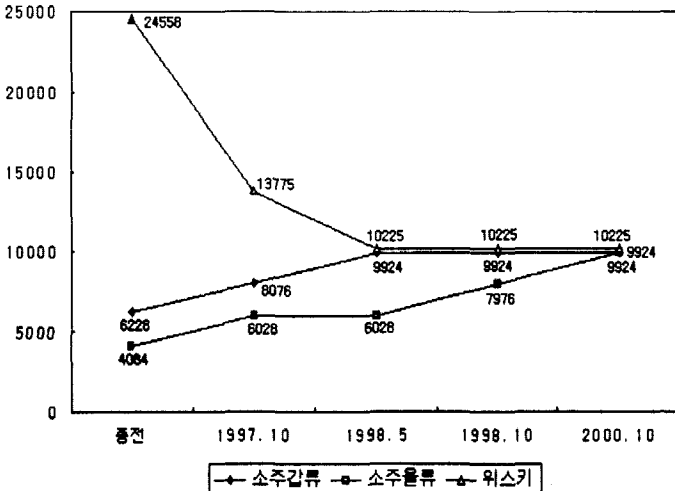
까지, 소주 올류는 2000년 10월까지 세율조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여 결국 위스키와 소주 갑류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기간은 3개월, 그리고 소주 올류에 대한 이행기간은 32개월 확보하는 선에서 미국과 합의를 보고 1998년 5월 1일 주세법을 수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추가적인 보상조치로서 2004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양허된 위스키, 진, 럼 등 수입양주에 대한 관세를 2년 앞당겨 2002년 4월부터 시행, 무세화하기로 하였다([圖 V-1] 참조).

라. 우리나라 酒稅에 대한 履行期間 判定<sup>96)</sup>

양자협상을 통하여 주세율 개편과 이행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999년 4월 9일 미국과 EC는 DSU 제21조 3(c)항

[圖 V-1] 年度別 日本 酒稅의 變化(酒稅法 2次 改正)

(單位: kℓ/度)



96) WT/DS75/16, WT/DS84/14.

에 의거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구속적인 중재를 WTO 분쟁해결기구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지난 6월 4일 분쟁해결기구에서 임명된 중재자<sup>97)</sup>는 2000년 1월 31일까지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게 우리나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중재 심리에서 각국이 펼친 주장과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된 서면보고서 및 구두심리에서 우리나라는 주세율 개편을 위해서는 1999년 9월 10일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또한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15개월의 합리적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주세 및 교육세법의 개정은 세수변화와 예산변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예산 부수법안 개정은 헌법 제59조와 국회법 제4조 등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98)</sup>.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23번에 걸친 개편사례에 있어서 단 한 번 임시국회에서 주세법 개편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는 예산변화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99)</sup>.

97) 중재인은 Claus-Dieter Ehlermann이 임명되었다.

98) 특히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2항에 따르면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는 당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을 '가능하면(if possible)'으로 해석하여 주세법 개편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행기간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개진한 데 대하여 우리나라는 '가급적'이라는 어휘가 '가능한 한(as much as possible)'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가급적이라는 어휘가 예산법안 이외 다른 법안의 처리규정을 묘사하는 형용사라고 주장하였다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EC Submission, 1999, para. 24 각주 14. 참고).

99) 당해 사례는 1995년 8월 4일 의원입법으로 자도 소주의 의무적 구입을 도입한 법개정이며 다만 1993년 EC와의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주세율 개편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구두심리에서 입법절차에 대하여 단계별로 그 내용 및 소요 기간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려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동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안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 밖에도 관련 업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주세와 교육세는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액이 270개에 이르는 지방정부와 이 밖에 다수의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되므로 이들 기관과 모두 협의하려면 행정적 절차로서 앞으로 4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연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협의 및 관보에 게재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만족하려면 초안이 빨라도 8월초에나 완성될 것이며 이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법제처가 약 45일에 걸쳐서 심의한 후 9월 말경이 되어야 국회에 정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의하면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의 개편 등 범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에는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의하면 사안이 민감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약 1개월 정도 사전고지 이외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주세율 개편은 국민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므로 당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이외에도 주세법 기본통칙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수정되고 국세청 및 업계의 전산프로그램이 변경되어야 하며 변화된 사안에 관하여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추가적인 4개월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1990년 당시 위스키세율을 200%에서 150%로 인하함에 있어서 급격한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부담과 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였고 1995

년 맥주세율을 150%에서 130%로 인하할 때에도 시행시기를 1997년 1월까지 1년간 유예한 바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DSU 제21조 3(c)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으로 15개월을 제시하고 있으며 EC 등이 특별한 상황(particular circumstances)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합리적 이행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sup>100)</sup> 중재판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본 주세와 다른 이행기간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논하였다.

## 2) 美國과 EC

EC는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1999년 2월 17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7일이 합리적 이행기간의 완료시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도 이에 동조하면서 늦어도 1999년 10월 또는 연말까지는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C에 의하면 15개월이 자동적으로 합리적 이행기간이 될 수 없다. 즉 DSU 제21조 1항<sup>101)</sup>은 권고안의 즉각적 이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DSU 제21조 3(c)항은 ‘즉각적 이행’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EC 출론 사례에서는 합리적 이행기간이 ‘당해 회원 국내 법률체계에 근거할 때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sup>102)</sup>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자동차나 호주 연어사

100) DSU 제21조 3(c)항에 따르면 중재자를 위한 합리적 이행기간의 기준은 15개월로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이행기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수 있는데 이는 제소국이나 피제소국이 입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행기간이 15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해석이다.

101) ...prompt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r rulings of the DSB is essential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o the benefits of all Members...

102)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WT/DS26/15, WT/DS48/13, 1998, para. 26.

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전례<sup>103)</sup>에 근거하여 이행기간을 결정할 때 중재자는 첫째, 채택되는 조치의 복잡성(시간이 요구되는 보건조치인지 아니면 단순한 세율 변경인지 여부) 둘째, 이행조치의 법적 성격(입법과정이 필요한지 여부) 셋째,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과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EC는 주장한다.

특히 EC에 의하면 주세법 개편은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실제 상당수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여 1998년에는 12차례나 임시국회가 열린 적이 있다. 한 예로 EC는 1998년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 및 교통세법이 개정된 바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04)</sup>.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는 단순한 세율 변경으로 상당히 짧은 기일, 즉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모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최악의 경우 법개정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하더라도 모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1999년 10월에는 동 법이 공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EC는 조세체계 간소화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주세법도 이와 연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대하여 이는 중재자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주세와 교육세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세수규모나 그 사용처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도 주세율을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5)</sup>. 즉, 수입주류에 대한 세율인하에 의한 세

103)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WT/DS26/15, WT/DS48/13, 1998, para. 15.

104)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세수보존과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조치로서 정기국회에서 모든 산적인 개혁법안을 심의할 기한이 부족하여 1998년 1월 9일 정기국회의 연장선상에서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되었다고 반박하였다.

105)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EC Submission, 1999, para. 24 footnote 14, para. 52.

수 부족분은 소주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보완하여 세수측면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sup>106)</sup>. 이 밖에도 세율변경이 대통령령이나 국세청 기본통칙으로 규제되지 않고 오직 주세법 제19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치의 채택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행정조치의 조정은 기술적 문제로서 법률안 개정의 준비작업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도 대부분의 경우 세율변경은 법률안 공포 이후 며칠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 예로 세율변경이 수반된 최근의 주세법 개정은 1993년 12월 31일과 1995년 12월 29일 두 차례 채택되었고 이들은 모두 다음 해인 1994년과 1996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한다.

### 3) 仲裁判定

중재자는 DSU 제 21조 1항에 언급된 신속한 이행(prompt compliance)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기간이 중재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중재자의 기준은 15개월이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15개월보다 짧거나 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EC 홀몬판정에 근거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은 '과세소국의 법률체계 내에서 권고안을 이행하는

106)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주세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패널판정은 차별과세의 시정으로 구체적 세율수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한 과세주권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따라서 세율수준에 대한 고려로서 이행기간이 결정될 수는 없다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AB/R, 1996, page 29,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WT/DS26/15, WT/DS48/13, 1998, para. 38 참고). 한편 전례에 의하면 중재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It is not within my mandate under Article 21.3(c) of the DSU, to suggest ways or means to the EC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Appellate Body Report and Panel Reports. My task is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implementation must be completed. ... Although the withdrawal of an inconsistent measures is the preferred means ... it is not the only means of implementation" (Australia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WT/DS18/9, 1999, para. 38 참고).

데 필요한 가장 짧은 기한'이다.<sup>107)</sup> 그런데 현 분쟁에 있어서 모든 제소국은 주세법을 개편하려면 법안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예산관련 부수법안은 일반적으로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회부된다는 사실도 동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주세법과 교육세법의 개편안이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수 있지만 피제소국의 법률체계 내에서 가장 짧은 기한이라는 의미가 모든 사례에 있어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임시국회를 통하여 WTO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규정짓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중재자의 의견이다. 환언하면 제시된 정황에 기반할 때 주세법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빠른 이행을 위하여 세수 중립적으로 주세율을 개편할 수 있다는 미국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중재자가 제시할 권한은 없다고 논하고 회원국이 채택한 이행방안이 권고안과 합치되는 한 그 방법은 회원국의 자주적 권한에 속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중재자는 같은 논리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추가적으로 5개월이 소요된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대하여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하여 어떤 그리고 얼마만큼 각종 규제조치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08)</sup>. 또한 만약 법안개정 이외에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다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는 법안개정 작업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개정과 제반 규칙의 변경은 2000년 1월 1일까지 동시에 공포될 수 있다고 판정한

107) ...Read in context, it is clear that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s determined under Article 21.3(c), *should be the shortest period possible within the legal system of the Member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Arbitration, para. 26).*

108)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Arbitration, WT/DS75/16, 1999, para. 45.

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안의 공포 이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30일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행기간은 권고안이 채택된 1999년 2월 17일로부터 11개월 2주일이 경과한 2000년 1월 31일이 되어야 한다고 중재자는 결정한다.

## Ⅵ. 우리나라 WTO 酒稅判定的 評價와 履行

### 1. WTO 酒稅紛爭 判定的 評價

전술한대로 우리나라는 상소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패널이 사용한 GATT 제3조 2항의 법리적 해석과 사실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주세분쟁은 우리나라의 패소로 결말이 났다. 패소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본이 이미 소주분쟁에서 패소하였고 따라서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도 패널이 판정의 일관성과 WTO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 주세판정이라는 전례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상소심의 판정을 빌리면 선행하는 패널보고서는 “GATT 체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적절한 사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6년 일본 주세분쟁에서 일본 주세 패널은 1987년 판정을 패널 결정의 한 요인으로 명시적으로 공인한 바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GATT협정이 상업협정이며 소비자 기호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일본 상소심 판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소주시장은 일본과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서 일본 주세패널에서 사용된 GATT 제3조 2항의 해석과 적용의 틀을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때 일본 사례와 다른 결론이 유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용용도나 판매경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시장 점유율의 변화와 세전가격의 차이 등에 입각하여 제조국이 소주와 수입주류간에 경쟁관계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 또는 경쟁의 부재가 차별적 과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

상하고 GATT 제3조를 ‘미래의 경쟁’까지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패널 판정에 의하면 현존하는 경쟁에 대한 통계학적 증거는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중요한 것은 경쟁의 강도가 아니라 성격이며 또한 소비자가 분쟁대상 제품을 대체재로 간주하는지 또는 간주할 수 있는지(consider or could consider)가 관건이라고 패널은 논한다. 이러한 주장은 ‘차별적 국내규정이 국산품에 대한 소비자 기호를 창출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일본 주세패널의 판정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패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실제 소비행위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이라는 GATT 제3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논한다. 뿐만 아니라 상소심은 우리나라 시장이 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분쟁대상조치로 인하여 해당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장에서의 소비자 행태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논한다. 패널은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일본 시장의 경쟁상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분쟁대상 제품들이 지금 또는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sup>1)</sup>.

이와 같이 패널과 상소심은 우리나라 주세법이 차별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제시된 증거들이 차별과세로 왜곡된 경쟁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선별적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믿음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수입제한과 세율의 차이 이외에도 우리나라 주세법이 소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특성에 따라 예외조항으로 구별하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조하였다.

1) 특히 우리나라 소주와 일본 소주의 물리적 특성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일본 주세분쟁은 우리나라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전례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브랜드 아스피린과 상표없는 아스피린에 대한 비교는 수용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제시한 생수와 수돗물에 대한 차별 과세는 ‘다른 국가의 다른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Nielsen 보고서도 수용하지 않는 반면 EC측의 Dodwell 보고서는 판정의 중요한 근거로 적용한다. 패널의 선별적 증거 사용의 또 다른 예는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이 지난 8년간 완전히 개방되어 왔으며 그 동안 수입주류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소주의 소비량이 일정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입주류와 소주의 상대적 소비추세는 일본 주세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패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에서 언급도 하지 않는다.

결국 패널과 상소심은 차별 과세에 근거하여 잠재적 경쟁 또는 미래에 발생할(또는 발생하지 않을) 경쟁이라는 논리를 도입, 제시된 증거를 해석하고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패널의 논리는 결국 수입이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의 부재가 대상조치로 인하여 야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제소국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면제하고 그러한 경쟁의 부재가 왜곡된 국내조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제소국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의 강도가 아니라 경쟁의 성격을 중시함으로써 패널의 주관적 판단을 판정에 개제하고 실제 시장을 검토할 필요성을 무시함으로써 향후 분쟁에서 판정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패널이 ‘잠재적 경쟁’이라는 법리적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패소하게 된 다른 주요 요인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취향의 변화로 인한 프리미엄 소주와 합성소주의 개발 그리고 국내업체의 광고전략이다. 일본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 패널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주가 점차 고급화되고 국내업체에 의하여 ‘숙성된 소주’ 또는 ‘보드카와 같은 제품’(Website 광고)으로 선전되는 사실이 패널의 추론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증거

로서 이러한 제품과 광고의 개발이 수입주류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려는 국내업체의 판매전략으로 해석되어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sup>2)</sup>.

이 밖에도 궁극적으로는 서양의 음주문화에서 증류주가 하나의 경쟁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도 패인이 된다. 요컨대 패널은 차별과세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최근 시장의 동향에 기초하여 소주와 수입주류가 경쟁상품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잠재적 경쟁과 경쟁의 성격과 같은 개념을 동원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유사한 시장으로 단정하여 일본 시장의 소비추세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불충분하다고 인식되면 패널은 제네바 준비회의에서 GATT 제3조 2항의 대상제품으로 예시되었던 사과와 오렌지의 예를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주류가 경험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패널의 입장은 특히 물리적 특성의 비교에서 상반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수입주류가 같은 증류주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외양이 유사하다고 판정하고 따라서 이들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한 사실에서 그 저변의 의도가 드러난다.

패널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패널의 논리가 예외적인 사실에 의존하거나 논리의 전개가 불합리하거나 상충되어 패널 판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패널이 분쟁대상조치를 예단하고 역측에 입각,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가격의 변화라든가 환율의 변화라는 부차적 사항으로 가격차이를 무시하고 제조원가 등 외국소주가 수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로서

2) 우리측은 〈청산리벽계수〉와 〈김삿갓〉 등의 프리미엄소주가 1997년 이후 생산이 중지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패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주세법의 보호효과를 논한다.

또한 일본 주세 패널이 국내 위스키 시장에 대한 일본 소주와 수입위스키의 경쟁이 수입위스키와 소주간의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판정한 데 대하여 이는 간접적인 경쟁일 뿐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프리미엄 소주와 양주의 소비감소 그리고 일반소주의 수요증대가 이들 제품간의 경쟁관계를 입증한다고 단정한다<sup>3)</sup>. 이밖에도 제소국이 제시한 광고 사례는 경쟁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수용된 반면 우리나라가 제시한 광고는 그러한 선전이 서울의 차이를 이용한 광고전략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산 테킬라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이, 또한 Dodwell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단지 동 보고서에 테킬라가 포함된 사실로서 패널이 테킬라를 경쟁제품에 포함한 것은 DSU상의 패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패널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의 대응을 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한 예로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가 과거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우리나라가 적기에 반박하지 못하는 등 제소국의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인용이나 사실왜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나라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sup>4)</sup>. 물론 일본 주세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따라 패널과 상소심의 판정이 번복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향후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패널 논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전계서 para. 10.41, 각주 124.

4) 잠재적 경쟁관계에 대하여 제소국은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와 함께 소주와 수입양주간의 가격배수(평균이 아닌 예외적 가격차이), 숙성된 소주(색료 첨가를 주장), 소비행태의 변화(at the expense of argument) 등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였다.

## 2. 履行措置：兩者協商과 酒稅率 改編

전술한대로 미국과 EC와의 양자협상에서 이행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증제가 지난 1999년 5월 12일 개최되었고 그 결과 2000년 1월 31일까지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는 주세와 교육세법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 기간내에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DSU 제22조 2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소국과 협의, 자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2000년 2월 2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하에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정지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

1997년 당시 수입양주의 규모는 약 2억 2천만달러에 달한다<sup>5)</sup>. 따라서 우리나라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이에 상당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EC 바나나 분쟁에서 보듯이 제소국은 실제 피해액수에 비하여 상당히 과장된 규모의 수출품에 대하여 양허정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DSU 제22조 6항에 근거하여 양허정지의 수준에 대한 이의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지만 일단 보복조치가 공표되면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교란될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품을 선진국 수입업체가 꺼리게 된다면 수출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WTO 판정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절에서는 일본과 칠레 주세분쟁 등 기존 WTO 판례에 입각하여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 특히 從價稅 체계하에서 차등과세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과 칠레분쟁에 대비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從量稅가 도입될 때 이

5) 1998년의 경우 양주의 수입은 IMF사태의 영향으로 약 1억 2천만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미국 등이 이러한 수입액수물 기준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 이후 양자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행방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장·단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알콜度數에 따른 差等課稅와 最小許容水準

##### 1) 알콜度數에 따른 差等課稅

일각에서는 소주의 알콜도수가 위스키에 비하여 낮으므로 지금과 같은 從價稅 체계를 유지하면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도입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아래 <表 VI-1>에서 보듯이 알콜 1도당 2.5%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교육세를 30%의 단일 세율로 할 경우 소주에 대한 합산세율은 38.5%에서 81.25%로 약 43% 증가하지만 위스키 등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격차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차등화 방식은 고알콜 고세율 원칙에 충실하고 국내 소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으로서 세수효과나 음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감안하여 알콜도수에 적용되는 세율을 <表 VI-1>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從價稅 체계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GATT 내국민 대우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판례가 없고 從量稅(specific taxes)를 채택하고 있는 상당수 국가가 알콜

<表 VI-1> 알콜度數에 따른 酒稅率 差等化의 例

(單位: %)

주 종	알콜도수	현 행	조 정
소 주	25도	35(38.5)	62.5(81.25)
위 스 키 등	40도	100(130)	100(130)
리 큐 르	35도	50(55)	87.5(113.75)

註: 1. 알콜 1도당 2.5% 세율 적용시의 주세와 교육세 합산세율임.

2. 위스키 등은 브랜드, 일반증류주를 포함하며, ( ) 안은 교육세 포함 세율임.

도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일면 타당하게 보인다. 또한 차등세율이 소위 DSU 제22조 1항<sup>6)</sup>에 명시된 ‘완전한 이행’은 아니더라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DSU 규정을 이용하여 충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가능한 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관철하되 從價稅 체계하에서 차등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시도해 볼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WTO 판례와 통상전략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추후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칠레의 경우 從價稅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EC와 미국 등은 이러한 칠레의 특별세가 국산품인 피스코(Pisco)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어 GATT 제3조 2항에 위반된다고 1997년 12월 WTO에 제소하였으며 지난 1999년 6월 15일 WTO패널은 이러한 칠레 주세법이 GATT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바 있다<sup>8)</sup>. 뿐만 아니라 차등세율을 수용할 경우 미국이 EC 바나나 분쟁에서 감행한 것처럼 완전한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기구의 판정과 상관없이 미국과 EC는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에 대한 상당

6) 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re temporary measures available in the event tha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re not implemen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owever, neither compensation nor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s preferred to *full implementation* of a recommendation to bring a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covered agreements.

7) DSU 제22조 2항에 의하면 중재인이 결정한 합리적 기간 이내에 대상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에 대한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와 보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만약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의해 보복조치를 취하는데 DSU 제22조 6항에 따르면 보복조치의 수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WTO 중재인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며 그 동안은 양허정지 등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

8)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WT/DS75/1, 1997)와 Chile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WT/DS110/1, 1998, WT/DS87/R, 1999).

한 피해를 각오하지 않는 한 차등세율의 적용은 바람직한 통상전략이 아니다.

## 2) 最小許容水準(de minimis)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세율은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과 부속서 주해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사하지 않은 과세’ 즉, 최소허용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일본 주세 상소심에 따르면 GATT 제3조 2항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 논하고 있는 세율상의 차이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초과하는 과세’와 ‘유사하지 않은 과세’의 의미는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국산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품에 부과된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다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유사하지 않은 과세가 되려면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야 한다<sup>9)</sup>. 환언하면 1987년 일본 주세패널은 ‘제품간의 미소한 차별과세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보호효과는 각 사례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차별과세가 보호효과를 미치지 않는 일정한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과세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정한다<sup>10)</sup>.

이러한 기존 판례에 근거할 때 ‘유사하지 않은 과세’란 해당 사례에 있어서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품에 부과된 세금보다 과중하고 또한 그 규모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

9) To interpret “in excess of” and “not similarly taxed” identically would deny any distinc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Article III:2. ... there may be an amount of excess taxation that may well be more of a burden on imported products than on domestic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but may nevertheless not be enough to justify a conclusion that such products are “not similarly taxed”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II:2, second sentence. We agree with the Panel that this amount of differential taxation must be more than de minimis to be deemed “not similarly taxed” in any given case.(Japan Appellate Body Report p.27, 1996).

10) The Panel was of the view that also small tax differences could influence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directly competing.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11)</sup>.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주세분쟁에서 패널은 수입위스키에 대한 從價稅 세율이 희석식 소주에 비하여 3배나 증가되는 등 세율격차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고 판정하였다<sup>12)</sup>.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GATT 제3조는 다른 WTO협정<sup>13)</sup>과 달리 최소허용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나 일본 주세분쟁에서도 패널이 최소허용수준의 범위에 대하여 논한 적이 없고 단지 일본 주세패널이 수입주류와 일본 소주의 세부담 차액이 상당하므로 최소허용수준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sup>14)</sup>.

한편 최소허용수준의 범위는 사안별 그리고 양자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할 사항이다. 한 예로 일본 주세분쟁에서 EC는 일본 소주(갑·을류)와 위스키에 대하여 알콜 1도/kl당 각각 9,924엔과 10,225엔의 주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하여 3%의 최소허용수준을 인정하였으나 양해각서에서 EC는 이러한 합의가 최소허용수준이나 이행기간 등에 관한 WTO에서의 EC의 입장을 예단하는(prejudge) 내용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최소허용수준을 포함하여 GATT 규정에 합치되는 유사한 과세를 적용하려면

11) Thus, to be "not similarly taxed", the tax burden on imported products must be heavier than on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domestic products, and that burden must be more than de minimis in any given case(Japan Appellate Body Report para. 27).

12) 전개서 para. 10.100.

13) 반덤핑 이행협정(제5조 8항)은 최소허용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덤핑률이 2% 미만이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으로 간주되고 수입량이 3% 미만이면 무시할만한(negligible) 수준으로 처리된다. 한편 보조금협정상(제11조 9항, 제27조 10항)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은 종가기준 1%(개발도상국: 2%) 미만이며 이 밖에도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총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de minimis를 5%(개도국: 10%)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4항).

14) Japan Panel Report 각주 118, 1996.

15)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on Modalities for Implementation, p. 5, WT/DS8/17, WT/DS10/17, WT/DS11/15, 1997.

일본 주세패널의 판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유사한 과세를 결정할 때 가격대비 세부담(tax/price ratio)이 주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과 EC는 용량이나 또는(從量稅에서는) 알콜도수와 같은 소위 객관적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패널은 제품 1리터당 세액, 알콜 1도당 세액, 從價稅 여부 그리고 가격대비 세율을 고려하는데, 일본 주세의 경우 특히 알콜 1도당 세부담의 차이가 큰 사실<sup>16)</sup>을 지적하고 따라서 세부담이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고 판정하였다(〈表 VI-2〉 참조)<sup>17)</sup>.

이러한 일본 패널의 판정에 비추어볼 때 논의의 핵심은 WTO협약이 從價稅 체계에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이미 칠레 주세분쟁에서 패널이 이러한 차

〈表 VI-2〉 日本 燒酎와 輸入酒類의 稅負擔 比較

(單位: 엔)

주 종	알콜도수	1kl당	알콜 1도/kl당
소 주 갑 류	25°	155,700	6,228
소 주 을 류	25°	102,100	4,084
위 스 키	40°	982,300	24,558
브 랜 디	40°	982,300	24,558
스 피 릿 류	38°	377,230	9,927
리 큐 르	40°	328,760	8,219

資料: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R, para. 6. 33, 1996(제Ⅲ장 4절 〈表Ⅲ-2〉 참조).

- 16) 한 예로 수입양주 가운데 세부담이 가장 낮은 리큐르가 소주 갑류(증류식)에 비하여 상대적 세부담이 1kl당 2.1배, 1도당 1.3배 정도 높다.  
 17) 이 밖에도 가격대비 세율에서는 같은 주종간에도 그 비율의 편차가 큰 점, 저가 국산주가 제외된 것과 從量稅체계 내에서는 저가 수입주의 세부담이 커서 가격대비 세율이 저평가된다는 점, 기타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대략 비슷한 세부담(가격대비)”의 일본측 논리가 거부당하였다(Japan Panel Report para. 6.33, 1996).

등과세를 실질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패널의 판정이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從價稅를 유지 하면서 알콜 1도당 동일한 주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일본 주세 판정 기준에 비추어 보면 왜 알콜도수에 비례한 차등과세가 WTO규정에 위배되는 과세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 <表 VI-3>에서 보듯이 소주와 위스키의 대표적 주종에 대하여 알콜 1도당 2.5%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용량 또는 알콜도수에 따른 절대세액을 구하면 소주와 위스키 사이에 세액이 각각 48배와 43배나 차이가 나며 가격 대비 세율도 1.9배에 달한다.

반면 소주세율을 100%로 인상하여 세액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表 VI-4>와 같은데 절대세액은 여전히 위스키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동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주종간의 세전가격 차이로 위스키의 세부담이 절대적으로 크며 만약 WTO패널이 일본 패널의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를 판정한다면 극히 미소한 최소

<表 VI-3> 燒酎와 위스키間 稅負擔 差異 I (既存 教育稅率 包含)

	1ℓ 당	1도당	從價稅기준 (tax/price ratio)
진로소주	572원	8원	69%
임페리얼	27,386원	342원	130%

註: 소주와 위스키에 각각 62.5%, 100%의 주세율이 부과된 경우로서 1ℓ 당 1도당 세액은 진로소주와 임페리얼이 각각 23원, 685원임.

<表 VI-4> 燒酎와 위스키間 稅負擔 差異 II (既存 教育稅率 包含)

	1ℓ 당	1도당	從價稅기준 (tax/price ratio)
진로소주	1,081원	16원	130%
임페리얼	27,386원	342원	130%

註: 소주세율이 100%인 경우로서 1ℓ 당 1도당 세액은 진로소주와 임페리얼이 각각 43원, 685원임.

허용수준을 감안한 從價稅 체계 이외의 개편방안으로는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고집하려면, 승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패널 판정에서 제시된 기준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용량이나 알콜 1도당 절대세액에 기반하여 세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장 중립적으로 알려진 附加價値稅도 저가품에 대하여 차별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sup>18)</sup>.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체계인 從價稅에서 알콜도수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차별과세하는 것은 고도주의 음주에 따른 음주운전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목표로서 이는 GATT 제20조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는데 만약 GATT 제20조<sup>19)</sup>가 적용되려면 패널에서의 입증책임이 우리나라에게 전가된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EC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GATT 제20조에 의존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변호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수정·제안된 주세율 체계가 불공평한 차별수단임을 주장할 것이 명약관화하다<sup>20)</sup>.

### 3) 從量稅

우리나라가 만약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나 이행기간의 연장에 집착한다면 정치적 논리로 인하여 일본이 주세분쟁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EC와 미국은 반드시 위스키 세율의 대폭 인하나 관세율인하 등의 보상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덧붙

18) Japan Panel Report para. 4.138, 1996 참조.

19) GATT 제20조는 “불공평한 차별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공중도덕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0) 물론 칠레 주세분쟁이 상소심에서도 명백한 EC의 승소로 확정되면 GATT 제20조 이외에는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

여서 주세분쟁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세율 체계의 從量稅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에 연연하여 從量稅로 전환함과 동시에 위스키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소주세율을 변경한다면 <表 VI-5>에 나타나 있듯이 소주의 절대 세부담은 7,196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는 從價稅에서 100%의 동일세율을 모든 주류에 부과하는 방안에 비하여 세부담이 무려 15.7배나 증가하고 소주의 가격은 약 8배나 상승하는 결과를 유발한다. 물론 위스키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여 이를 소주의 세부담에 연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주의 세부담은 從價稅 체계보다 증가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세수감소를 유발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소주(25도)와 위스키(40도)의 알콜도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소주가 가격은 위스키에 비하여 상당히 저가인 상황에서는 從價稅가 從量稅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하며 이를 양자협상에서 간과하여 從價稅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表 VI-5> 從量稅 轉換時 燒酎價格과 稅負擔의 變化

(단위: 원)

구 분 (360ml 기준)	현 행			조 정				차이 (B/A)
	제조 원가	세 액	소비자 가 격	종 가 세		종 량 세		
				세 액	소비자 가 격 (A)	세 액	소비자 가 격 (B)	
진 로	299	156	700	457	1,000	7,196	7,700	7.7배
임페리얼	7,526	11,515	26,000	11,515	26,000	11,515	26,000	-

註: 1. 알콜 1도당 위스키 세부담이 약 288원(11,515원/40)이므로 소주의 세부담은 288원에 소주의 알콜도수인 25를 곱한 수치임.

2. 從價稅는 소주 주세율을 위스키와 동일한 100%로 인정한 경우임.

## 나. 關稅引下 등 考慮事項

### 1) 日本 酒稅協商의 示唆點

일본 주세의 예에서 보듯이 비록 분쟁해결기구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는 주세법과 교육세법의 개편을 2000년 1월 31일까지 완결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주세율 개편의 내용에 따라 양자협상에서 이행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주세율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통상협상의 전략은 2000년 1월 31일까지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양주에 대하여 유사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되 국내 사정에 연연하여 주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도 대폭 양보한 일본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소주세율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우선 EC와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들이 사전에 우리나라와의 협상내용을 통보 및 협의해가면서 번갈아 강온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나 이행기간의 연장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위스키 주세율이나 관세율 인하 등의 보상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국내상황에 따라 대폭적인 보상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주세율 체계의 從量稅 전환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sup>21)</sup>.

특히 일본의 경우 소주 올류(증류식 소주)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충분한 이행기간의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소주에 대한 주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위스키에 대한 세율은 상당 수준 인하하여 EC의 동의를 받았지만 일본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파악한 미국이 양자협상에서 끝까지 이행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EC와 합의가 이루어진 주세율 개편방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하고 WTO 중재까지

21) 통상전략적 고려 요인 이외에 외부효과 등을 감안한 바람직한 주세율 개편방향은 제II편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밀려 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의 무세화를 조기에 단행하게 되었다.

## 2) 補償案으로서의 關稅 引下

양자협상에 있어서 관세 인하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주세율 인하보다 관세 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위스키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EC와의 협상에 의하여 1996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 밖에도 브랜드와 럼, 진, 보드카 등 일반증류주에 대하여 각각 15%와 20%의 협상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스키 관세의 인하 내지는 철폐는 우선 실효보호율(effective protection) 측면에서 수입양주 원액에 대한 관세를 동시에 인하하지 않는 한 국내업체에 관한 실질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국과 국내업체는 일본의 예를 들어 관세를 양보하는 대신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圖 VI-1]에서 보듯이 2004년 4월까지 관세의 철폐가 이미 양허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2002년 4월의 관세 철폐는 그러한 양허안을 조기에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일회적인 비용지불에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인하는 영구적이므로 이러한 협상안은 지속적인 보호효과의 약화와 함께 관세 수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up>22)</sup>. 이밖에도 관세 철폐나 인하는 맥주 등 다른 주종에 대비한 위스키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값싼 위스키 등 저가 양주의 수입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관세만이 아닌 수입 양주에 대한 추가적인 주세와 부가세 세입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세의 과세표준이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액으로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실질적인 세율인하는 관세 20%를 훨씬 상회하여 약 51%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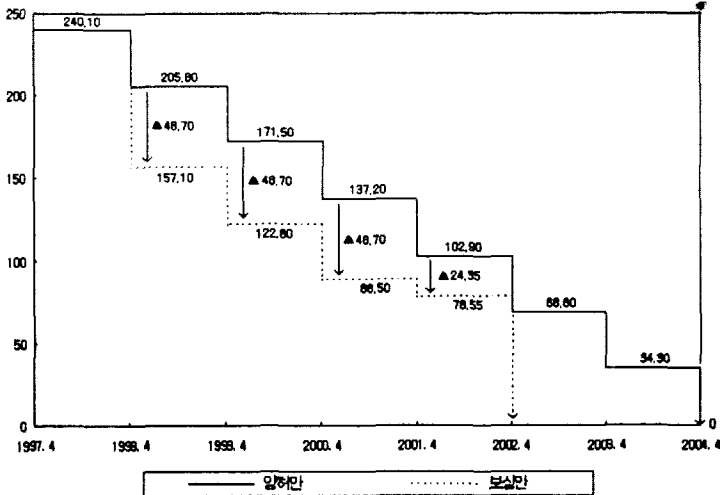
22) 수입양주 등에 관한 관세수입은 1998년 현재 약 885억원에 달한다.

다. 즉, [圖 VI-2]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세에도 주세가 부과되므로 현행 세율 체계에서 CIF 수입가격에 적용되는 실제 위스키 주세율은 130%가 아닌 156% ( $1.2 \times 130\%$ )이다. 또한 CIF 수입가격에 주세를 더한 후 출고분 부가세 10%가 부과되므로 실제 부가세율은 약 27.6%로서 총세율은 203.6%에 달한다. 그러나 만약 관세가 철폐되면 주세율은 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CIF 수입가격의 130%로 하락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의 실질세율도 23%로 인하여 총세율은 153%에 달하게 되며 따라서 관세 인하의 실질적 효과는 20%가 아닌 50.6%의 세율 인하이다.

한편, 관세와 주세 인하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세 30%를 본세인 주세에 통합함과 동시에 주세율을 20% 인하하면 수입양주의 총 실질세율은 204%에서

[圖 VI-1] 日本 위스키 關稅率 양허 및 보상안

(單位: 엔/리터)



[圖 VI-2] 現行 및 關稅 撤廢時 輸入洋酒에 대한 實質 總稅率

(단위: %)

현행:

CIF 수입 가격 (100)	+	관세 20% (20)	+	주세 교육세 130% (156)	+	출고분 부가세 10% (27.6)	=	전체세율  20+156+27.6=203.6
--------------------------	---	-------------------	---	----------------------------	---	-----------------------------	---	-------------------------------

관세 철폐:

CIF 수입 가격 (100)	+	주세 교육세 130% (130)	+	출고분 부가세 10% (23)	=	전체세율  130+23=153
--------------------------	---	----------------------------	---	---------------------------	---	------------------------

177%로 감소하는 반면 국산양주의 실질세율은 131%로 떨어진 다<sup>23)</sup>. 따라서 관세 철폐와는 달리 주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수입양주와 국산양주와의 세율격차가 발생하여 국산양주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게 되며 그 규모는 세율로 볼 때 약 46%에 달하게 된다. 또한, 현행 세율 체계와 비교할 때 수입양주와 국산양주의 총 실질세율은 각각 26.4%(203.6% - 177.2%), 22%(153% - 131%)씩 감소한다. 따라서 이를 수입주류에 부과되는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실제 세율의 하락(50.6%)과 비교하면 주세율 인하의 경우, 국산양주에 대한 보호효과가 유지되면서 세율 인하도 소폭임을 알 수 있다.

23) 물론 수입양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실효보호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국산양주에 투입되는 수입원액에 대한 관세도 같이 인하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圖 VI-3] 酒稅率 20% 引下時 國產 및 輸入洋酒 實質 總稅率

(단위: %)

국산양주 :

원 가 (수입원액) 판매관리 비용이윤 (100)	+	주 세 교육세 110% (110)	+	출고분 부가세 10% (21)	=	전 체 세 율  110 + 21 = 131
--	---	-----------------------------	---	---------------------------	---	-------------------------------

수입양주 :

CIF 수입 가격 (100)	+	관 세 20% (20)	+	주 세 교육세 110% (132)	+	출고분 부가세 10% (25.2)	=	전 체 세 율  20 + 132 + 25.2 = 177.2
--------------------------	---	--------------------	---	-----------------------------	---	-----------------------------	---	--

### 3. 칠레 酒稅紛爭의 示唆點<sup>24)</sup>

#### 가. 칠레 酒稅法과 競爭關係

지난 1999년 6월 15일 WTO 패널은 칠레의 주세율 체계가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정을 내렸다. 칠레는 從價稅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판정이 우리나라 주세율 개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추가적인 통상분쟁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從價稅에서 차등과세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4)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WT/DS87/R, WT/DS110/R, 1999).

칠레의 경우 EC의 통상압력에 직면하여 지난 1997년 11월 칠레 주세법(ILA)을 개편한 바 있다<sup>25)</sup>. 개정안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증류주를 위스키와 국산주인 피스코(Pisco)<sup>26)</sup> 그리고 기타 주류로 구분하여 1998년 12월부터 각각 70%, 25% 그리고 30%의 주세율을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위스키 세율을 2000년 1월 12일까지 인하, 53%의 세율을 부과한다. 연후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주종 분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증류주에 대하여 알콜도수에 따라 아래 <表 VI-6>과 같이 차등과세한다.

<表 VI-6> 칠레의 酒稅率 體系(2000. 12)

(單位: %)

알콜度數	稅率
35° 이하	27
36° 이하	31
37° 이하	35
38° 이하	39
39° 이하	43
39° 초과	47

資料: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para. 2.22, Table 2, 1999.

구체적으로는 알콜도수가 35도 이하인 주류는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후 알콜 1도가 증가할 때마다 1도당 세율을 4% 포인트 인상하되 알콜도수가 39도 또는 그 이상이면 세율은 47%로 한다. 칠레법에 따라 피스코는 알콜도수가 30도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통적인 피스코와 프리미엄 피스코의 알콜도수는 30~35%로서 판매

25) Additional Tax on Alcoholic Beverages(*Impuesto Adicional a las bebidas Alcohólicas*), Law No. 19,534 of 13 November 1997.

26) 피스코는 칠레의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원료로 하여 그 지역에서 발효 및 증류 그리고 숙성된 증류주이다.

량의 약 90%(1997년)을 차지하고 40도 이상 고도주인 피스코의 판매량은 약 9.1%에 달한다. 한편 위스키(40도)와 브랜디 및 코냑(38도) 등 분쟁대상 주류는 칠레법<sup>27)</sup>에 따라 최소 알콜함유량을 포함하므로 새로운 주세율 체계는 여전히 국내제품인 피스코에 대비하여 수입주류를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것이 EC의 주장이다.

칠레 주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와 유사하지 않은 과세 및 보호효과 등 일본 주세분쟁의 판정기준에 따라 검토되었고 대체관계 여부는 물리적 외양, 사용용도, 판매 경로 그리고 가격격차 및 대체탄력성에 기반하여 분석되었다. 특히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 주세분쟁이 종결되고 난 직후 판정이 내려져 수입주류에 대비한 프리미엄 국산제품의 개발과 광고 등 잠재적 경쟁관계에 입각하여 대체재로 판정되었다<sup>28)</sup>.

구체적으로 피스코는 음용방식과 판매경로 등에서 수입주류와 유사하고 수입양주와 경쟁을 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피스코가 개발되었고 광고도 유사하며 이 밖에도 피스코와 수입주류가 비록 다른 원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와 같이 주류의 근본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패널의 판정이다. 패널은 피스코 수요와 위스키 가격의 교차탄력성이 0.26에 이른다. 1995년 Gemines 보고서에 대하여 비록 탄력성이 낮지만 주류가 경험재이며 왜곡된 조세가 경쟁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여 동 보고서를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피스코가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와 함께 음용된다는 점에서 포도주, 맥주 그리고 위스키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칠레 공정거래위원회(Central Preventive Commission)의 의견을 인용한다. 패널에 따르면 경쟁법에서 정의되는 시장의 범위가 GATT 제3

27) Decree 78/1986 Article 12.

28)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7.20~7.25, 1999.

조 2항 둘째 문장에 적용되는 시장의 개념과 다르기는 하지만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상기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정이 피스코와 수입주류간의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sup>29)</sup>.

#### 나. 類似하지 않은 課稅

일본 주세 상소심에 따르면 유사하지 않은 과세가 적용되려면 수입주류에 대한 세금이 국내제품보다 과중하고 그 차이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차별과세 여부의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칠레 패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사례에 있어서 공통의 최소허용수준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해당 시장과 제품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분쟁 대상인 조세와 여타 다른 정부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C에 의하면 칠레 주류시장에서 판매되는 피스코 중 약 90%가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세법에 의하여 2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위스키, 보드카 등 수입주류는 칠레법에 의하여 알콜도수가 40도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7%의 세율 그리고 알콜도수가 38도인 브랜드는 3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EC는 칠레의 주세율 체계가 從價稅로서 알콜 함유량이 아닌 주류가격에 기초하여 세금이 결정되는 반면 가격은 알콜도수와 상관없이 있기 때문에 칠레 주세가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 주종의 병(bottle)당 세율에 기초하여 유사하지 않은 과세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칠레의 경우 주세율이 주종별로 27%에서 알콜 1도당 4% 포인트 증가하여 47%까지 부과되므로

29)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7.87, 1999.

이는 명백히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고 EC는 주장한다. EC에 따르면 병당 세율비교가 수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콜 35도의 피스코의 경우 1도당 0.7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알콜 40도에 해당하는 위스키 등의 경우 1도당 1.18%의 세율이 적용되어 후자의 경우 세부담이 대략 50%를 초과하므로 세율격차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表 VI-7〉 세 번째 열(C) 참조).

즉, EC에 의하면 칠레가 從價稅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알콜도수와 상관없이 주세율이 일정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알콜 함유량에 따라 알콜 1도당 세율이 주종별로 변화할 수 없다(direct proportionality rule). 일본 주세패널이 從量稅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인정한 이유는 과세대상이 주류가 아닌 알콜 함유량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EC는 HS 2208에 속하는 모든 증류주에 대하여 알콜 함유량에 따라 균등한 從量稅를 부과한다. 그런데 칠레의 논리에 의하면 알콜도수가 다를 경우 그 차이가 아무리 미소해도

〈表 VI-7〉 칠레 酒稅率(2000. 12.)과 各種 方案에 따른 알콜 1도당 稅率

(單位: %)

알콜도수(A)	從價稅率(B)	1도당 세율(C) (B/A)	從價稅율(D) (1도당 0.77%)	1도당 세율(E) (30% 균등세율)
20	27	1.35	15.42	1.50
25	27	1.08	19.28	1.20
30	27	0.90	23.13	1.00
35	27	0.77	27.00	0.86
38	39	1.03	29.30	0.79
40	47	1.18	30.84	0.75
43	47	1.09	33.15	0.70

註: (D)는 알콜 1도당 피스코 세율(0.77%)을 각 주류에 적용한 주세율이고, (E)는 모든 주류에 대해 30% 주세율을 균등하게 적용한 경우의 알콜 1도당 세율임.

資料: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para. 4.361, Table 30~32, 1999.

(주종간에) 차등과세가 허용되므로 결국 유사하지 않은 과세란 있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만약 과세대상이 주류라면 알콜도수와 관계없이 주류 중량에 따라 세율이 비교되고 반대로 과세대상이 알콜도수라면 주류의 종류와 관계없이 알콜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비교되어야 한다<sup>30)</sup>.

이러한 EC의 주장에 대하여 칠레는 알콜도수에 따른 차별과세는 일본 주세패널도 인정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요인에 기초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모든 주종에 대하여 알콜 1도당 세율이 일정해야 한다는 EC의 논리는 GATT/WTO 체제 내에서 수용된 바 없다고 논한다. 또한 EC 논리에 근거하면 포도주와 맥주 그리고 증류주에 대하여 알콜도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EC의 주세율 체계도 유사하지 않은 과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EC 자동차세 등 균일하지 않은 從量稅 과세의 사례는 상당하다고 논한다. 칠레에 의하면 일본 주세의 경우 패널은 서로 다른 증류주에 대하여 다른 기준에 의한 차등과세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은 과세로 판정을 내렸으며 알콜 1도당 세율이 모든 주종에 대하여 동일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sup>31)</sup>.

칠레는 그랜 피스코(*gran pisco*)나 농축 피스코(*pisco reserve*), 국산 양주도 수입주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EC가 이미 35도 이하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세율 체계에 따라 저도주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알콜 1도당 세율이 균일해야 유사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EC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表 VI-7> 다섯

30)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4.355~359, 1999.

31) 이에 관하여 EC는 40도 위스키의 세율이 알콜 1도를 기준할 경우 25도 일본 소주세율보다 과중한 사실에 기초하여 1996년 일본 주세패널이 유사하지 않은 과세 판정을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따라서 칠레의 주장처럼 알콜 함유량에 근거하여 차등과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4.367, 1999).

번째 열(E)에서 보듯이 30%의 균등한 從價稅도(주종별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이 변화하므로 EC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칠레에 의하면 從量稅는 저가주를 차별하고 從價稅는 고가주를 차별하는데 일반적으로 從價稅가 경쟁관계를 보존하는 효율적 과세로 간주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체계가 결정되는데 EC의 균일과세는 결국 GATT 제3조에 따라 사치세를 부정하는 결과를 유발한다고 칠레는 주장한다.

칠레 패널에 의하면 법의 구조나 객관성 또는 수혜자 문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별과세가 적용되었는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유사하지 않은 과세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차별과세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로서 가격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從價稅에서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면 유사한 과세에 해당한다. 반면 칠레가 제시한 객관적 기준은 제품의 색깔 등에 따른 차별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패널에 의하면 GATT/WTO 체제가 균등성(proportionality)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칠레의 주장도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EC와 같이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격차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칠레 주세법에 대하여 從價稅와 알콜도수에 의한 차별과세라는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데 비록 일부 품목들에 대하여 세율이 같더라도 알콜도수에 따른 차별적인 從價稅가 유사한 과세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며 결국 칠레의 주세율 체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從價稅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증류주에 대한 세율이 27%에서 47%까지 차이가 나는 칠레 주세율 체계는 최소허용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며 알콜함유량에 따라 알콜 1도당 4%의 세율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도 유사한 과세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從量稅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알콜 1도당 세율이 피스코(35도의 경우 0.77%)에 비하여 위스키(40도

1.18%)의 경우 대략 50% 이상 차이가 나는 주세율 체계도 최소 허용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라고 패널은 판정한다. 또한 알콜 1도당 세율의 차이가 한 예로 35도의 경우 0.77%, 36도와 37도의 경우 각각 0.86%와 0.95% 차이가 나는 것도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

패널은 칠레 주세법과 같은 혼합된 주세율 체계가 어떠한 형태를 띠던 모든 사례에서 유사하지 않은 과세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칠레가 도입한 과세체계는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사하지 않은 과세이며 이는 일부 수입품과 국산제품이 동일하게 또는 거의 비슷하게 과세되는 사실과 관계없이 일부 수입품이 다른 일부 국산품에 비하여 차별과세를 적용받는 사실로 현행 분석단계에서 유사하지 않은 과세로 판정한다<sup>32)</sup>.

#### 다. 國產製品的 保護效果와 判定

패널은 직접적인 경쟁상품에 대한 차별과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의도와 관련 없이 분쟁 대상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의 문제라고 논하고 당해 조치의 구조 및 내용 등과 유사하지 않은 과세의 규모로부터 그러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일본 주세 상소심의 결정을 인용한다.

한편 패널은 칠레 주세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피스코 산업이 35도 이하의 피스코 제품에 대한 과세상 특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도주인 피스코의 세율인상을 용인한 정부와의 협상 결과로 칠레 주세법이 개정되었다는 EC의 주장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어떠한 주장이라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32) 한편 패널에 의하면 칠레 주세와는 달리 사치세는 (알콜도수와 같은) 특정한 제품의 성격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 세율 체계를 의미하므로 사치세가 GATT 제3조 2항 두 번째 문장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7.109, 1999).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그 기준은 분쟁대상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GATT 제3조가 (잠재적) 경쟁관계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보호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C는 퍼스코(27%)와 대부분의 수입주류(47%)에 적용되는 세율격차가 크다는 점과 약 70~80%의 국내산업이 낮은 세금을 부과받는 반면 95% 이상의 수입품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류주 알콜도수와 건강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알콜도수와 제품가격간에도 관계가 없고 칠레 주세율 체계가 단순한 從價稅가 아니므로 상기의 상당한 주세율 격차가 공중보건 또는 소득재분배와 같은 정당한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정책수단이 아니며 단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논한다.

한편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주류업체는 저도주의 제품을 생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칠레의 주장에 대하여 EC는 칠레법상 대부분의 수입주류는 40도 이상의 알콜을 함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47%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위스키 등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편 〈Johnnie Walker Light〉과 같이 제품명을 약간 변경하고 희석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칠레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알콜도수나 위스키, 진, 그리고 럼 등 속명(generic name)과 같은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변경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판정한다<sup>33)</sup>. 특히 칠레가 GATT 제20조의 예외규정과 같은 정책목표를 위하여 외국업체로 하여금 제품 특성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조치가 아니다.

칠레가 공표한 정책목표에 대하여 패널이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패널은 제시된 정책목표를 주세법이 달

33)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7.143, 1999.

성하였는지 여부가 주세정책의 구도와 계획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한다. 즉, 패널은 공표된 정책목적과 조치가 관련이 없다면 이는 다른 고려요인과 함께 보호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sup>34)</sup>. 패널에 따르면 우선 27%와 47% 사이에 단일 세율을 책정하여도 세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므로 칠레의 새로운 주세율 체계가 세수 중립성을 위하여 입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과 우리나라 주세법에 존재하는 제품분류를 폐지하기 위하여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칠레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비록 피스코에 대한 낮은 세율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주로 수입품에 속하는 위스키 등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로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알콜소비를 억제한다는 정책목표는 일단 수궁할 수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EC가 제시한 증거로 볼 때 이는 현실적이지 않고 특히 만약 칠레가 주장하는 대로 알콜도수와 알콜 소비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면 알콜 35도 제품과 39도 제품 사이에 존재하는 세율차이가 알콜 40도 제품과 44도 제품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칠레 주세율 체계는 그렇지 않다. 또한 칠레 주세가 從價稅이므로 가격과 소비간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통하여 소비를 억제한다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제품가격과 소비는 역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세개편에 따른 잠재적인 역진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은 칠레 주류시장에서 저도주가 주로 저가주이므로 소비행태가 변화하지 않는

34) In our view, the failure of a measure to conform to its stated objectives may be indicative of certain aspects of its design structure and architecture. ... If a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stated objective and the measure is lacking, this may provide evidence of protective application, which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other factors(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Panel Report, WT/DS87/R, WT/DS110/R, para. 7.148, 1999).

다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는 역동적이며 많은 국가에서 값싼 위스키가 고가의 위스키와 같은 알콜용량을 함유하고 있다. GATT 제3조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바, 분쟁 대상인 조세체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나 전부 왜곡된 현재의 시장점유율로 조세체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요컨대 피스코는 칠레법상 특정한 칠레제품에 한정된 제품명으로 과거 제품분류에 따라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 차별적인 저율의 세금을 합법적으로(*de jure*) 적용받았다. 새로운 주세법이 이러한 법적 차별성은 폐지하고 가격과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율수준이 무작위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칠레제품 중 대략 70%에서 80%에 이르는 국산품이 알콜도수 35% 이하의 제품이고 90% 이상의 피스코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스코는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칠레법에 따라 위스키나 보드카와 같은 속명(*generic name*)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수입품은 40도 이상의 알콜도수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품의 95%에 이르는 주류는 속명(브랜드 이름과 같은 제품명이 아닌)을 포기하고 또한 제품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알콜함유량을 감소하지 않는 한 47%의 주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인(*de facto*) 차별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패널은 피스코를 포함한 칠레의 국산 증류주와 HS코드 2208에 속하는 수입품이 직접적인 경쟁·대체관계에 있으며 칠레의 신·구 주세율 체계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수입품을 차별과세하고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고 판정하고 분쟁해결기구가 칠레에게 자국의 세율 체계를 1994 GATT 체제하에서의 의무와 합치되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를 권고한다.

## VII. 結 論

우리나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GATT 제3조 2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7년 4월 2일 EC와 미국이 WTO에 우리나라를 공식 제소하여 WTO 패널의 권고안이 1999년 2월 17일 분쟁해결 기구에서 채택되기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WTO 권고에 따라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수정하여 2000년 2월 1일까지 소주와 수입 증류주간의 세율을 실질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주세분쟁과 이를 전후한 비공식적인 양자협상 등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국내법이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고 WTO 회원국으로서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는 GATT 제3조 2항이 각국의 조세주권을 저촉하는 규정이므로 WTO 회원국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이익과 이에 수반하는 규범의 준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려면 WTO 협약을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쟁대상 제품이 현재 경쟁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세전 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미래의 경쟁과 같은 모호한 개념이 GATT규정의 해석에 응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심은 GATT 제3조가 실제 무역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왜곡된 조세체계가 소비자 기호를 동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논한다. 이 밖에도 상소심은 일본 주류시장과 같은 유사한 시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추세로서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분쟁상품이 경쟁관계에 돌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제품간의

잠재적 경쟁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였다.

패널의 논리는 결국 현존하는 주세법 등이 수입주류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기초하여 제시된 사실관계의 경중을 취사선택하겠다는 자세로서 이러한 패널의 입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칠레 주세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WTO 회원국은 이제 從價稅 체계하에서 각종 증류주에 관하여 세율을 달리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각국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외부효과를 감안하여 從量稅에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거나 소주와 같은 저가품의 경우 제품간의 형평성을 고려, 從價稅에서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WTO의 판정과 권고는 각국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내국법의 개정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정책의 조화(harmonization of internal policy)는 아니더라도 국내법을 입안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WTO협약의 저촉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내국세나 정부규제의 경우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WTO협약에 위배되는 사례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콜도수 차등화 논쟁에서 보듯이 이행방안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분쟁 해결규정(DSU)으로 말미암아 판정 내용에 따라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는 이행조치에 관하여 간접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WTO 판정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패널심의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세분쟁에서 보듯이 실제 패널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WTO가 다양한 문화와 관습, 그리고 체제를 포용하는 국제기구로서 서구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제도가 의외로 다른 국가에게는 이질적인 제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WTO 체제가 출범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분

쟁수가 적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쟁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분쟁해결 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결정 과정의 객관성이 상당한 논란 거리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분쟁을 피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컬러 TV나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 분쟁에서 보듯이 다른 국가의 왜곡된 수입규제를 WTO 체제를 이용하여 풀어 나가야 하며 주세분쟁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특히 왜곡된 정부조치를 국내적 상황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WTO 등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도 때에 따라서는 실용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분쟁에서 패소하더라도 이행조치의 내용에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일본이 주세분쟁에서 겪었듯이 국내사정에 연연하여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폭 양보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세법이 GATT 내국민 대우규정에 위배되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주산업이 수입주류에 비하여 과거 상당한 세법상의 우대조치를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세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소주산업도 이제는 외국 주류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경쟁을 하여야 하며 이는 주세분쟁이 아니더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주산업이 언젠가는 겪어야만 될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주세정책도 국내 산업에 연연하여 음주로 인한 외부효과의 교정 등 중요한 정책목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주세율 체계를 정비하고 경쟁체제를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주세율 개편은 또한 통상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전환이다. 바로 이러한 결론이 주세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 參 考 文 獻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성명재·장근호, 『사회적 비용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 「주세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장근호·이철인, 『WTO 주세패널에서의 한·EC, 미국간 주세분쟁 고찰과 교훈』, 한국조세연구원, 1998. 3.
- 장근호,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평가』, 연구보고서 97-17,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채 욱, 『WTO분쟁해결사례 연구—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조사분석 97-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 관세청 평가협력국, 『세계무역기구 협정문』, 1995. 2.
- EC Commission, *Your Guide to the Exporting Food Products to Korea, Alcoholic Beverages*, 1997, p. 22.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95.
- WTO,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WT/DS8/R, WT/DS10/R, WT/DS11/R, 11 July 1996(A).
- \_\_\_\_\_, “Japan—Custom Duties, Taxes and Labeling Practices on Imported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BISD 34s/83, 1987.
- \_\_\_\_\_, “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Communities—Customs

-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Equipment”, WT/DS62/AB/R, 1998.
- \_\_\_\_\_,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Communication from the Appellate Body”, WT/DS8/10, WT/DS10/10, WT/DS11/7, 4 October 1996(B).
- \_\_\_\_\_,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on Modalities for Implementation Addendum”, WT/DS8/17/Add.1, WT/DS10/17/Add.1, WT/DS11/15/Add.1, 12 January 1998(A).
- \_\_\_\_\_,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WT/DS26/15, WT/DS48/13, 29 May 1998(B).
- \_\_\_\_\_, “European Communities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s and Distribution of Bananas, Appellate Body Report”, WT/DS27/AB/R, Sep. 1997.
- \_\_\_\_\_,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WT/DS75/R, WT/DS84/R, 17 September 1998(C).
- \_\_\_\_\_,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AB—1998—7”, WT/DS75/AB/R, WT/DS84/AB/R, 18 January 1999(A).
- \_\_\_\_\_, “Chile—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WT/DS87/R, WT/DS110/R, 15 June 1999(B).
- \_\_\_\_\_,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 DS23/R, BISD 39S/206, 276, 1992.
- \_\_\_\_\_,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Arbitration”, WT/DS54/15, WT/DS55/14, WT/DS59/13, WT/DS64/12, Dec. 1998.

第 II 編

社會的 費用 減縮을 위한  
酒稅率 體系 整備方案

# I. 序 論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전통적으로 稅負擔의 衡平性에 치중하여 대체로 高價·高級酒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低價·低級酒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衡平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세법 제정 당시의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소득분배를 보완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주세율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주류 소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세율수준을 책정하기보다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도 부수적으로는, 경제개발 초기에 高價·高級酒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租稅抵抗을 작게 하면서도 비교적 세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高價·高級酒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적 세율 적용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 현재와 같은 세율 체계를 이루어왔다.

많은 국가에서 酒稅의 課稅體系로 從量稅 體系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60년 대말에 이르러 從價稅 體系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從量稅와 從價稅 體系가운데 어떤 체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항상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당면한 經濟的·社會的 諸般環境에 비추어 보다 적절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최근과 같이 급격한 경기후퇴로 인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하에서는 과세대상의 개별 가격이나 물가에 세수가 탄력적인 종가세 체계가 종량세 체계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는 오히려 後者가 前者보다 우월한 면이 많다. 그러나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종량세 체계가 매우 역진적인 세부담 분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형평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수의 탄력적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세의 과세체계가 현재와 같은 종가세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상당수의 외국과 달리 종가세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세 課稅對象의 種類도 상당히 세분하여 왔으며 각각에 대해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류를 크게 麥酒, 와인, 蒸溜酒(spirits)의 세 가지로 단순화하여 대별하고 있으며 주세율도 세 가지 주종구분에 맞추어 각기 차등화 하되 대체로 동일 주종내에서는 알콜도수 등에 세율을 비례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증류주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증류주로 대표되는 소주와 위스키의 경우 상이한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주류 시장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으로부터 증류주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라는 압력이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EU 등과 수차에 걸쳐 위스키, 브랜디 등 대표적인 輸入酒類에 대한 주세율이 下向調整되면서 양자간의 세율격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7년 4월 현재 소주의 경우에는 教育稅 包含 總酒稅率이 38.5%이고 위스키는 130%로 주세율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었으며 2년이 지난 1999년 4월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 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위스키와 브랜디 등 대부분의 輸入蒸溜酒와 燒酎간에 競爭·代替關係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세체도가 이들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

다고 하면서 1997년에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적 시장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GATT 규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동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4월초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 분쟁은 1년 이상 WTO 패널 및 상소심을 거쳐 지난 2월 17일 WTO의 분쟁조정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輸入酒類, 그 가운데에서도 蒸溜酒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가 패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주와 위스키 등으로 대표되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여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대내적으로도 주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즉, 음주가 생활화되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승용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알콜 소비 억제 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음주운전 이외에도 음주에 따른 생산성 감소, 알콜중독, 청소년 음주의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 같이 주류의 경우에도 담배와 함께 중독성이 있으면서도 판매·소비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현 상황하에서 음주를 불법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수단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주류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 고알콜주의 가격이 매우 낮아 구매력이 매우 낮은 청소년층까지 무분별하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통상마찰이라는 대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음주와 관련한 사회적 외부비용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대내적인 주류 소비의 억제 필요성을 감안할 때 주세율 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소비패턴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체계에 대

한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통상문제와 결부시켜서도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주세율 체계를 개편해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내에서 확립된 규범, 즉 소주와 위스키 등의 증류주간에 주세율 수준을 일치시키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내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稅負擔의 衡平을 기하는 동시에 음주와 관련된 각종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여야 하는 등 상충된 논리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와 같은 현안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韓·EC 및 미국간 WTO 패널심의 결정에 따른 선택변수의 선정 즉, 주세의 과세체계, 즉 從價稅와 從量稅 體系에 대한 검토, 酒稅率 體系 및 稅率水準에 대한 調整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세율 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해본다.

第II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II章에서는 酒稅의 課稅體系와 課稅現況에 대해 살펴본다. 第III章에서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한 酒稅率 體系의 改編 必要性에 대해 살펴본다. 第IV章에서는 酒稅率 體系에 대한 改善方案과 期待效果를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第V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 II. 酒稅의 現況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구조, 주종별 주세율 체계, 주세 수입, 주류의 수출입 추이 등을 살펴본다.

### 1. 概 要

현행 우리나라의 酒稅는 國稅 중 內國稅로 부과·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현재 內國稅 對比 3.5%, GNP 對比 0.4%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세징수액 전액은 地方讓與金으로 地方自治 團體에 배분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酒類 消費量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酒稅收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1997년의 경우 外換危機로 촉발된 급격한 景氣惡化로 인해 酒稅收入이 減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더욱 심화되었다. 주세수입의 減少·停滯現象은 기본적으로 酒類 消費量이 감소한 데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高價製品이 대부분인 위스키 등의 소비가 격감한 데에도 주요 요인이 있다. 위스키 등의 消費量이 감소한 것은 景氣後退에 따른 所得效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이들 주류의 소비도 회복되어 주세수입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수입은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酒稅收入의 增加率이 점차 鈍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國民所得 對比 酒稅의 比重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酒類消費가 소득에 대해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주류산업의 성장성 역시 여타의 첨단산업과 달리 상당히 낮다는 점, 1인당 주류소비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주류소비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소비 증가 가능성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되는 주류의 종류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消費者 選好의 多樣化로 인해 酒類 消費패턴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6, 1997년도에는 외국산 위스키의 輸入量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輸入酒類의 전체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 2. 酒類의 種類

酒稅法 第2條, 第3條에서는 酒類를 酒精<sup>1)</sup>과 알콜分 1度 이상의 飲料<sup>2)</sup>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종은 酒精, 濁酒, 藥酒類, 麥酒, 果實酒, 燒酎類, 위스키類, 브랜디類, 一般蒸溜酒, 리큐르, 기타 酒類의 11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그리고 藥酒類와 燒酎類는 동 법 제3조의 2, 제3조의 3에서 더욱 세분하여 藥酒類는 藥酒와 淸酒, 燒酎類는 蒸溜式 燒酎와 稀釋式 燒酎로 나누어 細分類를 하고 있다.

## 3. 酒稅率 體系

### 가. 酒稅率의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최초의 酒稅法은 융희 3年(1909년)의 [酒稅法]의

- 
- 1) 회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飲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
  - 2) 溶解하여 飲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공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日帝의 한반도 強占에 따라 구체적인 實行 및 發展도 보지 못한 채 日帝의 손에 引繼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적 酒稅行政의 始發點이 되었다.

日帝는 強占期 동안 酒稅徵收를 통해서도 경제적인 收奪을 하였는데, 1909년 「酒稅法」의 도입 이후 1916년의 7년 기간 동안에 주세 수입액이 무려 6배나 증가할 정도였다. 그리고 1921년부터 1933년 사이에도 대폭적인 酒稅率의 引上이 있었다<sup>3)</sup>. 해방 후 軍·過度政府下(1945~1947년)의 酒稅政策은 日帝 強占期の 것을 無批判的으로 그대로 수용하여 획기적인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나 개선은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酒稅法은 1949년 10월 21일 공포된 「酒稅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법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정의를 ‘酒精과 알콜分 1度 이상의 飲料’로 정의하였고 酒種에 있어서는 釀造酒, 蒸溜酒, 再製酒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세율 체계는 석수에 따라 부과하는 從量稅 體系로 운영하였다. 濁酒, 麥酒, 蒸溜式燒酎에 대한 1석당(144kg) 세율은 각각 4萬圓, 2萬圓, 1만 1천圓 등이고 酒精에 대해서는 4萬圓으로 가장 높은 稅率이 賦課되었다. 이후 약 50여년 동안 26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酒稅率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에는 戰時財政確保를 위한 ‘租稅臨時增徵法’에 따라 濁酒稅額의 20%, 기타 酒類稅額의 15%를 增徵하였다. 1954년 3월 31일 ‘조세임시증정법’이 철폐되고 이에 따른 주세의 實效負擔維持와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제3차 개정(1954년 3월 31일)에서는 從量稅額을 최저 100%(麥酒)에서 최고 364%(合成淸酒 2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인상하였고 出庫價格의 100분의 30의 從價稅를 병행하여 부과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주세의 부과에 대하여 密造酒의 盛行 등 부작용이 심하여 같은 해 제4차 개정에서는 주세

3) 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세학사, 1998. 참조.

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특히 濁酒, 藥酒, 麥酒, 蒸溜式 燒酎에 대한 세율 인하율이 컸다.

1960년대의 酒稅政策의 특징은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지원하기 위한 開發稅制의 성격을 띠었다. 1961년 12월 제8차 개정에서는 從量稅額을 최저 53%(淸酒 1급)에서 최고 650%(濁酒)까지 대폭 인상하여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財政需要에 대응하고 자원의 재배분을 모색하였다. 또한 소주의 분류에 있어서 세분하여 稀釋式 燒酎를 추가함으로써 蒸溜式 燒酎와 稀釋式 燒酎의 2종으로 나누어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麥酒의 경우에는 從量稅額을 200% 인상하여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特級淸酒를 제외하고는 最高의 세율수준을 기록하게 하였다.

1967년 11월 제15차 개정에서는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從量稅體系를 酒精, 濁酒, 藥酒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酒種에 대하여는 從價稅體系로 전환하였다. 同 改定에서는 특급청주를 酒種에서 제외시키고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150%로 대폭 인상하여 맥주보다도 높게 과세하였다. 1971년 12월의 제16차 개정에서도 酒稅率體系가 크게 개편되었는데 濁酒, 藥酒에 대해 從價稅體系로 과세체계를 전환하면서 각각 10%와 6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이 酒精을 제외하고 모든 酒類에 대하여 從價稅로 부과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위스키와 麥酒에 대해서는 각각 10%포인트와 20%포인트씩 세율이 인상되었고 나머지 酒類에 대하여도 세율이 상향조정되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1973년부터 본격화된 각종 酒類 團體의 대폭 정비와 대단위 조치로 설명되는 行政的인 改革 外에는 法制上의 커다란 변화는 없었고 197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제도들이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는 酒稅에 대한 附加稅(sur tax)로서 防衛稅와 教育稅를 도입하였는데 防衛稅는 1975년 7월에 酒稅額의 10%(단, 濁酒·酒精은 제외, 酒稅率 100% 이상 酒類는 20%), 教育稅는 1981년 12월에 酒稅額

의 10%(단, 濁酒·藥酒·燒酎는 제외)로 부과하였다. 酒稅에 附加되는 防衛稅는 1991년 1월 1일부로 廢止되었으나, 教育稅는 현재 까지도 계속 과세되고 있다(〈表 II-1〉 참조).

1990년 12월의 개정에서는 酒類의 分類 基準과 數, 그리고 세율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製造原料·添加物·製造方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最終製品의 性狀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酒種의 數에 있어서도 종전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였다. 세율에 있어서는 酒類消費行態의 變化에 따라 주세의 稅負擔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 체계를 10%~200%에서 5%~150%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酒類産業 發展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再定立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行政規制를 緩和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通商摩擦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 등 일부 세율에 대하여 주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위스키의 세율을 200%에서 150%로 인하하여 製造工程이 유사한 브랜드와 일치시켰으며, 신규로 混合式 燒酎의 제조를 허용하여 회석식 소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명약주와 合成淸酒를 淸酒로 統合하여 세율도 70%로 單一化하였고 合成麥酒는 폐지하여 맥주로 통합하였다. 其他釀造酒, 高粱酒, 其他蒸溜酒, 其他再製酒 등의 경우도 一般蒸溜酒로 재분류되면서 세율도 80%로 조정되었다.

1993년에는 EU의 요구에 따라 韓·EU間 酒稅協商이 전개되었다. 이 협상에서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酒稅의 課稅體系를 從價稅에서 從量稅 體系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 및 關稅率을 引下하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관련해서는 從量稅 體系로 전환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관철되었는바 이에 대한 개편은 없었으나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 및 關稅率의 인하, 그리고 소주에 대한 教育稅의 과세 등을 주된내용으로 兩者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스키와 브랜드에 대한

〈表 II-1〉 酒稅率 變化 推移

(單位: 원/千리터[1968.1.1~], %[1972.1.1])

	68년 1.1~	72년 1.1~	73년 2.26~	74년 1.14~	75년 1.1~	91년 7.1~	94년 1.1~	96년 1.1~	97년 1.1~	비 고
탁주	1,470 <sup>1)</sup>	10	10	10	10	5	5	5	5	
약주	2,000 <sup>1)</sup>	60	60	60	60	30	30	30	30	
명약주			80	100	100	70	70	70	70	청주
청주	80	100	100	120	120	70	70	70	70	청주
1급										
2급										
합성청주	60	65	65	65	65	70	70	70	70	청주
맥주	100	120	150	150	150	150	150	150	130	
합성맥주	90	100	100	100	100					맥주
과실주	20	25	25	25	25	30	30	30	30	
기타양조주	90	100	110	110	110	80	80	80	80	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30	35	35	35	35	50	50	50	50	
희석식소주	30	35	35	35	35	35	35	35	35	
고량주	90	110	110	110	110	80	80	80	80	일반증류주
위스키	150	160	160	250	200	150	120	100	100	
브랜디		100	100	160	150	150	120	100	100	
주정 <sup>1)</sup>	49,350	49,350	49,350	49,350	49,350	57,000	57,000	57,000	57,000	일반증류주
기타증류주	50	50	80	80	80	80	80	80	80	
인삼주1					100	50	50	50	50	리큐르
인삼주2					50	50	50	50	50	
기타재제주1	30	35	35	35	100	80	80	80	80	일반증류주
기타재제주2	40	50	50	50	40	80	80	80	80	

註: 1) 1968.1.1~1971.12.31은 청주, 약주,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 주정은 현재까지 종량세.

- 인삼주1, 기타재제주1, 인삼주2, 기타재제주2는 각각 주세율이 80% 이상 또는 미만 주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임.
- 防衛稅: 1975. 7.16 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주정 제외, 주세율 100% 이상 주류는 20%.  
1979.12.28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주정 제외, 주세율 100% 이상 주류는 30%.  
1981.12.31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주정 제외, 주세율 100% 이상 주류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는 30%.  
1990.12.31 폐지.
- 教育稅: 1981.12. 5 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소주는 제외.  
1990.12.31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소주는 제외, 주세율 80% 이상 주류는 30%.  
1993.12.31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소주(1995. 1.1부터 시행)는 제외, 주세율 80% 이상 주류는 30%.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1997.

세율은 1994년부터 120%, 1996년부터는 100%로 인하되었다. 1995년 12월 제25차 개정에서는 麥酒稅率을 150%에서 130%로 소폭 引下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나. 現行 酒稅率 體系

현행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表 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酒精에 대해서만 從量稅 體系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酒種에 대하여는 從價稅 體系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의 대부분이 회석식 소주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소주에 대한 주세부과시 주정에 대해 기납부된 주세를 공제(또는 환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체계로 과세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주세법 제정 이후 稅收確保와 稅負擔의 衡平性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高價·高級酒에 대하여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低價·低級酒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주종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傳統酒·大衆酒로서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濁酒가 5%로 가장 낮은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중주로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맥주는 130%의 가장 높은 주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高度酒이면서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소비자층이 매우 폭넓은 燒酎類의 경우에는 稀釋式과 蒸溜式 燒酎에 대해 각각 35%와 5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스키類와 브랜디類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10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998년 2월에 종결된 韓·EU 및 美國間 WTO 주세패널 및 상소심에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燒酎와 위스키간에 차등세율을 적용함으로써 內國民待遇를 規定하고 있는 GATT 第2條 第3項을 違背하고 있다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表 II-2〉 現行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

(單位: %)

주 종	규 격	주 세 율
주정 <sup>1)</sup>	95도 (곡물주정은 85~90도)	57,000원/kl(95도) 매1도 초과시 600원씩 가산(-)
탁주	3도 이상	5(-)
약주류		
약주	13도 이하	30(-)
청주	14도 이하	70(77)
맥주		130(169)
과실주		30(33)
소주류		
증류식소주		50(55)
희석식소주		35(38.5)
혼합식소주	혼합률 10% 미만	35(38.5)
	혼합률 10~15%	40(44)
	혼합률 15~20%	45(49.5)
	혼합률 20% 이상	50(55)
위스키류		100(130)
브랜디류		100(130)
일반증류주		80(104)
	위스키류·브랜디류 함유	100(130)
리큐르	엑스분 2도 이상	50(55)
기타주류	알콜분 25도 이상	80(104)
	알콜분 25도 미만	70(77)
	엑스분 30도 이상	10(11)
	위스키, 브랜디류 20% 이상 함유	100(130)

註: 1) 從量稅

1. 주세액에 대한 教育稅率: 주세율 80% 이상 주류는 30%, 주세율 80% 미만의 주류는 10% (단, 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 제외)

2. ( )안은 教育稅 合算稅率

資料: 財政經濟部, 『租稅概要』,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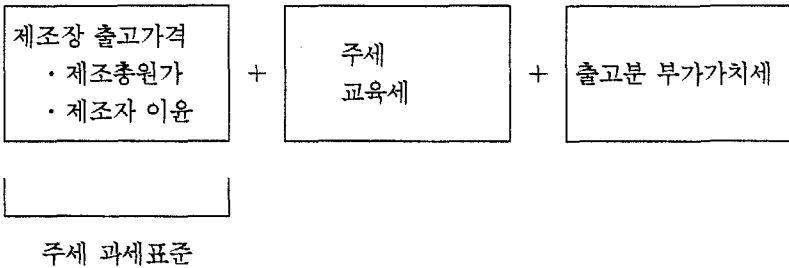
이 외에 주세율이 80% 미만인 주류에 대해서는 酒稅額의 10%, 주세율이 8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教育稅가 附加稅로서 과세되고 있다. 단 藥酒類 가운데 藥酒와, 酒精, 濁酒는 教育稅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 酒稅의 課稅標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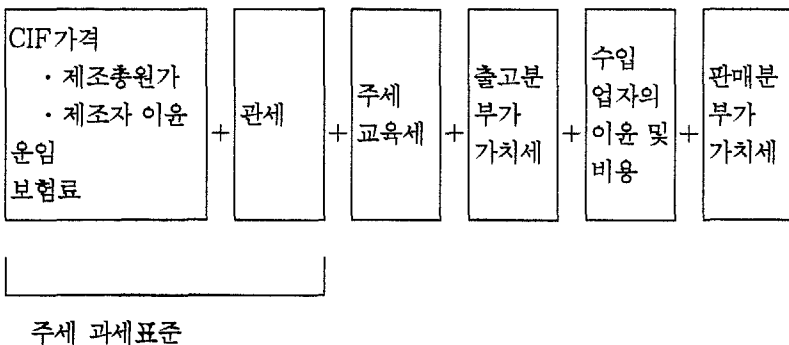
다음으로 輸入酒類와 國產酒類의 주세부과 체계를 살펴보면 關稅의 賦課로 인하여 兩者間의 稅率 및 稅收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세의 課稅體系는 從價稅 구조를 가지고 있다.

[圖 II-1] 酒稅 課稅標準 및 價格決定構造

1) 國產酒類의 製造업자 판매가격



2) 수입주류의 수입업자 판매가격



國產酒類는 제조자의 販賣 및 一般管理費를 포함한 製造總原價에 제조자의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輸入酒類는 CIF價格(製造總原價+運賃+保險料)에 關稅를 포함한 금액(輸入申告價格)을 課稅標準으로 하고 있다([圖 II-1] 참조).

그밖에 국산주류는 주류제조자가 納稅義務者이고 수입주류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자(輸入業者)가 納稅義務者이다. 과세시기는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이고,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때이다.

#### 라. 現行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

현재의 주세율 체계는 1968년 이후 수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주세율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稅負擔의 衡平性, 稅率體系의 不合理性,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酒稅率 體系를 硬直的으로 운영함에 따른 政策運營上의 문제점 등이 예이다.

세율 체계에 있어서는 一貫性과 客觀性이 다소 미흡하다. 각종 주종에 대한 주세율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通商摩擦의 원인이 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류의 종류를 크게 스피릿類, 와인, 麥酒의 세 가지로 大分類하고 있으며, 주세율 체계는 이러한 분류 체계하에서 同種의 製品 또는 類似製品으로서 競爭關係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달리 酒類를 11가지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酒稅率 體系도 동종 또는 類似製品으로서 경쟁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기보다는 階層別 稅負擔의 衡平성 측면에 優先順位를 두어 세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稅負擔의 衡平性 側面에 치중하여 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中·高所得層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세

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증류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997년 현재 위스키의 경우에는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稀釋式 燒酎와 蒸溜式 燒酎의 경우에는 각각 35%와 5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주종 분류 및 세율 책정에 있어 외국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종분류가 차별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종분류와 주세 과세 문제는 주권국의 고유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떠한 분류 체계와 주세율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권국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세금은 일국이 경험하였던 역사적 전통과 관습, 경제적 여건과 납세의식, 징세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그러한 논의에 있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주종분류 및 주세율 책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WTO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수입품을 내국산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제도 등을 철폐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한·EU 및 미국간 WTO 주세분쟁도 이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WTO 주세패널 및 상소심은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체계가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GATT 第3條 第2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은 단지 소주와 위스키로 대표되는 증류주내에서 직접 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는 제품에 대해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세율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飲酒 등에 따른 外部不經濟 요인을 輕視하고 있다. 高價酒에는 고세율을 低價酒에는 저세율을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逆進性を 보완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高알콜酒인

燒酎를 大衆酒라는 이유로 低率課稅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을 해침은 물론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이 저해되는 등 外部不經濟 효과를 輕視하여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일부 酒種의 경우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나친 음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데 근거하여 高알콜酒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高알콜酒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가격효과에 따라 高알콜주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從價稅 體系에서는 알콜도수 차이에 따른 從價稅率 差等化 方案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이 없어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차등화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酒稅率 體系를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세율 조정은 주종간 競爭·代替關係를 이용한 需要變化를 통해 주류산업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燒酎와 麥酒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세율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류 및 제조시설기준 및 면허 제한 등으로 형성된 현재와 같은 독과점 체제하에서, 국내주류업계의 기술개발,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4. 酒類消費와 酒稅收入 推移

##### 가. 酒類消費 推移

우리나라에서는 麥酒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1997년 현재 輸入分을 제외한 전체 주류 소비량 가운데 麥酒가 차지하는 점유비는 약 57.4% 정도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소주가 가장 많이 소비되

고 있는데 消費比重(物量基準)은 전체의 약 4분의 1(26.0%)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表 II-3〉 참조). 위의 두 가지 주류를 합산할 경우 소비비중이 총 주류 소비량의 약 83.4%에 이르러 이들 두 가지 주류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大衆酒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濁酒, 淸酒, 리큐르, 위스키의 順으로 소비량이 크다. 이 가운데 특히 위스키의 경우에는 최근 소비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위스키의 出庫量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스키의 輸入量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국내 출고분 위스키의 경우에는 1996년 이래 출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수입분 위스키의 物量은 브랜드류를 포함하여 2만 1,478kℓ이고 금액으로는 2억 145만달러에 이른다.

代表酒種別 소비현황을 알아보자. 소주는 과거 自道燒酎 구입명령에 따라 1道 1社의 체제로 운영되어 전국에 10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이 중 진로가 소주시장 전체의 45% 정도 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두산과 보해가 각각 16%와 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3개사가 7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 밖의 여타 지방소주업체가 지역별로 일정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sup>4)</sup>.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프리미엄級 소주의 출시로 연평균 3%의 꾸준한 소비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문화의 변화로 인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는 소비가 감소한 다른 대부분의 주종과는 달리 燒酎의 소비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經濟危機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시름을 달래기 위해 低價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알콜度數가 높은 주종을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소주·맥주 겸업(4개사) : 진로(서울), 두산(강릉), 하이트(청원, 장성)  
지방소주업체(6개사) : 보해(목포), 금북주(대구), 무학(마산), 대선(부산), 선양(대전), 한라산(제주)

〈表 II-3〉 年度別 酒類別 出廠量 推移

(單位: kl,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출고량	비중	출고량	비중	출고량	비중	출고량	비중	출고량	비중	출고량	비중	출고량	비중
탁주	440,134	14.7	376,800	12.7	319,533	11.1	299,862	9.5	246,093	7.8	212,092	6.6	187,455	6.0
약주	2,228	0.1	2,567	0.1	2,668	0.1	3,018	0.1	3,195	0.1	2,683	0.1	3,020	0.1
맥주	1,583,928	53.0	1,574,465	53.0	1,508,854	52.6	1,769,057	56.3	1,850,334	58.5	1,868,429	58.3	1,799,202	57.4
청주	40,400	1.4	50,934	1.7	48,478	1.7	50,095	1.6	43,302	1.4	42,564	1.3	40,160	1.3
과실주	9,343	0.3	12,667	0.4	10,222	0.4	8,949	0.3	7,930	0.3	6,590	0.2	8,303	0.3
증류식소주	194	0.0	315	0.0	715	0.0	862	0.0	816	0.0	1,325	0.0	688	0.0
희석식소주	677,862	22.7	723,198	24.3	743,964	26.0	765,180	24.3	761,839	24.1	787,195	24.6	813,583	26.0
주정	194,051	6.5	204,106	6.9	208,986	7.3	221,159	7.0	221,293	7.0	252,838	7.9	253,646	8.1
위스키	9,853	0.3	11,158	0.4	11,595	0.4	15,205	0.5	16,488	0.5	13,768	0.4	10,974	0.4
브랜디	145	0.0	144	0.0	130	0.0	219	0.0	154	0.0	92	0.0	60	0.0
일반증류주	6,064	0.2	11,437	0.4	4,791	0.2	4,244	0.1	2,979	0.1	1,640	0.1	832	0.0
리큐르	963	0.0	3,644	0.1	5,683	0.2	6,274	0.2	8,520	0.3	15,571	0.5	15,500	0.5
기타주류	139	0.0	703	0.0	488	0.0	560	0.0	633	0.0	756	0.0	626	0.0
수시분	21,976	0.7	-	-	-	-	-	-	-	-	-	-	-	-
총계	2,987,280	100.0	2,972,138	100.0	2,866,107	100.0	3,144,684	100.0	3,163,576	100.0	3,205,543	100.0	3,134,049	100.0

註: 수입분 제외

資料: 國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表 II-4〉 主要 酒種別 消費量 推移

(單位: 千kl,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소 주	723.5 (6.7)	744.7 (2.9)	766.4 (2.9)	762.7 (-0.5)	788.5 (3.4)	814.2 (3.3)
맥 주	1,574.8 (-0.7)	1,509.6 (-4.1)	1,770.6 (17.3)	1,854.1 (4.7)	1,873.8 (1.1)	1,806.2 (-3.6)
위 스키	17.5 (7.5)	19.8 (13.1)	27.4 (38.2)	35.0 (28.0)	37.9 (8.1)	31.3 (-17.3)

註: 1. 국내분 출고량과 수입분 합계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 年度.

麥酒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하이트(HITE)가 44%, OB가 38%, 진로 쿠어스 18%로 3社가 국내시장을 3분하고 있으며, 소비량도 소득증가 및 저알콜주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위스키는 輸入위스키와 國產위스키가 국내시장을 兩分하고 있는데 수입위스키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높다. 그러나 국산위스키도 원액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위스키가 국내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스키 또한 소득의 증가와 양질의 주종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수요가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 나. 酒稅收入 推移

우리나라의 주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7~1998년에는 경제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주류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세수입도 대폭 감소하였다. 주세수입은 1998년 징수액 기준으로 1조 8,145억원에 달하여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정도이며, 間接稅의 總稅收에 대비해서는 8.7%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이후에는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주세수입이 경제위기 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酒稅收入과 國稅 및 間接稅의 연도별 세수증가율을 單純平均하여 살펴보면 주세수입이 국세나 간접세 증가율에 비하여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表 II-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주류의 소비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일부 酒類에 대한 세율의 하락에 기인한다. 결국, 국민 1인당 주류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주류 소비증가율은 인구증가율에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세수입 증가율의 둔화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대되면서 酒類消費패턴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된다면 위스키, 브랜드 등과 같이 매우 고가의 제품에 대한 消費比重이 상승할 것이므로 고가제품에 대한 상대적 소비 증가로 인해 稅收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세수입 증가율이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表 II-5〉 年度別 酒稅收入의 推移

(單位: 拾億원,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주세(A)	1,145	1,329	1,368	1,546	1,825	2,084	1,790	1,815
(증가율)	(12.1)	(16.0)	(2.9)	(13.0)	(18.0)	(14.2)	(-14.1)	(1.4)
국세(B)	30,320	35,218	39,261	47,262	56,775	64,960	69,928	67,798
(증가율)	(12.9)	(16.2)	(11.5)	(20.4)	(20.1)	(14.4)	(7.6)	(-3.0)
간접세(C)	12,085	15,000	17,369	18,192	20,124	22,943	25,365	20,897
(증가율)	(16.4)	(24.1)	(15.8)	(4.7)	(10.6)	(14.0)	(10.6)	(-17.6)
A/B	3.8	3.8	3.5	3.3	3.2	3.2	2.6	2.7
A/C	9.5	8.9	7.9	8.5	9.1	9.1	7.1	8.7

註: 1. 정수액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각 연도.

〈表 II-6〉 現行 酒類別 稅收 現況

(單位: %, 億원)

주 종	세 수		
	주 세	교 육 세	계
종류주	5,537(30.4)	1,035	6,572
소주			
증류식	17(0.1)	2	19
희석식	2,847(15.6)	285	3,132
위스키	2,338(12.8)	701	3,039
브랜디	31(0.2)	10	41
일반증류주	30(0.2)	9	39
리큐르	274(1.5)	28	302
발효주	702(3.9)	60	762
탁주	70(0.4)	-	70
약주	48(0.3)	-	48
청주	531(2.9)	53	584
과실주	53(0.3)	7	60
맥주	11,967(65.7)	3,590	15,557
계	18,206	4,685	22,891

註: 1. 세수는 1998년 부과기준

2. ( ) 안은 비중

資料: 財政經濟部, 내부자료.

酒稅收入의 주류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 주세부과액 1조 8,206억원 중 麥酒는 1조 1,957억원으로 65.7%를 차지하고, 燒酎類는 蒸溜式燒酎를 포함하여 2,864억원으로 15.7%를 차지하여 두 품목에 부과된 주세부과액이 총 주세수입의 81.4%에 달하고 있다. 위스키는 2,338억원(12.8%)으로 이를 포함하면 전체세수의 94.2%를 차지하여 總酒稅額 중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주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麥酒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7년 기준으로 麥酒의 消費量 占有比는 약 60%이나 세수점유비는 이

보다 높은 65.7%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燒酎의 경우에는 消費量 占有比가 26.6%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稅收 占有比는 15.7%에 불과하여 소비량 점유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表 II-6〉과 〈表 II-3〉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麥酒에 대해서는 높은 酒稅率(130%)이 적용되는 반면 소주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35% 또는 50%)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5. 酒類의 輸出入 推移

주정 및 變性알콜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 제품에 대한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관련 통계는 〈表 II-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輸入 酒類는 위스키가 대부분인바 전체 주류 수입량의 약 3분의 2 정도의 占有比를 보이고 있다. 輸入金額 기준으로는 위스키의 점유비가 물량기준의 경우보다 높은 75~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스키가 다른 종류의 酒類製品에 비해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수입물량의 점유비보다 크게 높은 것은 위스키가 다른 것에 비해 高價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3년까지만 해도 위스키의 수입증가율은 높지 않았으나 이후 수입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여 1994년에는 前年 대비 48.1%라는 매우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위스키는 1995년과 1996년에도 각각 전년 대비 52.4%와 29.9%라는 매우 높은 수입증가율을 시현하였다. 1997년도에는 수입량이 前年度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액기준으로는 거의 2억달러에 육박하여 과거와는 달리 高級·高價製品 위주의 위스키를 많이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최근에 위스키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4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친 위스키 稅率의 引下와 그에 따른 價格下落 및 所得增大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賃金水準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위스키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위스키의 경우에는 原液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출고하는 것보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稅負擔側面에서 有利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위스키 제조회사가 직접생산보다는 注文者生産方式(OEM)에 의한 完製品 輸入을 選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위스키에 대한 수입증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위스키 다음으로 가장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酒類製品은 와인으로 대표되는 果實酒와 麥酒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果實酒의 경우에는 국내 出庫分의 出庫量이 수입물량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바 전반적으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麥酒의 경우에는 국내 출고분이 絶對優位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 燒酎나 藥酒, 一般蒸溜酒, 리큐르 등도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모두 매우 작은 편이다.

酒類의 수입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輸入酒類의 稅收寄與度도 199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하는 趨勢에 있다. 다만 수입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스키에 대한 세율이 1994년과 1996년에 인하된 것의 영향으로 1994년의 경우에는 수입분 주세수입이 물량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을 뿐더러 1996년에는 오히려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輸入分 酒稅收入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酒類輸出에 있어서는 絶對規模는 매우 작은 편이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1년의 경우 酒類의 輸出量은 약 2만 5천톤이던 것이 1997년에는 약 9만 6천톤으로 3.8배 증가하였으며 輸出金額은 약 1,800만달러에서 9천만달러로 다섯배 증가하였

다(〈表 II-8〉 참조)<sup>5)</sup>. 주된 輸出 酒種은 燒酎와 麥酒의 두 가지로, 이들 주종의 輸出量과 輸出金額은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麥酒와 燒酎 다음으로는 藥酒의 수출이 많으나 규모는 매우 작다. 그 밖의 주류의 경우에는 수출량과 금액 모두 미미할 뿐더러 연도별로도 기록이 매우 심해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

5) 리터 단위의 수출량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부득이 kg단위의 수출량을 사용하였다.

〈表 II-7〉 年度別 酒類 輸入量 및 輸入額 推移 (單位: 千리터, 千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주	7.9	25.3	13.8	43.7	13.6	41.9	51.4	132.8	49.2	185.7	62.6	178.6	58.7	202.8
맥	1,726.8	238.9	376.9	363.5	697.4	603.0	1,550.2	1,137.8	3,735.9	2,547.8	5,377.8	3,377.9	6,960.0	5,181.1
과	1,079.4	3,418.8	1,897.4	5,711.3	2,968.4	5,940.6	3,938.1	8,173.8	5,839.3	14,056.3	5,832.2	17,286.0	9,043.4	23,372.7
· 와인	1,079.4	3,418.8	1,896.5	5,706.3	2,952.2	5,879.4	3,919.7	8,129.1	5,701.1	13,730.7	5,528.5	16,523.3	8,886.3	23,007.1
· 기타	0.0	0.0	0.9	5.0	16.2	61.2	18.4	44.7	138.2	325.6	303.7	762.7	157.2	365.6
소	50.4	77.1	32.3	56.5	36.6	63.5	317.2	468.0	40.5	95.8	1.6	1.8	17.2	24.0
위	6,428.7	39,030.7	6,351.2	42,038.6	8,215.0	45,110.8	12,167.9	75,989.2	18,538.4	121,658.1	24,088.7	186,916.3	20,323.6	190,546.3
브	106.3	676.8	229.0	1,723.4	217.0	1,195.4	513.6	3,343.8	1,241.3	4,814.5	1,203.8	11,878.9	1,154.4	10,899.7
일	443.6	646.8	704.1	1,578.4	1,520.7	2,140.6	2,190.0	3,065.9	1,604.1	2,111.8	2,019.6	1,993.2	12,139.7	9,163.9
· 럼펄	45	22.4	10.1	45.7	16.2	93.3	44.5	272.0	104.4	203.8	86.1	153.7	109.1	195.7
· 진펄	144.7	79.0	24.4	127.1	6.7	33.2	26.2	81.4	26.6	85.7	51.4	166.9	55.1	148.3
· 보드카	56.2	109.6	19.1	57.5	37.6	25.3	41.7	102.8	37.8	92.4	45.8	94.8	62.0	126.8
· 기타	238.2	435.8	650.5	1,348.1	1,460.2	1,988.8	2,077.6	2,609.7	1,435.3	1,729.9	1,836.3	1,577.8	11,913.5	8,693.1
리	288.5	921.2	291.0	2,250.2	1,728.5	2,142.3	527.7	2,495.9	628.8	2,873.7	839.1	3,755.3	153.0	291.9
계	10,132.6	45,035.6	9,895.7	53,765.5	15,397.2	57,238.1	121,356.1	194,807.2	31,677.5	148,343.7	39,425.5	225,388.0	49,850.0	239,682.4

註: 1. 주정파 변성일콜(HS 2207)은 제외하였음. 1996년 현재의 HS 기준임.  
 2. 수입액은 C.I.F. 가격 기준이며, 주류 구분은 「1996년 현재의 HS 기준임」 기준임.

약 주: HS 2206-00-20(곡물발효주) 기준임.  
 맥 주: HS 2203 기준임.  
 과일주: 와인 - HS 2204 및 2205 기준임.  
 기타 과실주: HS 2206-00-10(사과주, 배술 등) 및 2206-00-90(와인클러) 기준임.  
 소 주: HS 2208-90-40 기준임.  
 위스키: HS 2208-30(위스키류) 기준임.  
 브랜디: HS 2208-20(포넬) 및 2208-90-10(브랜디) 기준임.  
 일반증류주: 럼펄, 진펄, 보드카는 각각 HS 2208-40, 2208-50, 2208-60 기준이며, 기타는 HS 2208-90-60 (고령주) 및 2208-90-90(기타)의 합임.

리뷰르: HS 2208-70 기준임.  
 資料: 관세청 한국관세연구소,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表 II - 8〉 年度別 酒類 輸出量 및 輸出額 推移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주	0.0	0.0	0.0	474.6	675.5	553.9	371.9	411.9	545.2	608.2	518.1	502.7		
맥	314.0	847.4	413.7	1,038.6	1,523.5	2,405.7	3,541.6	4,962.2	2,491.3	3,177.0	3,009.8	3,243.3		
과	20,194.9	9,466.1	27,541.9	13,866.2	30,704.1	15,443.5	17,289.8	28,610.2	15,950.1	23,133.7	50,604.3	29,032.0		
· 와	80.9	173.2	35.3	107.0	62.9	179.8	307.4	256.4	155.6	1,112.8	110.8	370.7		
· 기	19.8	27.4	2.5	8.7	30.5	55.9	7.1	15.8	23.5	72.0	54.1	107.1		
· 타	61.1	145.8	32.8	98.3	32.4	123.9	300.3	240.6	132.1	1,040.6	56.7	263.6		
주	4,587.6	5,188.5	5,381.9	6,669.9	7,698.1	11,076.0	20,303.9	19,610.7	30,797.0	50,682.6	41,909.0	56,061.8		
위	12.6	123.5	90.2	840.0	46.4	421.0	36.4	257.0	294.4	2,100.2	95.3	1,031.9		
브	11.1	17.4	0.4	3.3	3.8	12.0	1.5	12.1	101.6	1.2	34.4	6.5		
스	69.6	100.0	94.6	129.9	83.7	130.0	106.4	174.6	160.7	255.6	77.3	135.3		
일	0.0	0.0	0.0	0.0	0.4	2.4	0.0	0.0	0.0	0.0	0.0	0.0		
· 님	0.0	0.0	0.0	0.0	44.0	56.5	10.4	17.2	1.3	4.3	0.0	0.0		
· 및	0.0	0.0	0.0	0.0	0.0	0.0	0.0	0.0	23.8	40.3	0.0	0.0		
· 진	69.6	100.0	94.6	129.9	39.3	71.1	96.0	157.4	135.6	279.5	536.2	77.3		
· 보	67.7	383.8	123.4	732.1	83.6	451.2	62.6	394.0	79.1	486.7	158.7	875.1		
드														
카														
타														
· 기														
리														
큐														
르														
계	25,338.4	17,565.6	33,681.4	25,586.0	39,743.8	31,487.4	51,056.7	44,060.0	53,026.6	59,521.8	77,726.7	82,797.0	96,046.9	91,290.9

註: 1. 주권과 변성알콜(HS2207)은 제외하였음.  
 2. 수출액은 F.O.B. 가격 기준이며 주류 구분은 1996년 현재의 HS 기준임.  
 약 주: HS 2206-00-2030 기준임.  
 맥 주: HS 2206-00-20(국물발효주) 기준임.  
 과 주: HS 2203 기준임.  
 과실 주: 와인-HS 2204 및 2205 기준임.  
 주 주: HS 2206-00-10(사과주, 배술 등) 및 2206-00-90(와인알콜) 기준임.  
 위 주: HS 2208-90-40 기준임.  
 브랜디: HS 2208-20(포탁) 및 2208-90-10(브랜디) 기준임.  
 일반증류주: 럼 및 테이카, 진 및 체네바, 보드카는 각각 HS 2208-40, 2208-50, 2208-60 기준이며, 기타는 HS 2208-90-60-60(고량주) 및 2208-90-90(기타)의 합임.  
 리 큐 르: HS 2208-70 기준임.  
 資料: 관세청 한국관세연구소,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 III. 酒稅率 體系整備의 必要性

酒類는 다른 일반적인 消費財와는 달리 消費時에 購入費用 외에도 부수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누적적 음주의 결과로 파생되는 알콜중독, 음주운전, 과음에 따른 인적·물질적 손실 및 생산성 감소, 청소년 음주, 범죄 증가, 가정파탄, 수질오염 등에 따른 각종 社會·經濟的 費用 등이 그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것은 흔히 消費에 따른 外部不經濟로 일컫는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음주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외부불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면서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酒稅의 課稅體系로서 현행과 같은 從價稅 體系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주세수입 전액이 地方讓與金으로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外換危機로 인한 財政健全化 문제와 관련하여 地方財政도 간략히 논의한다.

#### 1. 飲酒 關聯 外部不經濟

##### 가. 酒類 消費의 增加趨勢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麥酒, 燒酎, 위스키로 세 가지 주종의 소비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燒酎의 경우에는 消費量이 1970년에 20만kl였던 것이 1997년에는 80만kl로 약 4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麥酒는 같은 기간 동안 9만kl 정도에서 180만kl 정도로 약 19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表 III-1〉 主要酒類의 消費 推移

(單位：拾億圓, KI)

	실질GNP	燒 酎	위 스 키	麥 酒
1970	36,429.1	202,484	—	92,970.7
1971	39,354.6	203,959	—	97,803.2
1972	41,168.3	216,115	—	94,602.6
1973	46,353.2	235,664	—	121,392.3
1974	50,042.7	287,708	—	154,438.6
1975	53,109.4	379,222	—	169,781.1
1976	59,416.7	424,814	—	178,788.3
1977	65,442.4	462,652	385	225,510.0
1978	71,589.6	458,614	1,586	418,219.3
1979	76,474.5	455,768	3,104	609,729.6
1980	73,481.1	494,948	3,382	580,142.8
1981	77,551.7	531,843	3,263	587,332.0
1982	83,355.6	544,622	2,442	607,629.0
1983	93,493.0	583,870	3,189	692,482.9
1984	101,475.0	622,979	3,867	737,659.8
1985	108,130.3	586,949	4,033	772,349.9
1986	121,036.5	629,752	4,557	783,176.9
1987	135,912.8	662,993	5,372	851,513.8
1988	152,229.3	705,948	6,762	102,4371.3
1989	162,683.7	709,321	8,359	119,6972.9
1990	178,262.1	701,566	8,806	1,311,156.3
1991	194,458.9	677,912	9,938	1,585,654.8
1992	204,231.0	723,230	12,174	1,574,841.9
1993	216,162.3	744,000	12,537	1,509,551.4
1994	236,817.7	765,497	16,670	1,770,607.2
1995	254,704.9	761,935	22,555	1,854,069.9
1996	272,200.3	787,197	28,479	1,873,806.8
1997	285,588.4	813,600	24,530	1,806,162.0

資料：國稅廳，「國稅統計年報」，各年度。  
關稅廳，「貿易統計年報」，各年度。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소비되기 시작된 위스키의 경우에는 1980년에 3,300kl에서 1997년에는 2만 4,500kl로 7배 정도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세 가지 대표적인 주종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1997년말부터 外換危機로 비롯된 극심한 景氣沈滯로 인해 소주를 제외하고는 주류 소비량이 다소 감소하였던 점이 특기할 만 한데 이는 근본적인 주류소비패턴이 변화하였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 가격으로 평가한 實質國民總生産은 1970년에 36조 4천 억원에서 1997년에는 285조 5천억원으로 7.8배 정도 증가한 데 비추어 볼 때 이상과 같이 주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괄목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주류별로 약간의 예외적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류는 기호식품으로서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소득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주류소비 증가율이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류 정책이 빈약하여 일반국민들이 주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燒酎의 경우에는 여타 주류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주의 알콜도수가 대부분 25도에 이르는 등 고알콜주로서 수백년간의 소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의 저변이 매우 넓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작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20여년간 소비가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값싼 소주를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가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미 상당 부분 消費가 飽和狀態에 이른 소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의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음주에 따른 알콜中毒 또는 飲酒運轉, 交通事故 등에 의한 諸般 經濟·社會的 損

失(醫療費 支出, 死亡·負傷 등에 의한 生産損失 등), 飲酒에 의한 犯罪의 增加, 靑少年 飲酒에 의한 諸般 損失 등을 들 수 있다.

#### 나. 酒類 消費의 國際比較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주류 소비량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증류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맥주와 증류주 중 위스키의 경우에는 소비량 수준이 상당히 낮다(〈表 III-2〉 및 〈表 III-3〉 참조)<sup>1)</sup>.

蒸溜酒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증류주 소비량은 4.4리터로 러시아의 4.6리터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수준이 높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소비량을 추정해보면 우리나라는 5.9리터로 러시아의 5.8리터보다 높아 조사대상국 가운데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반면 麥酒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단순 소비량 평균이 41.1리터,

- 1)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천 509만 3천명 정도이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3천 355만 8천명 정도이다.  
1995년 현재 맥주의 소비량은 185만 4천kl 정도로 1인당 및 15세 이상 1인당 소비량(또는 알콜도수 100% 환산시)은 각각 41.1리터(1.9리터)와 55.3리터(2.5리터)이고, 와인(과실주, 탁주, 약주 등)의 경우에는 각각 6.8리터(0.3리터)와 9.1리터(0.4리터)이다.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는 알콜도수 100% 환산시 각각 4.4리터와 5.9리터이다. 그리고 주류 전체의 경우 알콜도수 100% 환산시 각각 6.6리터와 8.8리터이다. 다만 증류주와 와인의 경우 수입분 일부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소비량이 다소 증가하나 거의 차이가 없다.
- 2) 우리나라의 증류주 소비수준이 매우 높은 것은 국민들의 음주습관, 회식문화, 및 소주의 가격이 매우 낮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특히 燒酎의 價格이 매우 낮아 주류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주로 대표되는 증류주의 소비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안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表 III-2〉 1人當 酒類消費量의 國際比較(1995年 現在)

(單位:리터)

순위	증류주	맥주	와인	전체				
1	러시아	4.6	체코	160.0	프랑스	63.5	룩셈부르크	12.6
2	헝가리	4.3	독일	137.7	폴란드	58.4	프랑스	12.0
3	루마니아	4.0	덴마크	124.4	포르투갈	58.4	독일	11.7
4	폴란드	3.8	오스트리아	115.6	룩셈부르크	58.2	포르투갈	11.2
5	슬로바키아	2.8	아일랜드 <sup>2)</sup>	112.6	이탈리아	51.3	오스트리아	10.9
6	불가리아	2.8	헝가리	107.0	스위스	43.6	덴마크	10.4
7	프랑스	2.5	벨기에	104.0	스페인	38.3	헝가리	10.2
8	스페인	2.5	영국	100.9	오스트리아	32.0	체코	10.1
9	독일	2.3	뉴질랜드	99.5	덴마크	27.6	스페인	10.1
10	일본	2.0	룩셈부르크	99.4	루마니아	25.3	스위스	9.4
11	미국	1.9	호주 <sup>1)</sup>	95.4	벨기에	25.0	벨기에	9.1
12	캐나다	1.8	네덜란드	85.8	헝가리	24.0	루마니아	9.0
13	핀란드	1.8	미국	83.7	독일	22.2	네덜란드	8.2
14	네덜란드	1.7	핀란드	82.7	불가리아	21.8	불가리아	8.1
15	체코	1.7	슬로바키아	81.0	호주 <sup>1)</sup>	18.1	슬로바키아	7.8
16	아일랜드 <sup>2)</sup>	1.7	캐나다	70.1	체코	16.9	호주 <sup>1)</sup>	7.6
17	룩셈부르크	1.6	스페인	66.6	뉴질랜드	16.9	영국 <sup>4)</sup>	7.5
18	오스트리아	1.5	스웨덴	64.7	네덜란드	16.6	이탈리아	7.3
19	아이슬란드	1.5	폴란드	64.2	슬로바키아	14.9	일본 <sup>3)</sup>	7.0
20	스위스	1.5	포르투갈	64.2	영국	14.7	뉴질랜드	7.0
21	스웨덴	1.5	스위스	62.2	일본 <sup>3)</sup>	13.1	핀란드	6.8
22	남아프리카	1.4	일본	58.0	스웨덴	12.7	아일랜드 <sup>2)</sup>	6.8
23	호주 <sup>1)</sup>	1.4	남아프리카	54.5	핀란드	11.5	미국	6.5
24	영국	1.3	불가리아	53.9	남아프리카	8.8	폴란드	6.4
25	뉴질랜드	1.1	노르웨이	53.5	캐나다	8.2	캐나다	6.2
26	벨기에	1.1	멕시코	44.0	노르웨이	7.1	러시아	5.8
27	덴마크	1.1	루마니아	39.2	미국	6.8	스웨덴	5.4
28	노르웨이	0.8	프랑스	39.1	아일랜드 <sup>2)</sup>	5.4	남아프리카	5.3
29	포르투갈	0.8	아이슬란드	30.1	아이슬란드	5.0	노르웨이	4.0
30	멕시코	0.7	이탈리아	25.4	러시아	2.6	아이슬란드	3.5
31	이탈리아	0.5	러시아	19.0	멕시코	0.2	멕시코	2.3

註: 1. 증류주와 전체는 알콜도수 100% 환산치이고, 맥주와 와인은 단순 환산치.

2. 우리나라는 증류주 4.4리터, 맥주 41.1리터(알콜 100%시 1.9리터), 와인 6.8리터(알콜 100%시 0.3리터), 전체는 6.6리터임.

1) 회계연도 기준(1995년 7월~1996년 6월)

2) 1994년 자료

3) 청주 포함.

4) cider 포함.

資料: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1997).

〈表 III-3〉 15세 以上 人口 1人當 酒類消費量 推定値(1995年 現在)

(單位:리터)

순위	증류주	맥주	와인	전체				
1	러시아	5.8	체코	198.5	프랑스	79.0	룩셈부르크	15.1
2	헝가리	5.3	독일	164.1	폴란드	75.7	프랑스	14.9
3	루마니아	5.0	덴마크	150.2	포르투갈	72.0	독일	14.0
4	폴란드	4.9	오스트리아	148.9	룩셈부르크	70.1	포르투갈	13.8
5	슬로바키아	3.6	아일랜드 <sup>2)</sup>	140.6	이탈리아	60.4	오스트리아	13.3
6	불가리아	3.4	헝가리	130.6	스위스	53.0	덴마크	12.5
7	프랑스	3.1	벨기에	129.9	스페인	45.9	헝가리	12.5
8	스페인	3.0	영국	126.5	오스트리아	38.9	체코	12.5
9	독일	2.7	뉴질랜드	125.3	덴마크	33.3	스페인	12.1
10	일본	2.4	룩셈부르크	121.7	루마니아	31.8	스위스	11.4
11	미국	2.4	호주 <sup>1)</sup>	119.8	벨기에	30.4	벨기에	11.3
12	캐나다	2.3	네덜란드	107.4	헝가리	29.3	루마니아	11.1
13	핀란드	2.2	미국	105.1	독일	26.7	네덜란드	10.1
14	네덜란드	2.2	핀란드	105.1	불가리아	26.5	불가리아	10.0
15	체코	2.2	슬로바키아	102.2	호주 <sup>1)</sup>	23.1	슬로바키아	9.9
16	아일랜드 <sup>2)</sup>	2.1	캐나다	98.6	체코	22.1	호주 <sup>1)</sup>	9.7
17	룩셈부르크	2.0	스페인	86.9	뉴질랜드	21.0	영국 <sup>4)</sup>	9.3
18	오스트리아	2.0	스웨덴	83.3	네덜란드	20.3	이탈리아	9.1
19	아이슬란드	1.9	폴란드	79.9	슬로바키아	19.3	일본 <sup>3)</sup>	9.0
20	스위스	1.8	포르투갈	79.8	영국	18.3	뉴질랜드	8.6
21	스웨덴	1.8	스위스	79.2	일본 <sup>3)</sup>	15.7	핀란드	8.4
22	남아프리카	1.8	일본	75.6	스웨덴	15.7	아일랜드 <sup>2)</sup>	8.4
23	호주 <sup>1)</sup>	1.8	남아프리카	69.3	핀란드	14.2	미국	8.4
24	영국	1.6	불가리아	68.6	남아프리카	14.1	폴란드	8.3
25	뉴질랜드	1.5	노르웨이	66.4	캐나다	10.4	캐나다	8.3
26	벨기에	1.3	멕시코	66.1	노르웨이	8.8	러시아	7.8
27	덴마크	1.3	루마니아	49.3	미국	8.7	스웨덴	7.3
28	노르웨이	1.1	프랑스	48.6	아일랜드 <sup>2)</sup>	7.1	남아프리카	6.7
29	포르투갈	1.0	아이슬란드	39.7	아이슬란드	6.6	노르웨이	4.9
30	멕시코	1.0	이탈리아	29.9	러시아	3.3	아이슬란드	4.6
31	이탈리아	0.6	러시아	24.1	멕시코	0.3	멕시코	3.6

註: 1. 증류주와 전체는 알콜도수 100% 환산치이고, 맥주와 와인은 단순 합산치.  
 2. 우리나라는 증류주 5.9리터, 맥주 55.3리터(알콜 100%시 2.5리터), 와인 9.1리터(알콜 100%시 0.4리터), 전체는 8.8리터임.  
 1) 회계연도 기준(1995년 7월~1996년 6월)  
 2) 1994년 자료.  
 3) 청주 포함.  
 4) cider 포함.  
 \*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성인 인구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 1995, Geneva, 1996'에서 인용하였음.

資料: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1997).

15세 이상 인구수 기준으로 55.3리터로 두 가지 경우 모두 27위 정도의 수준을 보여 상당히 소비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단순 소비량이 약 6.8리터로 28위 정도, 15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9.1리터로 약 26위에 해당되는 등 소비수준이 상당히 낮다.

모든 주류를 알콜도수 100%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6.6리터로서 비교대상 31개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두 32개국 가운데 23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기준시에는 8.8리터로 약 20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총주류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일반적으로 증류주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맥주나 와인에 대한 소비수준이 상당히 낮으며, 이에 따라 모든 주류에 대한 알콜도수 100% 기준 총소비수준도 麥酒나 와인 소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증류주는 대부분 러시아와 동구권에서 소비수준이 매우 높으며,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는 대체로 소비수준이 2.5리터(15세 이상 인구 기준시 3.1리터)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일본에서도 2.0리터(2.4리터) 수준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구권을 제치고 가장 소비수준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류주를 매우 많이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구조를 외국과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는 증류주 등 高알콜酒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알콜도수가 낮은 주류가 대부분인 麥酒나 와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 消費水準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麥酒와 와인에 대한 소비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蒸溜酒의 소비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麥酒와 와인 등 상대적으로 알콜도수가 낮은 酒類의 消費水準은 상

당히 낮다. 이에 따라 蒸溜酒, 麥酒, 와인을 알콜도수 100%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모두 합산하면 우리나라와 동구권의 순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동구권의 경우에는 기후적인 영향으로 매우 추운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高알콜酒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서구권의 경우에는 증류주에 대한 소비수준은 상당히 낮지만 맥주와 와인 등 低알콜酒에 대한 소비수준이 매우 높다. 이는 식생활이나 지리적 여건, 풍토 등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주시 주로 소주를 많이 소비하는 데 반해 서구유럽의 경우에는 식사시에 와인을 반주로 즐기는 것이 생활습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와인의 소비수준이 매우 높다. 또한 독일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서구유럽의 경우에는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酒類라기보다는 飲料의 하나로서 麥酒를 상용한다는 점에서도 맥주의 소비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각국간에 주류 소비패턴은 地理的, 文化的 背景의 差異 등으로 인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주류는 다른 일반재와 달리 소비시에 각종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류를 많이 소비할수록 熟醉 등 飲酒에 따른 副作用이 累積的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低알콜酒보다는 高알콜酒일수록 음주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주종의 구분 없이 絶對알콜度數로 환산한 총알콜 소비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종에 따라 소비비중의 편차가 클수록, 그리고 高알콜酒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飲酒에 따른 副作用이 증가하고, 주종별 소비 편차가 작을수록 또는 高알콜酒의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음주에 따른 부작용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동구권 등과 같이 증류주에 소비가 크게 치중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음주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주 등 증류주, 즉 高알콜酒의 소비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飲酒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즉 외부불경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飲酒運轉 交通事故

우리나라의 交通事故 總發生件數는 1990년대에 연간 25~27만 건 정도이다. 그 가운데 飲酒運轉에 의한 交通事故 發生件數는 1990년에 약 7,300건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2만 5,700건 정도로 불과 6년 사이에 3~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飲酒運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1997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약 2만 3천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表 III-4〉 참조).

이에 따라 전체 交通事故 가운데 飲酒運轉에 의한 交通事故의 發生件數 占有比도 1990년에는 2.9% 정도였던 것이 1996년에는 9.7%로 대폭 상승하였고 1997년에는 9.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일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飲酒運轉 交通事故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여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감안하여야만 최종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1970년대 중반의 주세율 조정과 음주 교통사고간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채롭다.

1994년과 1996년에는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이 150%에서 각각 120%와 100%로 인하되었다. 1995년에는 燒酎에 대해 10%의 教育稅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飲酒 交通事故 발생건수는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이 인하된 두 해 모두 감소한 데 반해 소주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해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대조적이다. 물론 이것이 飲酒 交通事故와 蒸溜酒에 대한 消費稅 課稅間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1997년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말의 외환 및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위스키 등을 중심으로 주류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表 III-4〉 飲酒運轉 交通事故 趨勢

(單位: 件, %)

	총 발생건수		음주로 인한 발생건수		
	(건)	전년대비	(건)	전년대비	점 유 율
1990	255,303	-0.2	7,303	-2.1	2.9
1991	265,964	4.2	8,377	14.7	3.1
1992	257,194	-3.3	10,319	23.2	4.0
1993	260,921	1.4	14,961	45.0	5.7
1994	266,107	2.0	17,900	19.6	6.7
1995	248,865	-6.5	17,777	-0.7	7.1
1996	265,052	6.5	25,764	44.9	9.7
1997	246,452	-7.0	22,892	-11.1	9.3

資料: 도로교통안전협회, 『대형교통사고 통계 및 사례분석』, 1997.

\_\_\_\_\_, 『1998 교통사고 통계』, 1998.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여타의 요인에 의해서도 飲酒 交通事故가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所得效果에 의하든 價格效果에 의하든 고알콜주가 대부분인 증류주의 소비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때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한 반면, 주세율 인하로 소비증가율이 상승하였을 때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

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완연구를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飲酒運轉에 의한 交通事故 發生件數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死亡者 및 負傷者의 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1997년 기간 동안 交通事故로 인한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의 수는 가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飲酒運轉에 의한 交通事故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발생건수의 증가율과 비슷하게 3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점유비도 3.1%와 3.3%에서 7.7%와 10.9%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交通事故에 의한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1997년에는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에 의한 交通事故의 발생건수가 다소 감소함에 따라 부상자의 점유비는 10.5% 미소하게나마 하락하였다. 그러나 사망자의 절대수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여 대조적이다(〈表 III-5〉 참조).

〈表 III-5〉 飲酒運轉 交通事故 死亡者 및 負傷者 推移

(單位: 名, %)

	사 망 자		부 상 자	
	총 계	음주사고	총 계	음주사고
1990	12,325	379(3.1)	324,229	10,707(3.3)
1991	13,429	476(3.5)	331,610	11,967(3.6)
1992	11,640	483(4.1)	325,943	14,971(4.6)
1993	10,402	596(5.7)	337,679	21,765(6.5)
1994	10,087	565(5.6)	350,892	26,918(7.7)
1995	10,323	690(6.7)	331,747	26,300(7.9)
1996	12,656	979(7.7)	355,967	38,897(10.9)
1997	11,603	1,004(8.7)	342,159	36,023(10.5)

註: ( )안은 점유비임.

資料: 도로교통안전협회, 『대형교통사고 통계 및 사례분석』, 1997.

\_\_\_\_\_, 『1998 교통사고 통계』, 1998.

〈表 III-6〉 우리나라의 自動車 種類別 年末 登録推移

(單位:대)

	乘 用 車				버 스	트 릭	特殊車	總 計
	自家用	택 시	官 用	計				
1970	28,687	28,443	3,547	60,677	17,469	49,055	1,097	128,298
1975	50,093	29,096	5,023	84,212	21,818	82,862	5,035	193,927
1980	178,513	62,816	7,773	249,102	42,463	226,940	9,224	527,729
1985	449,062	99,118	8,479	556,659	128,309	412,739	15,723	1,113,430
1990	1,902,067	159,331	13,524	2,074,922	383,738	924,647	11,496	3,394,803
1991	2,538,842	174,611	14,399	2,727,852	427,650	1,077,467	14,847	4,247,816
1992	3,256,931	188,544	15,582	3,461,057	483,575	1,261,522	24,740	5,230,894
1993	4,061,240	195,140	14,873	4,271,253	527,958	1,448,634	26,163	6,274,008
1994	4,930,238	204,542	13,933	5,148,713	528,069	1,644,646	28,919	7,404,347
1995	5,777,957	214,560	13,773	6,006,290	612,584	1,816,582	33,445	8,468,901
1996	6,653,422	226,471	13,740	6,893,633	663,011	1,962,564	33,884	9,553,092
1997	7,335,413	235,894	15,267	7,586,474	719,127	2,072,256	35,570	10,413,427
1998	7,323,555	242,190	15,181	7,580,926	749,423	2,104,683	34,670	10,469,599
1999.3	na.	na.	na.	7,637,721	777,264	2,135,176	34,718	10,584,879

資料: 交通新聞社, 『交通年鑑』.

韓國自動車工業協會, 『自動車登録統計月報』, 各號.

1980년대말부터 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대체로 정체상태에 있어 이채롭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飲酒抑制를 위한 제반 여건조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음주 후에 운전하는 위험스러운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表 III-6〉 참조). 1990년에 비해 1997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飲酒運轉에 의한 交通事故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安全運轉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飲酒의 危險性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飲酒運轉에 따른 直·間接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규제와 함께 경제적 유인수단을 동원하여 전반적으로 주류소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라. 飲酒 關聯 疾病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는 1997년 현재 약 10만 2천명 정도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음주와 관련한 사망자의 수는 2만 1천명으로 전체의 20.8%에 이르고 있다(〈表 III-7〉 참조).

이 가운데 질병과 관련된 사망자 가운데에는 飲酒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19.1%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사고 등에 의한 경우는 무려 33.4%에 이르고 있다. 본인의 의사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飲酒에 따라 총동적 또는 우발적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人命損失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주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에는 남자의 점유비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주류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음주를 억제할 경우 음주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음주로 인한 폐해로는 인명손실이나 숙취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 감소 등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이론에 의하면 餘暇(leisure)는 勞動供給과 대체관계에 있다. 그리고 여가 중 주류의 경우에는 숙취 등으로 인해 소비 후에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餘暇의 일부분으로서의 酒類 消費는 勞動供給에 대해 매우 강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류는 다른 財貨나 用役に 비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류에 대한 과세강화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sup>3)</sup>.

〈表 III-7〉 疾病別 飲酒 關聯 死亡者 數(1995年)

(單位:名, %)

전체 사망자	사 망			위험률 <sup>1)</sup>	음주관련사망자 <sup>2)</sup>		
	남	여	계		남	여	계
구강인두암	-	-	516	50 <sup>3)</sup>	-	-	258
식도암	1,330	171	1,501	75	998	128	1,126
위암	7,501	4,303	11,804	20	1,500	861	2,361
간암	7,467	2,293	9,760	15	1,120	344	1,464
후두암	668	132	800	50 <sup>3)</sup>	334	66	400
본태성고혈압	-	-	3,615	8	-	-	289
뇌혈관질환	-	-	33,845	7	-	-	2,369
호흡기결핵	2,444	849	3,293	25	611	212	823
폐렴	1,320	951	2,271	5	66	48	114
소화기질환	-	-	1,574	10	-	-	115
간경변	7,434	1,896	9,330	50	3,717	948	4,665
취장관련질환	244	62	306	42 <sup>4)</sup>	102	26	129
당뇨병	4,442	4,242	8,684	5	222	212	434
알코올성간질환	1,322	61	1,383	100	1,322	61	1,383
알코올성정신질환	1,143	68	1,211	100	1,143	68	1,211
소계	-	-	89,893	-	-	-	17,183
추사고성익수	1,743	663	2,406	35	610	232	842
화재	1,385	289	1,674	38	526	110	636
자살	530	256	786	45	239	115	354
살해	-	-	6,022	28	-	-	1,686
살해	-	-	985	46	-	-	453
소계	-	-	11,873	-	-	-	3,971
전체	-	-	101,766	-	-	-	21,154

註: 1)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서 제시한 1990년 음주관련 사망 위험률임. 음주관련 사망자는 위험률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2)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690명은 제외됨.

3) 남자의 경우 50%이고, 여자의 경우 40%임.

4) 만성췌장염의 경우는 60%이나 여기서는 급성췌장염의 비율(42%)을 적용함.

資料: 統計廳, KOSIS 資料.

3) 이 부분은 成均館大 朴宰完 教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朴宰完(1999) 참조).

#### 마. 飲酒에 따른 經濟·社會的 費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飲酒에 따라 疾病 및 각종 事故로 인한 인명 피해와 의료비 지출, 勞動供給 減少, 生産性 低下 등과 같이 사회적 으로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킨다. 음주에 따른 비용은 酒類의 購入·消費를 위해 지출되는 직접비용 또는 개인들의 私的費用과,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비용, 즉 社會的 外部費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金錢的 費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직접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金錢的·可視的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間接費用의 경우에는 非可視的인 형태로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다. 음주로 인한 결근시 또는 인명손실에 초래되는 生産減少에 의한 손실이 비가시적으로 초래되는 間接費用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산감소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 機會費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비용의 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음주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여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금전적으로 그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飲酒와 관련한 각종 비용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盧仁喆 外(1997)가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飲酒에 의한 經濟·社會的 費用이 1995년 현재 13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가운데 주류소비와 관련하여 酒稅를 제외한 직접비용, 즉, 주류 소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전적 비용이 약 4조원<sup>4)</sup>, 기타 음주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비용, 즉 의료비, 생산성 감소, 조기

4) 盧仁喆 外(1997)에서는 주류시장의 규모에서 관련 소비세 부담액 전체, 즉 酒稅, 教育稅, 附加價值稅를 모두 공제한 것이 아니라 酒稅分만 공제한 것이므로 教育稅와 附加價值稅를 추가적으로 공제할 경우 직접 구입비용은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에 의한 손실, 재산피해, 기타 행정비용 등이 약 9조 5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表 III-8〉 飲酒의 經濟·社會的 費用(1995年)

(單位: 億원, %)

	사회부담	개인부담	계	비율
의 료 비				
직접의료비	2,600	2,232	4,832	
간접의료비	-	1,841	1,841	
의료보조비	-	2,457	2,457	
소 계	2,600	6,530	9,130	9.54
생산성감소				
질병사고	4,862	-	4,862	
음주숙취	5,1447	-	51,447	
소 계	5,6309	-	56,309	58.86
조기사망손실				
암질병	16,685	-	16,685	
교통사고	2,834	-	2,834	
각종사고	8,529	-	8,529	
장례비	45	1,584	1,629	
소 계	28,093	1,584	29,677	31.02
재산피해액				
교통사고	199	199	398	
화재	35	34	69	
소 계	234	233	467	0.48
행정비용				
자동차보험	71	-	71	
경찰행정	71	-	17	
소 계	88	-	88	0.09
소 계	87,324	8,347	95,671	100.0
알콜지출	-	40,559	40,559	
총 계	87,324	48,906	136,230	

資料: 盧仁喆 外(1997).

음주에 따른 파생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음주에 의한 생산성 감소로 인한 비용이 5조 6천억원 정도(58.9%)로 매우 높으며, 다음으로는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과 의료비가 각각 약 3조원(31.0%)과 9천억원(9.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세 가지 비용이 주류 구입을 위한 직접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파생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와 관련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1995년 현재 GNP의 약 2.7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반면에 日本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는 GNP에 대비한 음주에 의한 經濟·社會的 費用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

〈表 III-9〉 飲酒 關聯 年間 經濟·社會的 費用의 國際比較

(單位: 拾億달러[總費用], %, 달러[1人當 費用])

		總費用 <sup>1)</sup> (US billion)	GNP 占有比	1人當 費用	研究者
韓 國	1995	12.50	2.75	274.5	盧仁喆外(1997)
日 本	1987	45.78	1.89	376.3	Nakamura et al.
濠 洲	1991	8.2	1.73	473.0	Collins & Lapsley
獨 逸	1993	46~69	2.81~4.22	574.9~862.4	Kieselbach
뉴 질	1985	1.16	2.3	357.1	Chetwynd & Rayner
랜 드	1983	116.9	3.40	504.9	Harwood et al.
美 國	1985	70.3	1.73	294.5	Rice et al.
	1988	85.8	1.75	352.5	Rice et al.
	1988	136	2.77	558.8	Burke

註: 1) 자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금액을 미국의 달러(1995년 기준 1달러당 765원)로 환산.

原資料: Henderson, M., G. Hutcheson & J. Davies, *Alcohol and the Workplace*, WHO, 1996. Nakamura et al., "The Social Cost of Alcohol Abuse in Japa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eptember 1993, pp. 618~625.

資料: 盧仁喆 外(1997).

음주 관련 1인당 비용을 비교해보면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수준과 물가수준, 생산성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인 수준은 결코 이들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주가격은 비교대상 국가에서의 주요 증류주에 대한 가격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稅前工場渡出庫價格을 기준으로 소주의 가격수준이 위스키의 약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sup>5)</sup>. 또한 소주의 경우에는 교육세 포함 주세율이 38.5%이고 위스키 등의 경우에는 130%로서 소주의 주세율이 낮기 때문에 양자간의 소비자가격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약 2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알콜도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소주의 가격을 외국에서의 평균적인 증류주 가격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소비시에 소요되는 직접구입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음주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1인당 비용은 크게 상승하여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 2. 靑少年 飲酒

음주시에는 成人에게도 주류 소비에 따른 효용과 함께 여러 가지 해악이 따른다. 더욱이 성장기에 있는 靑少年의 경우에는 成人에 비

5) 韓·EC 및 미국간 WTO 주세분쟁 패널보고서 WTO(1998A)를 참조하기 바란다.

6) 소주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위스키 등을 대표되는 여타의 일반적인 증류주의 평균가격수준으로 환산하는 가상적인 경우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순수 비용만 하더라도 직접비용이 최소한 8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종 소비세와 유통마진 등을 감안하면 직접비용의 증가분은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주류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GNP의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주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군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 그 弊害가 더욱 심각하다. 즉, 靑少年의 경우에는 飲酒에 따라 身體成長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심리적으로는 대부분 사춘기 시기를 겪게 됨에 따라 방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飲酒時 自제력의 상실 등이 동기가 되어 각종 非行이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靑少年에 대한 음주를 제한하기 위해 最小飲酒許容年齡을 18~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sup>7)</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이하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 文化體育部에서 실시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음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러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6년도에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靑少年의 飲酒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위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최초 음주를 경험한 연령이 15~16세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22.3%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7~18세 및 13~14세 사이의 경우도 각각 19.1%와 17.9%로 나타났다. 즉, 10대 중반 및 후반에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최초로 음주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여를 불문하고 성인이 되기 전인 19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청소년이라고 보기에 아직 어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도 음주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32.5%로 나타나 아동의 음주 문제도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1997) 참조.

〈表 III-10〉 年度別 靑少年 飲酒經驗 比率

(單位: %)

	1989	1991	1993	1996
여 자	43.7	—	53.0	69.5
남 자	72.4	—	63.0	74.0
계	61.1	61.8	59.7	71.8

註: 1996년에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만 9세~24세 청소년 13,6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 실시에서 얻은 결과임.  
 資料: 文化體育部(1996).

〈表 III-11〉 靑少年의 最初 飲酒年齡(1996年)

(單位: %)

	남 자	여 자	계
10세 이전	23.5	13.1	18.0
11~12	17.7	11.8	14.5
13~14세	17.8	17.7	17.9
15~16세	21.4	22.8	22.3
17~18세	15.5	21.9	19.1
19세이후	4.1	12.7	8.9

註: 1996년에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만 9세~24세 청소년 13,6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 실시에서 얻은 결과임.  
 資料: 文化體育部(1996).

靑少年의 飲酒는 비단 음주 자체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 및 비행에도 연루되어 국가적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연간 총발생건수는 1970년에 약 4만 3천건 이던 것이 1980년에는 8만 8천건, 1990년에는 10만 6천건, 1995년에는 12만 4천건, 1997년에는 15만건으로 지난 27년간 매

년 4.8%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에 의한 청소년 범죄의 발생건수와 비중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80년에 약 5천건으로 5.6% 정도이던 것이 1995년에는 10% 내외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表 III-12〉 少年 犯罪의 原因別 構成比

(單位: 件, %)

舊分類	計	利慾	射倖心	怨恨 忿怒	家庭 不和	誘惑	偶然	醉中	其他
1970	42,819 (100)	17,218 (40.2)	203 (0.5)	5,923 (13.8)	244 (0.6)	-	3,082 (7.2)	-	16,149 (37.7)
1980	87,867 (100)	12,327 (14.0)	1,910 (2.2)	3,618 (4.1)	207 (0.3)	1,060 (1.2)	10,293 (11.7)	4,959 (5.6)	53,493 (60.9)
1985	102,038 (100)	18,090 (17.7)	3,219 (3.2)	5,519 (5.4)	214 (0.2)	1,887 (1.8)	24,891 (24.4)	5,994 (5.9)	42,135 (41.3)
1990	105,567 (100)	13,442 (12.7)	2,755 (2.6)	3,872 (3.7)	151 (0.1)	1,852 (1.8)	35,065 (33.2)	7,683 (7.3)	40,468 (38.3)
1991	102,537 (100)	10,060 (9.8)	1,909 (1.9)	3,012 (2.9)	149 (0.1)	2,081 (2.0)	27,687 (27.0)	7,864 (7.7)	49,483 (48.3)
1992	99,301 (100)	9,761 (9.8)	1,597 (1.6)	2,091 (2.1)	129 (0.1)	1,790 (1.8)	25,407 (25.6)	7,260 (7.3)	50,792 (51.2)
1993	110,453 (100)	10,840 (9.8)	1,633 (1.5)	1,897 (1.7)	136 (0.1)	2,961 (2.7)	25,877 (23.4)	7,284 (6.6)	59,314 (53.7)
1994	108,342 (100)	20,628 (19.0)	1,036 (1.0)	1,756 (1.6)	135 (0.1)	1,251 (1.2)	26,785 (24.7)	9,711 (9.0)	47,040 (43.4)
1995	124,244 (100)	22,122 (17.8)	1,066 (0.9)	1,492 (1.2)	134 (0.1)	1,278 (1.0)	30,813 (24.8)	12,346 (9.9)	54,993 (44.3)
新分類	計	利慾	射倖心	報復	-	誘惑	偶發的	好奇心	其他
1996	127,503 (100)	22,430 (16.3)	1,083 (0.8)	1,570 (1.1)	-	1,494 (1.1)	32,537 (23.7)	14,637 (10.6)	63,752 (46.4)
1997	150,199 (100)	22,985 (15.9)	1,157 (0.7)	2,359 (1.5)	-	1,914 (1.2)	35,956 (23.9)	15,057 (10.0)	70,711 (47.0)

資料: 法務研究院, 『犯罪白書 1996』.

1996년부터는 통계분류 기준이 개편되어 취중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위에서 제시된 자료가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개연성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소 논거가 약화되지만 우리나라에서 靑少年 飲酒問題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 3. 酒稅負擔의 衡平性

본절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酒種別로 酒稅負擔의 所得階層別 負擔分布를 추정하여 稅負擔의 衡平性 문제를 검토해본다.

#### 가. 酒稅負擔 分布

본절과 아래의 절에서는 成明宰(1996)의 연구에서 1994년 귀속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1997~1998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酒稅負擔 分布의 變化 推移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sup>8)</sup>.

都市家計의 家口當 總所得에 대비한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은

8) 1994년 都市家計調查資料를 대상으로 분석한 成明宰(1996)의 연구에서는 가구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또한 계층별 주세부담률도 그렇게 추정하였다. 반면에 1997년과 1998년 都市家計調查資料를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所得階層을 구분하고 각종 稅負擔率을 推定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단계에서는 1997~1998년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1994년 자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도 추정해 보았는데 가중치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질적인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두 연구의 연구결과 간에는 질적인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994년에 0.0823%였는데 1997년에는 0.0681%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경제위기의 시기로 접어든 1998년에는 0.0612%로 더욱 하락하였다.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이 지속적으로 下落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1994~1998년 기간 동안에 위스키와 맥주 등 일부 주류에 대한 酒稅率이 下落함에 따라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이 減少하였던 점을 가장 큰 변화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스키의 경우에 주세율이 1994년 현재 120%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100%로 인하되었고, 맥주의 세율도 1994년에 150%이었던 것이 1997년부터 130%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주종에 대한 주세부담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총체적인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의 下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經濟危機 이후 酒類에 대한 消費支出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所得에서 차지하는 酒類購入費의 占有比가 감소한 것 또한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이 매우 크게 하락하게 되는 要因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분석기간 동안 酒類의 消費增加率이 所得增加率보다 낮았던 데에도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에는 1997년말 이후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소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행태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위스키의 경우에는 1998년의 酒稅率 水準이 1997년과 동일하였지만 여타 주종에 비해 매우 고가인 위스키의 경우에는 經濟危機가 시작된 1997년말을 시점으로 輸入과 消費가 모두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말부터 위스키의 輸入과 消費가 급격히 위축된 것의 근본 원인은 환율급등에 따른 급격한 輸入價格 상승과 소득감소 및 심리적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위스키에 대한 酒稅 實

效稅負擔率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 특기할만하다.

家口當 酒稅負擔額 平均은 1997년에 1만 9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만 5천원 수준으로 하락하여 절대액으로는 4천원 정도, 비율로는 2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소득이 12.6% 감소한 것에 비해 주세부담액 감소율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자 하는 동기가 원인이 되어 일반 경제주체들이 생활필수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류의 소비를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가구당 總所得 對比 酒稅負擔率의 平均은 199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所得階層別로 酒稅負擔率의 變化 推移를 보면 상대적인 酒稅負擔의 逆進性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圖 III-3]에서 보듯이 所得階層別 酒稅負擔率은 1994년, 1997~1998년 모두 계층별 주세부담률 곡선이 우하향함으로써 酒稅負擔이 逆進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7~1998년의 경우에는 1994년에 비해 평균주세부담률 수준이 낮아졌다. 所得階層別 酒稅負擔率 曲線의 기울기는 대체로 비슷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1998년의 경우에는 1997년에 비해 기울기의 절대값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여 미소하게나마 逆進性이 擴大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主要 酒種別 酒稅負擔

各 酒種別·所得階層別 酒稅負擔率 分布는 <表 III-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淸酒의 경우에는 1~3분위 사이에서 주세부담률이 하락하여 주세부담의 보다 역진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분위 이상의 中·高所得層에서는 주세부담률이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8년의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淸酒의 實效稅負擔率이 다소 下落한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이행하면서 淸酒의 實效稅負擔率 曲線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볼 때 미약하나마 酒稅負擔의 逆進性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表 III-13〉 主要 酒類에 대한 所得階層別 總所得 對比 酒稅負擔率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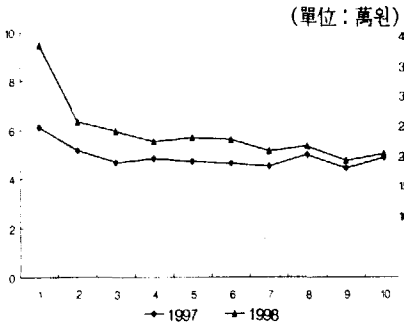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평균
淸酒	1994	0.106	0.067	0.059	0.049	0.038	0.047	0.049	0.037	0.043	0.034	0.046
	1997	0.068	0.043	0.043	0.044	0.038	0.042	0.036	0.036	0.027	0.032	0.037
	1998	0.084	0.070	0.038	0.032	0.043	0.037	0.029	0.031	0.025	0.026	0.034
濁酒	1994	0.028	0.009	0.006	0.006	0.005	0.005	0.004	0.004	0.003	0.002	0.005
	1997	0.025	0.006	0.006	0.005	0.004	0.003	0.005	0.004	0.002	0.003	0.005
	1998	0.026	0.012	0.006	0.008	0.008	0.006	0.005	0.005	0.005	0.002	0.006
燒酎	1994	0.315	0.183	0.145	0.127	0.131	0.125	0.110	0.100	0.082	0.063	0.112
	1997	0.316	0.169	0.152	0.131	0.122	0.089	0.103	0.075	0.058	0.057	0.101
	1998	0.555	0.262	0.180	0.163	0.173	0.138	0.120	0.095	0.070	0.037	0.123
麥酒	1994	0.920	0.802	0.813	0.770	0.636	0.646	0.577	0.564	0.455	0.364	0.577
	1997	0.732	0.639	0.455	0.518	0.528	0.465	0.452	0.378	0.285	0.300	0.423
	1998	0.621	0.581	0.594	0.484	0.538	0.494	0.460	0.394	0.297	0.221	0.406
위스키	1994	0.053	0.019	0.034	0.054	0.050	0.076	0.034	0.051	0.077	0.059	0.054
	1997	0.047	0.052	0.040	0.042	0.057	0.073	0.089	0.061	0.109	0.186	0.093
	1998	0.017	0.021	0.017	0.007	0.018	0.014	0.012	0.029	0.022	0.052	0.026
果實酒	1994	0.007	0.004	0.009	0.005	0.005	0.004	0.004	0.004	0.009	0.004	0.005
其他 酒類	1994	0.020	0.016	0.015	0.023	0.026	0.039	0.020	0.028	0.015	0.030	0.024
	1997	0.018	0.027	0.020	0.017	0.025	0.027	0.017	0.029	0.024	0.021	0.023
	1998	0.028	0.012	0.015	0.016	0.017	0.023	0.012	0.020	0.018	0.015	0.017
酒稅計	1994	1.449	1.100	1.081	1.034	0.891	0.942	0.798	0.788	0.684	0.556	0.823
	1997	1.205	0.934	0.716	0.757	0.773	0.698	0.702	0.583	0.504	0.598	0.681
	1998	1.330	0.958	0.851	0.710	0.797	0.711	0.639	0.574	0.436	0.354	0.612

註: 1. 都市家計調查資料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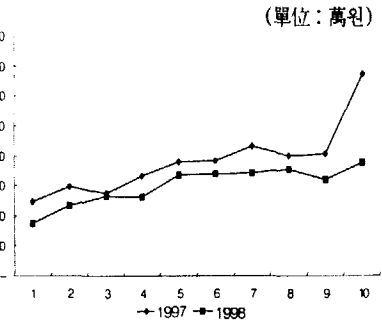
2. 單位가 千分率임에 유의하기 바람.

資料: 1994年 推定值: 成明宰(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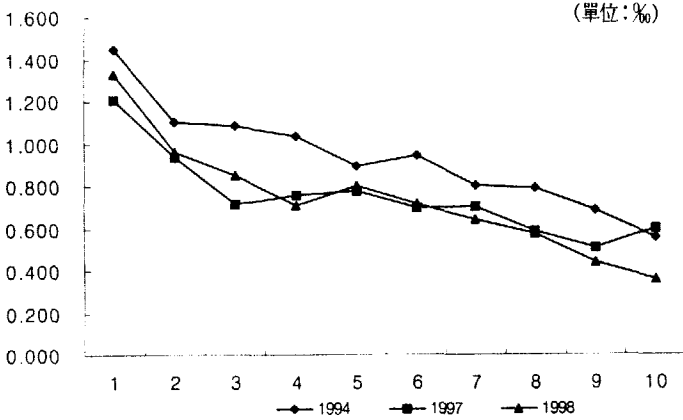
【圖 III-1】所得階層別 總消費稅 負擔



【圖 III-2】所得階層別 酒稅 負擔額



【圖 III-3】所得階層別 酒稅의 實效稅負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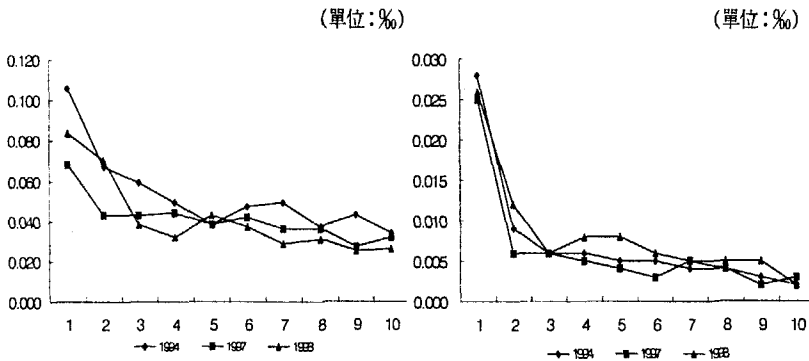
濁酒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의 하나이다. 최근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탁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표적인 劣等財(inferior good)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탁주의 소비도 상당 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다른 주류에 비해 저소득층의 酒稅負擔率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반면 3분위 이상의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에서는 濁酒의 酒稅負擔率 수준이 상당히 낮은 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률도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탁주에 대한 주세율이 5%에 불과한 것도 탁주의 주세부담률 절

대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의 또다른 요인이다. 1994년 이래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濁酒의 소득계층별 주세부담률 분포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1998년의 주세부담률 수준이 1994년이나 1997년에 비해 미소하게나마 다소 높게 변화한 것이 특징적인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圖 III-4] 酒稅의 實效稅負擔率(淸酒)

[圖 III-5] 酒稅의 實效稅負擔率(濁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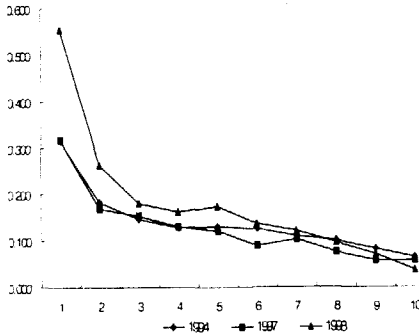
燒酎는 소득수준과 별다른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종이다. 燒酎는 대중적인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중주로서 소비가 소득에 대해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燒酎의 경우에는 酒稅負擔의 逆進性이 상당히 크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주세부담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6분위에서 전년에 비해 酒稅負擔率이 높아진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감소추세 속에서 이들 계층의 소주소비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麥酒의 가구당 평균 주세부담액은 11,843원(1997년)에서 9,948원(1998년)으로 16.0%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총주세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1%에서 66.3%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맥

주의 주세수입 비중이 대체로 60~7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주세부담 비중도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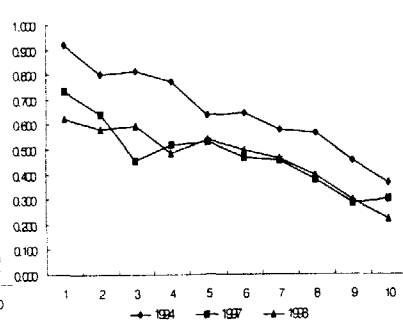
【圖 III-6】 酒稅의 實效稅負擔率(燒酎)

(單位:%)



【圖 III-7】 酒稅의 實效稅負擔率(麥酒)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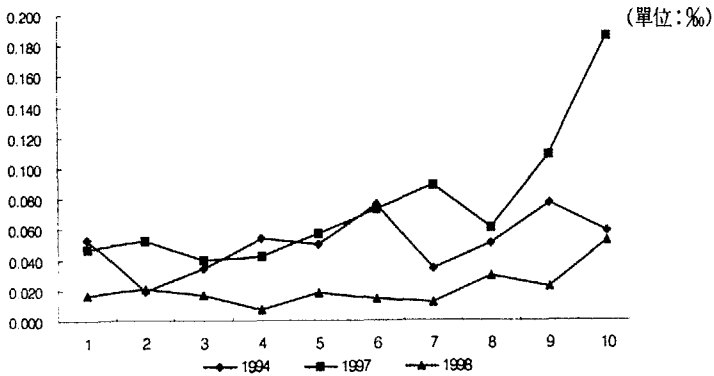


맥주에 대한 최근(1997~1998년)의 所得階層別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은 1994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주세부담률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8년에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점을 놓고 볼 때 맥주에 대한 소비지출이 감소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에 비해 주세부담률 수준이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97년부터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종전의 150%에서 130%로 인하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다른 주종과 달리 所得階層別 酒稅負擔이 累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스키가 상당히 高價로서 일정 소득 이상의 中産層 이상의 階層에서 주로 소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주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일반적인 특성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인 세부담의 衡平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1994년에는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이 120%였으나 1996년부터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직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7년에 위스키의 주세부담률 수준이 1994년 수준보다 높은 것은 1994~199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위스키에 대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圖 III-8]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위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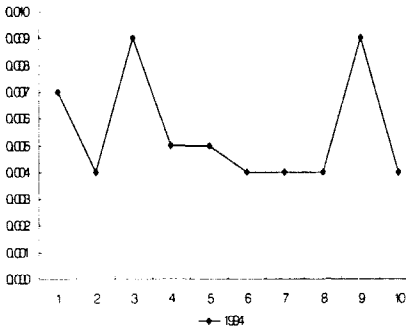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에 위스키의 주세부담률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은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감소까지 감안할 경우 위스키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위스키에 대한 주세부담률 곡선이 正(+)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실주의 경우에는 1997~1998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상 구분되어 조사된 자료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과실주에 대한 소비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의 과실주에 대한 주세부담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을 논하기 곤란하지만 대체로 0.0005% (또는 0.005%)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其他 酒類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주류가 산재하여 있어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대체로 경제위기 이후로 주세부담률 수준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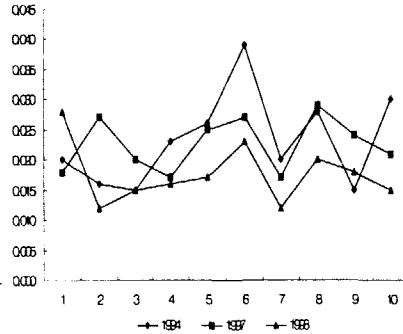
〔圖 III-9〕 酒稅의 實效稅負擔率(果實酒)

(單位: %)



〔圖 III-10〕 酒稅의 實效稅負擔率(其他 酒類)

(單位: %)



#### 다. 衡平性 綜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류의 소비가 상당 부분 포화상태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류의 소비증가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주류산업의 (경상)성장률과 세수증가율 모두 (경상)경제성장률에 미달하여 GDP 대비 稅收 및 附加價値 比重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酒稅의 實效稅負擔率 水準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酒類는 기호품의 하나로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스키 등과 같이 일부의 高價·高級酒類를 제외하고는 所得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우 넓은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상대적인 稅負擔의 逆進性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도시가계의 消費支出 調查資料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명제가 성립함을 보았다. 즉, 淸酒, 濁酒, 燒酎, 麥酒 등 대부분의 주류에서 高所得層의 實效稅負擔率이 낮고 低所得層

의 實效稅負擔率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 酒稅負擔의 逆進性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所得階層別 酒稅負擔이 累進인 것으로 관찰되어 위스키에 대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소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從量稅와 從價稅

##### 가. 從量稅 課稅體系의 背景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류에 대해 종량세 체계의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종량세 체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종량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慣習的·歷史的 產物로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백년 또는 수천년전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이전에 물납의 형태로 세금(주세)을 납부해온 전통이 최근까지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화폐경제가 발전한 이후에도 종래의 종량세 과세체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생산업자 입장에서 볼 때 세부담이 물가에 비탄력적인 종량세 체계를 선호한 것도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량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

##### 나. 從價稅와 從量稅 體系의 長短點

從量稅와 從價稅 體系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課稅의 必要性和 目的, 機能, 諸般 經濟與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만의 일방적인 논거에 의해서만 우월성을 판단한다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두 체계의 우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으로는 상대가격 체계와 자원배분, 외부불경제 존재시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물가나 가격

에 대한 세수탄력성, 세수의 안정적 확보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판단 기준 가운데 먼저 상대가격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從量稅 課稅體系의 경우 세전가격이 상이한 과세대상에 대해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면 財貨 - 用役間 相對價格 構造를 변화시켜 資源配分을 歪曲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從價稅 體系의 경우에는 가격에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전후의 相對價格 構造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생산 및 소비에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가격 구조와 관련해서는 종가세 체계가 종량세 체계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從價稅 體系는 가격구조를 왜곡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從量稅 體系의 경우에는 低價品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반면 高價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저가품을 차별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저가품의 소비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고가품의 소비비중이 높은 반면 실효세부담률은 반대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從量稅 體系가 從價稅 體系에 비해 逆進性이 더 크다.

從量稅 체계에서는 가격이나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稅率(또는 稅額)을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가격변동에 따른 세수탄력성이 매우 낮다. 반면에 從價稅 체계하에서는 세율을 조정해 주지 않더라도 단위당 세액이 가격의 일정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세수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종량세 체계하에서도 가격이나 물가변동만큼 세액을 조정해주면 세수의 실질가치를 유지해 줌으로써 가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종량세액을 물가나 가격에 연동시켜 수시로 조정해 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세율조정시 時差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종가세의 경우에는 일단 세율

이 결정되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격(또는 물가)이 변동하더라도 세수가 탄력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세수의 실질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세수의 물가탄력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세수증대가 필요한 상황하에서는 가격에 대해 세수가 탄력적인 종가세 체계가 적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가가치세나 자동차소비세(excise tax on automobiles), 미국의 사치세(federal luxury tax)와 전 화세 등이 모두 종량세 체계가 아닌 종가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미국의 燃料浪費稅(Gas Guzzler Tax)는 燃比를 기준으로 종량세 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연비를 개선하여 총체적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체적인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와는 과세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종가세 체계 적용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외부불경제 문제를 논할 때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주류는 비가치재(demerit goods)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흔히 주세를 죄악세(sin tax)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주류는 다른 일반 재화와 달리 소비시에 효용도 창출하지만 부수적으로 음주에 따른 부작용(또는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도 파생시킨다. 따라서 주세의 부과목적 가운데에는 제1~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소비억제 기능도 포함된다. 특히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상대적으로 더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고알콜주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종량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보다 다소 우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종량세는 상대가격구조를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약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세전가격의 변동이 매우 극심한 재화의 경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다소 우월하다. 즉, 석유류와 같이 국제유가의 변동이 매우 잦고 환율등락에 따라 국내(세전)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재화의 경우에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종량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보다 우월하다<sup>10)</sup>. 그러나 주류의 경우에는 (세전)가격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고 변동 폭도 소폭인 경우에는 어떠한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안정적 세수확보 또는 예측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종가세 체계하에서 세수가 물가(또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변화하므로 종가세 체계가 더 우수하다.

#### 다. 從價稅 體系 維持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주세 부과목적으로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억제 유도, 청소년 음주 억제, 음주운전 감축 등 외부불경제의 축소 문제, 이와 관련한 주세율의 알콜도수 비례방안,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재정적자 누적에 대응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수증대 문제, 주세부과시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9) 물론 역사적으로 증류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선택한 데 있어 알콜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은 외부불경제 문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지만 사후적으로는 외부불경제 축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종량세 체계의 경우에 고알콜주에 대한 세부담이 저알콜주에 대한 세부담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외부불경제의 가능성이 높은 고알콜주에 대한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 成明宰(1995) 참조.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억제와 세입증대가 요청된다. 다만 현재 경기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증세는 경기에 부담이 적은 부분과, 과세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세목이나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소득세와 법인세를 증세하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소비세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이 작으면서도 과세강화의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체에 유해한 담배, 주류, 그리고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석유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품목의 경우에는 다소의 공평성을 희생하더라도 세율인상 또는 상향평준화를 통해 세수증대와 함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축소를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주류에 대한 소비세(주세와 교육세)는 지방재정의 주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서 최근 지방세 수입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여타 어떠한 세목에 비해 높다. 따라서 소주 세율의 인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맥주 수준으로까지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증세를 통해 재정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그 어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비록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는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다소 우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상황하에서 종가세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외부불경제 축소 및 청소년 음주 억제 문제도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파국 방지라는 기본전제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결국 종가세 체계내에서 알콜도수 비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제학이 추구하는 기본질서 가운데 하나인 효율적 자원배분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종량세로서는 상대가격 구조를 왜곡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으므로 종량세 체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배분을 왜곡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세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5. 地方財政과 酒稅

### 가. 現 況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1/4 정도에 불과하며 약 1/4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법정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형태로 이전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가운데 주세를 포함한 지방양여금의 비중도 약 5%에 육박하여 상당히 비중이 크다.

〈表 III-14〉 地方自治團體收入

(單位:兆원)

	地方自治團體純收入		地方稅收入		地方讓與金	
	豫 算	實 績	豫 算	實 績	豫 算	實 績
1991	24.5	29.7	6.6	8.0	0.6	0.6
1992	32.8	34.7	8.3	9.5	1.3	1.2
1993	33.1	37.8	9.9	11.0	1.5	1.4
1994	35.9	44.4	11.3	13.2	1.8	1.7
1995	42.7	52.4	13.3	15.3	1.7	1.9
1996	46.8	63.1	14.1	17.4	1.9	2.6
1997	53.1	69.6	16.6	18.4	2.6	2.9
1998	60.5	n.a.	18.1	16.8*	3.3	n.a.

註: \* 표한 것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잠정치임.  
資料: 行政自治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7년까지 항상 지방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지방세 수입이 과소하게 책정된 세입예산에도 크게 미달하게 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세입증대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가 필요하다.

#### 나. 歲入增大의 必要性

현재 지방세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real estate)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지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세와 교육세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주세율(교육세 포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여 소주에 대한 세율인상과 함께 기타 주류에 대한 주세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 6. 改編의 必要性 綜合

本節에서 酒稅率 體系 改編의 必要性을 논함에 있어서는 第1~5節에서 논의한 飲酒와 관련한 外部不經濟 縮小 問題 및 靑少年 飲酒의 深刻性, 稅負擔의 衡平性, 從價稅와 從量稅 體系, 地方財政과 稅收補填 問題 등을 종합하여 논의한다.

흔히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합리적인 일반 소비자들은 酒類의 購入·消費時에 私的費用만을 염두에 두고 私的限界費用과 私的限界效用

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주류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렇지만 經濟學的 觀點에서 보면 私的費用과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間接費用을 합쳐 총체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酒類 消費은 私的限界費用과 社會的 限界外部費用을 합산하여 산출한 社會的 限界費用과 社會的 限界效用<sup>11)</sup>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均衡消費量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의 경우에는 私的 限界費用曲線이 우상향하고 社會的 限界外部費用이 正(+)의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와 관련된 私的 意思決定 과정에서 도출된 현재의 주류 소비 수준은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소비 수준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주류 가격구조나 주세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 수준의 주류 가격 결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費用은 社會的 費用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均衡消費量은 社會的 費用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酒類의 消費量을 抑制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消費量 水準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경제적 유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飲酒에 따른 폐해가 매우 심각한 靑少年 飲酒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 관련 外部不經濟 問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그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3節에서 살펴보았듯이 所得階層別 酒稅負擔은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酒稅負擔의 衡平性만을 논한다면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진 주류나 저소득층이

11)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私的限界效用과 社會的 限界效用은 일치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酒類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消費財와 달리 消費過程 또는 消費後에 消費者에게 效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費用도 함께 초래한다.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금전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비용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주류에 대해서는 稅負擔의 衡平性만을 강조하여 酒稅率 體系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第1~2節에서 살펴본 외부불경제 문제 및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酒稅의 課稅目的과 관련하여 酒稅率 體系를 논함에 있어서는 稅負擔의 衡平性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衡平性 問題보다 더 큰 外部不經濟 문제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세의 과세목적은, 주류가 전통적인 財政品目으로서 수백 년 또는 수천년 동안 정부의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酒類에 국한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소비세 측면에서 제기되는 일반론이라는 점, 그리고 음주와 관련한 외부불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품목으로서 세수확보의 기능은 이미 경제규모가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주류의 소비도 상당 부분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세부담의 형평성이 비해 외부불경제 축소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고려하면 주세의 課稅目的은 外部不經濟 縮小라는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飲酒와 관련하여 외부불경제를 축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酒稅率 水準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중

류주내의 주세율 격차를 일치시키거나 최소허용수준 범위내에서 매우 소폭의 차등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酒稅率의 上向平準化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과 같이 財政赤字가 매우 심각한 상황하에서는 주세의 세수 확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1997년말 이후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적자 축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단 재정적자의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성장의 원동력마저 소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주세율 체계 개편시에도 적자재정 문제를 고려하고 또한 현재 주세수입 전액이 지방양여금으로 배분되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확충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酒稅率의 상향평준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주세의 課稅體系를 현행과 같은 종가세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급격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각종 부작용, 즉 관련 산업기반의 붕괴 또는 급격한 재편, 關聯 稅收의 物價 또는 價格彈力性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의 從價稅 課稅體系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증류주에 대해 주세의 과세체계를 從量稅 體系로 개편하는 경우 價格에 관계없이 알콜도수에 따라 酒稅額을 결정하게 되므로 高價酒에는 상대적으로 稅負擔이 경감되는 한편 低價酒의 경우에는 稅負擔이 과중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 위스키에 비해 稅前價格 平均이 10분의 1에도 미달하는 燒酎의 경우에는 從價稅 體系로 과세하는 경우

에 비해 稅負擔이 수배 이상 급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소주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주세의 課稅體系로 從量稅 體系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는 酒稅의 課稅體系를 從量稅 體系로 전환하는 것이 다소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재정여건, 세부담의 형평성,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등과 같은 여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는 종량세 체계는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과 같은 종가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改善方案과 期待效果

本章에서는 第II~III章에서 논의된 酒稅率 體系 改編의 必要性을 중심으로 基本改編方向을 정립해보고 구체적인 주요 주종별 주세율 및 교육세율 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보고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해본다.

### 1. 改編의 基本方向

#### 가. 改編의 必要性和 主要 爭點

酒稅率 體系 改編時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事項은 對外通商問題, 對內的 外部不經濟 縮小問題 및 靑少年 飲酒 抑制 問題, 財政與件, 그리고 租稅體系 簡素化和 관련한 酒稅分 教育稅 關聯 事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對外通商問題와 관련하여서는 1999년 2월 17일 WTO 분쟁조정기구(DSB)에 의해 채택된 상소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 특히 그 가운데 소주와 위스키 등 蒸溜酒에 대한 稅率體系를 일치 또는 최소허용수준 범위 이내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둘째, 對內的 外部不經濟 縮小 및 靑少年 飲酒 抑制問題와 관련하여서는, 무분별한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여 음주에 따른 각종 外部費用, 즉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醫療費 支出, 생산성 하락에 의한 費用, 청소년 음주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 및 인적자본 형성의 장애 등의 요인을 제거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류소비에 대한 직접규제와 병행하여 경제적 유인장치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류에 대한 전반적인 주세율 상향 조정, 특히 그 가운데 대부분 고알콜주로 구성된 증류주를 중심으로 한 주세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酒類消費의 抑制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의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가 소비억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酒稅負擔의 逆進性을 고려할 때 주세율 개편시에는 衡平性과 外部不經濟 縮小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財政赤字 축소를 통한 財政健全化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주세율의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세율 상향평준화시에는 관련 산업과 업계의 부담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최근 租稅體系 簡素化 問題가 현안이 되면서 教育稅와 交通稅, 農漁村特別稅 등의 目的稅로서 附加稅의 성격을 지닌 稅目을 本稅에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적인 필요성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租稅體系의 透明性을 제고하라는 國際通貨基金(IMF)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종 目的稅의 본세 통합시 酒稅分 教育稅의 稅率統合 問題도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酒稅率 수준을 일치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酒稅 하나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教育稅까지 포함한 總體的 酒稅率 體系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WTO 주세분쟁에서도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까지도 함께 爭點事項이었던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 나. 酒稅率 調整의 範圍

酒稅率 體系의 改編 문제를 논함에 있어 개편의 범위는 좁게는 蒸溜酒, 넓게는 全 酒種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蒸溜酒의 경우에는 EU 및 미국과의 WTO 주세분쟁의 결과라는 대외통상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편해야만 하는 當爲性이 있

다. 그리고 기타 주류의 경우에는 酒種間 酒稅 課稅의 衡平性, 財政 與件 등의 측면에서 고려한 개편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증류주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부연 설명이 불필요하지만 여타 주류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맥주의 경우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알콜도수를 감안한 外部不經濟 축소 측면에서 볼 때 가장 高價·高級酒인 위스키보다 酒稅率이 높아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맥주로부터 징수되는 酒稅收入 比重이 전체 酒稅收入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게 되면 稅收가 상당히 크게 減少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財政與件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麥酒稅率의 조정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소주와 위스키, 그리고 맥주를 제외한 여타 주류의 경우에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주세율을 조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수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WTO 주세판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편해야만 하는 주세율 체계 개편의 범주는 蒸溜酒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주세율 개편방안의 범위를 소주와 위스키 등 蒸溜酒에 국한하기로 한다. 그리고 여타 주류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주종간 주세 과세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맥주에 대해서만 中·長期적인 관점에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다. 酒稅率 水準

WTO 주세분쟁의 판정결과를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 증류주 내의 주세율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세율수준 일치의 방법으로는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 또는 중간단계에서의 절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 즉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의 深刻性, 財政與件, 靑少年 飲酒問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참고적으로 외국의 사례에 대한 國際比較를 통해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表 IV-1>에서는 주요국에서의 증류주에 대한 消費者價格 對比 總消費稅 負擔比重을 산출한 것이다.

<表 IV-1> 蒸溜酒의 消費者價格 對比 平均稅金比重的 國際比較  
(單位：%)

	稅金比重		稅金比重
노르웨이	88	濠洲	55
핀란드	88	벨기에	55
스웨덴	87	스페인	55
덴마크	76	룩셈부르크	54
캐나다	76	프랑스	53
네덜란드	70	포르투갈	50
아일랜드	65	美國	45
뉴질랜드	64	이탈리아	40
英國	61	스위스	40
獨逸	61	멕시코	40
오스트리아	57	남아프리카공화국	28
韓國(酒稅率 100% 시)	50	韓國(酒稅率 80% 시)	46
韓國(酒稅率 35% 시)	29		

註：우리나라의 경우 消費者價格 算出時 세포함 제조장출고가격의 25%를 세포함 유통마진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유통마진이 작을수록 소비세 비중이 높아지고 유통마진이 클수록 소비세 비중이 낮아짐.

資料：外國 事例 -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1999).

국가별로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87~88%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덴마크·캐나다·네덜란드가 7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45%, 이탈리아·스위스·멕시코 등이 40%,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8%로 50%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5~7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 모든 소비세를 합산한 세금이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비교 대상 국가 22개국 가운데 미국을 포함하여 다섯 개 국가에서만 세금비중이 50%를 하회할 뿐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그 비중이 5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90%에 육박하여 대부분이 세금인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포함 유통마진율을 세포함 제조장반출가격의 25%로 가정하여 소비자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을 산출하였을 경우, 위스키와 브랜디 등 100%의 주세율이 적용되는 주류에서는 50%, 80%의 주세율이 적용되는 주류에서는 46%,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稀釋式 燒酎에서는 29%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蒸溜酒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 100%를 적용하여 외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세금비중이 낮은 국가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또한 80%의 주세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46%의 세금비중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稀釋式 燒酎에 적용되는 35%의 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29%에 불과하여 비교대상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南아프리카共和國의 28% 수준과 비슷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의 소비자가격은 제조장반출가격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25%의 유통마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비중보다 실제의 비중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금비중은 위에서 보수적으로 추정된 수치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여 국제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증류주에 대한 消費者價格 對比 稅金比重은 낮은 편으로서 만약 증류주에 대한 단일 주세율 수준을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세금비중이 외국에 비해 더욱 낮아져 주세부과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外部不經濟 縮小 機能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불경제의 축소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와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세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수준을 최소한 현재의 위스키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다만 세율을 100%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적인 주세율 수준은 현재의 100%를 기준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附錄 III에서는 주세율을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한 折衷案에 대해 검토한다.

## 2. 改編方案

### 가. 蒸溜酒의 酒稅率 改編方向

현재 蒸溜酒에 대해서는 위스키, 브랜디 등에 100%(교육세 포함 시 13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소주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1)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주세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제조국으로 하여금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면 얻는 것이 있다'라는 인식을 다소간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초로 WTO 패널에 회부되어 논의된 주세분쟁을 토대로 제조국이 무리하게 압박할 가능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는 稀釋式 燒酎와 蒸溜式 燒酎의 경우에는 각각 35%(38.5%)와 50%(55%)가 적용되는 등 모두 35~100%(교육세 포함시 38.5~13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주세율 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이 되는 증류주내의 세율격차 제거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주세율의 상향평준화 및 消費者價格 對比 稅金比重의 國際比較 結果를 놓고 볼 때 증류주에 대한 교육세 포함 주세율은 13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GATT 규정에 따라 최소허용수준을 감안하여 주세율의 차등화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종가세 체계내에서 최소허용수준에 대해 정립된 선례도 없기 때문에 외국과의 또다른 통상마찰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알콜도수에 따른 주세율 비례방안도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형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나. 麥酒의 酒稅率 改編方向

현재 麥酒에 대해서는 130%(교육세 포함시 169%)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이나 酒種間 酒稅 課稅의 衡平性 문제를 고려할 때 麥酒에 대한 주세율 수준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증류주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麥酒의 경우 蒸溜酒에 비해 알콜도수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위스키나 브랜디 등에 비해서도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진 주류로서 所得階層別 稅負擔이 逆進적이기 때문이다.

麥酒의 경우에는 주세율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분간 현행 주세율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율 조정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맥주에 대한 주세율 개편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증류주 세율로의 일치, 중기적으로는 점진적·단계적

세율인하방안을 고려한다. 다만 맥주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증류주와의 구분없이 함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함께 분석하기로 하되, 실제의 세율조정에 있어서는 증류주와 시차를 두도록 한다<sup>2)</sup>.

다. 其他 主要 酒類의 酒稅率 改編方案

개편방안의 주된 골자는 증류주, 특히 그 가운데 위스키에 대한 현행 소비세율, 즉 酒稅率과 教育稅率을 모두 합산한 세율을 모든 증류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세율조정시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총개별소비세율을 현재 수준보다 다소 인하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본다. 그리고 中·長期的으로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조정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예측해보기 위해 맥주 세율을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단계적 맥주세율 인하를 통한 증류주 세율수준으로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은 다음의 <表 IV-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IV-2> 主要 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

(單位: %)

	現 行	方案 1	方案 2	方案 3	方案 4	方案 5	方案 6
蒸溜酒	35~100 (38.5~130)	130	130	130	120	120	120
麥 酒	130(169)	169	149.5	130	169	138	120

註: 現行의 ( ) 밖 수치는 현행 酒稅率이고, 現行의 ( ) 안과 改編方案의 稅率은 모두 教育稅를 포함한 酒稅率임.

2)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한다면 맥주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수요량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세수입의 감소 확대 및 재정운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불경제 축소, 재정 건전화 및 가격의 하방경직성 등을 감안할 때 급진적인 세율인하는 순작용보다 부작용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점진적·단계적 맥주 세율의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 3. 期待效果

본질에서는 위의 개편안에 따른 主要 製品의 個別出庫價格, 需要, 稅收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租稅體系 簡素化의 前段階 조치로서 酒稅分 教育稅率 單一化 方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가. 價格效果

蒸溜酒 또는 麥酒에 대한 주세율을 위의 〈表 IV-2〉와 같이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소주와 위스키, 그리고 맥주의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價格變化 效果는 〈表 IV-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소주의 경우에는 教育稅 包含 酒稅率이 38.5%에서 120% (方案 4~6) 또는 130% (方案 1~3)로 상향조정된다. 이 때 소주 제품 가운데 가장 소비비중이 높은 〈진로〉의 1병당 稅包含出庫價格은 1999년 1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455.5원에서 723.6~756.4원으로 58.86~60.06% 정도, 절대액으로는 268.1~300.9원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 물론 수요곡선이 선형이 아닌 경우라면 가격인상률은 이와 다른 값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

개편방안에 따라 燒酎에 대한 주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면 주세율 인상률에 비해 개별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낮다. 만약 소주에 대한 주세율이 38.5%에서 130%로 세 배 이상 상승한다고 할 때 흔히 가격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로부터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위스키 제품 중 하나인 〈임페리얼〉 360ml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할 경우 현재의 주세율 수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方案 1~3의 경우에는 가격변화가 없는 반면 方案 4~6의 경우에는 다소 세율이 인하되면서 가격도 19,186.8원에서 18,352.8원으로 4.35% 인하되고, 절대액으로는 83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IV-3〉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

(單位: 원/360ml)

	稅前 原價	現 行			方 案 1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128.9	46.3	510.2	435.5	77.0	847.5
진로	299	115.1	41.4	455.5	388.7	68.7	756.4
임페리얼	7583.8	9858.8	1744.2	19186.8	9858.8	1744.2	19186.8
맥주	220.3	372.3	59.2	651.8	372.3	59.2	651.8
	稅前 原價	方 案 2			方 案 3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435.5	77.0	847.5	435.5	77.0	847.5
진로	299	388.7	68.7	756.4	388.7	68.7	756.4
임페리얼	7583.8	9858.8	1744.2	19186.8	9858.8	1744.2	19186.8
맥주	220.3	329.3	54.9	604.5	286.3	50.6	557.2
	稅前 原價	方 案 4			方 案 5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402.0	73.7	810.7	402.0	73.7	810.7
진로	299	358.8	65.8	723.6	358.8	65.8	723.6
임페리얼	7583.8	9100.6	1668.4	18352.8	9100.6	1668.4	18352.8
麥酒	220.3	372.3	59.2	651.8	304.0	52.4	576.7
	稅前 原價	方 案 6					
		酒稅+教育稅	附加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402.0	73.7	810.7			
진로	299	358.8	65.8	723.6			
임페리얼	7583.8	9100.6	1668.4	18352.8			
맥주	220.3	264.4	48.7	533.4			

註: 1. 알콜도수: 참진이슬로(23도), 진로(25도), 임페리얼(40도).  
 2. 麥酒의 稅前價格은 OB LAGER와 OB REGULAR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3. 위의 예는 모두 360ml 1병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물론 수요곡선이 비선형인 경우 또는 製造·流通業者가 주세율 인하분을 가격에 전부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인하효과가 이보다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맥주의 경우에 주세율을 中期的으로 또는 長期的으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稅包含出庫價格이 7.26~18.1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요곡선이 비선형일 수 있다는 점과 製造·流通業者가 酒稅引下分の 일부만을 價格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하락률이 이보다 작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需要 및 稅收效果 分析을 위한 假定

酒稅率 調整時에 기대되는 효과 가운데 需要效果和 稅收效果는 價格變化에 따른 自己價格彈力性和 他酒種의 價格變化에 따른 代替價格彈力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成明宰(1998)의 연구에 의하면 燒酎의 自己價格彈力성은 0.084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麥酒와 위스키의 自己價格彈力성은 각각 1.622와 1.281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소비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인하에 따라 수요가 크게 增加할 가능성이 높지만 麥酒의 경우에는 이미 소비가 포화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自己價格彈力성은 추정치의 3분의 1 수준인 0.540으로 가정하여 기대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成明宰(1998)의 연구에 의하면 燒酎와 위스키, 그리고 麥酒와 위스키간의 消費代替價格彈力성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燒酎價格이 변화할 경우 麥酒의 消費는 燒酎價格變化率의 0.388배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燒酎와 麥酒價格이 모두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변화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분석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燒酎의 價格變化率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정치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그 수치를 약 3분의 1 수준인 0.129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麥酒價格 變化率의 0.820배 만큼 燒酎의 需要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이 추정치도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그 수치를 0.475 정도로 낮추어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물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분석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標本內推定(in-sample estimation) 결과를 이용하여 標本外豫測(out-of-sample forecast)에 사용할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서울인상에 따른 가격효과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논의의 편의상 세전가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다. 需要效果

燒酎에 대한 주세율을 인상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주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燒酎의 自己價格彈力性이 0.084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燒酎의 絶對價格水準도 매우 낮기 때문에 소주의 수요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세율 조정방안에 따라 작게는 약 5.6%에서 대체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맥주의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많게는 약 13.6% 정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燒酎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에서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燒酎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麥酒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어 외부불경제 효

과가 증대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알콜도수로 환산한 총알콜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역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주 수요의 감소에 따라 다소의 소주시장 위축이 예상되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일부 소주 제조사의 경우에는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여타 주류와의 대체탄력성이 무시할 정도로 예상되므로 方案 4~6과 같이 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경우에 한하여 需要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의 경우에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경우(方案1→2→3 또는 방안4→5→6) 需要가 약 12.4~1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燒酎의 價格引上率이 클수록 代替效果에 의해 需要增加率이 다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4〉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

(單位: %)

	方案 1			方案 2			方案 3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66.06	-5.55	218.92	66.06	-9.47	205.69	66.06	-12.44	195.66
위스키	0	0	0	0	0	0	0	0	0
麥酒	0	8.52	8.52	-7.26	12.44	-0.53	-14.51	16.36	-10.49
	方案 4			方案 5			方案 6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58.86	-4.94	196.29	58.86	-10.42	179.21	58.86	-13.57	169.39
위스키	-4.35	5.57	-2.43	-4.35	5.57	-2.43	-4.35	5.57	-2.43
麥酒	0	7.59	7.59	-11.52	13.81	-7.07	-18.17	17.40	-9.69

그러나 <表 IV-4>에 나타난 기대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따른 단기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주 등 일부 주종의 경우 가격변동의 진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정오차가 상당히 클 가능성도 있으며 그에 따라 수요효과도 가변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稅收效果

燒酎에 대한 酒稅率 上向調整時 소주의 需要減少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률이 더 크기 때문에 燒酎로부터 예상되는 稅收增加率은 방안에 따라 약 170~2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에 위스키 등의 경우에는 소폭 세율을 인하해주는 方案 4~6의 경우에 있어 需要增加率보다 稅率引下率이 더 커 세수는 오히려 약 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5>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單位: 億圓, %)

	酒稅 + 教育稅 稅收 增減	教育稅收 中立을 위한 單一 教育稅率(酒稅額 對比 比率)
方案1	8,223	17.73
方案2	6,398	19.04
方案3	4,533	20.60
方案4	7,214	18.43
方案5	4,395	20.73
方案6	3,678	21.40

註: 1998년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그리고 麥酒의 경우에는 주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燒酎稅率을 인상에 따른 代替效果로 인하여 세수는 약 7.6~8.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麥酒에 대한 주세율을 中·長期的으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주세율 인하수준에 따라 다

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수가 최대 1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비록 麥酒의 價格이 인하되고 燒酎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자기수요 및 대체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세율인하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表 IV-5>에 나타난 세수효과 추정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행태가 종전과 비슷하고 酒類 生産者가 稅率調整에 따라 세수증감분을 100% 가격에 반영시킨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세율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행태를 변화시키거나 酒類 生産者가 세율조정에 따른 세수증감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아 완전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表 IV-5>에 나타난 稅收效果는 最大値로서만의 의미를 지니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품목에 대해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稅率引上分만큼을 價格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酒類 生産者들은 利潤의 減少 또는 損失의 擴大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율인상의 경우에는 세율인상분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稅率引下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해 稅率이 引下되는 경우 해당 주종에 대한 酒類 生産者는 稅率引下에 따른 稅負擔減少分의 전부를 가격에 반영시켜 需要增加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利潤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에 극단적으로는 稅負擔減少分을 전혀 價格에 반영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生産者는 稅負擔減少分 전부를 利潤의 확대로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세율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稅收減少 效果만 나타나고,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수요증가와 세수증대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이 매우 극단적인 예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으며 稅負擔減少分의 일부를 가격에 반영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요공급곡선이 수직이나 수평의 기울기를 가지지 않는 한 세율인하에 따라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새

로운 균형점에서의 가격수준은 기존의 균형가격에서 세율인하분만큼 차감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세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율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세율인하분보다 가격인하율이 더 클 것일 뿐만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매우 크지 않다면 수요증가율도 크지 않아 신규수요 증대에 따른 세수증대효과가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表 IV-5>를 상한으로 그 이하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4. 租稅體系 簡素化를 위한 暫定的 教育稅率 單一化 方案

租稅體系를 간소화하고자 教育稅를 本稅에 통합한다는 기본 취지하에서 과도기적으로 教育세율을 조정하는 문제와, 教育稅의 稅收를 中立적으로 유지한다는 기본전제하에서 教育세율 조정문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주세액의 10%와 30%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세분 教育세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주에 대한 주세율 인상에 따라 教育세 수입이 과증해진다. 따라서 教育세수의 중립을 위해서는 教育세율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教育세율을 이원화하는 경우에는 租稅體系 簡素化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教育세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單一 教育稅率 水準은 酒稅率 改編方案에 따라 17.73~21.40% 수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酒稅分 教育稅率을 20% 내외 수준에서 조정한다면 현재의 教育稅收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주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10%의 教育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淸酒 등의 경우에는

教育稅率 調整에 따라 증류주에 대한 酒稅率 體系 改編과 관계없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효주 가운데 교육세율이 인상되는 부분만큼 주세율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세수와 관련하여서는 이들 주종의 稅收比重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위의 稅收效果 豫測結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5. 留意事項

教育稅 包含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案에 대한 期待效果 推定結果는 모두 價格이 매우 伸縮的이고 수요곡선도 수직의 형태를 취하여 원가상승분이 전액 가격에 반영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각 주종에 대한 수요곡선이 非線型일 수 있다는 점, 製造·流通業者가 酒稅率 調整에 따른 價格調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예측한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까지 모두 고려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소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에 따라 일부 제조사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세율이 인하되는 일부 주류의 경우에는 반대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주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이윤의 증대로 실현시키는 경우에도 위에서 예측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세율 체계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는 위의 예측결과를 기본으로 하되 이상에서 언급한 각종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가감하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대외적인 通商摩擦의 解消 및 대내적인 飲酒 關聯 外部不經濟 縮小를 위해 고 알콜주, 특히 그 가운데 증류주를 중심으로 稅率調整이 필요하다.

對外通商問題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서 EU 등 우리나라에 위스키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부터 주세율과 관세율 조정과 관련한 통상 압력이 집중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4년과 199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종전의 150%에서 120%와 100%로 인하하였으며 소주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 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증류주간의 세율격차 철폐를 계속 주장하여 오다가 일본의 소주와, 위스키를 포함한 상당수의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 차등 적용 문제를 대상으로 벌어진 日·EU 및 미국간 WTO 주세분쟁이 EU 및 미국 측의 승소로 1997년에 종결되자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마침내 1997년 4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에 대해 WTO에 제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2년 동안 패널 구성 및 패널심의, 그리고 상소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주세법상 소주와 수입주의 대표적인 위스키간의 세율격차가 GATT 규정 제3조 제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WTO는 EU와 미국, 즉 제소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주와 위스키간에는 直接競爭 또는 代替(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관계가 있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주세율 격차가 最小許容水準(de minimis)을 초과하고 있으며 國內産業保護(domestic production)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이행기간내에 양자간의 주세율 격차를 수용가능한 수준 이내로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燒酎와 위스키간에 경쟁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그러한 것일 뿐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물론이고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일단 국제기구에서 판정한 사항이므로 우리는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상압력의 골자는 표면적으로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간에 주세율이 차등화되어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모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스키와 브랜디 등 전통적인 輸入酒類에 대한 酒稅率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입주류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이해만을 고려한 것일 뿐 우리나라 자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주와 관련한 대내적 문제로는 음주와 관련한 社會的 外部費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알콜중독자 증가의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닐뿐더러 1980년대말부터 급속히 증가한 자동차 보급률과 함께 음주운전에 의한 각종 폐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人的·物質的 損失도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음주에 의한 범죄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음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세율 구조 및 주류 가격체계가 음주를 간접적으로 부추기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 고알콜주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衡平性에 치중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수준도 매우 낮아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경제력이 낮은 또는

거의 없는 청소년층 사이에서도 무분별하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축소하여 총체적으로 社會厚生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류 소비를 억제 또는 합리화하기 위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간접적으로는 무분별한 주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적 유인장치 강화를 통한 주류 소비 억제 방안, 즉 고알콜주를 주요 대상으로 한 주세율 체계의 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는 燒酎와 위스키 등 고알콜주가 대부분인 蒸溜酒에 대한 주세율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대외 통상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최소허용수준 범위 이내에서의 주세율 차등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종가세 체계내에서 주세율 차등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주세율같이 종가세 체계를 가진 경우에 있어 최소허용수준 범위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외국과 또다른 통상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주세율은 종가세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대중적인 소비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이 낮은 주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가주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외국에서는 주세의 과세체계를 대부분 從量稅 體系로 유지하고 있다.

麥酒의 경우에는 과거에 고급주로서 인식되어 높은 세율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소비가 대중화되어 추가적인 稅率調整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稅收比重이 전체 주세수입의 60~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세 과세대상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는 乘用自動車와 함께 석유류와 담배 다음으로 稅收規

模가 가장 높아 稅率調整에 따른 稅收減少問題가 매우 심각하여 調整이 어려웠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경제위기로 인해 財政赤字가 심각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歲入基盤 擴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하에서는 稅收減少를 감수하면서도 麥酒稅率을 調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麥酒의 경우에도 이미 소비가 대중화되어 주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높아지고 있고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도 증류주 등 여타의 고도주에 비해 낮으므로 세율조정이 바람직하다. 다만 최근 재정적자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 회복 및 누적적자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에는 단기적 조정을 통한 맥주세율 인하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 문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漸進的·段階的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 關稅廳, 『貿易統計年鑑』, 各年度.
- 交通新聞社, 『交通年鑑』.
- 金東一, 『青少年飲酒의 非行의 關係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91-23,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3.
- 盧仁喆·徐文姬·金映來, 『飲酒의 經濟社會的 費用과 政策課題』, 政策報告書 97-05,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7.
- 大韓酒類工業協會, 『大韓酒類工業協會史 1980~1997』, 1999.
- 道路交通安全協會, 『大型交通事故 統計 및 事例分析』, 1997.
- \_\_\_\_\_, 『1998 交通事故 統計』, 1998.
- 文化體育部, 『青少年 藥物濫用 全國 實態調查』, 1996.
- \_\_\_\_\_, 『青少年白書 1997』, 1997.
- 朴宗洪, 『韓國의 消費稅制: 酒稅制度를 中心으로』, 『研究論文集』, 仁荷大學校 產業經濟研究所, 1988.
- 서울 YMCA, 『青少年 有害藥物에 관한 研究』, 東大門支會 青少年 藥物常談室, 1998.
- 徐賢洙, 『酒稅法의 理論과 實務』, 세학사, 1998.
- 成明宰, 『消費稅에 대한 都 農別 所得階層別 稅負擔 및 逆進度 實態分析에 관한 研究』, 『財政論集』 제8집, 韓國財政學會, 1993.
- \_\_\_\_\_, 『石油類 課稅體系의 改善方向』, 政策報告書 95-06, 韓國租稅研究院, 1995.
- \_\_\_\_\_, 『우리나라 都市家口의 階層別 年齡別 消費稅 負擔

- 分布에 관한 연구」, 『財政金融研究』 제3권, 제1호, 韓國租稅研究院, 1996.
- \_\_\_\_\_,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7-11, 韓國租稅研究院, 1997.
- \_\_\_\_\_, 『需要函數 推定을 통한 消費稅 稅收推計』, 政策報告書 98-07, 韓國租稅研究院, 1998.
- \_\_\_\_\_, 『經濟危機 1年間 所得稅·消費稅 負擔分布의 變化와 政策方向』, 未發表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9.
- 成明宰·金珍洙, 『個別消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3-08, 韓國租稅研究院, 1993.
- 全瑛俊·成明宰·盧英勳·朴宗奎, 『經濟危機 1年の 租稅政策 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第33回 租稅의 날 記念 심포지엄 發表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9.
- 진 캐시바움(Gene Kassebaum), 「지위비행 청소년: 피해아동도 비행청소년도 아닌 경우」, 『靑少年 暴力(比較研究를 통한 解決方案 摸索)』, 韓國靑少年開發院, 1997.
- 統計廳, 『韓國社會指標』, 1998.
- 韓國自動車工業協會, 『自動車登錄統計月報』, 各號.
- 韓國租稅研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1997.
- 韓國刑事政策研究院, 『飲酒運轉의 規制에 관한 研究』, 1995.
-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Alcoholic Beverage Taxation and Control Policies, International Survey*, Ninth Edition, 1997.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1996(A)(第2次 日·EU 酒稅協議 패널 報告書).
- \_\_\_\_\_,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Ap-

pellate Body(B), 1998(第2次 日·EU 酒稅協議 상소심 報告書).

\_\_\_\_\_,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Panel, 1998(A)(韓·EU 및 美國 酒稅協議 패널 報告書).

\_\_\_\_\_,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B), 1998(韓·EU 및 美國 酒稅協議 상소심 報告書).

# 附錄 I. 主要 酒種에 대한 酒稅와 關稅

〈附表 I - 1〉 輸入위스키의 關稅와 內國稅 및 總稅負擔

(單位 : %, 원)

	가격 <sup>1)</sup>	관 세		주 세		부 가 세				총 세부담
		세율	부담	세율	부담	방위세		교육세		
						세율	부담	세율	부담	
1970	100	150	150	150	375	-	-	-	-	525
1971	100	150	150	150	375	-	-	-	-	525
1972	100	150	150	160	400	-	-	-	-	550
1973	100	150	150	160	400	-	-	-	-	550
1974	100	150	150	250	625	-	-	-	-	775
1975	100	150	150	200	500	-	-	-	-	650
1976	100	150	150	200	500	20	100	-	-	750
1977	100	150	150	200	500	20	100	-	-	750
1978	100	150	150	200	500	20	100	-	-	750
1979	100	150	150	200	500	20	100	-	-	750
1980	100	150	150	200	500	30	150	-	-	800
1981	100	150	150	200	500	30	150	-	-	800
1982	100	150	150	200	500	30	150	10	50	850
1983	100	150	150	200	500	30	150	10	50	850
1984	100	100	100	200	400	30	120	10	40	660
1985	100	100	100	200	400	30	120	10	40	660
1986	100	100	100	200	400	30	120	10	40	660
1987	100	100	100	200	400	30	120	10	40	660
1988	100	100	100	200	400	30	120	10	40	660
1989	100	50	50	200	300	30	90	10	30	470
1990	100	50	50	200	300	30	90	10	30	470
1991	100	25	25	150	187.5	-	-	30	56.25	268.75
1992	100	20	20	150	180	-	-	30	54	254
1993	100	20	20	150	180	-	-	30	54	254
1994	100	30	30	120	156	-	-	30	46.8	232.8
1995	100	30	30	120	156	-	-	30	46.8	232.8
1996	100	20	20	100	120	-	-	30	36	176
1997	100	20	20	100	120	-	-	30	36	176

註 : 1) CIF 수입가격=100

〈附表 I -2〉 關稅와 酒稅率

(單位 : %, 리터)

HS 1997 코드	제 품	양허세율 (WTO)	실행관세율 (협정)	주세율
2208.20	브랜드 :			
	코냑	79.0	30(15)	100
	기타	79.0	30(15)	100
2208.30	스카치 위스키	79.0	30(20)	100
	버번 위스키	79.0	30(20)	100
	라이 위스키	79.0	30(20)	100
	기타	79.0	30(20)	100
2208.40	럼주와 태피아	79.0	30(20)	
2208.50	진과 제네버	79.0	30(20)	
2208.60	보드카	79.0	30(20)	80
2208.70	리큐르 및 코디알 :			50
	진생	79.0	30(20)	
	오가피주	91.9	30(20)	
	기타	91.9	30(20)	
2208.90	소주	79.0	30	35 <sup>1)</sup>
	고량주	79.0	30	
	테킬라	91.9	30(20)	
	기타	91.9	30	

註 : 1) 희석식 소주에 적용되는 세율임. 증류식 소주에 적용되는 세율은 50% 임.

## 附錄 II. 1997~1998年の 稅負擔 分析

### 1. 分析의 概要

酒稅負擔의 형평성 문제를 검증해보기 위해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統計廳에서 시행하는 都市家計調査의 1997~1998년치 原始資料이다. 본래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월별로 조사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별로 자료를 통합하여 연간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연간단위로 환산된 가구의 총수는 1997년과 1998년이 각각 3,618가구와 3,647가구였는데 실업자 가구의 수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아 실업자 가구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sup>1)</sup>. 이에 따라 실업자 가구 가운데 각각 336가구와 304가구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3,282가구와 3,343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과 기타의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였다. 다만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勤勞者 家口에 대해서만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自營業者 家口의 경우에는 所得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全球俊 外(1999)의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의 所得-消費의 函數關係는 서로 동일하다는 假定下에서

---

1) 1997~1998년의 失業率은 각각 2.8%와 7.6% 정도인 데 반해 도시가계자료에서는 각각 10.4%와 14.9%인 것으로 나타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보다 유의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업률 가구의 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추정하였다. 먼저 勤勞者 家口의 所得-消費函數를 추정하고 이것이 自營業者 家口의 경우에도 통용된다고 보고 自營業者 家口의 消費支出 水準을 所得-消費函數 推定値에 대입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추정하고 각 가구별로 무작위수를 추출하여 추정된 회귀식의 오차항에 대입함으로써 각 자영업자 가구의 총소득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自營業者 家口까지 포함하여 소득분위를 구분함으로써 소득계층을 분류하였다.

주세부담액과 부담률은 각 주류별 소비지출 항목으로부터 세율과 유통마진 등을 고려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 2. 經濟危機 1年間の 與件變化

1997년말 外換 및 金融危機로부터 비롯된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所得과 消費가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附表 II-1>에서 보듯이 가구당 평균소득은 1997년에 2,800만원 수준에서 1998년에는 2,450만원 수준으로 12.6% 정도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勤勞者 家口의 경우에는 總所得이 13.6% 감소한 반면에 自營業者 家口의 경우에는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勤勞者 家口가 自營業者 家口보다 總所得減少率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附圖 II-1]~[附圖 II-9]에서 보듯이 모든 所得階層에서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소득감소율은 低所得層이 더 크게 나타나 所得階層別 所得分配 構造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勤勞者 家口의 所得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본 연구에서 失業者 家口를 모두 勤勞者 家口로 分類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분석기간 이전에 자영업에 종사하다

〈附表 II-1〉 都市家計의 所得 및 稅負擔 平均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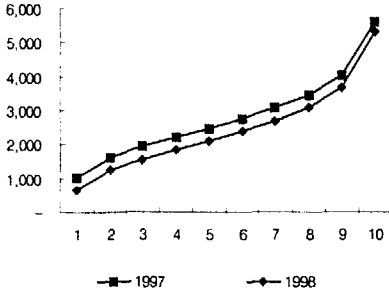
	1997	1998
總所得 平均(全體)	28,009,547	24,490,918
(勤勞者 家口)	27,429,251	23,712,090
(自營業者 家口)	29,018,360	25,744,194
勤勞所得 平均(勤勞者 家口)	23,127,002	20,061,482
家口主의 勤勞所得 平均(勤勞者 家口)	18,340,851	16,643,847
非勤勞所得 平均(自營業者 家口)	26,154,674	23,460,560
(捕捉所得 平均)	11,931,458	10,702,435
總消費支出 平均(全體)	18,321,316	16,175,372
(勤勞者 家口)	17,588,013	15,423,958
(自營業者 家口)	19,596,125	17,384,533
標本 중 勤勞者 家口의 比率	63.5	61.7
總所得稅 平均(全體)	814,107	659,421
(勤勞者 家口)	755,382	631,451
(自營業者 家口)	916,195	704,431
勤勞所得稅 平均(勤勞者 家口)	711,037	583,237
綜合所得稅 平均(自營業者 家口)	870,600	653,448
綜合所得稅의 所得補足率(推定 및 假定)	45.6	45.6
勤勞所得稅 및 綜合所得稅 總平均	769,305	610,146
利子·配當所得稅 平均(全體)	44,802	49,275
(勤勞者 家口)	44,345	48,214
(自營業者 家口)	45,595	50,983
消費稅 總平均	1,334,451	1,323,550
附加價値稅 平均	750,817	652,189
特別消費稅 平均	103,148	87,284
酒稅 平均	19,075	15,001
電話稅 平均	42,073	49,403
交通稅 平均	254,628	354,345
담배消費稅 平均	68,169	67,970
消費稅分 教育稅 平均	96,539	97,360
所得稅 및 消費稅 平均	2,148,557	1,982,971

註: 1. 1997년 綜合所得稅 納稅申告人員을 350만명으로 假定할 때 종합소득세 평균은 약 87만원임. 자영업자에 대한 總綜合所得 推定值(總所得에서 이자·배당소득, 비경상소득 등 제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綜合소득세 평균이 이 수치와 일치하게 하는 비율을 綜合소득 포착률로 하였음. 1998년의 綜合소득 포착률은 1997년과 동일하게 가정하였음.

2. 全瑛俊·成明宰·盧英勳·朴宗奎(199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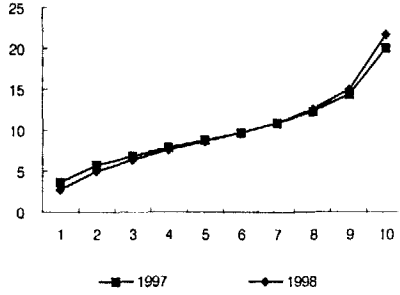
[附圖 II-1] 所得階層別 總所得 分布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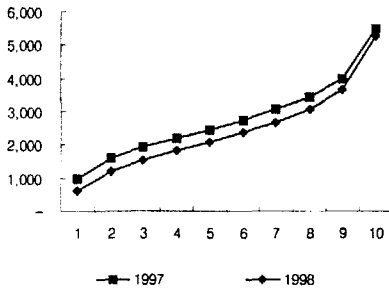
[附圖 II-2] 所得階層別 總所得 構成比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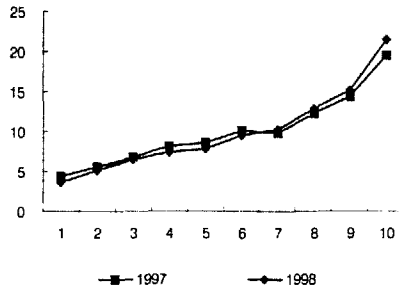
[附圖 II-3] 所得階層別 總所得(勤勞者 家口)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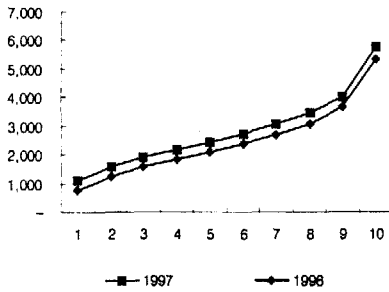
[附圖 II-4] 所得階層別 總所得 構成比(勤勞者)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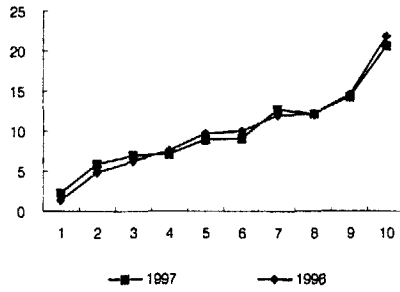
[附圖 II-5] 所得階層別 總所得(自營業者)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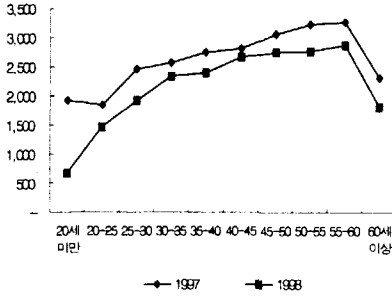
[附圖 II-6] 階層別 總所得 構成比(自營業者)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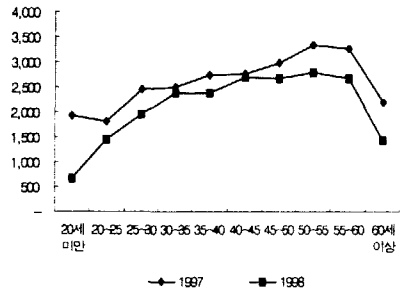
[附圖 II-7] 年齡別 總所得 分布

(單位: 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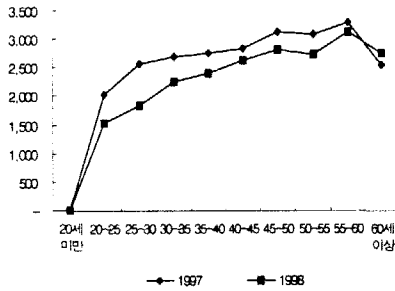
[附圖 II-8] 年齡別 總所得 分布(勤勞者)

(單位: 萬圓)



[附圖 II-9] 年齡別 總所得 分布(自營業者)

(單位: 萬圓)



가 분석기간 동안에 실업이 된 경우까지도 도시가계 자료상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불가피하게 모두 근로자 가구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로자 가구의 소득감소율이 자영업자 가구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sup>2)</sup>.

2) 1998년 동안 統計廳이 分期別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에 비해 도시가계의 消費性向이 下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統計廳이 발표한 도시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자 가구를 제외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失業者 家口를 모두 勤勞者 家口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실업자 가구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한 결과,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消費性向이 1997년에 비해 하락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都市家計의 家口當 平均 消費支出 水準도 1997년에 1,830만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710만원 정도로 11.7% 감소하였다. 소비지출 역시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의 감소형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勤勞者 家口의 경우에는 消費支出 水準이 전년에 비해 12.3% 減少하였고 自營業者 家口의 경우에는 11.3% 減少하여 勤勞者 家口보다 減少率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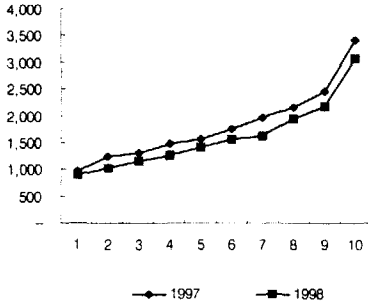
[附圖 II-10], [附圖 II-12], [附圖 II-14]에서 보듯이 가구유형을 불문하고 1997~1998년 기간 동안 모든 소득계층에서 消費支出 水準이 減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年齡層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附圖 II-16], [附圖 II-18], [附圖 II-20] 참조).

분석기간 동안 都市家計의 平均消費性向은 0.654에서 0.660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所得과 消費支出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所得 水準이 消費支出 水準보다 감소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동 기간 동안 勤勞者 家口의 平均消費性向은 0.641에서 0.650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自營業者 家口의 경우에는 所得 및 消費支出 減少率이 비슷하여 모두 0.67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統計廳이 분기별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8년의 경우 都市家計의 所得減少率보다 消費支出 減少率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본 연구결과와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통계청에서는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통계를 사용하였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自營業者 家口의 所得을 推定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分析對象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통계청에서는 自營業者 家口의 所得 관련 情報의 信賴性에 의문을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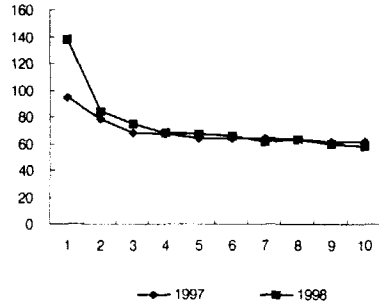
[附圖 II-10]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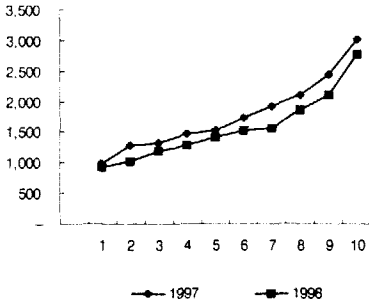
[附圖 II-11] 所得階層別 消費性向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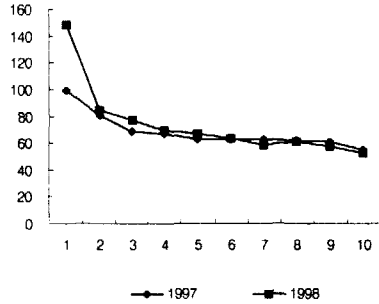
[附圖 II-12]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勤勞者)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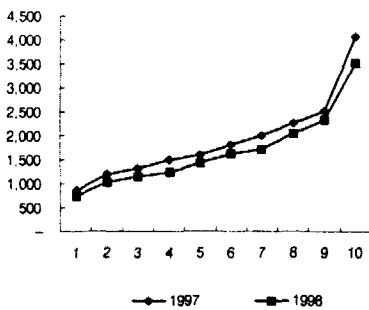
[附圖 II-13] 所得階層別 消費性向(勤勞者)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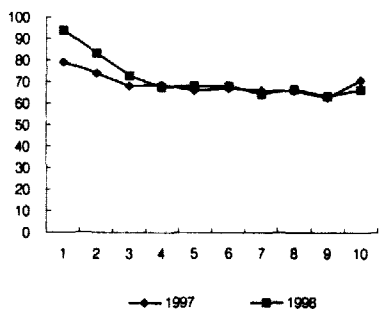
[附圖 II-14] 階層別 消費支出 分布(自營業者)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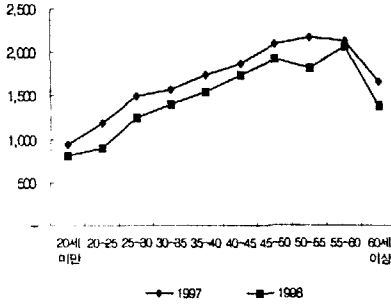
[附圖 II-15] 所得階層別 消費性向(自營業者)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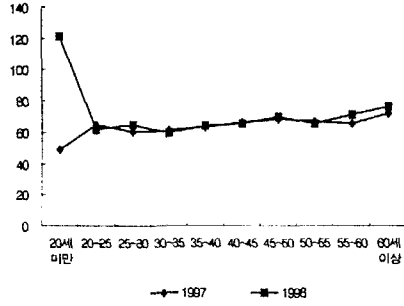
【附圖 II-16】年齡別 總消費支出 分布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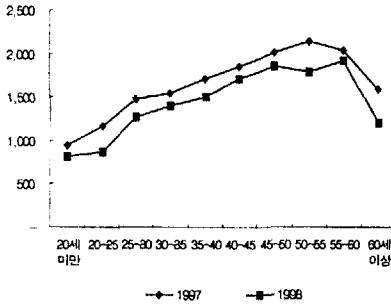
【附圖 II-17】年齡別 消費性向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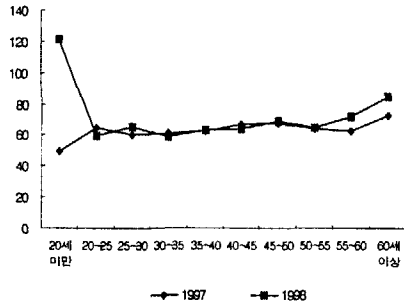
【附圖 II-18】年齡別 總消費支出 分布(勤勞者)

(單位：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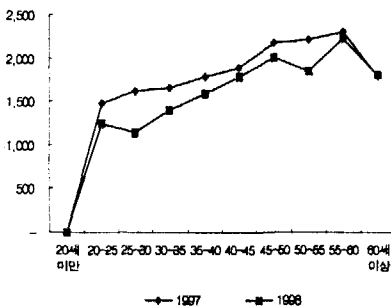
【附圖 II-19】年齡別 消費性向(勤勞者)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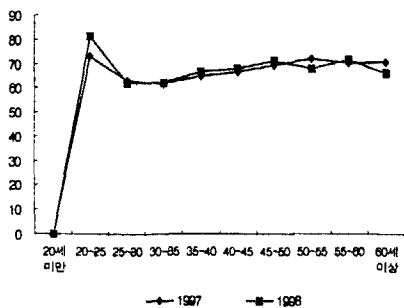
【附圖 II-20】年齡別 總消費支出 分布(自營業者)

(單位：萬圓)



【附圖 II-21】年齡別 消費性向(自營業者)

(單位：%)



고 근로자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가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서는 失業者 家口의 통계가 非現實的으로 많이 추출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의 失業者 家口의 비율도 현실에서의 실업률(1997년 : 2.8%, 1998년 : 7.6%)과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을 경험한 勤勞者 家口의 비율이 조정되는 등 가구의 비중 조정과정에서 분석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통계청에서는 失業者 家口를 勤勞者 家口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失業者 家口를 모두 勤勞者 家口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석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준비과정에서 실업자 가구를 근로자 가구에서 제외시키고 추정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1998년의 消費性向이 1997년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 3. 所得稅 및 消費稅 負擔

먼저 1998년에는 經濟危機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構造調整을 위한 대대적인 企業課稅 調整이 있었으나 個人稅에 있어서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세율이 인하되거나 또는 인상되는 등 다소의 세제개편이 있었다. 1998년의 경우에는 所得과 消費支出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대체로 都市家計의 家口當 平均 所得稅 및 消費稅 負擔額도 모두 절대치가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 및 消費支出이 모두 減少함에 따라 都市家計의 家口當 所得稅 및 消費稅 負擔 平均總額도 1997년에는 214만 9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98만 3천원 수준으로 약 7.7% 정도 減少하

였다. 所得稅 및 消費稅 負擔總額의 감소폭 절대치는 所得稅가 消費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勤勞所得稅와 綜合所得稅의 稅率 體系가 累進稅 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所得이 감소할 경우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所得減少率에 비해 所得稅의 減少率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所得減少가 소비지출 감소보다 더 크다는 점, 그리고 交通세율이 인상되어 소비세 부담이 증가한 점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附表 II-2〉 所得階層別 所得稅 및 消費稅 總計의 負擔 分布

(單位: 千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稅負擔額	97	659	965	1,147	1,398	1,619	1,879	2,195	2,765	3,237	5,657	2,152
	98	628	819	1,056	1,226	1,519	1,776	1,975	2,507	3,030	5,318	1,986
總所得 對比	97	6.48	6.05	5.97	6.37	6.61	6.87	7.16	8.07	8.08	10.12	7.68
	98	9.54	6.68	6.80	6.65	7.23	7.47	7.37	8.14	8.27	10.03	8.11
稅負擔 構成比	97	3.06	4.49	5.32	6.50	7.51	8.73	10.21	12.86	15.05	26.28	100.0
	98	3.16	4.13	5.31	6.17	7.65	8.94	9.96	12.63	15.25	26.81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附表 II-3〉 年齡別 所得稅 및 消費稅 總計의 負擔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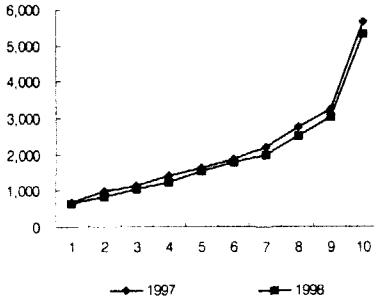
(單位: 千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稅負擔額	97	687	888	1,676	1,937	2,076	2,146	2,415	2,622	2,667	1,739
	98	437	775	1,363	1,854	1,882	2,147	2,305	2,238	2,697	1,589
總所得 對比	97	3.57	4.84	6.80	7.57	7.56	7.65	7.90	8.13	8.15	7.51
	98	6.47	5.29	7.08	7.94	7.87	8.07	8.39	8.11	9.35	8.7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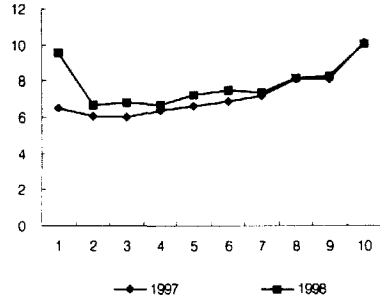
[附圖 II-22] 所得·消費稅 負擔額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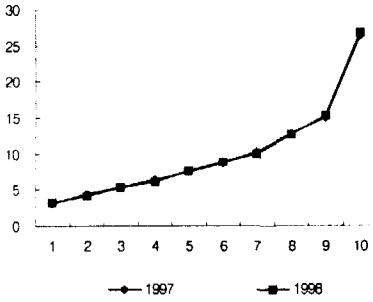
[附圖 II-23] 總所得 對比 所得·消費稅 實效稅負擔率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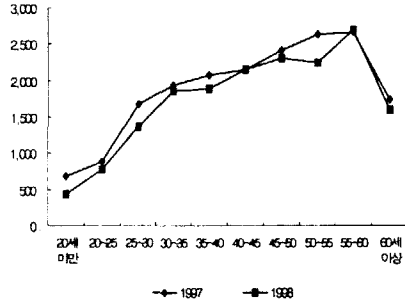
[附圖 II-24] 所得·消費稅 構成比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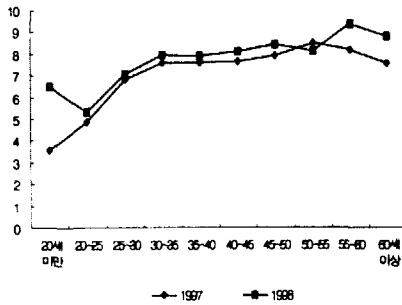
[附圖 II-25] 年齡別 所得·消費稅 負擔額

(單位：千圓)



[附圖 II-26] 年齡別 總所得 對比 所得·消費稅 實效稅負擔率

(單位：%)



#### 4. 酒稅負擔의 衡平性

본절에서는 第Ⅱ編 第Ⅲ章 第3節에서 주요 酒種에 대한 酒稅負擔 分析 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자료이다. 본문에서는 1994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요 주종에 대한 주세부담만을 논의하였으며 주종별로 차등화된 교육세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消費支出에 대비한 세부담 분석결과와 연령별 세부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997년부터 종전의 조사항목의 수와 종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1994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와 1997~1998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자료에 대한 분석범위가 제한적이다. 그 밖에도 1994년과 1997~1998년 자료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비근로자(자영업자) 가구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1997~1998년 분석결과에서는 비근로자 가구도 포함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직접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본절에서는 1994년 분석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경제위기를 전후한 기간인 1997~1998년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결과를 부록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 가. 概 要

教育稅를 除外한 都市家計의 家口當 酒稅負擔額 平均은 1997년에 1만 9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만 5천원 수준으로 하락하여 絶對額으로는 4천원 정도, 비율로는 2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sup>3)</sup>. 이에 따라 總所得 對比 酒稅의 實效稅負擔率은 1997년에 0.0681%였으며 본격적으로 경제위기의 시기로 접어

3) 酒稅分 教育稅까지 포함한 부담액은 23,858원에서 18,601원으로 22.03% 감소하였다.

든 1998년에는 0.0612%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總所得 平均이 12.6% 감소한 것에 비해 주세부담액 감소율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원인이 되어 일반 경제주체들이 생활필수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류의 소비를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특히 위스키의 경우에는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여타 주종에 비해 매우 고가인 위스키에 대한 수입과 소비가 1997년말부터 급격히 위축되었던 사실을 반영하듯이 주세율 수준은 1997년과 동일하였지만 세부담률은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정도로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이다.

비록 가구당 주세부담률 평균은 감소하였지만 所得階層別 稅負擔率 추이를 보면 稅負擔의 逆進性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 나. 淸 酒

淸酒에 대한 都市家計의 家口當 酒稅(教育稅 包含) 負擔額은 1,148원에서 926원으로 19.3% 정도 감소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주세부담의 절대수준 감소율이 소득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淸酒에 대한 實效稅負擔率은 0.041%에서 0.038%로 다소 하락하였다. 淸酒에 대한 實效稅負擔率의 하락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감소를 감안할 때 稅負擔(消費支出)의 絕對水準이 하락하였음을 나타낸다.

淸酒에 대한 消費支出(稅負擔)은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소득증가율에 비해 消費支出(稅負擔) 增加率이 낮기 때문에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隔差는 작은 편이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淸酒에 대한 實效酒稅負擔率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稅負擔이 逆進的임을 알 수 있다. 특

히 1~3분위의 저소득층에서 실효주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4분위 이상의 中·高所得層에서는 실효주세부담률이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여 역시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8년의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해 절대 주세부담 및 실효세부담이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이행하면서 주세부담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볼 때 미약하나마 상대적인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附圖 II-28]과 [附圖 II-29]에서 보듯이 實效稅負擔率 曲線이 우하향하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實效稅負擔率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總所得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總消費支出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작는데 이는 所得階層別 消費性向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에 비해 消費支出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總消費支出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實效稅負擔率의 분모가 總所得 基準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실효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는 데 기인한다.

淸酒에 대한 酒稅負擔의 절대수준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층보다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청주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50대 가구의 경우까지는 實效稅負擔率이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實效稅負擔率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老年層에서 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淸酒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附表 II-4〉 所得階層別 酒稅負擔 分布(清酒,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758	750	919	1,058	1,023	1,250	1,210	1,364	1,185	1,958	1,148
稅負擔額	98	611	947	654	653	994	961	853	1,046	1,007	1,533	926
總所得 對比	97	0.074	0.047	0.048	0.048	0.042	0.046	0.039	0.040	0.030	0.035	0.041
實效稅負擔	98	0.093	0.077	0.042	0.035	0.047	0.040	0.032	0.034	0.027	0.029	0.038
總消費 對比	97	0.079	0.060	0.070	0.071	0.065	0.071	0.062	0.063	0.048	0.057	0.063
實效稅負擔	98	0.067	0.092	0.056	0.052	0.070	0.062	0.052	0.054	0.046	0.050	0.057
稅負擔	97	6.60	6.54	8.00	9.23	8.89	10.89	10.56	11.90	10.34	17.06	100.0
構成比	98	6.59	10.23	7.05	7.05	10.74	10.37	9.22	11.30	10.87	16.57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附表 II-5〉 年齡別 酒稅負擔 分布(清酒,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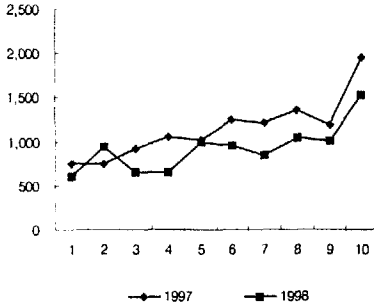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814	757	791	1,118	958	1,225	1,499	1,543	1,683
稅負擔額	98	0	497	729	593	776	860	1,087	1,052	1,786	1,407
總所得 對比	97	0.000	0.044	0.031	0.031	0.041	0.034	0.040	0.046	0.047	0.073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34	0.038	0.025	0.032	0.032	0.040	0.038	0.062	0.077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68	0.051	0.050	0.064	0.051	0.059	0.069	0.072	0.101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55	0.059	0.042	0.050	0.049	0.056	0.058	0.086	0.101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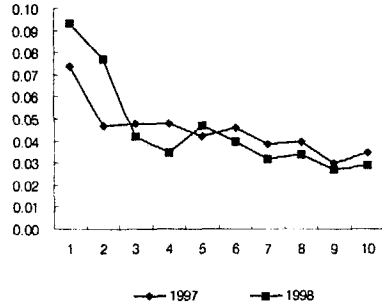
[附圖 II-2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清酒)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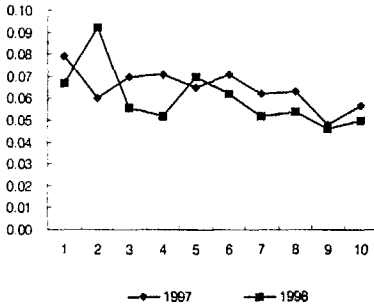
[附圖 II-2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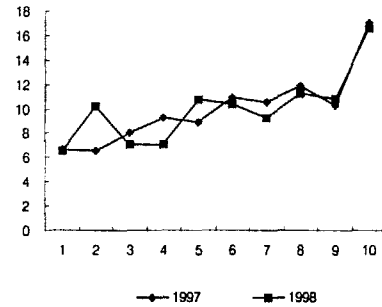
[附圖 II-2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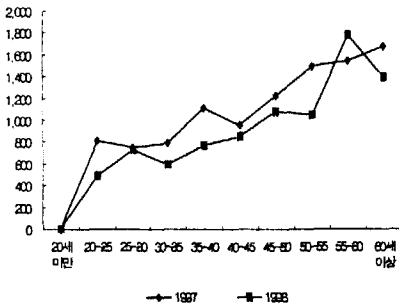
[附圖 II-30] 稅負擔 構成比(清酒)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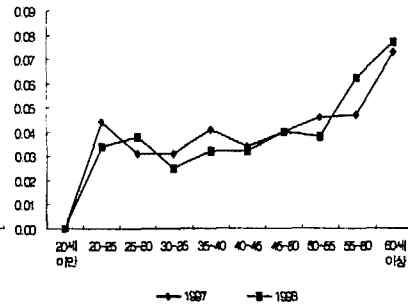
[附圖 II-31] 年齡別 稅負擔額(清酒)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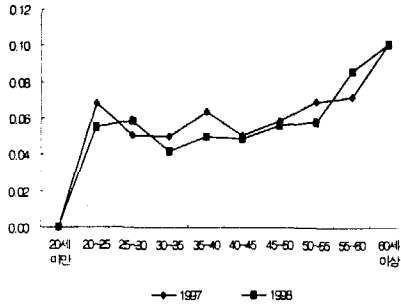
[附圖 II-3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單位:%)



[附圖 II-3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清酒)

(單位: %)



#### 다. 濁酒

濁酒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의 하나로 시계열적(time-series) 관점에서 볼 때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대표적인 劣等財(inferior good)의 하나이다. 濁酒에 대한 都市家計의 酒稅負擔 平均은 128원에서 146원으로 14.1%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濁酒의 實效稅負擔率도 總所得 對比 0.0005%에서 0.0006%, 總消費支出 對比 0.0007%에서 0.0009%로 상승하였다. 濁酒에 대한 稅負擔 增加率에 비해 實效稅負擔率 增加率이 더 큰데 이는 소비가 증가한 반면에 總所得이나 總消費支出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대부분의 주류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 반면에 濁酒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 이례적이다. 그러나 탁주가 열등재인 점을 감안할 때 시계열적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록 濁酒가 巨視的(時系列的)으로는 열등재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더라도 반드시 微視的(또는 橫斷面的)으로도 劣等財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것은 <附表 II-6>과 [附圖 II-34]에서 보듯이 고소

득층으로 이행하더라도 소비가 반드시 감소하지만은 않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소득층에 비해 일부의 高所得層에서 탁주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논리를 도출한 근거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低所得層에서 濁酒에 대한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어 탁주의 주소비자층이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濁酒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은 부분적으로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층별 소득격차에 비해 稅負擔(消費支出) 隔差가 작기 때문에 實效稅負擔率은 高所得層으로 이행할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어 稅負擔이 逆進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젊은 연령층보다는 長年層과 老年層이 濁酒의 주소비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附表 II-7>과 [附圖 II-38]에서 보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탁주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의 絕對水準이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의 경우가 1997년의 경우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附表 II-6>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濁酒)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51	89	112	107	107	88	164	151	68	141	128
稅負擔額	98	169	142	98	143	173	133	142	160	167	130	146
總所得 對比	97	0.025	0.006	0.006	0.005	0.004	0.003	0.005	0.004	0.002	0.003	0.005
實效稅負擔	98	0.026	0.012	0.006	0.008	0.008	0.006	0.005	0.005	0.005	0.002	0.006
總消費 對比	97	0.026	0.007	0.009	0.007	0.007	0.005	0.008	0.007	0.003	0.004	0.007
實效稅負擔	98	0.019	0.014	0.008	0.011	0.012	0.009	0.009	0.008	0.008	0.004	0.009
稅負擔	97	19.66	6.97	8.74	8.37	8.34	6.86	12.86	11.87	5.32	11.02	100.0
構成比	98	11.55	9.78	6.74	9.84	11.84	9.10	9.76	11.00	11.42	8.96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탁주에 대한 세부담의 절대액은 다른 주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는데 이는 탁주의 절대 소비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며 주세율도 5%에 불과할 뿐더러 교육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附表 II-7〉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濁酒)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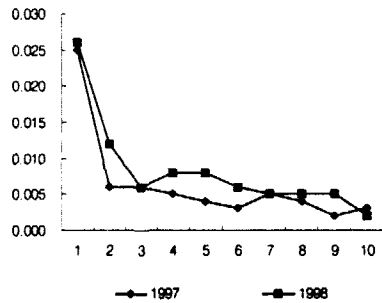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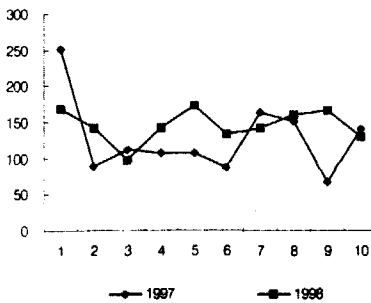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84	205	62	76	89	139	158	113	241	195
稅負擔額	98	12	31	88	122	133	135	161	218	175	197
總所得 對比	97	0.004	0.011	0.003	0.003	0.003	0.005	0.005	0.003	0.007	0.008
實效稅負擔率	98	0.002	0.002	0.005	0.005	0.006	0.005	0.006	0.008	0.006	0.011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9	0.017	0.004	0.005	0.005	0.007	0.008	0.005	0.011	0.012
實效稅負擔率	98	0.001	0.003	0.007	0.009	0.009	0.008	0.008	0.012	0.008	0.01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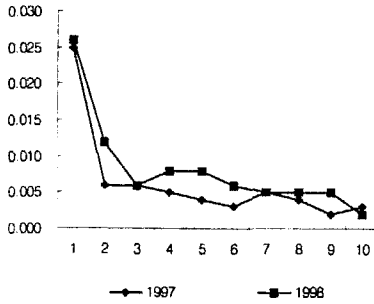
【附圖 II-34】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濁酒) 【附圖 II-3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單位: 千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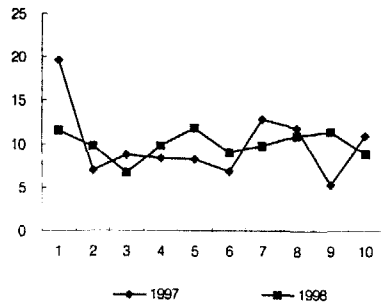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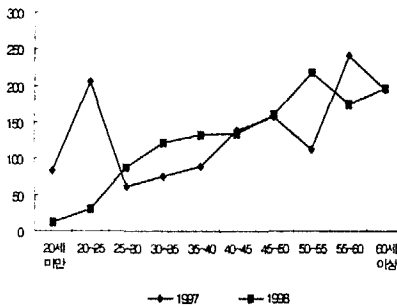
【附圖 II-36】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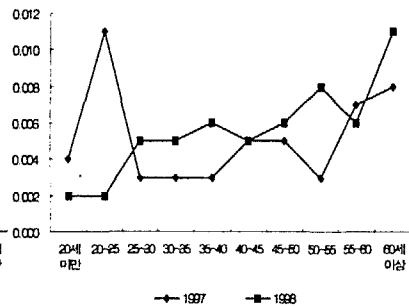
【附圖 II-37】稅負擔 構成比(濁酒)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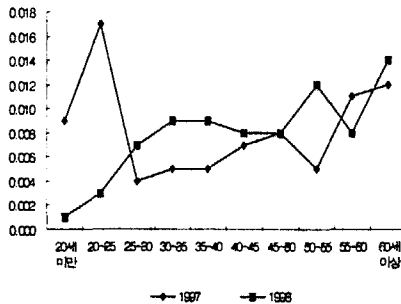
【附圖 II-38】年齡別 稅負擔額(濁酒)  
(單位：千圓)



【附圖 II-39】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濁酒) (單位：%)



【附圖 II-40】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濁酒)  
(單位：%)



## 라. 燒 酎

燒酎에 대한 家口當 平均 酒稅(教育稅 包含) 平均 負擔額은 1997년에 3,118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3,326원으로 6.7%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燒酎의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은 0.0111%에서 0.0136%로 상승하였다.

經濟危機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에 實質國民所得이 6% 가까이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燒酎에 대한 消費支出(稅負擔)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을 빌리자면 이는 燒酎가 濁酒와 마찬가지로 劣等財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燒酎는 비록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는 하지만 定常財(normal good)로서 正(+)의 所得效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실질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여타 주류와의 소비대체로 인해 소주의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燒酎의 경우에는 탁주의 경우와 달리 경제위기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순소득효과는 負(-)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8년 동안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麥酒와 위스키 등 주류 전반에 걸쳐 소비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들 주류로부터의 소비의 대체가 발생하고 대체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燒酎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燒酎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構造를 보면 1997년의 경우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의 경우에도 1~6분위에서는 대체로 그 수준이 일정한 반면 7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燒酎가 소득수준과 큰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의 대중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주의 경우에는 稅負擔의 逆進性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1998년의 주세부담률 곡선의 기울기(절대값)가 1997년에 비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6분위에서 전년에 비해 酒稅負擔率이 높아진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감소추세 속에서 이들 계층의 소주소비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燒酎의 경우에도 年齡이 상승할수록 絶對 稅負擔(消費支出)水準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가구에서 세부담(소비지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年齡別 實效稅負擔率도 고연령층으로 이행할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여타 年齡層에 비해 實效稅負擔率이 매우 높다. 이는 이들 연령층의 상당 부분이 실업이나 은퇴 등의 요인에 의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低所得層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과 1998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있었지만 燒酎에 대한 消費構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燒酎가 매우 가격이 낮다는 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소비의 저변이 매우 넓다는 점,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저가주이면서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所得階層別·年齡別 消費支出 構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附表 II-8〉 所得階層別 酒稅負擔 分布(燒酎, 教育稅 包含)

(單位: 萬,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3,536	2,960	3,220	3,161	3,282	2,683	3,482	2,839	2,536	3,481	3,118
稅負擔額	98	4,018	3,538	3,069	3,299	4,001	3,598	3,529	3,220	2,803	2,183	3,326
總所得 對比	97	0.347	0.186	0.168	0.144	0.134	0.098	0.114	0.083	0.063	0.062	0.111
實效稅負擔	98	0.610	0.289	0.198	0.179	0.191	0.151	0.132	0.105	0.076	0.041	0.136
總消費 對比	97	0.368	0.238	0.246	0.213	0.210	0.153	0.178	0.131	0.103	0.102	0.170
實效稅負擔	98	0.443	0.344	0.263	0.262	0.282	0.231	0.216	0.166	0.128	0.071	0.206
稅負擔	97	11.34	9.50	10.32	10.15	10.51	8.61	11.18	9.11	8.14	11.16	100.0
構成比	98	12.06	10.65	9.22	9.92	12.03	10.82	10.62	9.69	8.42	6.57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附表 II-9〉 年齡別 酒稅負擔 分布(燒酎,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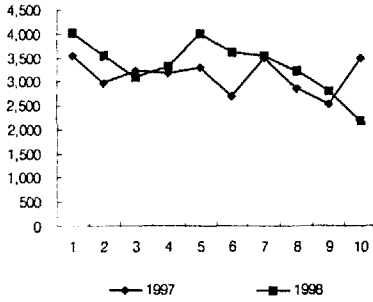
(單位: 萬,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613	1,848	2,601	2,547	2,552	3,583	2,888	2,865	4,036	5,219
稅負擔額	98	770	2,686	2,592	2,286	3,342	3,092	3,350	4,615	4,088	4,716
總所得 對比	97	0.032	0.101	0.106	0.100	0.093	0.128	0.095	0.089	0.123	0.225
實效稅負擔率	98	0.114	0.184	0.135	0.098	0.140	0.116	0.122	0.167	0.142	0.259
總消費支出 對比	97	0.065	0.155	0.175	0.162	0.147	0.191	0.138	0.132	0.189	0.313
實效稅負擔率	98	0.094	0.297	0.208	0.163	0.217	0.177	0.174	0.255	0.198	0.34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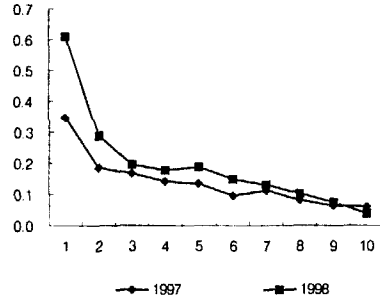
[附圖 II-4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燒酎)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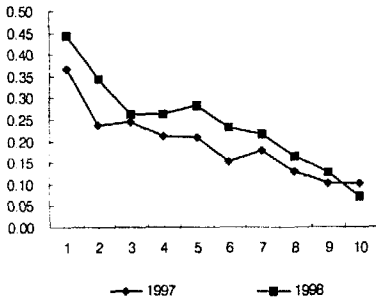
[附圖 II-4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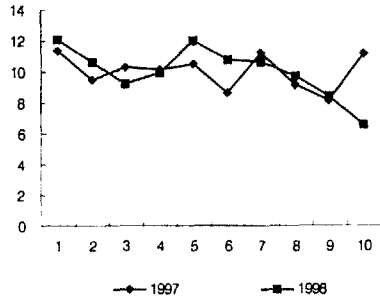
[附圖 II-4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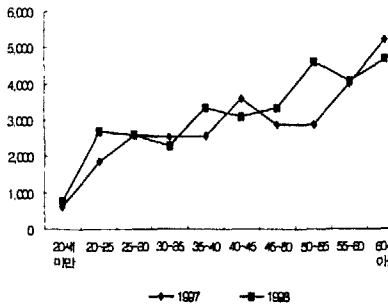
[附圖 II-44] 稅負擔 構成比(燒酎)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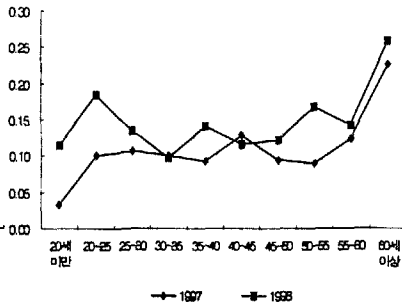
[附圖 II-45] 年齡別 稅負擔額(燒酎)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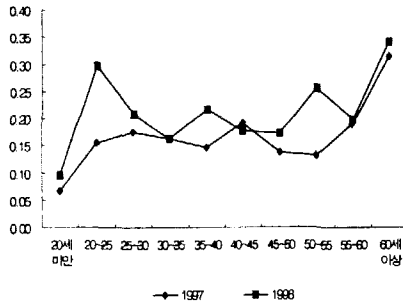
[附圖 II-4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單位:%)



[附圖 II-4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燒酎)

(單位: %)



#### 마. 麥 酒

麥酒의 가구당 평균 酒稅(教育稅 包含) 負擔額은 1997년에 15,396원에서 1998년에는 12,933원으로 16.0% 감소하여 總所得 및 總消費支出 減少率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맥주에 대한 실효세부담률도 總所得을 기준으로 하면 0.0550%에서 0.0528%, 總消費支出을 기준으로 하면 0.0840%에서 0.0800%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麥酒에 대한 주세부담이나 소비지출의 감소율과 총소득이나 총소비지출의 감소율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록 절대 세부담은 감소하였지만 1998년의 實效稅負擔率은 1997년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맥주에 대한 세부담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酒稅 및 教育稅 負擔總額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4.5%에서 69.5%로 오히려 상승하였다<sup>4)</sup>. 이는 비록 麥酒에 대한 稅負擔이 크게 감소

4) 酒稅分 教育稅를 제외하고 酒稅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총주세부담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62.1%에서 66.3%로 증가하였다. 酒稅分 教育稅를 제외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맥주의 점유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주종별로 주세율 수준 80%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주세액 대비 10%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하기는 하였지만 1998년 동안 위스키 등과 같이 매우 고가이면서 높은 주세율이 적용되는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매우 크게 위축됨에 따라 이들 주종에 대한 稅負擔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맥주의 稅負擔 比重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비중은 맥주의 주세수입 비중이 대체로 60~7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주세부담 비중도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麥酒의 경우에는 高所得層으로 이행할수록 稅負擔(消費支出) 水準도 증가하지만 소득증가율이 비해서는 稅負擔(消費支出) 增加率이 다소 낮다. 따라서 所得階層別 酒稅負擔額은 최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다. 이는 곧 맥주가 대중주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麥酒의 경우에도 稅負擔이 所得에 대해 逆進的이다.

麥酒에 대한 주세율은 1996년까지만 해도 150%(교육세 포함시 195%)였으나 1997년부터는 130%(169%)로 인하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1997년부터 인하됨에 따라 소비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은 종전에 비해 약 13%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麥酒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가 逆進性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부터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역진적인 세부담은 다소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淸酒, 濁酒, 燒酎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消費支出(稅負擔) 水準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아래에서 살펴볼 위스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麥酒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稅負擔(消費

---

반면 그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세를 포함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맥주의 세부담 점유비가 달라진다.

支出) 수준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여타 주류의 경우와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맥주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가구에서 稅負擔(消費支出)의 絶對水準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麥酒에 대한 소비지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에서 맥주에 대한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맥주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長年層이나 老年層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축적 규모가 낮기 때문에 위스키 등에 대한 소비여력 또는 예산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도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麥酒에 대한 實效稅負擔率은 年齡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여타 주류의 경우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연령층에서 맥주를 많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 연령층의 소득수준이 長年層과 老年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附表 II-10〉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麥酒,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9,692	13,242	11,355	14,792	16,804	16,539	18,025	16,835	14,855	21,813	15,396
稅負擔額	98	5,314	9,252	12,003	11,599	14,672	15,262	16,053	15,787	14,135	15,234	12,933
總所得對比	97	0.952	0.830	0.591	0.674	0.686	0.604	0.588	0.491	0.371	0.390	0.550
實效稅負擔	98	0.807	0.755	0.773	0.629	0.699	0.642	0.599	0.513	0.386	0.287	0.528
總消費對比	97	1.007	1.065	0.866	0.997	1.075	0.941	0.920	0.779	0.602	0.639	0.840
實效稅負擔	98	0.586	0.900	1.030	0.920	1.035	0.980	0.982	0.815	0.646	0.495	0.800
稅負擔	97	6.29	8.60	7.37	9.62	10.89	10.75	11.72	10.94	9.66	14.17	100.0
構成比	98	4.10	7.16	9.27	8.96	11.35	11.80	12.42	12.21	10.93	11.79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에도 요인이 있다.

이상과 같이 맥주에 대한 소비지출 및 세부담 구조를 살펴보면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稅負擔(消費支出)의 절대수준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소비패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附表 II-11〉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麥酒,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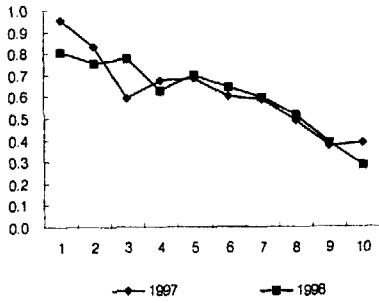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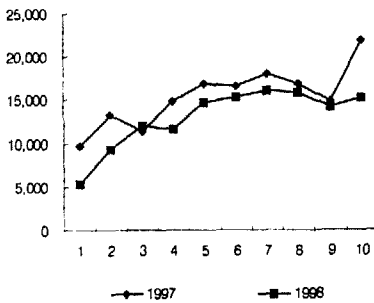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1,368	15,430	19,667	18,561	14,691	14,679	14,024	13,949	17,755	11,003
稅負擔額	98	17,068	9,939	19,267	16,463	15,224	11,400	10,291	10,508	9,640	5,906
總所得 對比	97	0.071	0.841	0.799	0.725	0.535	0.523	0.459	0.432	0.543	0.475
實效稅負擔率	98	2.525	0.679	1.001	0.705	0.637	0.428	0.375	0.381	0.334	0.325
總消費支出 對比	97	0.144	1.292	1.322	1.183	0.847	0.784	0.671	0.644	0.830	0.660
實效稅負擔率	98	2.087	1.099	1.549	1.176	0.987	0.654	0.534	0.580	0.466	0.426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및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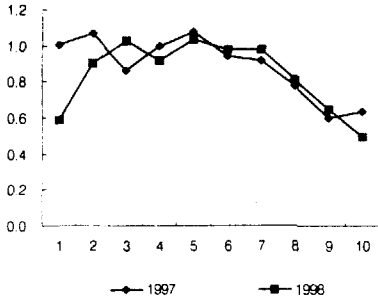
[附圖 II-4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麥酒) [附圖 II-4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單位: 千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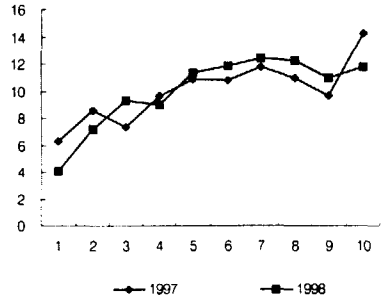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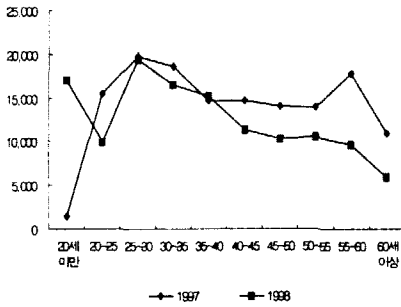
[附圖 II-5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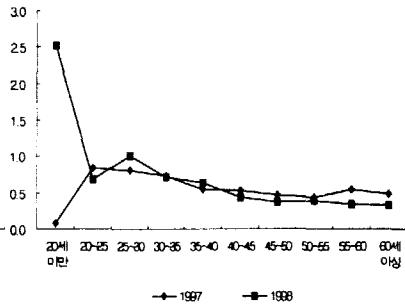
[附圖 II-51] 稅負擔 構成比(麥酒)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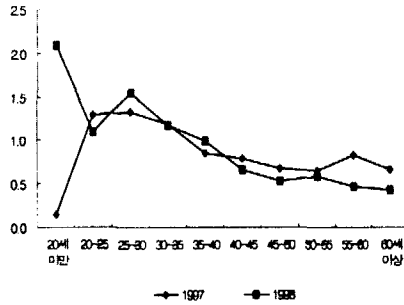
[附圖 II-52] 年齡別 稅負擔額(麥酒)  
(單位: 千圓)



[附圖 II-5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單位: %)



[附圖 II-5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麥酒)  
(單位: %)



## 바. 위스키

위스키의 경우에는 家口當 酒稅負擔 平均이 3,369원에서 812원으로 75.9% 정도 감소하는 등 소비가 매우 큰 폭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에 따라 실효세부담률도 總所得 對比 0.0120%에서 0.0033%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위스키의 消費(稅負擔)가 크게 하락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經濟危機로 접어들면서 소득효과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데 있으며 국산 위스키조차 原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換率急騰에 따른 가격상승도 가격효과의 일환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데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998년에는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소득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게 팽배하고 향후의 경제여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는 다른 주종에 비해 高所得層으로 이행할수록 稅負擔의 絶對水準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스키의 경우에는 所得階層別 酒稅負擔이 累進的이다. 이는 위스키가 상당히 高價로서 일정 소득 이상의 中產層 이상의 階層에서 주로 소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일반적인 특성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인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에 위스키의 주세부담률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은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위스키에 대한 세부담 구조가 누진적이라는 데에는 차이가 없

5) 환율상승에 의한 가격상승을 감안한다면 家口當 稅負擔額(消費支出額)의 減少率보다 消費量의 減少率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었다. 즉, 1998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위스키에 대한 주세부담률 곡선은 正(+)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1998년의 경우 위스키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絶對水準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高所得層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中·低所得層에 비해 高所得層의 實效稅負擔率 下落趨勢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곧 위스키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의 累進도가 1997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1998년의 위스키의 소비위축 현상이 항구적인 것일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과 같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면 위스키에 대한 소비도 빠른 시일내에 종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실현된다면 위스키의 소비증가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스키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의 累進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류와 마찬가지로 年齡이 상승할수록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稅負擔(消費支出)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상승할수록 實效稅負擔率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60세 이상 가구의 위스키 소비패턴이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매우 급격히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997년에 가장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1998년의 경우에는 10분의 1 수준에도 다소 미달하는 수준으로 매우 크게 감소하여 50대 가구의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도 1998년에는 매우 크게 하락하였다.

〈附表 II - 12〉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위스키,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623	1,080	992	1,194	1,802	2,582	3,535	2,701	5,669	13,512	3,369
稅負擔額	98	145	332	353	159	491	437	422	1,161	1,042	3,574	812
總所得 對比	97	0.061	0.068	0.052	0.054	0.074	0.094	0.115	0.079	0.141	0.242	0.120
實效稅負擔	98	0.022	0.027	0.023	0.009	0.023	0.018	0.016	0.038	0.028	0.067	0.033
總消費 對比	97	0.065	0.087	0.076	0.080	0.115	0.147	0.180	0.125	0.230	0.396	0.184
實效稅負擔	98	0.016	0.032	0.030	0.013	0.035	0.028	0.026	0.060	0.048	0.116	0.050
稅負擔	97	1.85	3.21	2.94	3.55	5.34	7.66	10.50	8.02	16.84	40.10	100.0
構成比	98	1.79	4.09	4.35	1.95	6.04	5.38	5.20	14.30	12.83	44.06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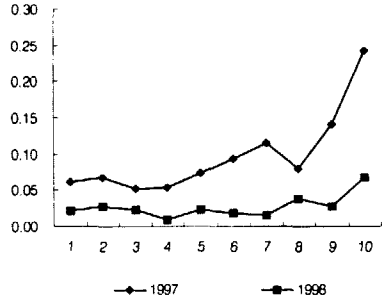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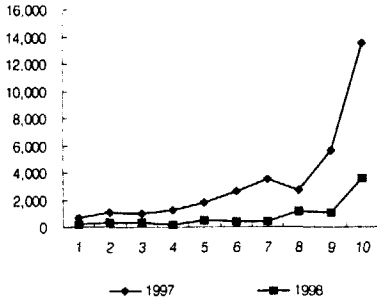
〈附表 II - 13〉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위스키,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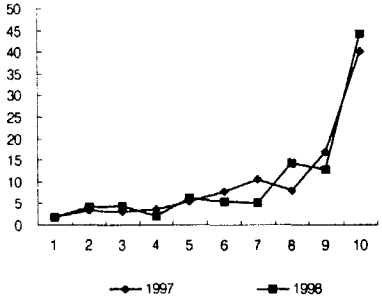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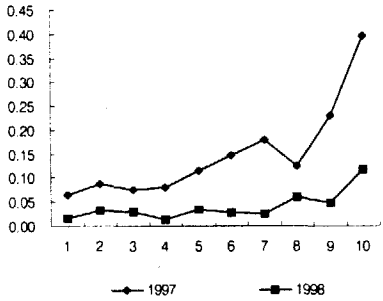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446	1,609	2,092	2,942	2,717	3,114	4,980	4,604	7,348
稅負擔額	98	698	0	228	753	528	783	766	1,555	1,884	730
總所得 對比	97	0.000	0.024	0.065	0.082	0.107	0.097	0.102	0.154	0.141	0.317
實效稅負擔率	98	0.103	0.000	0.012	0.032	0.022	0.029	0.028	0.056	0.065	0.04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37	0.108	0.133	0.170	0.145	0.149	0.230	0.215	0.441
實效稅負擔率	98	0.085	0.000	0.018	0.054	0.034	0.045	0.040	0.086	0.091	0.053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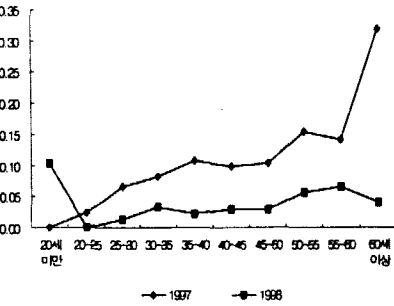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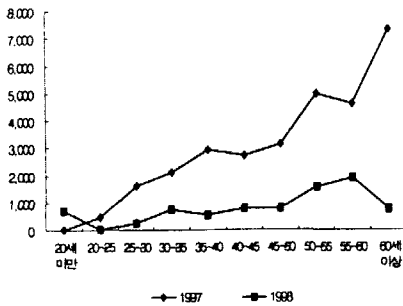
[附圖 II-5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위스키) [附圖 II-5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單位:千圓) (單位:%)



[附圖 II-5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單位:%) [附圖 II-58] 稅負擔 構成比(위스키)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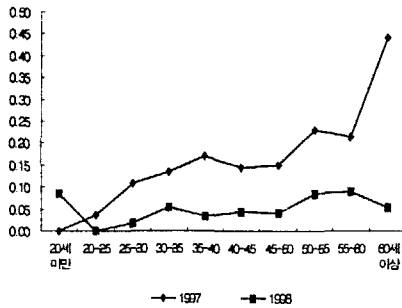


[附圖 II-59] 年齡別 稅負擔額(위스키) [附圖 II-6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單位:千圓) (單位:%)



[附圖 II-6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위스키)

(單位: %)



### 사. 其他 酒類

其他 酒類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주종 이외의 주류를 합산한 것으로 이질적인 주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주종의 경우와 달리 稅負擔(消費支出) 構造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其他 酒類에 대한 家口當 平均 酒稅(教育稅 包含) 負擔額은 699원에서 458원으로 약 34.5% 정도 감소하였다. 濁酒에 비해서는 기타 주류의 주세부담액이 더 크지만 여타 주류에 비해서는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세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주류에 대한 주세부담 규모가 작다는 것은 역으로 청주, 소주, 맥주, 위스키의 소비가 전체 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기타 주류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이행할수록 酒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高所得層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平均所得增加率과 稅負擔(消費支出) 增加率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여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實效稅負擔率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年齡別 稅負擔(消費支出) 구조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지

출 수준도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實效稅負擔率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附表 II - 14〉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 分布(其他 酒類,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198	467	428	405	673	811	567	1,084	1,046	1,312	699
稅負擔額	98	200	165	252	329	385	612	368	677	727	868	458
總所得 對比	97	0.019	0.029	0.022	0.018	0.027	0.030	0.018	0.032	0.026	0.023	0.025
實效稅負擔	98	0.030	0.013	0.016	0.018	0.018	0.026	0.014	0.022	0.020	0.016	0.019
總消費 對比	97	0.021	0.038	0.033	0.027	0.043	0.046	0.029	0.050	0.042	0.038	0.038
實效稅負擔	98	0.022	0.016	0.022	0.026	0.027	0.039	0.023	0.035	0.033	0.028	0.028
稅負擔	97	2.83	6.68	6.12	5.80	9.61	11.61	8.12	15.51	14.97	18.76	100.0
構成比	98	4.35	3.61	5.49	7.18	8.41	13.34	8.04	14.77	15.86	18.96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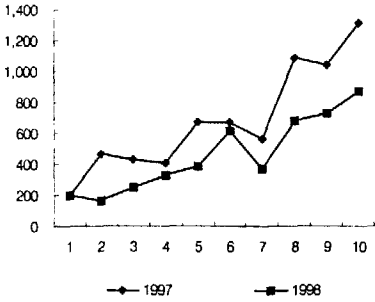
〈附表 II - 15〉 年齡別 酒稅 負擔 分布(其他 酒類,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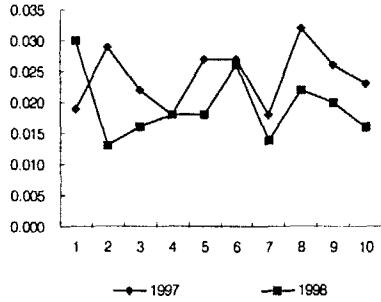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203	430	462	838	682	657	980	591	964
稅負擔額	98	83	40	411	451	483	550	537	294	296	548
總所得 對比	97	0.000	0.011	0.017	0.018	0.031	0.024	0.022	0.030	0.018	0.042
實效稅負擔率	98	0.012	0.003	0.021	0.019	0.020	0.021	0.020	0.011	0.010	0.03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17	0.029	0.029	0.048	0.036	0.031	0.045	0.028	0.058
實效稅負擔率	98	0.010	0.004	0.033	0.032	0.031	0.032	0.028	0.016	0.014	0.039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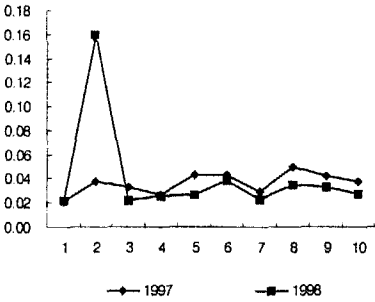
【附圖 II-62】所得階層別 稅負擔額(其他 酒類)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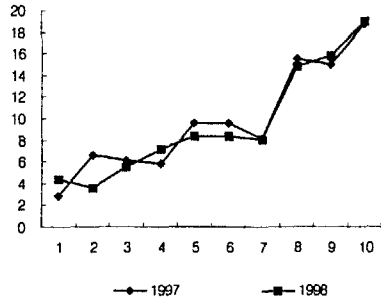
【附圖 II-63】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其他 酒類)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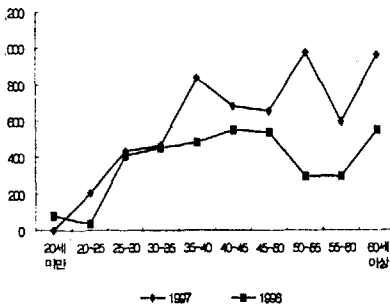
【附圖 II-64】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  
(其他 酒類)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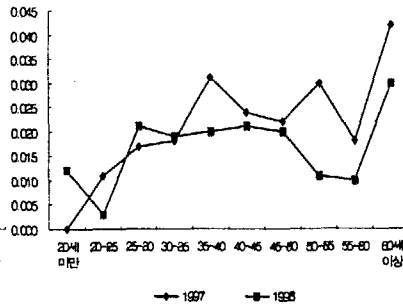
【附圖 II-65】稅負擔 構成比(其他 酒類)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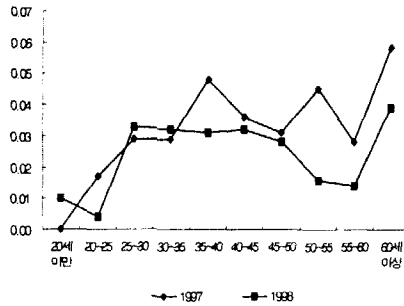
【附圖 II-66】年齡別 稅負擔額(其他 酒類)  
(單位：千圓)



【附圖 II-67】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其他 酒類) (單位：%)



[附圖 II-68] 年齡別總消費對比實效稅負擔率(其他酒類)  
(單位: %)



#### 아. 衡平性 綜合

酒類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기는 하지만 稅負擔(消費支出)의 絶對水準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酒類는 기호품의 하나로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스키 등과 같이 일부의 高價·高級酒類를 제외하고는 매우 넓은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상대적인 稅負擔의 逆進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도시가계의 消費支出 調査資料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명제가 성립함을 보았다. 즉, 淸酒, 濁酒, 燒酎, 麥酒 등 대부분의 주류에서 階層別 酒稅負擔의 逆進성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1997년에 비해 다소 누진도가 작아지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酒稅負擔이 여전히 累進적으로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대부분의 주류가 고연령층으로 이행할수록 酒稅負擔(또는 消費支出)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위스키 등 일부의 주류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각 주종에 대한 消費支出(또는 세부담) 수준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과 總所得 對比 또는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酒稅負擔率間에는 반드시 正(+ )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麥酒의 경우에는 20대 또는 30대 가구에서 가장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른 주류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연령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麥酒에 대한 實效稅負擔率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附錄 III.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과 期待效果 : 代案

附錄 III에서는 본문에 제안된 改編方案과 별도로 소주와 위스키 간의 주세율을 현행 위스키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고, 麥酒에 대한 酒稅率은 예시제를 통해 漸進的·段階的으로 인하하여 증류주 수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최근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燒酎와 위스키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절충하자는 견해가 일고 있는 데 대해 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검증해보기 위해서이다. 折衷案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중국적으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70%, 80%, 90%에서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政府가 발표한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政府案)에 대해 논의한다.

### 1. 酒稅率 折衷方案 I : 90%

####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 : 90% 方案

본절에서는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으로서 燒酎와 위스키 등을 비롯한 증류주에 대한 酒稅率을 90%(教育稅 포함시 117%) 수준에서 단일화하고, 麥酒에 대해서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맥주의 경우에는 세율 예시제를 통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2004년에는 90%(教育稅 포함시 117%) 수준으로 인하하여 증류주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맥주 세율에 대한 점진적 세율인하 방안은 〈附表 I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부터 주세율을 10% 포인트(교육세 포함시 13% 포인트)씩 네 차례 인하하도록 한다.

그러나 조세체계 간소화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주세분 교육세율은 당분간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증류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되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前者의 경우 WTO 주세분쟁에서의 패널 및 상소심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말까지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고, 後者の 경우에는 재정적자기 동안 급격한 세수감소 방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附表 Ⅲ-1〉 主要 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折衷案 I)

(單位: %)

	現 行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蒸溜酒	35~100 (38.5~130)	90(117)	90(117)	90(117)	90(117)	90(117)
麥 酒	130(169)	130(169)	120(156)	110(143)	100(130)	90(117)

註: ( ) 밖의 수치는 해당 주류에 대한 酒稅率이고, ( ) 안의 수치는 酒稅分 教育稅를 포함한 酒稅率임.

#### 나. 期待效果 I : 90% 方案

기대효과로는 價格效果와 需要效果, 稅收效果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1) 價格效果

折衷方案 I 에 따르면 燒酎의 경우에는 교육세 포함 주세율이 현재의 38.5%에서 117%로 약 3배 수준으로 상승하지만 위스키의 경우에는 130%에서 117%로 10분의 1이 경감된다. 그리고 麥酒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매년 13% 포인트씩 하락한다.

〈附表 III-2〉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折衷案 I)

(單位: 원/360ml)

	稅前 原價	現 行			2000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128.9	46.3	510.2	391.9	72.7	799.6
진로	299	115.1	41.4	455.5	349.8	64.9	713.7
임페리얼	7583.8	9858.8	1744.2	19186.8	8873.0	1645.7	18102.5
맥주	220.3	372.3	59.2	651.8	372.3	59.2	651.8
	稅前 原價	2001年			2002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391.9	72.7	799.6	391.9	72.7	799.6
진로	299	349.8	64.9	713.7	349.8	64.9	713.7
임페리얼	7583.8	8873.0	1645.7	18102.5	8873.0	1645.7	18102.5
맥주	220.3	343.7	56.4	620.4	315.0	53.5	588.8
	稅前 原價	2003年			2004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391.9	72.7	799.6	391.9	72.7	799.6
진로	299	349.8	64.9	713.7	349.8	64.9	713.7
임페리얼	7583.8	8873.0	1645.7	18102.5	8873.0	1645.7	18102.5
麥酒	220.3	286.4	50.7	557.4	257.7	47.8	525.8

註: 1. 알콜도수:〈참진이슬로〉 23도, 〈진로〉 25도, 〈임페리얼〉 40도.

2. 麥酒의 稅前價格은 OB LAGER와 OB REGULAR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3. 위의 예는 모두 360ml 1병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이상과 같이 증류주와 麥酒에 대한 주세율을 조정하면, 燒酎의 경우에는 세포함 제조장 출고가격이 평균적으로 56.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참진이슬로〉의 경우에는 세포함 출고가격이 1병당 510.2원에서 799.6원으로, 〈진로〉의 경우에는 455.5원에서 713.7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러한 것은 세전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세전가격이 변동한다면 가격도 다소 변화할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소폭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약 5.7% 정도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페리얼〉 360ml를 기준으로 세포함 제조장 출고가격이 19,186.8원에서 18,102.5원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附表 III-3〉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折衷案 I)

(單位: %)

	2000年			2001年			2002年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56.69	-4.76	189.42	56.69	-7.05	182.47	56.69	-9.35	175.48
위스키	-5.65	7.24	-3.49	-5.65	7.24	-3.49	-5.65	7.24	-3.49
麥酒	0	7.31	7.31	-4.82	9.92	1.46	-9.66	12.53	-4.78
	2003年			2004年~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56.69	-11.64	168.51	56.69	-13.94	161.54			
위스키	-5.65	7.24	-3.49	-5.65	7.24	-3.49			
麥酒	-14.49	15.14	-11.43	-19.32	17.75	-19.32			

註: 위의 효과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아니라 1999년 현재 수준 대비 增減率임에 유의하기 바람.

麥酒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매년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세율인하 초년도에는 4.8% 정도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여 360ml를 기준으로 651.8원에서 620.4원

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2003년에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인하되어 각각 588.8원 및 557.4원으로 인하될 것이며, 종국적으로 2004년에는 현재 가격 대비 19.3% 정도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25.8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인상시에는 대부분 서울인상분이 가격에 전가되지만 서울이 인하되는 위스키와 麥酒의 경우에는 價格의 下方硬直性으로 인해 반드시 위에서 제시한 수준만큼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需要效果

需要效果의 경우에는 서울이 인하되는 주종의 경우 서울인하분을 모두 가격에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격하락에 따른 需要量 增加效果는 작아질 것이며, 그러한 경우 稅收效果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것보다 작아질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2000년 중에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90%(교육세 포함 117%)로 단일화하는 경우, 燒酎는 가격상승에 따른 需要量 減少效果가 약 4.8%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서울인상에 따라 소주의 세수(주세 및 교육세)는 약 1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서울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약 7.2% 정도의 需要量 增加가 예상되는데 이보다 서울인하율이 더 높아 세수는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麥酒의 경우에는 서울 및 가격에 변화가 없지만 燒酎와의 소비대체로 인해 需要와 稅收가 약 7.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매년 10% 포인트(교육세 포함시 13% 포인트)씩 인하되는 경우 燒酎의 需要 減少效果는 다소 확대된다. 또한 맥주의 자기가격 하락에 따라 麥酒의 需要量이 증가하는 반면 稅收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스키의 경우

燒酎價格 또는 麥酒의 價格이 變化하더라도 사실상 이들 주류와의 대체관계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需要나 稅收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附表 III-3〉에 나타난 需要 또는 需要量 變化效果는 모두 價格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세율조정분 전액을 가격에 반영시켰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주나 맥주의 경우에는 위스키의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나 세수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스키 세율이 다소 인하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맥주와 소주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맥주에 대한 세율인하에 따라 소주와 맥주의 수요와 세수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효과는 과연 세율인하에 따라 麥酒의 價格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稅收效果

세율조정에 따른 稅收效果는 需要(量)와 稅率水準의 變化 및 稅前出庫價格에 영향을 받는다. 稅率이 引上되는 酒種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율인상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이 인하되는 주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요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稅前出庫價格의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절에서 세수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가격의 완전 신축성을 가정하여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먼저 2000년의 경우에는 소주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수요감소 효과는 4.8% 정도에 불과한 반면 주세율은 35%에서 90%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후자의 효과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하여 소주로부터 酒稅 4,148억원, 教育稅 1,820억원, 도합 약 6천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소주가격의 상승에 따라 麥酒 需要가 다소 증가하면서 맥주로부터 주세 875억원, 교육세 262억원, 도합 1,137억원 정도의 稅收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세율이 다소 인하되면서 세수감소요인이 나타나지만 다소의 需要量 增加로 인한 세수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108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酒稅와 教育稅의 세수가 약 7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2001년부터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하게 됨에 따라 1999년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陽의 값을 가질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그 규모는 계속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總稅收는 2001년부터 세율조정이 완료되는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0년에는 주세의 총세수가 약 7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2001~2004년 기간 동안에는 맥주 세율의 인하에 따라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가 전년대비 각각 1,129억원, 1,191억원, 1,255억원, 1,316억원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4년의 주세수입은 1999년에 비해 불과 2,106억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蒸溜酒에 대한 酒稅率이 2000년과 동일하지만 麥酒의 稅率이 130%(교육세 포함시 169%)에서 120%(교육세 포함시 156%)로 인하됨에 따라 맥주로부터의 세수증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麥酒 價格이 引下됨에 따라 소주 수요가 추가적으로 減少함에 따라 1999년 세수에 대비한 소주의 세수증가분은 5,749억원으로 축소되어 2000년의 세수증가분보다 작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소주의 세수가 2000년 대비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麥酒의 稅率引下에 따라 麥酒의 稅收는 1999년 예상세수 대비 227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2001년의 麥酒 稅收가 2000년 예상세수에 비해 오히려 910억원 정도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스키의 경우에는 麥酒 稅率의 引下에도 불구하고 대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1999년 예상세수에 비해 108억원 정도 적은 稅收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附表 Ⅲ-4〉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折衷案 I)

(單位：億圓)

		酒稅 稅收效果		教育稅 稅收效果		稅收效果 計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2000年	燒酎	4,148	4,148	1,820	1,820	5,968	5,968
	위스키	-83	-83	-25	-25	-108	-108
	麥酒	875	875	262	262	1,137	1,137
	計	4,940	4,940	2,057	2,057	6,997	6,997
2001年	燒酎	3,979	-169	1,770	-50	5,749	-219
	위스키	-83	0	-25	0	-108	0
	麥酒	175	-700	52	-210	227	-910
	計	4,071	-869	1,797	-260	4,677	1,129
2002年	燒酎	3,811	-168	1,718	-52	5,529	-220
	위스키	-83	0	-25	0	-108	0
	麥酒	-572	-747	-172	-224	-744	-971
	計	3,156	-915	1,521	-276	4,677	-1,191
2003年	燒酎	3,641	-170	1,668	-50	5,309	-220
	위스키	-83	0	-25	0	-108	0
	麥酒	-1,369	-797	-410	-238	-1,779	-1,035
	計	2,189	-967	1,233	-288	-288	1,255
2004年~	燒酎	3,472	-169	1,618	-50	5,090	-219
	위스키	-83	0	-25	0	-108	0
	麥酒	-2,212	-843	-664	-254	-2,876	-1,097
	計	1,177	-1,012	929	-304	2,106	-1,316

註：1998년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量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이러한 현상은 2002~2004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변화로 인해 2001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은 1999년 예상세수보다 5,868억원 정도 클 것이지만 2000년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1,12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의 稅率이 추가적으로 引下되는 2002년에는 燒酎의 稅收가 2001년에 비해 220억원(=5,749억원-5,52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麥酒의 稅收은 1999년 예상세수보다 744억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의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971억원(=227억원-(-7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2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은 1999년에 비해서는 4,677억원 정도 큰 규모이지만 2001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191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에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100%로 조정됨에 따라 燒酎로부터 징수되는 稅收은 1999년에 비해 5,309억원 정도 큰 규모이지만 2002년 예상세수에 대비하면 22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의 경우에도 세율인하에 따라 1999년 예상세수 대비 1,779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고, 2002년에 비해서는 1,035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3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은 1999년 예상세수보다는 3,422억원 정도 클 것이지만 2002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2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맥주의 주세율이 최종적으로 90%로 인하되어 증류주와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주의 세수는 1999년 예상세수보다 5,090억원 정도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3년에 비해서는 219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麥酒의 稅收은 1999년 예상세수에 2,876억원 정도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2003년 예상세수도 1,097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4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은 1999년 예상세수보다 2,106

억원 정도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이지만 2003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31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 이르더라도 세수가 현재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稅負擔이 종전에 비해 增加하여야만 주류소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근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價格의 下方硬直性을 고려할 때 위스키 또는 麥酒 등과 같이 세율이 인하되는 주종에서 消費者價格의 인하율이 세율인하분을 100%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附表 III-4>의 예측치에 불구하고 세수는 더 적게 증가하거나 또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附表 III-5>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方案(折衷案 I)

(單位：%)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2000年	18.96
2001年	19.89
2002年	20.97
2003年	22.25
2004年~	23.76

註：1. 1998년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2. 教育稅率은 酒稅額 對比 稅率임.

目的稅 廢止 및 本稅統合을 골자로 하는 租稅體系 簡素化를 염두에 두고 酒稅分 教育稅의 酒稅統合의 前 단계로 稅收中立的 차원에서 教育稅率을 단일화하는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 19.0~23.8%의 세율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매년 教育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教育세율을 수시로 개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교육세율은 20~25%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酒稅率 折衷方案 II : 80%

###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I : 80% 方案

본절에서는 蒸溜酒에 대한 酒稅率을 80%(教育稅 포함시 104%) 수준에서 단일화하고, 麥酒에 대해서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맥주에 대해서는 세율 예시제를 통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2004년에 증류주 수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세분 교육세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折衷案 II의 구체적인 酒稅率 및 教育稅率 改編方案은 〈附表 III-6〉에 제시된 바와 같다.

〈附表 III-6〉 主要 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折衷案 II)

(單位 : %)

	現 行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蒸溜酒	35~100 (38.5~130)	80(104)	80(104)	80(104)	80(104)	80(104)
麥 酒	130(169)	120(156)	110(143)	100(130)	90(117)	80(104)

註 : ( ) 밖의 수치는 해당 주류에 대한 酒稅率이고, ( ) 안의 수치는 酒稅分 教育稅를 포함한 酒稅率임.

### 나. 期待效果 II : 80% 方案

#### 1) 價格效果

折衷案 II에 따르면, 燒酎는 교육세 포함 주세율이 현재의 38.5%에서 104%로 대폭 상승하지만 위스키는 130%에서 104%로 5

분의 1이 경감된다. 그리고麥酒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매년 13% 포인트씩 하락한다.

〈附表 III-7〉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折衷案 II)

(單位 : 원/360ml)

	稅前 原價	現 行			2000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128.9	46.3	510.2	348.4	68.3	751.7
진로	299	115.1	41.4	455.5	311.0	61.0	671.0
임페리얼	7583.8	9858.8	1744.2	19186.8	7887.2	1547.1	17018.1
맥주	220.3	372.3	59.2	651.8	343.7	56.4	620.4
	稅前 原價	2001年			2002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348.4	68.3	751.7	348.4	68.3	751.7
진로	299	311.0	61.0	671.0	311.0	61.0	671.0
임페리얼	7583.8	7887.2	1547.1	17018.1	7887.2	1547.1	17018.1
맥주	220.3	315.0	53.5	588.8	286.4	50.7	557.4
	稅前 原價	2003年			2004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348.4	68.3	751.7	348.4	68.3	751.7
진로	299	311.0	61.0	671.0	311.0	61.0	671.0
임페리얼	7583.8	7887.2	1547.1	17018.1	7887.2	1547.1	17018.1
맥주	220.3	257.8	47.8	525.9	229.1	44.9	494.3

- 註 : 1. 알콜도수 : 〈참진이슬로〉 23도, 〈진로〉 25도, 〈임페리얼〉 40도.  
 2. 麥酒의 稅前價格은 OB LAGER와 OB REGULAR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3. 위의 예는 모두 360ml 1병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附表 III-8〉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折衷案 II)

(單位: %)

	2000年			2001年			2002年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47.30	-6.26	153.21	47.30	-5.56	147.01	47.30	-10.86	140.81
위스키	-11.30	14.48	-8.42	-11.30	14.48	-8.42	-11.30	14.48	-8.42
麥酒	-4.82	8.71	0.34	-9.66	11.32	-5.81	-14.49	13.93	-12.36
	2003年			2004年~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47.30	-13.15	134.60	47.30	-15.45	128.40			
위스키	-11.30	14.48	-8.42	-11.30	14.48	-8.42			
麥酒	-19.32	16.54	-19.32	-24.16	19.15	-26.68			

註: 위의 효과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아니라 1999년 현재 수준 대비 增減率임에 유의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증류주와 麥酒에 대한 주세율을 조정하면, 燒酎는 세포함 제조장 출고가격이 평균적으로 47.3%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진이슬로〉의 경우에는 세포함 출고가격이 1병당 510.2원에서 751.7원, 〈진로〉는 455.5원에서 671.0원으로 215원 50전 상승할 것이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세율이 소폭 인하됨에 따라 11.3% 정도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여 〈입페리얼〉(360ml 기준)의 경우 19,186.8원에서 17,018.1원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麥酒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매년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 세율인하 초년도(2000년)에는 4.8% 정도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여 360ml를 기준으로 651.8원에서 620.4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2003년에는 가격이 더욱 하락하여 각각 588.8원, 557.4원, 525.8원으로 인하되고, 종국적으로 2004년

에는 현재보다 24.2%가 하락한 494.3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율이 인하되는 위스키와麥酒는 價格의 下方硬直性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 2) 需要效果

折衷案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절에서도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000년에 증류주의 세율을 80%(교육세 포함 104%)로 단일화 하고, 麥酒의 세율을 120%(교육세 포함시 156%)로 인상하는 경우, 燒酎는 자기가격 상승과 대체재인 맥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需要量이 약 6.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세율인 상에 따른 세수증가요인이 수요감소분을 크게 상회하여 전체적으로는 燒酎의 稅收(주세 및 교육세)가 1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는 稅率引下에 따른 需要量 增加가 14.5%로 예상되지만 세율하락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세수는 8.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麥酒는 세율 및 자기가격의 하락, 그리고 燒酎 價格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로 인해 需要가 8.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稅率引下로 인해 稅收는 0.3%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도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매년 10% 포인트(교육세 포함시 13% 포인트)씩 인하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燒酎 需要의 減少가 예상되는 반면 麥酒 需要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스키의 경우에는 수요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附表 III-3〉에 나타난 需要 또는 需要量 變化效果는 모두 價格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세율조정분 전액을 가격에 반영시켰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1~2004년에는 麥酒 價格의 지속적인 下落에 따라

燒酎 需要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맥주 세율인하에 따른 맥주 세수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세수증감은 陰의 값을 나타내어 2000년에 세수가 다소 증가한 이후 2001년부터는 주세수입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稅收效果

麥酒와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 引下時 세율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서 세수효과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의 경우에는 소주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수요가 6.8% 정도 감소하는 반면 주세율은 35%에서 80%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소주의 酒稅收入은 3,271억원, 教育稅 1,557억원, 도합 4,828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燒酎價格 상승과 麥酒價格 下落에 따른 需要 增加에도 불구하고 맥주의 경우에는 세율인하로 인해 酒稅 41억원, 教育稅 12억원, 도합 53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사실상 麥酒 稅收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稅率引下에 따른 세수감소요인이 수요증가에 의한 세수증가요인을 압도하여 酒稅와 教育稅의 總稅收가 25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酒稅와 教育稅의 세수가 약 4,6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1년에는 맥주의 주세율 인하에 따라 1999년 예상세수에 대비한 세수증가효과가 축소되면서 2000년 대비 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0년에는 주세의 총세수가 약 4,6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2001~2004년 기간동안에는 맥주 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로 인해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가 전년대비 각각 1,153억원, 1,215억원, 1,278억원, 1,340억원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4년에는 주세수입이 1999년 예상세수에 364억원 정도 미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麥酒의 세율이 110%(교육세 포함시 143%)로 인하되면서 주세수입은 크게 減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麥酒 價格이 하락됨에 따라 소주 수요의 추가적 감소에 따라 1999년 예상세수에 대비한 소주의 세수증가분은 1999년 예상세수 대비 5,749억원으로 2000년의 세수증가분보다 다소 축소될 것이다. 2000년에는 맥주에 대한 세수가 종립적이었지만 2001년에는 맥주의 세수가 전년 대비 957억원(1999년 예상세수 대비 904억원) 정도 減少하고, 또한 대체효과에 의한 燒酎需要의 감소로 인해 2000년 대비 196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麥酒 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2001년 동안의 세수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002~2004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가 1,15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의 稅率이 추가적으로 引下되는 2002년에는 소주의 세수가 2001년에 비해 19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麥酒의 稅收는 1999년 예상세수에 크게 미달(약 1,924억원 정도)할 것으로 보이며, 2001년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1,02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2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는 1999년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2,254억원 정도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1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21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에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90%(교육세 포함시 117%)로 인하됨에 따라 소주로부터 징수되는 세수는 1999년 예상세수에 비해 4,241억원 정도 많지만 2002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9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麥酒의 稅收는 세율인하에 따라 1999년 대비 무려 3,006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02년에 비해서는 1,082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3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는 1999년 예상세수보

다는 976억원 정도 큰 수준이지만 2002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27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附表 III-9〉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折衷案 II)

(單位: 億圓, %)

		酒稅 稅收效果		教育稅 稅收效果		稅收效果 計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2000年	燒酎	3,271	3,271	1,557	1,557	4,828	4,828
	위스키	-199	-199	-60	-60	-259	-259
	麥酒	41	41	12	12	53	53
	計	3,113	3,113	1,509	1,509	4,622	4,622
2001年	燒酎	3,121	-150	1,511	-46	4,632	-196
	위스키	-199	0	-60	0	-259	0
	麥酒	-695	-736	-209	-221	-904	-957
	計	2,227	-886	1,242	-267	3,469	-1,153
2002年	燒酎	2,971	-150	1,466	-45	4,437	-195
	위스키	-199	0	-60	0	-259	0
	麥酒	-1,480	-785	-444	-235	-1,924	-1,020
	計	1,292	-935	962	-280	2,254	-1,215
2003年	燒酎	2,820	-151	1,421	-45	4,241	-196
	위스키	-199	0	-60	0	-259	0
	麥酒	-2,312	-832	-694	-250	-3,006	-1,082
	計	309	-983	667	-295	976	-1,278
2004年~	燒酎	2,670	-150	1,376	-45	4,046	-195
	위스키	-199	0	-60	0	-259	0
	麥酒	-3,193	-881	-958	-264	-4,151	-1,145
	計	-722	-1,031	358	-309	-364	-1,340

註: 1998년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2004년에는 맥주의 주세율이 최종적으로 80%(교육세 포함시 104%)로 인하되어 증류주와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주의 세수

는 1999년 예상세수 대비 4,046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2003년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195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麥酒는 1999년에 비해 무려 4,15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2003년 예상세수보다는 1,145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4년의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은 2003년 대비 1,34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1999년 예상세수에 비해서는 364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분석내용을 종합해볼 때 최종적으로 주세율 체계 개편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가 1999년에 비해 최소한 364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주세율이 인하되는 맥주와 위스키의 경우 가격이 세율변화에 대해 완전히 신축적이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한다고 기본가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稅收效果는 마이너스 364억원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麥酒와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할 때 價格이 완전히 탄력적으로 인하되어 세부담 경감분 전액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였을 가상적인 경우의 세수를 추정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만약 주세율 인하분의 일부만을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가격하락에 따른 需要增加 效果가 半減되어 酒稅收入은 1999년 예상세수에 크게 미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折衷案 II가 酒稅收入 中立的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酒稅收入 減少的 改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타의 여건을 차치하고라도 장기적으로 증류주 및 맥주의 세율을 80% 수준에서 단일화하는 경우에는 稅收減少가 초래될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折衷案 II를 기초로 租稅體系 簡素化에 따라 稅收中立的 차원에서 酒稅分 教育稅率의 단일화 방안을 검토해보면 연도에 따라 21.0

~27.3%의 세율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더라도 2004년에 이르러 세수중립적인 교육세율을 선택한다면 27%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한다면 적정수준은 27%를 상회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附表 III-10〉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方案(折衷案 II)

(單位：%)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2000年	21.02
2001年	22.20
2002年	23.58
2003年	25.24
2004年~	27.25

註：1. 1998년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2. 教育稅率은 酒稅額 對比 稅率임.

### 3. 酒稅率 折衷方案 III : 70%

####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II : 70% 方案

본절에서는 蒸溜酒에 대한 酒稅率을 현행 燒酎와 위스키 세율의 중간 수준인 70%(教育稅 포함시 77%) 수준에서 단일화하고, 麥酒에 대해서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05년에 증류주 수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에서와 같이 주세분 교육세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折衷案 III의 구체적인 酒稅率 및 教育稅率 改編方案은 〈附表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附表 Ⅲ-11〉 主要 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折衷案 Ⅲ)

(單位: %)

	現 行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2005~
蒸溜酒	35~100 (38.5~130)	70(77)	70(77)	70(77)	70(77)	70(77)	70(77)
麥 酒	130(169)	120(156)	110(143)	100(130)	90(117)	80(104)	70(77)

註: ( ) 밖의 수치는 해당 주류에 대한 酒稅率이고, ( ) 안의 수치는 酒稅分 教育稅를 포함한 酒稅率임.

나. 期待效果 Ⅲ: 70% 方案

1) 價格效果

折衷案 Ⅲ에 따르면, 燒酎는 教育세 포함 주세율은 현재의 38.5%에서 77%로 두 배로 인상되지만 위스키는 130%에서 77%로 현재의 5분의 3 수준으로 경감되며, 麥酒의 경우에는 매년 13% 포인트씩 인하하여 2005년에는 증류주와 동일한 70%로 인하한다.

이상과 같이 주세율을 조정하면, 燒酎는 세포함 제조장 출고가격이 평균적으로 27.8%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의 경우 세포함 출고가격이 1병당 455.5원에서 582.2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소폭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임페리얼>(360ml 기준)의 경우 19,186.8원에서 14,765.7원으로 23.0%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매년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 세율인하 초년도(2000년)에는 4.8% 정도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여 360ml를 기준으로 651.8원에서 620.4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국적으로 2005년에는 현재보다 34.2%가 하락한 429.0원 정도로 예상된다.

〈附表 III-12〉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效果(折衷案 III)

(單位: 원/360ml)

	稅前 原價	現 行			2000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128.9	46.3	510.2	258.0	59.3	652.3
진로	299	115.1	41.4	455.5	230.3	52.9	582.2
임페리얼	7583.8	9858.8	1744.2	19186.8	5839.6	1342.3	14765.7
맥주	220.3	372.3	59.2	651.8	343.7	56.4	620.4
	稅前 原價	2001年			2002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258.0	59.3	652.3	258.0	59.3	652.3
진로	299	230.3	52.9	582.2	230.3	52.9	582.2
임페리얼	7583.8	5839.6	1342.3	14765.7	5839.6	1342.3	14765.7
맥주	220.3	315.1	53.5	588.9	286.4	50.7	557.4
	稅前 原價	2003年			2004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258.0	59.3	652.3	258.0	59.3	652.3
진로	299	230.3	52.9	582.2	230.3	52.9	582.2
임페리얼	7583.8	5839.6	1342.3	14765.7	5839.6	1342.3	14765.7
麥酒	220.3	257.8	47.8	525.9	229.2	44.9	494.4
	稅前 原價	2005年~					
		酒稅+教育稅		附價稅		出庫價格	
참진이슬로	335	258.0		59.3		652.3	
진로	299	230.3		52.9		582.2	
임페리얼	7583.8	5839.6		1342.3		14765.7	
麥酒	220.3	169.7		39.0		429.0	

- 註: 1. 알콜도수:〈참진이슬로〉 23도, 〈진로〉 25도, 〈임페리얼〉 40도.  
 2. 麥酒의 稅前價格은 OB LAGER와 OB REGULAR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3. 위의 예는 모두 360ml 1병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附表 III-13〉 改編方案에 따른 價格 需要 및 稅收效果(折衷案 III)

(單位: %)

	2000年			2001年			2002年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27.81	-4.63	90.75	27.81	-6.92	86.16	27.81	-9.22	81.58
위스키	-23.04	29.52	-23.29	-23.04	29.52	-23.29	-23.04	29.52	-23.29
麥酒	-4.82	6.19	-1.98	-9.66	8.80	-7.94	-14.49	11.41	-14.30
	2003年			2004年			2005年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價格	需要	稅收
燒酎	27.81	-11.51	76.97	27.81	-13.81	72.38	27.81	-18.58	62.84
위스키	-23.04	29.52	-23.29	-23.04	29.52	-23.29	-23.04	29.52	-23.29
麥酒	-19.32	14.02	-21.06	-24.16	16.63	-28.23	-34.19	22.05	-44.39

註: 위의 효과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아니라 1999년 현재 수준 대비 增減率임에 유의하기 바람.

2) 需要效果

앞에서와 같이 본절에서도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000년에 증류주의 세율을 70%(교육세 포함 77%)로 단일화하고, 麥酒의 세율을 120%(교육세 포함시 156%)로 조정하는 경우, 燒酎는 需要가 약 4.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주세 및 교육세를 합산한 세수는 9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절충안 I 과 II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는 稅率引下에 따른 需要量 增加가 약 30%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주세 수입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세율 인하에 따른 교육세율의 인하로 인해 교육세 세수는 매우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약 23.3%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麥酒는 需要가 6.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稅率引下에

다른 세수감소요인이 需要增加로 인한 稅收增加要因을 초과하여 세수는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에도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燒酎는 세수증대효과가 축소되어 전년대비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맥주 역시 세수감소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증류주 수준과 일치하게 되는 2005년에는 燒酎의 수요가 1999년에 비해 약 18.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수는 1999년 대비 62.8% 증가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麥酒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세율인하로 인해 수요는 1999년에 비해 2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는 오히려 44.4%의 대폭적인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3) 稅收效果

麥酒와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 引下時 세율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고 전제하고 세수효과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燒酎의 경우 2000년에 주세율과 교육세율이 세전출고가격 대비 각각 35%와 3.5%에서 70%와 7%로 상승하므로 다소의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은 각각 90.8%로 동일하게 되어 각각 2,599억원과 260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麥酒의 경우에는 2000년에 세율인하로 인해 酒稅 237억원, 教育稅 71억원, 도합 30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2000년에 稅率引下에 따른 세수감소요인이 수요증가에 의한 세수증가요인을 다소 상회하여 酒稅와 教育稅의 總稅收가 71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酒稅와 教育稅의 세수가 1999년 대비 1,8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2001년에는 맥주의 세율이 인하되면서 燒酎의 주세 및 교육세 세수는 전년대비 144억원, 麥酒의 경우에는 92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맥주와 소주의 가격이

〈附表 III-14〉 酒稅 및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折衷案 III)

(單位: 億원, %)

		酒稅 稅收效果		教育稅 稅收效果		稅收效果 計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1999年 稅收對比	前年對比
2000年	燒酎	2,599	2,599	260	260	2,859	2,859
	위스키	-222	-222	-496	-496	-718	-718
	麥酒	-237	-237	-71	-71	-308	-308
	計	2,140	2,140	-307	-307	1,833	1,833
2001年	燒酎	2,468	-131	247	-13	2,715	-144
	위스키	-222	0	-496	0	-718	0
	麥酒	-950	-713	-285	-214	-1,235	-927
	計	1,296	-844	-534	-227	762	-1,071
2002年	燒酎	2,336	-132	234	-13	2,570	-145
	위스키	-222	0	-496	0	-718	0
	麥酒	-1,711	-761	-514	-229	-2,225	-990
	計	403	-893	-776	-242	-373	-1,135
2003年	燒酎	2,204	-132	221	-13	2,425	-145
	위스키	-222	0	-496	0	-718	0
	麥酒	-2,521	-810	-756	-242	-3,277	-1,052
	計	-539	-942	-1,031	-255	-1,570	-1,197
2004年	燒酎	2,073	-131	208	-13	2,281	-144
	위스키	-222	0	-496	0	-718	0
	麥酒	-3,378	-857	-1,013	-257	-4,391	-1,114
	計	-1,527	-988	-1,301	-270	-2,828	-1,258
2005年~	燒酎	1,780	-293	180	-28	1,960	-321
	위스키	-222	0	-496	0	-718	0
	麥酒	-4,102	-724	-2,568	-1,555	-6,670	-2,279
	計	-2,544	-1,017	-2,884	-1,583	-5,428	-2,600

註: 1998年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변동하더라도 대체효과가 별로 없어 세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의 세수는 2000년에 비해 1,071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2002~2004년에도 지속되어 매년 1,135~1,258억원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국적으로 2005년에는 주세 및 교육세 세수가 2004년에 비해 2,6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1~2004년 동안의 연간 세수감소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는 2005년에 麥酒에 대한 교육세율이 주세액 대비 3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折衷案 III을 기초로 租稅體系 簡素化에 따라 稅收中立的 차원에서 酒稅分 教育稅率의 단일화 방안을 검토해보면 연도에 따라 23.4~36.7%의 세율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더라도 2005년에 이르러 세수중립적인 교육세율을 선택한다면 37%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격의 하방경직성에 따라 세수감소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정수준은 40%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附表 III-15〉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方案(折衷案 III)

(單位: %)

	教育稅收 中立的 單一 教育稅率
2000年	23.38
2001年	24.70
2002年	26.27
2003年	28.16
2004年	30.47
2005年~	36.66

註: 1. 1998년 酒種別 酒稅 및 教育稅 賦課基準 稅收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2. 教育稅率은 酒稅額 對比 稅率임.

## 4. 酒稅率 改編方案 IV:政府案

## 가. 酒稅率 體系 改編方案 IV:政府案

본절에서는 蒸溜酒에 대한 酒稅率을 현행 燒酎와 위스키 세율을 80%(教育稅 포함시 104%)에서 단일화하고, 麥酒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100%까지 인하하여 증류주 세율과 맥주 세율을 차등화하는 政府案을 검토한다.

政府案의 구체적인 酒稅率 및 教育稅率 改編方案은 다음의 〈附表 III-16〉과 같다.

〈附表 III-16〉 主要 酒類에 대한 教育稅 包含 酒稅率 改編方案(政府案)  
(單位: %)

	現 行	2000年	2001年	2002年~
蒸溜酒	35~100 (38.5~130)	80(104)	80(104)	80(104)
麥 酒	130(169)	120(156)	110(143)	100(130)

註: ( ) 밖의 수치는 해당 주류에 대한 酒稅率이고, ( ) 안의 수치는 酒稅分 教育稅를 포함한 酒稅率임.

## 나. 期待效果 IV:政府案

價格效果, 需要效果, 稅收效果는 모두 〈附表 III-7〉~〈附表 III-9〉의 분석결과 가운데 2000~2002년 동안의 효과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위의 表를 기초로 논의하도록 한다.

## 1) 價格效果

政府案에 따라 증류주와 麥酒에 대한 주세율을 조정하면, 燒酎는 세포함 제조장 출고가격이 47.3% 상승하는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11.3% 정도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麥酒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2002년까지 매년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

세율인하 초년도(2000년)에는 4.8% 정도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여 360ml를 기준으로 651.8원에서 620.4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588.8원, 557.4원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현재보다 14.5% 정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세율이 인하되는 위스키와麥酒의 경우에 세율인하분 전액이 가격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需要效果

정부안에 따라 증류주와 맥주의 세율을 조정하면 2000년에 燒酎는 약 6.3% 정도 需要量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는 稅率引下에 따라 需要量이 14.5%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麥酒는 세율 및 자기가격의 하락, 그리고 燒酎價格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로 인해 需要가 8.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麥酒에 대한 주세율이 10% 포인트(교육세 포함시 13% 포인트)씩 인하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燒酎需要의 減少가 예상되는 반면 麥酒 需要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2년에는 燒酎의 需要는 10.9% 정도 감소하는 반면, 위스키와 맥주는 각각 14.5%, 13.9%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稅收效果

折衷案 II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에는 燒酎로부터 酒稅(3,271억원), 教育稅(1,557억원)를 합하여 4,828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위스키로부터는 259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의 경우에는 53억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酒稅와 教育稅의 세수가 약 4,6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에는 맥주의 주세율 인하에 따라 1999년 예상세수에 대비한 세수증가효과가 축소되면서 2000년 대비 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해 酒稅 및 教育稅의 總稅收가 1,15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麥酒의 稅率이 최종적으로 引下되는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1,215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세수와 비교해본다면 2002년에는 도합 2,254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두 주세율이 인하되는 맥주와 위스키의 경우 세율인하분 전액이 가격에 반영된다는 가상의 경우를 가정하였으므로 실제로 세금인하분의 일부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현실적이라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의한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은 稅收中立的이거나 다소의 稅收減少的 改編이 될 가능성이 높다.

## 5. 酒稅負擔率의 國際比較 및 評價

### 가. 國際比較

折衷案 I ~ III 및 政府案과 같이 주세율을 조정하였을 경우 消費者價格에서 酒稅, 教育稅, 附加價值稅를 합산한 總消費稅의 비중은 각각 48%, 46%, 41%, 4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준은 1999년 현재 소주의 2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위스키의 50%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본문의 <表 IV-1>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60~70%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9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위스키 수준인 주세율 100%(교육세 포함 130%) 수준도 결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70~90%(교육세 포함시 77~117%) 수준에서 일치시킴에 따라 國際水準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實效稅負擔率 측면에서 보면 折衷案이 일보후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업계로부터의 저항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문에서 제안한 개편방안보다 다소 후퇴한 세율인하가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評 價

折衷案 I ~ III 및 政府案과 같이 주세율을 개편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酒稅 및 教育稅를 합산한 稅收은 각각 2,106억원, -364억원, -5,428억원, 2,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정치는 酒稅率이 인하되는 麥酒와 위스키의 경우에 세율인하에 따른 가격인하요인이 100% 가격에 반영된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수정하여 세율인하분의 일부만을 가격에 반영하여 인하시키는 경우에는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가 반감되어 稅收效果는 위의 예상치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그러므로 만약 麥酒와 위스키 價格에 下方硬直性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현실화하면, 折衷案 I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세수가 증립적이거나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折衷案 I보다 주세율 수준을 더욱 하향조정하는 政府案 및 折衷案 II와 III의 경우에는 稅收減少效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물론 麥酒 價格이 세율인하분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소폭 인하되는 경우 燒酎의 수요감소효과가 다소 축소되어 소주로부터의 추가적인 稅收增大效果가 있을 것이지만 맥주 가격변동에 따른 소주수요의 증가효과 절대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燒酎 稅收의 增加가 麥酒나 위스키 稅收減少에 크게 미달한다. 따라서 麥酒와 위스키 가격의 下方硬直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負(-)의 稅收效果가 확대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政府案의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중국적으로 2,254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稅收增加的 改編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이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한다면 政府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수는 중립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위스키 세율인 100%보다 세율을 하향조정하여 평균화시키는 경우에는 세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재정적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衡平性 측면에서 상기의 折衷案을 평가하자면, 階層別 稅負擔이 逆進的인 燒酎에 대한 주세율을 본문의 100%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역진성 심화의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麥酒의 경우에도 稅負擔이 역진적이므로 稅率引下로 인해 逆進性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稅負擔이 累進的인데 稅率引下로 인해 累進性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酒類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소비시에 각종의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평성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본문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주류의 경우에는 稅負擔의 衡平性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外部不經濟 問題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折衷案에서와 같이 蒸溜酒에 대한 주세율을 다소 하향평준화하는 경우에는 消費抑制效果가 半減되어 현행 위스키 세율수준인 100%로 주세율을 평준화하는 경우에 비해 外部不經濟 縮小效果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飲酒와 관련한 외부불경제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折衷案과 같은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 수준인 100%로 上向調整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의 租稅抵抗이 매우 크다는 점이 酒稅率을 전반적으로 上向平準化하는 方案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租稅抵抗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社會·經濟的으로 酒類의 소비를 억제하고 高알콜酒에 치중되어 있는 酒類消費構造를 低알콜酒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볼 때 折衷案보다는 본문에서 제시한 현행 위스키 수준으로 酒稅率을 上向平準化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 WTO酒稅紛爭과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向

成明宰·張槿鎬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체로 高價·高級酒에 高稅率, 低價·低級酒에 低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제여건이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면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내적으로는 소비패턴이 고도화되면서 주류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所得階層別 酒稅負擔 分布도 크게 變化하였다. 1980년대말부터는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飲酒運轉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는 등 음주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주세제도는 이러한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化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비는 고알콜주가 대부분인 蒸溜酒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류주에 대한 실효주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아 주세제도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消費抑制的 租稅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이래 선진국으로부터 위스키, 브랜디 등 수입주류에 대한 酒稅率 및 關稅率 引下 압력이 거세졌으며, 1997년에는 EC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수입주류에 차별적이라고 하면서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1999년 2월 17일 제소국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패

널판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월말까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일치시키는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인 주세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증류주에 대한 세율일치라는 전제하에,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증류주를 중심으로 주세율을 상향평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세율을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 Study on WTO Litigation on Alcoholic Beverages  
Between Korea vs. the EC and the U.S. and Reform  
Proposals for the Liquor Tax System of Korea

Sung, Myung Jae and Keun Ho Chang

The Korea Liquor Tax system was designed with an objective of achieving a more equitable income distribution by taxing expensive and high quality alcoholic beverages at higher rate, compared to the tax rate on inexpensive and low quality products. However, in view of the changes in social-economic conditions that has occurre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area, reforming the liquor tax system is now inevitable.

Domestically, consumption pattern has changed drastically as more people prefer high quality products and this has led to a substantial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liquor tax burden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In addition,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ic beverag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s ownership of automobiles became popular since the late 1980s. Furthermor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ssociated with consuming liquors such as juvenile drinking has reached a serious level.

However, the current liquor tax system does not reflect

properly such social and economic changes. Especially, while the consumption pattern in Korea is centered among distilled spirits which tends to contain high alcohol content, the effective tax burdens on these products are low. This, in turn, means that the liquor taxes cannot function as a means to restrain the consumption of high alcohol strength liquors and thereby correct external diseconomy.

On the other hand, outside pressure from developed countries on the reduction of tariff and liquor tax rate has been intensified ever since the Korea liquor market was opened for imports. In the end, the EC and the United States requested the WTO an establishment of a panel, claiming that the Korea Liquor Tax system is discriminatory against imported alcoholic beverages. On February 17th 1999,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uled in favor of the EC and the United States and, as a result, the tax rates on soju and other distilled spirits including whiskies must be harmonized.

In view of both internal changes and external conditions briefly laid out above, the reform of the liquor tax system must be made primarily with an objective to reduce external diseconomy associated with heavy drinking while equalizing the tax rates on distilled liquors. This, of course, means raising the tax rate on soju up to the level of other distilled spirits in dispute. Eventually, the tax system must be designed so that the tax burden vary in direct proportion to alcohol strength.

〈著者略歴〉

成 明 宰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Wisconsin-Madison大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張 槿 鎬

美國 Maryland大 經濟學科 卒業

美國 Chicago大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研究報告書 99-01

WTO 酒稅紛爭과 酒稅率 體系의 改編方向

---

1999年 12月 28日 印刷  
1999年 12月 30日 發行

著 者 成明宰·張槿鎬

發行人 柳 一 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1381-160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2186-2114(代), 팩시밀리: 2186-2179

登 録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一 志 社

© 韓國租稅研究院 1999

ISBN 89-8191-157-6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2,000원